

GOVP1199222647

451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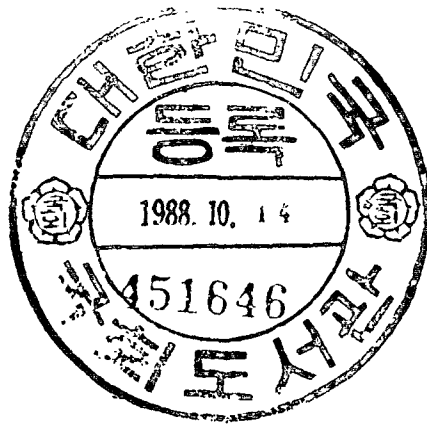
R
636.085
V293A

飼料便覽

1988

寄贈	
農水部 寄贈本	一九八八年 10月10日

農林水産部
韓國飼料協會



目 次

〈統計編〉

I. 主要經濟指標	9
1. 經濟主要指標	10
2. 農漁民人口 及 家口	12
3. 產業別 經濟活動 人口	14
4. 耕地規模別 農家戶數	16
5. 產業別 國民總生產 及 成長率	18
6. 產業別 國民總生產 及 產業構造	20
II. 農業指標	23
1. 國土利用 現況	25
2. 耕地利用 現況	26
3. 作物別 耕地利用面積	27
4. 食糧作物 植付面積 及 生產實績	28
5. 都賣物價 及 消費者 物價	30
6. 農林水產物 輸出實績	32
7. 農水產物 主要品目 輸入實績	34
8. 食糧自給度	38
9. 糧穀 1人當 年間消費量	40
10. 主要國의 1人當 國民總生產	41
11. 主要國의 實質 經濟成長率	42
12. 韓·日·中 主要農業指標 比較	44
13. 韓·日·中 農家所得 比較	46

Ⅲ. 畜産指標	49
1. 家畜飼育 現況	50
2. 家畜別 戶當 飼育規模	54
가. 韓(肉)牛	54
나. 젓 소	54
다. 돼 지	56
라. 닭	56
3. 畜産物 消費現況	59
4. 乳製品 輸入實績	60
5. 家畜 및 畜産物價格	60
가. 產地 生畜價格	61
나. 都賣價格	62
다. 消費者 價格	64
6. 草地造成 및 飼料作物	66
가. 草地管理面積	66
나. 年度別 草地造成投資 內譯	71
다. 年度別 草地造成 單費	72
라. 年度別 牧草 및 飼料作物 種子供給實績	75
마. 年度別 畚裏作 飼料作物 栽培實績	76
바. 牧草種子 播種	77
사. 草地의 利用	78
아. 草地의 施肥	78
자. 싸일리지 所要量	79
차. 主要거름의 含有成分	81
카. 山林의 角度와 구배표	82
타. 立木本數度 照見表	84
파. 山地利用形態別 經濟性 比較	85
7. 主要國의 家畜飼育現況	86
가. 畜牛飼育	86
나. 돼지飼育	86

8. 主要國의 畜産物 生産現況	88
가. 牛 肉	88
나. 豚 肉	88
9. 主要國의 畜産物 輸出現況	90
가. 牛 肉	90
나. 豚 肉	90
10. 主要國의 畜産物 輸入現況	92
가. 牛 肉	92
나. 豚 肉	92
11. 主要國의 肉類 1人當 消費量	94
IV. 飼料需給	97
1. 年度別 飼料需給 現況	99
가. 飼料供給 總括	100
나. 月別 配合飼料 生産	102
다. 配合飼料 種別 生産	104
라. 年度別, 月別, 種別 配合飼料 生産	108
마. 市道別, 種別 配合飼料 生産	116
바. 會員社別 配合飼料 生産實績	138
사. 代用乳 生産實績	140
아. 養魚用 및 其他 實驗動物 飼料生産	141
2. 年度別 配合飼料 原料使用	143
가. 配合飼料 生産 및 原料使用	144
나. 飼料調節團體別 原料使用	146
다. 國産 및 輸入原料 使用	148
라. 政府管理糧穀 副産物 供給現況	154
3. 配合飼料原料 輸入	157
가. 種別別 輸入現況	158
나. 月別 穀類輸入	164
다. 國別 穀類輸入	164

라. 財源別 穀類輸入	172
마. 代用乳 및 代用乳 原料輸入	174
바. 1987年度 原料別 輸入內譯	176
사. 飼料用 原料 輸入 推薦機關	191
아. 配合飼料 原料 輸入關稅率	192
자. 飼料穀物의 價値比較	193
4. 配合飼料 價格	195
가. 配合飼料價格 調整方法 및 變遷內譯	196
나. 配合飼料 工場渡 價格	200
다. 配合飼料 月別 價格	202
라. 政府管理糧穀 副産物 價格	212
마. 輸入 小麥加工 副産物 價格	212
바. 飼料用 輸入穀類 安定基準價格	214
5. 配合飼料 工場施設	215
가. 配合飼料 生産施設 現況	216
나. 飼料調節團體別 市道別 生産能力	216
다. 配合飼料 生産計劃 對 實績	217
라. 市道別 生産能力 및 生産實績	217
6. 配合飼料 檢査內譯	221
가. 配合飼料 檢査實績	222
나. 配合飼料 種別 檢査 및 違背 內譯	222
다. 單味飼料 檢査實績	223
7. 單味飼料 現況	225
가. 單味飼料 製造業의 現況	226
나. 市道別 生産能力 및 實績	226
다. 年度別 生産實績 및 使用實績	227
라. 月別 魚粉 生産實績 및 使用實績	227
마. 魚粉 및 磷酸칼슘 輸出現況	232

V. 國際飼料穀物 需給	233
1. 世界の 穀物需給 現況	235
가. 全體穀物	235
나. 飼料穀物	236
다. 小 麥	240
라. 쌀	241
2. 世界の 穀物 交易現況	242
가. 飼料穀物	242
나. 小 麥	243
다. 쌀	244
3. 主要國의 穀物 需給現況	245
가. 美 國	246
나. EC-12	254
다. 東유럽	255
라. 蘇 聯	256
마. 中 共	257
4. 飼料穀物別 主要國 需給現況	258
가. 옥수수	259
나. 수 수	259
다. 보 리	259
5. 國際穀物時勢 變動狀況	260
6. 日本의 配合飼料 現況	262
가. 配合飼料 生産	262
나. 飼料用 原料使用	262
다. 飼料原料 輸入	264
라. 配合飼料 價格	266

〈法 令 編〉

1. 飼料管理法・施行令・施行規則	271
-------------------------	-----

2. 飼料管理法施行令 關聯別表	319
3. 飼料管理法施行規則 關聯別表 및 別紙書式	323
4. 草地法·施行令·施行規則	353

〈告示編〉

1. 飼料標準分析方法	397
2. 飼料의 公定規格	429
3. 飼料檢定機關 指定	437
4. 飼料調節團體 指定	438
5. 政府管理糧穀 副產物飼料 取扱要綱	439
6. 輸入飼料 事後管理要領	442
7. 配合飼料 製造減量比率 基準	444

〈訓令編〉

1. 飼料檢查業務指針	453
2. 配合飼料 製造用 動物藥品 添加使用指針	475
3. 動物藥品 等 取扱規則	484
4. 草地造成을 위한 山地轉用協議指針	505

統 計 編

여 백

I. 主要經濟指標

1. 經 濟 主

區 分	國民總生產		1人當GNP		디플레아터		成長寄與率	
	經常 (10 億원)	經常 (百萬\$)	經常 (千 원)	經常 (\$)	GNP 80=100	農林漁業 80=100	農林漁業	鑛工業
'70	2,776.9	8,105	86.2	252	16.3	14.4	—	—
'71	3,406.9	9,456	103.7	288	18.4	17.6	10.9	31.6
'72	4,177.5	10,632	124.8	318	21.4	20.8	10.6	41.9
'73	5,355.5	13,446	157.1	395	24.0	23.5	13.7	39.5
'74	7,564.5	18,701	218.2	540	31.3	30.8	21.1	39.4
'75	10,064.6	20,795	285.5	590	39.0	39.8	15.4	42.8
'76	13,818.2	28,550	385.9	797	47.2	46.8	18.4	41.5
'77	17,728.6	36,629	497.7	1,008	54.7	55.5	6.6	37.8
'78	23,936.8	51,341	649.1	1,392	66.5	76.1	△19.8	51.4
'79	30,741.1	61,361	821.8	1,640	79.8	85.2	18.8	41.2
'80	36,672.3	60,327	965.6	1,589	100.0	100.0	△75.1	△9.2
'81	45,126.2	66,238	1,170.9	1,719	115.4	110.1	51.1	38.9
'82	50,724.6	69,345	1,296.8	1,773	123.1	110.8	10.4	24.0
'83	58,985.8	75,998	1,485.2	1,914	127.9	111.5	9.3	32.6
'84	66,408.2	82,392	1,647.8	2,044	132.8	123.2	0.4	55.2
'85	72,849.8	83,684	1,781.9	2,047	138.2	130.1	13.2	24.7
'86	83,975.8	95,274	2,027.0	2,300	141.9	131.1	4.7	45.7
'87 (暫定)	97,531.7	118,593	2,324.1	2,826	147.1	146.3	△4.9	45.2

資料：1) 國民計定(BOK)

2) 調查統計月報(BOK)

註：1) 서비스業은 國民計定(BOK)上 都小賣 및 飲食宿泊業, 運輸倉庫 및 通信業, 金融, 保險, 不動產 및 社會서비스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共濟)金融制度서비스, 政府서비스生産者, 民間非營利 서비스生産者, 輸入稅가 包含되고 海外純受取要素 所得은 除外됨(以下 같음).

要 指 標

(80不變, %)		國民貯蓄率			投資率	總通貨	租 稅	對美換率	
建設, 電 氣, 水 道事業	서비스業	經 常 (%)			經 常 (%)	(M ₂) (10億원)	負擔率 (%)	年平均 (원)	年 末 (원)
		政 府	民 間						
-	-	16.2	5.2	11.0	24.6	898	14.6	316.7	316.7
1.4	63.0	14.5	4.5	10.0	25.1	1,085	14.7	373.3	373.3
2.9	49.5	15.7	1.9	13.8	20.9	1,452	12.7	398.9	398.9
10.2	39.4	21.4	3.0	18.4	24.7	1,981	12.5	397.5	397.5
10.9	30.5	19.3	2.0	17.3	31.8	2,457	14.3	484.0	484.0
12.7	40.8	19.1	2.4	14.5	27.5	3,150	15.5	484.0	484.0
8.2	31.5	22.2	4.3	17.9	25.7	4,205	16.9	484.0	484.0
17.7	41.3	25.4	4.5	20.9	27.7	5,874	17.0	484.0	484.0
21.5	47.0	27.3	5.3	21.9	31.9	7,929	17.3	484.0	484.0
7.5	39.1	26.5	6.5	20.0	36.0	9,878	17.9	484.0	484.0
2.7	16.8	20.8	5.4	15.4	32.1	12,535	18.4	607.9	659.9
△2.3	28.5	20.5	5.6	14.9	30.3	15,671	18.8	681.3	700.5
28.1	46.4	20.9	6.1	14.8	28.6	19,904	19.5	731.5	748.8
19.0	35.3	25.3	7.2	18.1	29.9	22,938	20.0	776.2	795.5
14.2	36.2	27.9	7.1	20.9	31.9	24,706	19.2	806.0	827.4
18.0	47.8	28.6	6.9	21.7	31.1	28,565	19.0	875.5	890.2
9.6	38.5	32.6	6.8	25.8	29.8	33,833	18.8	880.8	861.4
14.6	39.9	36.7	6.9	29.8	29.2	40,280	19.2	819.7	792.3

2) 對美換率は 韓國銀行 集中 基準率임.

3) '87 國民貯蓄 및 投資率は '86 以前의 GNP를 基準으로 한 算出方法에서 國民可處分所得을 基準으로 한 算出方法으로 變更된 數值임.

2. 農 漁 民 人

區 分	總 人 口		農 家 人 口			漁 家 人 口		
	(千名)	增加率	(千名)	構成比	增加率	(千名)	構成比	增加率
'65	28,705	2.65	15,812	55.1	1.7	1,277	4.5	5.5
'70	32,241	1.77	14,422	44.7	△7.5	1,165	3.6	△12.1
'71	32,883	1.97	14,712	44.7	2.0	-	-	-
'72	33,505	1.87	14,677	43.8	△0.2	1,062	3.2	-
'73	34,103	1.77	14,645	42.9	△0.2	979	2.9	△7.8
'74	34,692	1.71	13,459	38.8	△8.1	914	2.6	△6.6
'75	35,281	1.68	13,244	37.5	△1.6	894	2.5	△2.2
'76	35,849	1.64	12,785	35.7	△3.5	880	2.5	△1.6
'77	36,412	1.61	12,309	33.8	△3.7	871	2.4	△1.0
'78	36,969	1.60	11,527	31.1	△6.3	827	2.2	△5.1
'79	37,534	1.58	10,883	28.9	△5.6	791	2.1	△4.4
'80	38,124	1.38	10,827	28.4	△0.5	844	2.2	6.7
'81	38,723	1.57	9,999	25.8	△7.7	776	2.0	△8.1
'82	39,326	1.56	9,688	24.6	△3.1	755	1.9	△2.7
'83	39,929	1.53	9,475	23.7	△2.2	739	1.9	△2.1
'84	40,513	1.46	9,015	22.3	△4.9	716	1.8	△3.1
'85	41,055	1.34	8,521	20.8	△5.5	689	1.7	△3.8
'86	41,569	1.25	8,180	19.7	△4.0	662	1.6	△3.9
'87	42,082	1.24	7,771	18.5	△5.0	635	1.5	△4.1

資料：1) 韓國統計月報(EPB), 2) 農林水產統計年報(MAFF)

註：總人口는 年中人口(7.1 基準), 其他는 年末基準人口를 말함.

口 家 口

總 家 口		農 家 口			漁 家 口		
(千戶)	家口當人口 (名)	(千戶)	構成比	家口當人口 (名)	(千戶)	構成比	家口當人口 (名)
4,844	5.8	2,507	51.7	6.31	215	4.4	5.94
5,857	5.4	2,483	42.4	5.81	195	3.3	5.97
—	—	2,482	—	5.93	—	—	—
—	—	2,452	—	5.99	182	—	5.84
—	—	2,450	—	5.98	171	—	5.73
—	—	2,381	—	5.65	160	—	5.71
6,754	5.1	2,379	35.2	5.57	154	2.3	5.81
—	—	2,336	—	5.47	153	—	5.75
—	—	2,304	—	5.34	153	—	5.69
—	—	2,224	—	5.18	152	—	5.44
—	—	2,162	—	5.03	147	—	5.38
7,969	4.8	2,155	27.1	5.02	157	2.0	5.37
—	—	2,030	—	4.93	150	—	5.17
—	—	1,996	—	4.85	146	—	5.17
—	—	2,000	—	4.74	147	—	5.02
—	—	1,974	—	4.57	147	—	4.87
9,575	4.2	1,926	20.1	4.42	145	1.5	4.75
—	—	1,906	—	4.29	144	—	4.60
—	—	1,871	—	4.15	141	—	4.50

3. 產 業 別 經 濟

區 分	總人口	15歲 以 上 人 口	經 濟					
			參 加 率		就 業 率		農	林
								%
'65	28,705	15,937	8,859	55.6	8,206	92.6	4,810	58.6
'70	32,241	18,253	10,199	55.9	9,745	95.6	4,916	50.4
'71	32,883	18,984	10,542	55.5	10,066	95.5	4,876	48.4
'72	33,505	19,724	11,058	56.0	10,599	95.9	5,346	50.6
'73	34,103	20,438	11,600	56.8	11,139	96.0	5,569	50.0
'74	34,692	21,148	12,080	57.1	11,586	95.9	5,584	48.2
'75	35,281	21,833	12,340	56.5	11,830	95.9	5,425	45.9
'76	35,849	22,549	13,061	57.9	12,556	96.1	5,601	44.6
'77	36,412	23,349	13,440	57.6	12,929	96.2	5,405	41.8
'78	36,969	24,024	13,932	58.0	13,490	96.8	5,181	38.4
'79	37,534	24,678	14,206	57.6	13,664	96.2	4,887	35.8
'80	38,124	24,463	14,431	59.0	13,683	94.8	4,654	34.0
'81	38,723	25,100	14,683	58.5	14,023	95.5	4,801	34.2
'82	39,326	25,638	15,032	58.6	14,379	95.7	4,612	32.1
'83	39,929	26,212	15,118	57.7	14,505	95.9	4,315	29.7
'84	40,513	26,861	14,997	55.8	14,429	96.2	3,914	27.1
'85	41,055	27,553	15,592	56.6	14,970	96.0	3,733	24.9
'86	41,569	28,225	16,116	57.1	15,505	96.0	3,662	23.6
'87	42,082	28,955	16,873	58.3	16,354	96.9	3,580	21.9

資料：經濟活動人口年報(EPB)

註：1) 總人口는 '85年 센서스 結果를 基礎로 한 新推計值임.

2) '79 以前의 經濟活動人口는 14歲以上人口를 말함.

活 動 人 口

單位：千名

活 動 人 口									
業 者								失 業 者	
水 產 業				鑛 工 業		S O C 其 他		失 業 率	
農 林 業		水 產 業							
	%		%		%		%		
4,603	56.1	207	2.5	849	10.4	2,547	31.0	653	7.4
4,826	49.5	90	1.0	1,395	14.3	3,434	35.2	454	4.5
4,758	47.3	118	1.1	1,428	14.2	3,762	37.4	476	4.5
5,110	48.4	238	2.2	1,499	14.2	3,714	35.2	499	4.5
5,260	47.2	309	2.8	1,822	14.3	3,749	33.7	461	4.0
5,304	45.8	280	2.4	2,062	17.8	3,940	34.0	494	4.1
5,123	43.3	302	2.6	2,265	19.1	4,140	35.0	510	4.1
5,323	42.4	278	2.2	2,743	21.9	4,212	33.5	505	3.9
5,161	39.9	244	1.9	2,901	22.4	4,623	35.8	511	3.8
4,920	36.5	261	1.9	3,123	23.2	5,186	38.4	442	3.2
4,642	34.0	245	1.8	3,237	23.7	5,540	40.5	542	3.8
4,429	32.3	225	1.6	3,079	22.5	5,951	43.5	748	5.2
4,556	32.5	245	1.7	2,983	21.3	6,239	44.5	660	4.5
4,314	30.0	298	2.1	3,143	21.9	6,624	46.1	654	4.4
4,044	26.7	271	1.8	3,375	23.3	6,816	47.0	613	4.1
3,731	25.9	182	1.3	3,491	24.2	7,024	48.7	568	3.8
3,554	23.7	179	1.2	3,659	23.5	7,578	50.6	622	4.0
3,477	22.4	185	1.2	4,013	25.9	7,830	50.5	611	3.8
3,400	20.8	180	1.1	4,602	28.1	8,172	50.0	519	3.1

4. 耕地規模別 農家戸數

單位：千戸

區分	總農家	耕種外 農家	規 模 別 農 家 戸 數							
			0.1ha 未 滿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以 上	
'65	2,507	—	2,507	70	831	794	415	228	140	29
'70	2,483	72	2,411	26	761	824	446	193	124	37
'71	2,482	84	2,398	50	760	786	446	200	120	36
'72	2,452	85	2,367	49	753	777	442	193	117	36
'73	2,450	84	2,366	53	742	771	444	201	118	37
'74	2,381	112	2,269	10	663	809	435	196	119	37
'75	2,379	94	2,285	2	689	828	431	187	112	36
'76	2,336	106	2,230	5	684	814	415	174	105	33
'77	2,304	114	2,190	4	682	795	407	171	101	30
'78	2,224	84	2,140	1	630	799	412	171	97	30
'79	2,162	82	2,080	2	641	764	394	162	90	27
'80	2,156	28	2,128	14	598	748	438	191	108	31
'81	2,030	31	1,999	8	597	743	388	156	83	24
'82	1,996	39	1,957	9	568	725	390	159	83	23
'83	2,000	52	1,948	9	562	719	392	160	83	23
'84	1,974	52	1,922	9	546	707	391	161	85	23
'85	1,926	46	1,880	9	525	686	390	160	87	23
'86	1,906	44	1,862	10	530	663	386	161	88	24
'87	1,871	39	1,832	9	513	647	384	163	91	25

資料：農林水產統計年報(MAFF)

5. 産業別 國民總生産 및 成長率

5. 產業別國民總

基準：80 不變價格

區 分	國民總生產		農 林			
			農		業	
		成長率		成長率		成長率
'70	17,013.0	—	4,989.6	—	4,380.5	—
'71	18,563.9	9.1	5,157.9	'3.4	4,558.9	4.1
'72	19,546.8	5.3	5,262.3	2.0	4,611.8	1.2
'73	22,278.4	14.0	5,636.4	7.1	4,875.7	5.7
'74	24,177.0	8.5	6,036.7	7.1	5,226.0	7.2
'75	25,815.7	6.8	6,289.1	4.2	5,500.7	5.3
'76	29,285.5	13.4	6,927.5	10.2	6,119.4	11.2
'77	32,407.9	10.7	7,132.4	3.0	6,306.8	3.1
'78	35,981.1	11.0	6,426.6	△9.9	5,610.7	△11.0
'79	38,502.7	7.0	6,899.1	7.4	6,108.8	8.9
'80	36,672.3	△4.8	5,524.7	△19.9	4,663.5	23.7
'81	39,088.7	6.6	6,759.7	22.4	5,796.6	24.3
'82	41,211.6	5.4	6,980.6	3.3	6,051.6	4.4
'83	46,109.1	11.9	7,436.0	6.5	6,432.7	6.3
'84	50,003.0	8.4	7,453.2	0.2	6,369.0	△1.0
'85	52,705.4	5.4	7,809.2	4.8	6,704.1	5.3
'86	59,187.8	12.3	8,114.2	3.9	7,001.0	4.4
'87(暫定)	66,319.6	12.0	7,766.8	△4.3	6,680.9	△4.6

資料：調查統計月報(BOK)

生産 및 成長率

單位：10億원

水 産 業				鑛 工 業		SOC 其 他	
林 業	成長率	水 産 業		成長率	成長率	成長率	成長率
			成長率				
319.3	-	289.8	-	2,975.4	-	9,048.0	-
305.2	△4.4	293.7	1.3	3,465.3	16.5	9,940.7	11.0
311.0	1.9	339.5	15.6	3,877.5	11.9	10,407.0	4.7
350.7	12.8	410.0	20.8	4,956.0	27.8	11,686.0	12.3
338.0	3.6	472.6	15.3	5,704.6	15.1	12,435.7	6.4
326.4	3.4	462.1	△2.2	6,406.6	12.3	13,120.0	5.5
337.0	3.2	471.1	1.9	7,847.5	22.5	14,510.5	10.6
345.2	2.4	480.4	2.0	9,028.9	15.1	16,246.6	12.0
362.5	5.0	453.4	△5.6	10,863.8	20.3	18,690.7	15.0
296.6	△18.2	493.7	8.8	11,903.2	9.6	19,700.4	5.4
347.1	17.0	514.1	4.1	11,734.3	△1.4	19,413.3	△1.5
367.0	5.7	596.1	16.0	12,675.0	8.0	19,654.0	1.2
323.3	△11.9	605.8	1.6	13,185.3	4.0	21,045.7	7.1
423.9	31.1	579.4	△4.4	14,780.6	12.1	23,892.5	13.5
456.9	7.8	627.3	8.3	16,930.4	14.5	25,619.4	7.2
435.5	△4.7	669.5	6.7	17,597.9	4.0	27,298.3	6.6
359.1	△17.5	754.1	12.6	20,559.1	16.8	30,514.5	11.8
340.7	△5.1	745.2	△1.2	23,781.8	15.7	34,771.0	13.9

6. 產業別國民總

區分	國民總生產		農		林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農 業	
					金額	構成比
'70	2,776.9	100.0	717.6	25.8	624.5	22.5
'71	3,406.9	100.0	905.6	26.6	787.2	23.1
'72	4,177.5	100.0	1,095.8	26.2	963.9	23.1
'73	5,355.5	100.0	1,322.0	24.7	1,119.8	20.9
'74	7,564.5	100.0	1,856.6	24.5	1,627.6	21.5
'75	10,064.6	100.0	2,503.8	24.9	2,190.6	21.8
'76	13,818.2	100.0	3,243.5	23.5	2,855.4	20.7
'77	17,728.6	100.0	3,957.6	22.3	3,387.4	19.1
'78	23,936.8	100.0	4,890.4	20.4	4,321.0	18.1
'79	30,741.1	100.0	5,877.6	19.1	5,035.3	16.4
'80	36,672.3	100.0	5,524.7	15.1	4,663.5	12.7
'81	45,126.2	100.0	7,442.3	16.5	6,352.4	14.1
'82	50,724.6	100.0	7,731.5	15.2	6,427.2	12.7
'83	58,985.8	100.0	8,292.6	14.1	6,746.4	11.4
'84	66,408.2	100.0	9,181.2	13.8	7,620.5	11.5
'85	72,849.8	100.0	10,158.0	13.9	8,439.3	11.6
'86	83,975.8	100.0	10,637.1	12.7	8,653.5	10.3
'87(暫定)	97,531.7	100.0	11,365.5	11.7	9,225.5	9.5

資料：調查統計月報(BOK)

生産と産業構造

単位：10億円(經常價格)

水産業				鑛工業		SOC 其他	
林業		水産業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44.9	1.6	48.3	1.7	619.2	22.3	1,440.1	51.9
48.8	1.4	69.6	2.0	766.3	22.5	1,465.0	43.0
54.8	1.3	77.1	1.8	983.5	23.5	2,098.2	50.2
73.9	1.4	128.2	2.4	1,413.4	26.4	2,620.1	48.9
102.4	1.4	126.6	1.7	2,073.5	27.4	3,634.4	48.0
129.0	1.3	184.2	1.8	2,820.8	28.0	4,740.0	47.1
156.9	1.1	231.2	1.7	4,031.3	29.2	6,543.4	47.4
204.0	1.2	366.3	2.1	5,201.8	29.3	8,569.2	48.3
236.4	1.0	422.9	1.8	7,121.2	29.8	11,925.2	49.8
275.9	0.9	566.3	1.8	9,312.7	30.3	15,550.8	50.6
347.1	0.9	514.1	1.4	11,734.3	32.0	19,413.3	52.9
383.7	0.9	706.2	1.6	14,448.1	32.0	23,235.8	51.5
592.4	1.2	711.9	1.4	15,768.8	31.1	27,224.3	53.7
635.2	1.1	911.0	1.5	18,174.8	30.8	32,518.4	55.1
667.4	1.0	893.3	1.3	20,997.2	31.6	36,230.8	54.6
625.4	0.9	1,093.4	1.5	22,383.3	30.7	40,308.5	55.3
601.5	0.7	1,382.4	1.6	27,086.0	32.3	46,252.7	55.1
581.5	0.6	1,558.5	1.6	31,450.8	32.2	54,715.4	56.1

여 백

II. 農業指標

여 백

1. 國 土 利 用 現 況

單位：千ha

區 分	國土面積	農 耕 地			林 野		其 他		
		構成比	畝	田	構成比	構成比			
'65	9,843	2,256	22.9	1,286	970	6,614	67.2	973	9.9
'70	9,848	2,298	23.3	1,273	1,025	6,611	67.1	939	9.6
'71	9,848	2,271	23.1	1,265	1,006	6,612	67.1	965	9.8
'72	9,848	2,242	22.8	1,259	983	6,597	67.0	1,009	10.2
'73	9,876	2,241	22.7	1,263	978	6,586	66.7	1,049	10.6
'74	9,876	2,238	22.7	1,269	969	6,641	67.2	997	10.1
'75	9,881	2,240	22.7	1,277	963	6,635	67.1	1,006	10.2
'76	9,880	2,238	22.7	1,290	948	6,614	66.9	1,028	10.4
'77	9,886	2,231	22.6	1,303	928	6,593	66.7	1,062	10.7
'78	9,896	2,222	22.5	1,312	910	6,578	66.5	1,096	11.0
'79	9,897	2,207	22.3	1,311	896	6,570	66.4	1,120	11.3
'80	9,899	2,196	22.2	1,307	889	6,568	66.3	1,135	11.5
'81	9,902	2,188	22.1	1,308	880	6,563	66.3	1,151	11.6
'82	9,902	2,180	22.0	1,311	869	6,554	66.2	1,178	11.8
'83	9,909	2,167	21.8	1,316	851	6,547	66.1	1,195	12.1
'84	9,912	2,152	21.7	1,320	832	6,540	66.0	1,220	12.3
'85	9,912	2,144	21.6	1,325	819	6,531	65.9	1,237	12.5
'86	9,914	2,141	21.6	1,329	812	6,524	65.8	1,249	12.6
'87	9,917	2,143	21.6	1,352	792	6,516	65.7	1,258	12.7

資料：農林水產統計年報(MAFF)

2. 耕地利用現況

區分	耕地面積		利用面積		農家戶當耕地面積			國民1人當耕地面積		
	(千ha)	增減率	(千ha)	利用率	(a)	畝	田	(a)	畝	田
'65	2,256	3.9	3,560	157.8	90.0	51.3	38.7	7.96	4.54	3.42
'70	2,298	△0.6	3,478	151.3	92.5	51.3	41.2	7.31	4.05	3.26
'71	2,271	△1.1	3,100	136.5	91.5	51.0	40.5	7.13	3.97	3.16
'72	2,242	△1.3	3,076	137.2	91.4	51.4	40.0	6.93	3.89	3.04
'73	2,241	0.0	3,049	136.0	91.5	51.5	40.0	6.81	3.84	2.98
'74	2,238	△0.1	3,096	138.2	94.0	53.3	40.7	6.69	3.79	2.90
'75	2,240	0.1	3,144	140.4	94.1	53.6	40.5	6.46	3.68	2.78
'76	2,238	△0.1	3,174	141.7	95.8	55.2	40.6	6.24	3.60	2.64
'77	2,231	△0.3	3,033	135.5	96.8	56.5	40.3	6.12	3.57	2.55
'78	2,222	△0.4	3,001	134.5	99.9	59.0	40.9	6.00	3.54	2.46
'79	2,207	△0.7	2,909	130.9	102.1	60.6	41.5	5.87	3.49	2.38
'80	2,196	△0.5	2,765	125.3	101.8	60.6	41.2	5.76	3.43	2.33
'81	2,188	△0.4	2,774	126.3	107.8	64.4	43.4	5.65	3.38	2.27
'82	2,180	△0.4	2,678	122.4	109.2	65.7	43.5	5.54	3.33	2.21
'83	2,167	△0.6	2,698	123.8	108.3	65.8	42.5	5.42	3.29	2.13
'84	2,152	△0.7	2,707	124.9	109.0	66.9	42.1	5.30	3.25	2.05
'85	2,144	△0.4	2,592	120.4	111.3	68.8	42.5	5.29	3.27	2.02
'86	2,141	△0.1	2,570	119.9	112.3	69.7	42.6	5.15	3.20	1.95
'87	2,143	0.1	2,598	120.0	114.5	72.2	42.3	5.09	3.21	1.88

資料：農林水產統計年報(MAFF)

3. 作物別 耕地利用 面積

單位：千ha

區分	食 糧 作 物						特 作	菜 蔬	果 實	桑 田	其 他
	米 穀	麥 類	豆 類	薯 類	雜 穀						
'65	3,221	1,228	1,201	365	213	214	61	151	43	50	34
'70	2,947	1,203	1,075	365	181	123	89	254	60	85	43
'71	2,553	1,190	768	332	163	100	97	257	55	82	56
'72	2,535	1,191	777	334	147	86	88	248	59	79	67
'73	2,489	1,182	713	365	138	91	88	254	66	80	72
'74	2,472	1,204	745	328	122	73	113	274	75	88	75
'75	2,522	1,218	761	324	146	73	118	244	74	43	143
'76	2,474	1,215	752	304	136	67	132	282	87	45	154
'77	2,284	1,230	546	316	127	65	132	294	94	41	188
'78	2,272	1,230	575	299	113	55	136	276	94	35	188
'79	2,129	1,233	489	263	95	49	133	339	96	32	180
'80	1,982	1,233	360	244	92	53	118	359	99	27	180
'81	2,002	1,224	374	262	91	51	100	365	100	22	185
'82	1,907	1,188	339	242	81	57	124	343	101	16	187
'83	1,926	1,229	351	232	72	42	138	322	105	14	193
'84	1,917	1,231	346	233	62	45	132	318	107	14	219
'85	1,780	1,237	242	196	65	40	133	337	109	12	221
'86	1,707	1,236	193	182	56	41	153	368	112	11	219
'87	1,775	1,262	208	212	47	46	176	308	114	9	216

資料：農林水產統計年報(MAFF)

註：其他는 施設作物, 樹園地 및 其他作物을 포함.

4. 食糧作物 植付

區 分	計			米 穀			麥 類		
	面 積 (千ha)	生 產 量		面 積 (千ha)	生 產 量		面 積 (千ha)	生 產 量	
		(千噸)	(千石)		(千噸)	(千石)		(千噸)	(千石)
'65	2,950	6,524	46,763	1,228	3,501	24,313	933	1,657	12,021
'70	2,699	6,937	49,513	1,203	3,939	27,356	833	1,820	13,196
'71	2,553	6,787	48,373	1,190	3,998	27,761	768	1,715	12,435
'72	2,535	6,738	48,002	1,191	3,957	27,481	777	1,756	12,736
'73	2,489	6,755	48,036	1,182	4,212	29,248	713	1,549	11,232
'74	2,472	6,895	48,951	1,204	4,445	30,867	745	1,468	10,650
'75	2,522	7,654	54,495	1,218	4,669	32,424	761	1,806	13,105
'76	2,474	8,177	58,094	1,215	5,215	36,215	752	1,847	13,418
'77	2,284	7,958	56,217	1,230	6,006	41,706	546	862	6,250
'78	2,272	8,212	58,086	1,230	5,797	40,258	575	1,388	10,062
'79	2,129	8,096	57,292	1,233	5,565	38,645	489	1,556	11,276
'80	1,982	5,324	37,781	1,233	3,550	24,655	360	906	6,567
'81	2,002	6,915	48,876	1,224	5,063	35,160	374	919	6,661
'82	1,908	6,804	47,995	1,188	5,175	35,938	339	820	5,941
'83	1,926	7,133	50,318	1,228	5,404	37,529	351	930	6,744
'84	1,917	7,315	51,538	1,231	5,682	39,457	346	824	5,976
'85	1,780	6,990	49,213	1,237	5,626	39,071	242	584	4,231
'86	1,707	6,773	47,621	1,236	5,607	38,936	193	459	3,329
'87	1,775	6,687	46,982	1,262	5,493	38,145	208	521	3,779
'88(P)	1,826	7,005	49,359	1,215	5,472	38,000	284	697	5,052

資料：1) 農林水産統計年報(MAFF) 2) 農産局 米産課

面積 및 生産實績

豆 類			薯 類			雜 穀		
面積 (千ha)	生産量		面積 (千ha)	生産量		面積 (千ha)	生産量	
	(千%)	(千石)		(千%)	(千石)		(千%)	(千石)
362	200	1,467	213	1,045	8,085	215	120	877
358	271	1,980	180	783	6,076	123	124	905
332	258	1,885	163	707	5,491	100	110	801
334	256	1,876	147	674	5,220	86	94	689
365	279	2,047	138	611	4,743	92	104	766
328	354	2,595	122	539	4,183	73	90	656
324	349	2,561	146	738	5,731	73	92	674
304	345	2,524	136	667	5,177	67	103	760
316	378	2,765	127	595	4,627	65	117	869
299	339	2,478	113	565	4,372	55	123	916
262	310	2,263	95	501	3,883	49	165	1,225
244	266	1,939	92	431	3,356	53	170	1,264
262	315	2,298	91	454	3,546	51	163	1,211
242	295	2,139	81	369	2,888	57	146	1,089
232	277	2,015	72	407	3,176	42	115	854
233	296	2,167	63	365	2,838	45	148	1,100
196	275	2,007	65	359	2,814	40	147	1,090
182	251	1,821	56	325	2,554	41	131	981
212	266	1,924	47	258	2,026	46	149	1,108
225	325	2,366	56	350	2,744	46	161	1,197

註：米穀(白米) 1石 = 144 kg, 麥類(大麥, 裸麥) 1石 = 138 kg, 豆類(大豆) 1石 = 135 kg,
薯類(감자: 精穀) 1石 = 122.25 kg, 雜穀(곡수수) 1石 = 135 kg

5. 都賣物價 및 消費者物價

가. 都賣物價 總括指數
(年平均指數)

(85=100)

區分	總指數	農林水產品			鑛產品	工產品	電力·水道 및 도시가스	食料品·食料品以外	
		平均	農水產 食品	非食用 農林水產品				食料品	食料品 以外
加重值	1,000.0	149.3	144.9	4.4	17.5	790.5	42.7	233.4	766.6
'70	14.5	9.5	9.2	18.0	6.6	17.1	10.4	12.0	15.8
'71	15.8	11.5	11.2	19.6	7.7	18.0	10.4	13.8	16.7
'72	18.0	14.5	14.1	24.1	8.7	19.9	11.9	16.5	18.6
'73	19.3	15.1	14.5	30.3	9.2	21.6	11.5	17.2	20.2
'74	27.4	19.1	18.4	35.9	12.8	31.9	15.8	23.0	29.6
'75	34.6	26.4	25.9	38.4	16.4	38.9	23.3	31.3	36.0
'76	38.8	32.7	32.3	41.7	18.4	42.4	26.5	36.9	39.6
'77	42.3	38.9	38.7	45.9	25.0	44.6	30.6	42.6	42.0
'78	47.3	51.4	51.5	49.3	32.1	46.6	31.9	53.0	44.5
'79	56.1	58.0	57.6	69.0	38.8	56.0	46.6	58.9	54.6
'80	78.0	72.4	71.7	89.9	56.8	80.0	75.7	75.3	78.9
'81	93.9	91.1	91.0	94.2	78.6	94.8	95.1	94.2	93.7
'82	98.2	91.7	91.5	95.3	87.2	99.9	102.9	94.8	99.5
'83	98.4	94.4	94.5	91.1	89.7	99.5	100.6	96.0	99.3
'84	99.1	94.6	94.5	98.2	94.9	100.2	100.0	96.3	100.1
'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6	98.5	98.9	98.6	110.2	105.5	98.4	97.1	100.0	98.1
'87	99.0	98.1	97.5	117.6	112.2	99.2	93.7	98.7	99.1

資料：1) 物價總覽(BOK) 2) 調查統計月報(BOK)

나. 全 都 市 消 費 者 物 價 類 別 指 數

(年平均指數)

(85=100)

區 分	總指數	食 料 品						食料品 以 外
		穀 物	肉 類	菜 蔬	果 實	鮮魚介		
加重值	1,000.0	379.9	107.7	48.1	46.6	24.0	32.8	620.1
'70	15.7	14.0	13.5	10.8	21.3	14.4	9.2	17.7
'71	17.9	16.6	16.8	13.4	24.8	17.2	10.7	19.4
'72	19.9	18.8	22.1	14.8	19.7	19.7	10.3	21.3
'73	20.6	19.3	21.4	16.0	21.7	20.5	11.5	22.1
'74	25.6	24.6	27.1	19.3	30.5	24.9	14.6	26.8
'75	32.1	32.4	38.2	24.0	30.8	33.5	18.1	31.8
'76	36.9	38.2	44.4	32.7	33.3	36.9	25.1	36.0
'77	40.7	42.6	47.0	39.2	40.4	45.6	32.8	39.1
'78	46.6	49.7	50.0	46.2	53.2	53.3	42.5	44.0
'79	55.1	56.6	57.2	49.6	51.8	70.7	51.7	54.0
'80	71.0	71.7	70.6	63.3	85.2	83.0	66.2	70.4
'81	86.2	91.5	90.2	90.4	116.9	92.7	81.4	82.6
'82	92.3	93.7	93.2	98.0	93.0	98.3	85.6	91.3
'83	95.4	94.9	94.1	100.7	97.1	89.4	95.7	95.8
'84	97.6	96.4	96.1	101.7	108.8	88.5	92.9	98.4
'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6	102.7	102.4	105.6	97.0	104.4	96.2	116.8	103.0
'87	105.9	105.5	109.1	91.3	110.1	115.1	125.9	106.1

資料：物價年報(EPB)

註：'74年度以前 數値는 物價指數 編制調整에 따른 再算定으로 약간의 誤差가 있을 수 있음

6. 農 林 水 產

區 分	總輸出	農林水產物		農 產					
			構成比		畜產物	果實類	菜蔬類	農 產 號 조립	調 製 食 料 品
'65	175	65	37.0	15.3	—	0.1	—	—	—
'70	835	265	31.7	64.3	0.3	1.1	0.2	3.4	3.0
'71	1,068	329	30.8	63.1	0.5	0.5	0.4	5.2	2.9
'72	1,624	427	26.3	77.6	7.5	1.9	0.4	8.6	2.1
'73	3,225	745	23.1	132.7	7.3	2.4	1.4	20.7	4.5
'74	4,460	694	15.6	133.2	17.4	3.4	2.8	23.2	7.8
'75	5,081	931	18.3	208.8	35.9	3.1	4.7	22.3	10.6
'76	7,715	1,204	15.6	176.1	34.6	3.4	8.9	36.9	9.1
'77	10,046	1,528	15.2	275.3	48.1	3.9	8.3	53.3	19.8
'78	12,711	1,690	13.3	281.2	35.8	7.5	12.5	59.9	22.6
'79	15,065	1,940	12.9	266.0	45.7	7.1	14.8	50.0	21.3
'80	17,505	1,725	9.9	225.0	25.8	15.3	23.5	33.2	17.9
'81	20,993	1,864	8.9	182.0	23.7	15.5	21.5	29.4	21.2
'82	21,616	1,502	6.9	154.8	11.8	11.6	18.5	23.0	22.8
'83	24,223	1,415	5.8	154.6	11.7	5.8	19.7	25.7	25.6
'84	29,245	1,472	5.0	216.8	14.6	5.2	19.1	23.5	32.2
'85	30,283	1,398	4.6	164	25	6	13	21	39
'86	34,714	1,925	5.5	208	23	12	12	24	53
'87	47,281	2,512	5.3	320	38	25	17	34	65

資料：商工部 輸出統計

物 輸 出 實 績

單位：百萬\$

物		林 產 物					水 產 物		
生絲類	其 他 農 產 物	木材類	石材類	壁 紙	머 셋· 람 等		水產物	漁網類	
8.3	6.9	20.9	19.1	—	1.5	0.3	28.5	27.2	1.3
50.9	5.4	110.1	103.9	—	4.1	2.1	90.1	82.8	7.3
48.0	5.8	150.6	144.0	0.7	3.5	2.4	115.0	105.9	9.1
52.2	4.9	197.0	186.6	0.8	4.3	5.3	152.6	142.5	10.1
73.0	23.3	352.0	330.0	2.9	6.3	12.8	260.0	241.8	18.2
58.9	19.7	270.3	236.5	13.6	11.7	8.5	290.9	260.3	30.6
120.6	11.6	293.7	256.0	12.0	12.1	13.6	428.7	398.6	30.1
73.1	10.1	459.9	403.0	23.3	19.5	14.1	568.0	533.7	34.3
125.2	14.7	549.2	464.0	31.0	29.9	24.3	703.3	654.8	48.5
96.9	46.0	656.9	520.2	52.6	38.0	46.1	752.0	690.3	61.7
81.7	45.4	737.6	591.3	61.9	40.6	43.8	936.0	855.5	80.5
65.3	44.0	629.0	471.7	57.7	34.9	64.7	871.4	759.5	111.9
26.0	44.7	631.0	473.8	67.4	35.6	54.2	1,050.8	931.7	119.1
34.0	33.1	400.7	262.4	71.0	24.9	42.4	946.8	861.2	85.6
38.9	27.2	353.4	165.1	79.9	29.6	84.8	907.4	826.8	80.6
42.9	79.3	300.4	123.5	75.5	17.1	84.3	955.2	877.5	77.7
20	40	264	78	84	16	86	970	891	79
31	53	333	97	122	13	101	1,384	1,282	102
28	114	461	129	166	15	151	1,731	1,620	111

7. 農水產物主要

區	分	總輸入 (百萬\$)	農水產物 (千%)	農畜產物 (千%)	糧 穀 (千%)		登
						飼料用	
'76	物 量	—	—	—	2,708	766	—
	金 額	8,774	451	451	409	111	—
'77	物 量	—	—	—	4,270	1,523	—
	金 額	10,811	613	605	569	221	—
'78	物 量	—	—	—	4,001	213	—
	金 額	14,972	871	843	576	60	—
'79	物 量	—	—	—	5,759	3,078	502
	金 額	20,339	1,316	1,259	1,018	486	166
'80	物 量	—	—	—	5,845	2,116	1,187
	金 額	22,292	1,444	1,407	1,355	393	504
'81	物 量	—	—	—	6,619	2,392	1,827
	金 額	26,131	1,938	1,879	1,703	421	850
'82	物 量	—	—	—	6,169	3,233	500
	金 額	24,251	1,241	1,183	969	444	132
'83	物 量	—	—	—	7,354	4,669	—
	金 額	26,192	1,605	1,553	1,191	744	—
'84	物 量	—	—	—	6,901	4,149	—
	金 額	30,631	1,447	1,382	1,167	688	—
'85	物 量	—	—	—	6,807	4,217	—
	金 額	31,136	1,151	1,062	983	575	—
'86	物 量	—	—	—	8,555	5,507	—
	金 額	31,584	1,231	1,100	1,016	611	—
'87	物 量	—	—	—	10,292	6,598	—
	金 額	41,020	1,420	1,223	1,107	657	—

資料：農林水產部 農業政策局，水產廳

品目輸入実績

小 麥	곡수수		大 豆	其他穀			
	飼料用	飼料用		飼料用	飼料用		
1,711	—	869	666	128	100	—	—
262	—	112	84	35	27	—	—
1,924	—	1,672	1,372	194	151	480	—
245	—	202	165	68	56	54	—
1,587	—	559	213	74	—	1,781	—
197	—	96	60	20	—	263	—
1,652	—	3,178	2,747	410	331	17	—
279	—	437	381	129	105	7	—
2,020	—	2,085	1,721	546	395	7	—
340	—	322	259	185	134	4	—
1,849	—	2,359	1,887	445	375	139	130
320	—	362	282	148	123	23	16
1,800	—	2,887	2,391	562	429	420	413
288	—	350	285	149	112	50	47
1,972	121	4,249	3,604	731	550	402	394
318	19	619	520	203	156	51	49
2,782	926	2,913	2,208	751	576	455	439
436	131	444	331	223	169	64	57
2,609	852	2,991	2,296	739	624	468	445
380	101	374	283	176	147	53	44
3,401	1,473	3,776	2,822	977	832	401	380
397	127	367	273	211	179	41	32
4,147	1,476	4,707	3,377	1,065	862	373	360
430	153	413	413	228	184	36	31

註：1) 總輸入斗 水産物은 貿易統計年報(通關基準)

2) 農畜産物은 輸入推薦実績 基準

區 分		其他飼料 (千%)	生 畜 (千 頭)			畜 產 物		
			肉 牛	豬 小	其 他	쇠고기		
'76	物 量	—	—	—	1.4	—	—	—
	金 額	3	1	—	1	—	1	—
'77	物 量	—	—	0.8	8.4	—	—	—
	金 額	10	8	0.5	7	0.5	2	—
'78	物 量	—	—	20	23.8	—	—	61
	金 額	17	37	8	27	2	114	74
'79	物 量	—	—	6	16	—	—	32
	金 額	52	27	3	21	3	64	57
'80	物 量	—	—	0.02	1.8	—	—	—
	金 額	12	3	0.2	2	0.8	6	—
'81	物 量	—	—	25	0.4	—	—	25
	金 額	21	23	21	1	1	71	66
'82	物 量	—	—	30	9.7	—	—	41
	金 額	32	37	19	16	2	106	98
'83	物 量	—	—	76	11.1	—	—	50
	金 額	108	69	46	19	4	137	128
'84	物 量	—	—	13	12.6	—	—	24
	金 額	35	31	7	23	1	74	68
'85	物 量	—	—	0.02	—	—	—	—
	金 額	26	2	0.1	—	1.9	5	—
'86	物 量	—	—	—	—	—	—	—
	金 額	31	4	—	0.3	3.7	5.9	—
'87	物 量	—	—	—	14	—	—	—
	金 額	42	4.7	—	0.7	4.0	6.5	—

(千%) 其他	備蓄農産物 (千%)						其他農産物	水産物
		고 추	마 늘	양 과	참 깨	땅 콩	(千%)	(千%)
-	-	-	-	-	-	-	-	-
1	-	-	-	-	-	-	37	-
-	0.3	-	-	-	-	0.3	-	13
2	0.3	-	-	-	-	0.3	15.7	8
-	66.9	21	11	23	7.5	4.4	-	47
40	63	31	15	6	7	4	36	28
-	39.3	21	7	-	6.7	4.6	-	65
7	50	32	8	-	6	4	48	57
-	13.5	-	-	-	8	5.5	-	47
6	12	-	-	-	7	5	19	37
-	18	-	-	-	10	8	-	48
5	19	-	-	-	8	11	42	59
-	5	-	-	-	5	-	-	61
8	4	-	-	-	4	-	35	58
-	13	-	-	-	10	3	-	66
9	9	-	-	-	7	2	39	52
-	51	13	6	18	8	6	-	84
6	37	16	4	6	6	5	38	65
-	21	6	3	3	3	6	-	91
5	15	6	2	1	2	4	31	83
-	6	-	-	-	2	4	-	117
5.9	3.2	-	-	-	1	2.2	40	112
-	9.3	-	-	-	8	1.3	-	189
6.5	4.2	-	-	-	3.6	0.6	46	197

8. 食 糧 自 給 度

① 全體糧穀 自給度

單位：%

區 分	計	쌀	보리쌀	밀	옥수수	豆 類	薯 類	其 他	主 穀 (쌀+보리)
'65	93.9	100.7	106.0	27.0	36.1	100.0	100.0	100.0	102.1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96.4
'71	71.2	82.5	91.8	11.8	18.6	82.6	100.0	103.6	84.9
'72	70.8	91.6	93.2	7.3	13.8	85.1	100.0	100.0	92.1
'73	69.4	92.1	82.9	5.3	12.4	75.2	100.0	100.0	89.5
'74	70.3	90.8	78.4	4.9	10.3	84.5	100.0	100.0	87.3
'75	73.0	94.6	92.0	5.7	8.3	85.8	100.0	100.0	93.9
'76	74.1	100.5	97.9	4.5	6.7	74.4	100.0	100.0	99.8
'77	65.1	103.4	53.4	2.3	6.2	67.5	100.0	100.0	91.8
'78	72.6	103.8	119.9	2.1	6.0	59.3	100.0	100.0	106.4
'79	59.8	85.7	117.3	2.4	3.4	43.4	99.8	89.3	90.7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87.3
'81	43.2	66.2	72.7	2.7	6.1	29.7	100.0	89.1	67.3
'82	53.3	93.7	85.9	3.4	4.9	32.4	100.0	22.5	91.8
'83	50.2	97.6	129.0	6.0	2.8	25.7	100.0	26.2	100.2
'84	48.7	97.5	103.9	0.6	3.1	23.5	100.0	10.1	101.2
'85	48.4	103.3	82.6	0.4	4.1	22.5	100.0	11.6	101.0
'86	44.5	96.9	82.3	0.2	3.5	18.8	100.0	14.0	95.7
'87(暫定)	41.3	99.8	97.2	0.1	2.4	16.2	100.0	42.1	99.6
'88(P)	38.4	98.5	117.8	0.2	2.4	14.2	100.0	3.3	100.4

資料：農林水産部 糧政局

② 飼料用을 除外한 自給度

單位：%

區分	計	쌀	보리쌀	밀	옥수수	豆類	薯類	其他
'65	98.9	100.7	117.8	27.8	77.8	108.7	117.6	101.5
'70	86.2	93.1	115.1	15.9	82.9	92.3	122.7	100.8
'71	76.0	82.5	101.4	12.2	81.9	91.3	114.8	107.5
'72	75.8	91.6	100.2	7.5	68.1	93.7	112.2	104.4
'73	74.0	92.1	86.3	5.4	48.6	84.8	123.1	102.4
'74	75.9	90.8	81.8	5.0	33.9	95.0	131.2	103.6
'75	79.1	94.6	96.3	5.8	25.7	97.8	133.1	109.0
'76	81.7	100.5	102.6	4.6	21.8	95.1	126.9	103.3
'77	74.2	103.4	56.3	2.3	24.9	92.8	122.2	103.2
'78	85.8	103.8	127.9	2.2	29.6	87.4	105.0	106.7
'79	75.5	85.7	124.6	2.4	21.6	76.3	115.5	95.8
'80	69.6	95.1	62.2	4.8	27.1	64.3	111.2	98.0
'81	53.9	66.2	75.7	2.7	28.4	63.7	112.2	97.6
'82	70.7	93.7	91.7	4.0	23.1	71.2	111.1	101.1
'83	73.7	97.7	132.3	6.0	15.2	65.6	112.2	103.9
'84	72.3	97.5	103.9	1.0	13.7	63.1	111.1	113.6
'85	71.6	103.3	89.6	0.5	15.5	62.7	111.1	52.6
'86	68.5	96.9	106.3	0.2	13.1	60.5	111.1	161.1
'87(暫定)	67.0	99.8	107.3	0.2	8.4	55.1	112.7	82.8
'88(P)	65.2	98.5	128.6	0.2	8.3	50.4	109.7	83.3

資料：農林水産部 糧政局

9. 糧穀1人當年消費量

單位：kg

區分	計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薯類	其他
'65	188.8	121.8	36.8	13.8	0.9	4.4	7.3	3.8
'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71	224.3	134.8	36.8	32.0	1.4	5.4	11.4	2.5
'72	225.9	134.5	37.5	34.9	1.8	5.1	10.0	2.1
'73	222.1	129.4	39.3	34.6	2.1	5.6	9.1	2.0
'74	208.8	127.8	39.9	24.3	2.2	5.4	7.2	2.0
'75	207.3	123.6	36.3	29.5	2.4	6.4	7.1	2.0
'76	203.5	120.1	34.7	30.2	2.9	6.4	7.2	2.0
'77	203.9	126.4	28.5	30.3	3.3	6.2	7.1	2.1
'78	201.5	134.7	18.1	30.5	2.8	7.0	6.3	2.1
'79	198.8	135.6	14.1	30.6	2.9	7.2	6.3	2.1
'80	195.5	132.7	13.9	29.4	3.1	8.0	6.3	2.1
'81	195.7	131.4	16.0	30.9	2.9	8.2	4.3	2.0
'82	191.8	130.0	13.8	29.7	3.2	8.5	4.6	2.0
'83	185.2	129.5	9.5	30.6	2.5	8.2	3.1	1.8
'84	183.5	130.1	6.2	32.1	2.3	8.3	3.1	1.4
'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86	179.0	127.7	3.6	31.5	2.8	8.9	3.3	1.2
'87(暫定)	175.7	126.2	2.7	31.5	3.0	7.9	3.0	1.4
'88(P)	175.0	124.8	2.5	31.5	3.2	8.8	2.9	1.3

資料：農林水産部 糧政局

10. 主要國의 1人當 國民總生産

單位：US \$

區分	韓國	日本	美國	카나다	英國	프랑스	西獨	濠洲	臺灣	이탈리아
'65	105	917	3,557	2,602	1,864	2,024	1,951	1,976	184	—
'70	252	1,948	4,952	3,929	2,254	2,775	3,041	2,915	386	1,882
'71	288	2,183	5,310	4,393	2,554	3,072	3,513	3,214	441	2,054
'72	318	2,843	5,778	4,959	2,897	3,758	4,196	3,720	519	2,375
'73	395	3,810	6,415	5,692	3,300	4,795	5,549	5,160	690	2,810
'74	540	4,165	6,887	6,841	3,577	5,059	6,139	6,153	913	3,067
'75	590	4,475	7,401	7,309	4,254	6,418	6,767	6,571	956	3,425
'76	797	4,976	8,176	8,561	4,136	6,636	7,271	7,115	1,122	3,338
'77	1,008	6,069	9,038	8,616	4,557	7,343	8,411	7,010	1,288	3,807
'78	1,392	8,457	10,107	8,795	5,806	9,060	10,488	7,891	1,559	4,615
'79	1,640	8,736	11,145	9,687	7,516	10,878	12,402	8,718	1,895	5,727
'80	1,589	9,068	11,996	10,782	9,568	12,163	13,274	10,010	2,312	6,941
'81	1,719	9,898	13,270	11,811	9,171	10,564	11,086	11,280	2,632	6,134
'82	1,773	9,141	13,626	11,920	8,610	9,962	10,678	10,978	2,597	6,119
'83	1,914	9,905	14,521	12,840	8,165	9,434	10,715	10,523	2,744	6,194
'84	2,044	10,469	15,908	13,198	7,672	8,919	10,165	11,623	3,046	6,060
'85	2,047	11,014	16,760	13,329	8,199	9,466	10,270	10,181	3,144	—
'86	2,300	16,155	17,409	13,725	—	13,072	14,709	10,814	3,748	—

資料：1) 調查統計月報(BOK)

2)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11. 主要國의 實質 經濟成長率

單位：%

區 分	韓 國	日 本	美 國	카나다	英 國	프랑스	西 獨	濠 洲	臺 灣	이탈리아
'70	7.6	9.5	△0.3	2.9	2.4	5.7	5.0	5.6	11.3	5.3
'71	9.1	4.3	2.8	7.0	2.7	5.4	3.2	5.2	12.9	1.6
'72	5.3	8.5	5.0	5.8	2.2	5.9	3.7	4.0	13.3	3.2
'73	14.0	7.9	5.2	7.5	7.5	5.4	4.6	4.5	12.8	7.0
'74	8.5	△1.4	△0.5	3.5	△1.1	3.2	0.5	1.5	1.1	4.1
'75	6.8	2.7	△1.3	1.1	△0.7	0.2	△1.7	2.5	4.3	△3.6
'76	13.4	4.8	4.9	6.1	3.8	5.2	5.5	2.8	13.5	5.9
'77	10.7	5.3	4.7	2.2	1.0	3.1	3.1	0.8	10.1	1.9
'78	11.0	5.2	5.3	3.9	3.6	3.8	3.1	5.2	13.9	2.7
'79	7.0	5.3	2.5	3.4	2.1	3.3	4.2	1.6	8.5	4.9
'80	△4.8	4.3	△0.2	1.0	△2.2	1.1	1.8	4.4	7.1	3.9
'81	6.6	3.7	1.9	4.0	△1.1	0.5	0.0	2.7	5.7	0.2
'82	5.4	3.1	△2.5	△4.3	1.9	1.8	△1.0	△0.8	3.3	△0.5
'83	11.9	3.2	3.6	2.8	3.3	0.7	1.0	5.2	7.9	0.4
'84	8.4	5.1	6.4	5.0	2.2	1.5	3.0	6.8	10.5	2.6
'85	5.4	4.7	2.7	4.5	3.7	1.2	2.5	4.5	5.1	—
'86	12.3	2.5	2.5	—	—	—	2.4	—	10.8	—

資料：國民所得 國際比較(BOK)

12. 韓·日·中 主要 農業指標 比較

12. 韓 · 日 · 中 主 要

區 分		單 位	韓 國						
			'75	'80	'83	'84	'85	'86	'87
國 土 利 用 狀 況	國 土 面 積	千ha	9,881	9,899	9,909	9,912	9,912	9,914	9,917
	耕 地 面 積	千ha	2,240	2,196	2,167	2,152	2,144	2,141	2,143
	耕 地 率	%	22.7	22.2	21.9	21.7	21.6	21.6	21.6
	畚 面 積	千ha	1,277	1,307	1,316	1,320	1,325	1,329	1,352
	戶 當 耕 地 面 積	a	94.1	101.8	108.3	109.0	111.3	112.3	114.5
	耕 地 利 用 率	%	140.4	125.3	123.8	124.9	120.4	119.9	120.0
人 口 變 化	總 人 口	千名	35,281	38,124	39,929	40,513	41,055	41,569	42,082
	農 家 人 口	千名	13,244	10,827	9,475	9,015	8,521	8,180	7,771
	農 家 人 口 比 率	%	37.5	28.4	23.7	22.3	20.8	19.7	18.5
	總 家 口 數	千戶	6,754	7,969	—	—	9,575	—	—
	農 家 戶 數	千戶	2,379	2,155	2,000	1,974	1,926	1,906	1,871
	就 業 者	千名	11,830	13,683	14,505	14,429	14,970	15,505	16,354
	農 林 漁 業 就 業 者	千名	5,425	4,654	4,315	3,914	3,733	3,662	3,580
國 民 經 濟 主 要 指 標	國 民 總 生 產	億\$	208.0	603.3	760.0	823.9	836.8	952.7	1,185.9 (잠정)
	農 林 水 產	10億日圓, 百萬元NT\$	2,503.8	5,524.7	8,292.6	9,181.2	10,158.0	10,637.1	11,365.5 (")
	GNP 成 長 率	%	6.8	△4.8	11.9	8.4	5.4	12.3	12.0 (")
	農 林 水 產 業 成 長 率	%	4.2	△19.9	6.5	0.2	4.8	3.9	△4.3 (")
	1 人 當 GNP	\$	590	1,589	1,914	2,044	2,047	2,300	2,826 (")
	農 家 所 得	千圓, 千NT\$	873	2,693	5,128	5,549	5,736	5,995	6,535
農 外 所 得 率	%	18.1	34.8	35.0	33.3	35.5	38.7	38.5	

資料：農林水產統計年報(MAFP)，經濟活動人口年報(EPB)，國民計定(BOK)，
農林水產統計(日本農林水產省)，中華民國農林統計要覽(行政院農林委員會)

農業指標比較

日 本						臺 灣					
'75	'80	'83	'84	'85	'86	'75	'80	'83	'84	'85	'86
37,753	37,771	37,777	37,778	37,780	37,782	3,597	3,601	3,600	3,600	3,600	3,601
5,572	5,461	5,411	5,396	5,379	5,358	917	907	894	892	888	887
15.0	14.7	14.3	14.3	14.2	14.2	25.4	25.2	24.8	24.8	24.7	24.6
3,171	3,055	2,989	2,971	2,952	2,931	516	509	501	497	495	495
112.5	117.2	119.7	120.6	122.9	123.7	106	104	111	112	115	117
103.3	103.2	103.5	103.8	103.7	—	180.9	154.4	149.2	144.1	141.6	142.8
111,940	117,060	118,602	119,316	121,049	—	16,150	17,805	18,733	19,012	19,258	19,455
23,197	21,366	20,808	20,495	19,839	19,775	5,598	5,287	4,283	4,250	4,146	4,249
20.7	18.3	17.5	17.2	16.4	16.4	34.7	29.7	22.9	22.4	21.5	21.8
33,734	36,015	37,426	37,935	38,133	38,988	3,067	3,744	4,144	4,247	4,361	4,489
4,953	4,661	4,522	4,473	4,376	4,331	868	872	808	798	772	762
52,230	55,360	57,330	57,660	58,070	—	5,521	6,547	7,070	7,308	7,428	7,733
6,610	5,760	5,320	5,110	5,090	—	1,681	1,277	1,317	1,286	1,297	1,317
4,982.4	10,670.0	11,820.0	12,550.0	13,490.0	19,630.0	146.5	408.0	510.0	575.0	602.0	763.0
118,764	142,045	148,691	156,183	154,487	150,464 (참경)	122,498	213,474	280,865	281,376	270,072	286,722
5.3	4.3	3.2	5.1	4.7	2.5	4.2	7.1	7.9	10.5	5.1	10.8
—	△ 6.8	1.2	2.1	0.9	—	△ 1.2	△ 1.1	0.7	1.8	1.7	△ 0.2
4,466	9,137	9,913	10,458	11,176	16,173	956	2,312	2,744	3,046	3,144	3,748
3,414	4,515	5,122	5,361	5,503	5,514	86.1	197.5	248.8	256.3	261.5	289.8
66.4	78.9	80.7	80.1	80.6	81.7	53.7	70.4	64.5	63.4	63.3	63.6

13. 韓 · 日 · 中

區 分		'65	'70	'75	'79
韓 國	農家所得(A) (千 圓)	112	256	873	2,227
	農業所得 (千 圓)	89	194	715	1,531
	農外所得(B) (千 圓)	23	62	158	696
	農外所得率 (B/A) %	20.5	24.2	18.1	31.3
日 本	農家所得(A) (千 円)	761	1,393	3,414	4,418
	農業所得 (千 円)	365	508	1,146	1,127
	農外所得(B) (千 円)	396	885	2,268	3,291
	農外所得率 (B/A) %	52.0	63.5	66.4	74.5
臺 灣	農家所得(A) (千NT\$)	32.3	35.4	86.1	155.3
	農業所得 (千NT\$)	21.3	17.3	39.9	48.0
	農外所得(B) (千NT\$)	11.0	18.2	46.2	107.3
	農外所得率 (B/A) %	34.0	51.4	53.7	69.0

資料：1) 農林水產統計(日本農林水產省 統計情報部)

2) Department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Taiwan Provincial Government)

農家所得 比較

'80	'81	'82	'83	'84	'85	'86	'87
2,693	3,688	4,465	5,128	5,549	5,736	5,995	6,535
1,755	2,476	3,031	3,331	3,699	3,699	3,677	4,016
938	1,211	1,434	1,797	1,850	2,037	2,318	2,519
34.8	32.8	32.1	35.0	33.3	35.5	38.7	38.5
4,515	4,773	4,965	5,122	5,361	5,503	5,514	—
952	968	952	990	1,065	1,066	1,011	—
3,563	3,805	4,013	4,132	4,296	4,437	4,503	—
78.9	79.7	80.8	80.7	80.1	80.6	81.7	—
197.5	222.5	235.6	248.8	256.3	261.5	289.8	—
58.5	71.4	83.4	88.2	93.7	95.9	105.5	—
139.0	151.0	152.2	160.5	162.5	165.5	184.3	—
70.4	67.9	64.6	64.5	63.4	63.3	63.6	—

3) 臺灣中央銀行 金融統計月報 (臺灣中央銀行)

4)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農水產部)

여 백

Ⅲ. 畜產指標

1. 家 畜 飼

區 分	韓 牛 ¹⁾		肉 牛		乳 牛		돼 치	
	家 口 (戶)	頭 數 (頭)	家 口 (戶)	頭 數 (頭)	家 口 (戶)	頭 數 (頭)	家 口 (戶)	頭 數 (頭)
'62	1,092,501	1,252,550	155	861	676	2,406	1,244,827	1,671,935
'63	1,178,402	1,363,323	183	962	813	3,539	1,185,494	1,510,083
'64	1,182,577	1,350,684	259	907	1,087	5,199	1,006,289	1,255,508
'65	1,156,529	1,313,487	176	805	1,210	6,612	1,082,786	1,381,873
'66	1,132,495	1,289,695	414	1,139	1,478	8,471	1,149,200	1,457,309
'67	1,097,214	1,242,648	1,307	2,132	1,818	10,360	1,040,709	1,296,109
'68	1,029,389	1,193,457	1,699	3,301	2,145	13,760	1,030,241	1,395,685
'69	1,023,420	1,202,335	1,606	3,948	2,322	18,820	990,973	1,338,497
'70	1,101,448	1,283,646	838	2,738	3,126	23,624	883,747	1,126,130
'71	1,048,236	1,247,061	825	2,865	3,270	30,009	924,653	1,332,513
'72	1,106,289	1,333,353	1,171	4,868	3,788	36,128	861,290	1,247,637
'73	1,189,975	1,486,188	1,485	6,964	5,488	52,424	817,444	1,594,718
'74	1,358,346	1,777,711	961	7,449	7,378	73,195	889,553	1,818,338
'75	1,274,680	1,545,832	2,055	7,449	9,415	85,542	654,267	1,247,181
'76	1,193,258	1,451,486	2,450	12,107	10,174	89,688	909,941	1,952,627
'77	1,169,349	1,492,036	3,931	16,454	13,933	109,243	688,516	1,481,889
'78	1,169,784	1,624,301	6,081	27,054	16,387	135,803	657,517	1,719,364
'79	1,082,483	1,562,591	9,984	36,189	17,170	163,299	757,745	2,843,163
'80	988,933	1,389,648	8,259	37,552	22,122	206,851	502,899	1,783,536
'81	851,418	1,283,194	6,832	28,531	18,229	194,205	424,992	1,831,518
'82	895,827	1,525,644	-	-	22,536	228,248	443,852	2,183,159
'83	971,152	1,940,142	-	-	29,537	274,783	539,403	3,648,965
'84	1,036,806	2,317,692	-	-	37,646	334,352	362,474	2,958,089
'85	1,047,573	2,553,449	-	-	43,760	390,135	251,196	2,852,799
'86	990,720	2,370,011	-	-	42,728	437,333	262,403	3,347,350
'87	854,269	1,923,121	-	-	38,131	463,330	302,891	4,281,315

資料：農林水産部

註) 1) 1982年以後는 肉牛包含

育 現 況 (1)

計		토 끼		오 리		七 面 鳥	
家 口 (戸)	首 數 (首)	家 口 (戸)	頭 數 (頭)	家 口 (戸)	首 數 (首)	家 口 (戸)	首 數 (首)
1,369,134	13,046,867	-	1,324,803	-	219,021	-	2,492
1,370,918	11,907,174	-	1,131,399	-	172,836	-	2,232
1,328,543	10,281,930	-	794,470	-	148,622	-	2,095
1,320,425	11,892,612	-	736,033	-	209,540	-	1,937
1,297,649	14,007,723	248,962	908,520	-	232,619	657	1,810
1,292,942	17,079,169	240,987	833,298	13,997	226,722	527	1,582
1,258,794	25,967,810	166,097	650,585	14,047	319,181	568	1,692
1,199,378	22,651,393	155,647	489,022	13,739	199,458	587	1,741
1,199,378	23,632,717	194,159	-	-	-	-	-
1,109,909	25,903,054	139,141	363,588	22,232	251,969	604	1,915
1,044,843	24,537,353	159,473	421,220	27,382	224,319	667	2,022
1,004,130	23,070,981	200,741	586,961	44,527	483,117	943	3,977
1,001,885	18,814,204	274,919	848,394	59,864	491,378	1,677	11,779
1,094,464	20,938,732	282,967	841,518	63,722	489,838	2,092	6,769
1,236,771	26,325,190	276,889	919,640	77,283	564,210	1,896	5,856
1,178,762	30,224,309	289,325	1,047,495	85,799	543,361	1,867	7,617
1,172,054	40,753,249	265,644	1,042,308	86,872	559,919	2,206	40,867
923,098	41,120,522	212,223	816,708	79,257	493,895	5,672	176,910
692,219	40,129,924	135,761	548,548	66,686	403,882	5,673	35,340
628,380	42,999,172	109,811	522,994	54,604	388,283	2,437	15,617
618,463	46,591,640	126,308	601,754	66,151	507,600	1,454	7,480
538,369	49,239,436	114,198	553,912	59,797	445,691	1,104	5,189
367,004	46,483,161	86,766	511,025	43,881	336,239	840	5,406
302,775	51,081,237	63,521	628,192	32,308	688,988	759	4,430
281,736	56,094,807	39,394	670,240	30,570	826,665	819	4,643
268,704	59,323,977	29,983	553,601	23,683	585,912	895	5,167

家 畜 飼

區 分	꿀 벌		緬 羊		山 羊		斗 舍	
	家 口 (戶)	桶 數 (桶)	家 口 (戶)	頭 數 (頭)	家 口 (戶)	頭 數 (頭)	家 口 (戶)	頭 數 (頭)
'62	43,740	140,594	...	1,465	...	313,449
'63	35,074	110,707	...	1,179	...	286,421
'64	32,058	102,332	...	1,043	...	224,915
'65	35,303	123,848	...	1,029	...	177,491
'66	35,902	130,802	87	1,637	161,308	161,343	36	450
'67	34,461	126,713	88	1,604	85,346	133,434	45	487
'68	28,444	124,555	421	2,197	58,693	109,279	76	618
'69	26,063	111,817	456	2,465	55,009	99,351	79	716
'70	25,814	...	3,430	7,282	72,831
'71	21,352	99,865	457	2,988	70,410	127,989	98	1,004
'72	22,589	105,271	288	3,609	83,178	152,227	136	1,395
'73	26,086	125,383	309	3,750	108,539	194,105	206	1,946
'74	34,283	157,819	567	4,582	144,980	252,889	294	2,817
'75	33,128	150,956	352	5,799	149,036	250,211	389	3,677
'76	30,083	159,354	355	6,810	142,751	232,432	447	4,460
'77	33,348	181,465	408	6,974	129,907	216,331	694	5,266
'78	37,474	238,356	566	7,900	135,557	244,274	780	6,376
'79	38,786	260,102	663	3,181	118,094	225,446	887	7,101
'80	30,873	244,764	557	6,233	107,994	200,502	1,032	8,726
'81	38,128	314,694	243	4,010	98,680	196,889	1,430	11,113
'82	51,875	395,307	171	4,282	106,227	251,415	1,836	14,014
'83	54,504	443,853	266	6,152	118,730	349,506	2,161	16,664
'84	53,179	451,334	199	4,651	124,039	384,976	2,431	19,183
'85	51,479	467,062	216	4,901	118,133	318,104	2,646	22,712
'86	52,667	520,962	179	4,286	91,060	217,053	3,017	27,075
'87	48,961	534,391	75	3,261	66,889	165,980	3,380	31,314

育 現 況 (2)

달		거 위		평		개	
家 口 (戸)	頭 數 (頭)	家 口 (戸)	首 數 (首)	家 口 (戸)	首 數 (首)	家 口 (戸)	頭 數 (頭)
12,990	25,315	...	22,674	863,853
13,643	26,707	...	16,956	921,166
12,205	26,933	...	12,065	896,531
14,168	27,683	...	10,374	993,782
15,230	27,675	4,724	9,892	648,896	701,744
13,088	24,951	4,325	8,847	558,498	613,731
11,140	19,945	4,874	9,757	669,483	756,193
10,278	17,638	5,480	10,872	716,414	811,564
...
8,326	12,893	5,350	10,587	1,086,599	1,284,700
7,387	10,813	5,130	10,324	1,273,510	1,493,736
6,706	10,338	4,742	9,670	1,315,327	1,516,819
6,445	10,320	5,090	10,714	1,170,507	1,367,537
5,793	9,042	4,681	10,046	1,252,668	1,433,168
5,421	8,334	3,853	8,090	509	2,175	1,157,606	1,331,237
4,489	6,847	3,486	7,758	650	2,360	1,125,338	1,310,139
3,196	5,696	3,032	6,925	465	3,993	1,190,323	1,451,932
2,894	4,641	2,502	6,361	385	15,909	1,199,945	1,546,947
2,153	3,894	2,063	4,776	...	7,687	1,208,855	1,508,865
1,714	3,461	2,122	4,923	335	7,379	1,101,416	1,349,694
1,311	3,082	1,335	3,606	296	8,904	1,003,903	1,355,439
1,053	2,906	1,496	4,230	284	4,920	1,001,224	1,316,814
759	2,993	1,098	2,568	266	5,618	870,854	1,272,074
639	3,009	1,195	3,658	801,447	1,002,650
535	2,894	1,350	3,465	824,744	1,091,536
484	3,051	1,210	3,795	910,427	1,392,826

2. 家畜別 戸當

가. 韓(肉)牛

規 模		單 位	年 度			
			'77	'78	'79	'80
副 業 (20頭未滿)	戶	數	1,172,849	1,175,347	1,091,576	947,560
		%	99.9	99.9	99.9	99.9
	頭	數	1,478,776	1,618,789	1,553,400	1,307,488
		%	98.0	98.0	97.2	96.1
專 業 (20 ~ 49頭)	戶	數	342	414	718	890
		%	0.1	0.1	0.1	0.1
	頭	數	9,539	11,436	19,809	24,631
		%	0.7	0.7	1.2	1.8
企 業 (50頭以上)	戶	數	89	104	173	228
		%	-	-	-	-
	頭	數	20,175	21,130	25,571	28,811
		%	1.3	1.3	1.6	2.1
計	戶數(千戶)		1,173	1,176	1,092	949
	頭數(千頭)		1,508	1,651	1,599	1,361
	戶當(頭)		1.3	1.4	1.5	1.4

資料：農林水産部

나. 豚 企

規 模		單 位	年 度			
			'77	'78	'79	'80
副 業 (10頭未滿)	戶	數	10,820	12,438	12,230	12,026
		%	77.6	75.9	71.2	68.1
	頭	數	40,165	48,747	53,003	56,300
		%	36.8	35.9	32.5	31.3
專 業 (10 ~ 49頭)	戶	數	2,953	3,736	4,694	5,358
		%	21.2	22.8	27.4	30.3
	頭	數	51,959	65,108	82,707	93,953
		%	47.5	47.9	50.6	52.2
企 業 (50頭以上)	戶	數	160	213	246	282
		%	1.2	1.3	1.4	1.6
	頭	數	17,119	21,948	27,589	29,588
		%	15.7	16.2	16.9	16.5
計	戶	數	13,933	16,387	17,170	17,666
	頭	數	109,243	135,803	163,299	179,841
	戶當(頭)		7.8	8.3	9.5	10.2

飼育規模

單位：戶，頭

'81	'82	'83	'84	'85	'86	'87
857,019	894,217	968,984	1,033,172	1,042,560	984,756	849,105
99.9	99.8	99.8	99.7	99.5	99.4	99.4
1,246,861	1,451,092	1,845,317	2,167,402	2,340,156	2,100,014	1,691,143
95.1	95.1	95.1	93.5	91.6	88.6	87.9
1,009	1,315	1,806	1,806	4,052	4,515	3,949
0.1	0.2	0.2	0.2	0.4	0.5	0.5
28,785	37,114	50,081	85,313	116,041	134,630	117,410
2.2	2.4	2.6	3.7	4.5	5.7	6.1
222	295	362	591	961	1,449	1,215
-	-	-	0.1	0.1	0.1	0.1
36,079	37,438	44,744	64,977	97,252	135,367	114,568
2.7	2.5	2.3	2.8	3.9	5.7	6.0
858	896	971	1,037	1,048	991	854
1,312	1,526	1,940	2,318	2,553	2,370	1,923
1.5	1.7	2.0	2.2	2.4	2.4	2.3

單位：戶，頭

'81	'82	'83	'84	'85	'86	'87
11,928	15,139	20,642	26,913	30,997	28,243	21,681
65.4	67.2	69.9	71.5	70.8	66.1	56.9
56,897	69,733	90,785	116,793	135,739	136,878	117,222
29.3	30.5	33.0	34.9	34.8	31.3	25.3
6,011	7,073	8,554	10,377	12,351	13,969	15,828
33.0	31.4	29.0	27.6	28.2	32.7	41.5
107,479	125,923	149,182	181,063	215,058	253,170	291,421
55.3	55.2	54.3	54.2	55.1	57.9	62.9
290	324	341	356	412	516	622
1.6	1.4	1.1	0.9	1.0	1.2	1.6
29,829	32,592	34,816	36,496	39,338	47,285	54,687
15.4	14.3	12.7	10.9	10.1	10.8	11.8
18,229	22,536	29,537	37,646	43,760	42,728	38,131
194,205	228,248	274,783	334,352	390,135	437,333	463,330
10.7	10.1	9.3	8.9	8.9	10.2	12.2

다. 돼 지

規 模	單 位	年 度		'77	'78	'79	'80
		戶	數				
副 業 (100頭未滿)	戶	數		688	657	756	426
	%			99.9	99.9	99.7	99.5
	頭	數		1,180	1,383	2,182	1,062
	%			79.7	80.4	76.8	64.2
專 業 (100~999頭)	戶	數		0.6	0.7	2.0	1.6
	%			0.1	0.1	0.3	0.4
	頭	數		135	153	399	349
	%			9.1	8.9	14.0	21.1
企 業 (1,000頭以上)	戶	數		0.05	0.05	0.08	0.07
	%			-	-	-	-
	頭	數		167	183	262	242
	%			11.2	10.7	9.2	14.7
計	戶	數		689	658	758	428
	頭	數		1,482	1,719	2,843	1,653
	戶當(頭)			2.2	2.6	3.8	3.9

라. 닭

規 模	單 位	年 度		'77	'78	'79	'80
		戶	數				
副 業 (1,000首未滿)	戶	數		1,174	1,164	914	682
	%			99.5	99.2	99.0	98.7
	首	數		7,253	7,170	5,273	3,750
	%			24.0	17.6	12.8	9.1
專 業 (1,000~9,999首)	戶	數		5	8	8	8
	%			0.4	0.7	0.9	1.2
	首	數		15,063	22,889	23,700	25,214
	%			49.8	56.2	57.6	61.5
企 業 (10,000首以上)	戶	數		0.4	0.5	0.6	0.6
	%			0.1	0.1	0.1	0.1
	首	數		7,908	10,649	12,148	12,035
	%			26.2	26.2	29.6	29.4
計	戶	數		1,179	1,172	923	691
	首	數		30,224	40,753	14,121	40,999
	戶當(首)			25.6	34.8	44.6	59.3

單位：千戶，千頭

'81	'82	'83	'84	'85	'86	'87
423	441	535	358	246	257	297
99.5	99.5	99.2	98.8	98.0	98.1	98.0
1,159	1,382	2,314	1,509	1,144	1,386	1,929
63.3	63.3	63.4	51.0	40.1	41.4	45.1
1.8	2.3	4.4	4.5	4.5	4.9	6.0
0.4	0.5	0.8	1.2	1.8	1.9	2.0
396	498	902	951	1,048	1,193	1,511
21.6	22.8	24.7	32.2	36.7	35.6	35.3
0.07	0.09	0.1	0.1	0.5	0.2	0.2
-	-	-	-	-	-	-
277	303	433	498	661	768	841
15.1	13.9	11.9	16.8	23.2	22.9	19.6
425	444	539	362	251	262	303
1,832	2,183	3,649	2,958	2,853	3,347	4,281
4.3	4.9	6.8	8.2	11.4	12.8	14.1

單位：千戶，千首

'81	'82	'83	'84	'85	'86	'87
619	610	531	360	297	275	263
98.6	98.6	98.7	98.1	98.0	97.9	97.8
3,566	3,224	2,487	1,705	1,521	1,481	1,426
8.3	6.9	5.0	3.6	3.0	2.6	2.4
8	8	6	5.6	5.0	5.0	5.0
1.3	1.3	1.1	1.5	1.7	1.8	1.9
25,376	26,820	23,524	20,810	21,305	21,199	20,438
59.0	57.6	47.8	44.8	41.7	37.8	34.5
0.7	0.8	1	1.4	1.0	1.0	1.0
0.1	0.1	0.2	0.4	0.3	0.3	0.3
14,057	16,548	23,228	23,968	28,255	33,415	37,459
32.7	35.5	47.2	51.6	55.3	59.6	63.1
628	618	538	367	303	281	269
42,999	46,592	49,239	46,483	51,081	56,095	59,324
68.5	75.3	91.5	126.7	168.6	199.6	220.5

3. 畜 産 物

區 分		'76	'77	'78	'79
1人當消費	肉 類 (kg)	6.8	8.1	10.1	11.3
	쇠 고 기	(2.1)	(2.2)	(3.1)	(3.0)
	돼 지 고 기	(3.0)	(3.9)	(4.8)	(6.0)
	닭 고 기	(1.7)	(2.0)	(2.2)	(2.3)
	鷄 卵 (個)	85	97	101	111
總 消 費 量	肉 類 (千ㄱ)	245.4	301.0	374.9	428.8
	국 내 산	244.7	296.8	328.1	394.9
	수 입	0.7	4.2	46.8	33.9
	(자 급 율)	(99.7)	(98.6)	(87.5)	(92.1)
	쇠 고 기 (千ㄱ)	75.5	81.6	114.7	113.8
	국 내 산	74.8	77.4	74.3	86.5
	수 입	0.7	4.2	40.4	27.3
	(자 급 율)	(99.1)	(94.9)	(64.8)	(76.0)
	돼 지 고 기 (千ㄱ)	109.0	146.3	178.0	225.3
	국 내 산	109.0	146.3	171.6	218.7
	수 입	-	-	6.4	6.6
	(자 급 율)	(100)	(100)	(96.5)	(97.0)
	닭 고 기 (국내산)	60.9	73.1	82.2	89.7
	鷄 卵 (百萬個)	3,049	3,552	3,743	4,231

資料：農林水産部 畜産局
 註：1人當 消費는 精肉基準임.

消 費 現 況

'80	'81	'82	'83	'84	'85	'86	'87
11.3	10.2	11.2	13.3	13.9	14.4	14.3	15.7
(2.6)	(2.4)	(2.7)	(2.9)	(2.6)	(2.9)	(3.5)	(3.6)
(6.3)	(5.4)	(6.1)	(7.4)	(8.4)	(8.4)	(7.7)	(8.8)
(2.4)	(2.4)	(2.5)	(3.0)	(2.9)	(3.1)	(3.1)	(3.3)
119	114	115	124	122	131	145	156
432.7	393.6	443.2	530.3	564.0	592.9	597.7	665.2
423.1	369.2	398.2	480.9	547.5	588.2	594.1	665.2
9.6	23.9	45.0	49.4	16.5	4.7	3.6	-
(97.8)	(93.9)	(89.8)	(90.7)	(97.1)	(99)	(99.4)	(100)
100.0	93.2	106.5	115.5	106.5	120.4	147.9	151.9
93.1	69.3	61.5	66.1	90.0	115.7	144.3	151.9
6.9	23.9	45.0	49.4	16.5	4.7	3.6	-
(93.1)	(74.2)	(57.7)	(57.2)	(84.5)	(96)	(97.6)	(100)
241.8	209.8	237.5	294.9	339.8	346.1	320.4	372.6
239.1	209.8	237.5	294.9	339.8	346.1	320.4	372.6
2.7	-	-	-	-	-	-	-
(98.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0.9	90.6	99.2	119.9	117.9	126.2	129.4	140.7
4,543	4,431	4,505	4,936	4,939	5,390	6,029	6,573

4. 乳製品輸入實績

單位：%, 千\$

區分	乳糖		카제인		脫脂粉乳		乳漿粉末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70	712	293	376	253	-	-	-	-
'75	1,782	1,290	470	875	-	-	1,067	1,158
'76	4,898	2,660	1,011	1,569	-	-	1,277	1,120
'77	5,570	3,071	1,908	2,818	162	66	1,821	1,351
'78	6,588	4,324	2,330	3,700	445	231	2,589	2,243
'79	8,210	6,048	3,499	6,929	522	328	2,894	2,525
'80	7,097	6,061	2,414	6,851	387	363	4,894	4,258
'81	4,165	2,874	1,322	3,975	688	134	5,779	3,788
'82	4,914	2,980	2,469	6,883	2,188	2,208	8,302	5,589
'83	5,120	2,903	3,270	8,317	3,461	2,865	9,129	5,607
'84	5,586	2,834	3,976	9,070	4,133	3,055	9,988	5,501
'85	5,130	2,536	4,146	8,556	2,432	1,788	10,148	5,471
'86	4,722	3,202	5,313	12,619	297	236	10,264	6,813
'87	4,721	3,464	5,508	14,077	603	610	10,743	7,174

資料：農林水産部 畜産局

5. 家畜 및 畜産物價格

가. 產地 生畜價格 (全國平均)

區 分	송아지 (3個月齡)		큰 소 (400 kg)		돼 지		닭	鷄 卵 (원/10개)
	암 (千원)	수 (千원)	암 (千원)	수 (千원)	仔 豚 (千원)	肥育豚 (90 kg) (千원)	肉 鷄 (원/kg)	
'78	211	292	637	685	33	99	724	294
'79	141	231	597	668	22	71	570	267
'80	159	283	687	785	23	92	834	334
'81	342	545	1,061	1,161	46	150	969	391
'82	655	805	1,361	1,415	46	146	992	433
'83	1,000	909	1,664	1,520	38	128	868	485
'84	650	651	1,326	1,431	21	102	1,030	499
'85	355	444	973	1,105	34	131	961	475
'86	224	376	827	995	44	141	877	428
'87 . 1	201	367	747	924	41	128	1,017	435
2	225	393	778	920	39	119	886	384
3	247	416	814	934	35	109	836	384
4	310	475	909	1,065	38	130	892	411
5	329	495	937	1,097	40	141	1,010	415
6	328	505	904	1,067	37	125	873	371
7	316	501	875	1,046	36	113	873	346
8	296	485	859	1,039	33	100	747	365
9	286	478	861	1,032	33	99	591	450
10	287	484	859	1,025	31	95	521	430
11	289	480	862	1,008	24	78	597	353
12	310	489	877	1,015	21	88	725	359
평 均	285	464	857	1,014	34	110	797	392

資料 : 韓國銀行 統計月報

나. 都賣價格 (서울地域)

區 分	競 落 價 格		닭 고 기 (원 / kg)	鷄 卵 (원 / 10 개)
	쇠 고 기 (원 / 枝肉 kg)	돼 지 고 기 (원 / 枝肉 kg)		
'78	2,729	1,459	1,010	306
'79	2,818	1,079	882	289
'80	3,577	1,576	1,301	369
'81	4,834	2,559	1,629	443
'82	5,437	2,527	1,461	490
'83	5,927	2,198	1,386	541
'84	5,723	1,894	1,583	533
'85	4,384	2,341	1,563	510
'86	3,875	2,436	1,476	452
'87. 1	3,282	2,237	1,555	449
2	3,330	1,915	1,343	396
3	3,647	1,941	1,328	411
4	4,256	2,309	1,416	439
5	4,294	2,391	1,551	438
6	4,178	2,089	1,425	389
7	4,072	1,823	1,440	367
8	3,951	1,700	1,241	399
9	4,003	1,695	1,043	483
10	3,966	1,613	994	436
11	3,895	1,255	1,097	382
12	3,974	1,592	1,196	392
평 균	3,904	1,880	1,302	415

資料 : 韓國銀行 統計月報

다. 消費者 價格

다. 消費者 價格

區 分	서		울		
	쇠 고 기 (원/500g)	輸入쇠고기 (원/500g)	돼지고기 (원/500g)	닭 고 기 (원/kg)	계 란 (원/10개)
'78	1,743	1,500	1,007	1,093	342
'79	1,917	1,583	920	947	344
'80	2,518	2,083	1,118	1,347	408
'81	3,232	2,417	1,837	1,567	427
'82	3,732	2,560	1,801	1,742	559
'83	4,152	2,573	1,692	1,642	614
'84	4,253	3,060	1,405	1,763	611
'85	3,600	-	1,725	1,823	616
'86	3,204	-	1,942	1,646	556
'87. 1	3,050	-	1,850	1,627	560
2	3,013	-	1,788	1,633	550
3	2,900	-	1,600	1,561	550
4	3,085	-	1,662	1,660	550
5	3,328	-	1,828	1,782	550
6	3,400	-	1,762	1,772	538
7	3,333	-	1,650	1,861	550
8	3,300	-	1,456	1,764	550
9	3,300	-	1,400	1,500	550
10	3,300	-	1,400	1,348	550
11	3,220	-	1,280	1,144	539
12	3,200	-	1,250	1,225	530
평 균	3,202	-	1,577	1,573	547

資料：農林水産部 畜産局

全 國 平 均				
최 고 기 (원 / 500 g)	輸入최고기 (원 / 500 g)	돼 지 고 기 (원 / 500 g)	닭 고 기 (원 / kg)	계 란 (원 / 10 개)
1,730	1,500	981	956	336
1,929	1,583	905	880	321
2,410	2,083	1,014	1,204	387
3,232	2,417	1,763	1,589	495
3,716	2,560	1,710	1,522	491
4,118	2,573	1,604	1,363	558
4,158	3,060	1,401	1,642	471
3,528	-	1,760	1,705	566
3,117	-	1,919	1,613	511
2,980	-	1,808	1,639	523
2,977	-	1,775	1,584	487
2,945	-	1,619	1,542	484
3,114	-	1,680	1,608	502
3,376	-	1,859	1,721	506
3,394	-	1,840	1,678	479
3,331	-	1,701	1,664	465
3,277	-	1,532	1,583	465
3,280	-	1,465	1,370	508
3,272	-	1,473	1,280	516
3,224	-	1,346	1,304	485
3,208	-	1,289	1,405	489
3,194	-	1,616	1,532	492

6. 草地造成 및 飼料作物

7. 草地管理 面積

('87 年末 現在)

區 分	計	一般草地	團地草地	農高草地	畜協草地
大 邱	7 ^{ha}	7	-	-	-
光 州	258	258	-	-	-
京 畿	7,551	7,439	39	33	40
江 原	14,094	13,824	155	62	53
忠 北	4,388	4,181	115	52	40
忠 南	11,096	10,924	66	66	40
全 北	4,716	4,499	90	57	70
全 南	9,257	9,138	50	69	-
慶 北	7,641	7,421	100	60	60
慶 南	5,928	5,684	180	19	45
濟 州	22,637	22,477	100	20	40
計	87,573	85,852	895	438	388

① 草地規模別 面積

('87 年末現在)

區 分	計	副 業			專 業			企 業 50ha以上
		1ha以上 5ha未満	5 ~ 10	小 計	10~20	20~50	小 計	
面 積	ha 87,573 (100 %)	21,209 (24)	16,485 (19)	37,694 (43)	11,898 (14)	12,707 (14)	24,605 (28)	25,274 (29)
農家戸數	戸 14,098 (100 %)	9,940 (71)	2,594 (18)	12,534 (89)	956 (7)	427 (3)	1,383 (10)	181 (1)

② 草地所有區分

('87 年末現在)

區 分	計	私 有 地		公 有 地	國 有 地
		本 人	他 人		
面 積	ha 87,573 (100 %)	61,099 (70)	7,880 (9)	10,489 (12)	8,105 (9)
農 家 戸 數	戸 14,098 (100 %)	11,512 (81)	1,512 (11)	680 (5)	394 (3)

③ 草地造成 現況

單位：ha

區 分	'79까지	'80	'81	'82	'83	'84	'85	'86	'87	計
造成面積	82,955	3,125	3,052	7,053	6,811	10,028	5,111	3,871	3,223	125,235
除外面積	36,549	58	295	6	115	202	184	36	217	37,662
管理面積	45,283	48,350	51,107	58,154	65,973	75,805	80,732	84,567	87,573	87,573

註) ○ '83의 경우：'80 이전 자력조성분임
 ○ '84의 경우：'83 자력조성분임

④ 草地造成費 投資 現況

單位：백만원

區 分	'78까지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計
國庫補助	3,993	436	438	782	-	-	-	-	-	-	960	6,609
地方費	471	-	3	-	-	-	-	-	-	-	-	474
基金補助	-	-	-	-	3,358	2,498	3,792	947	826	1,418	960	13,799
基金融資	1,291	1,086	1,280	1,460	2,994	3,590	4,071	2,655	1,852	992	1,920	23,191
其他融資	1,217	-	-	-	-	-	-	-	-	-	-	1,217
自 擔	3,126	774	524	409	973	1,927	3,558	2,254	1,850	1,542	960	17,897
計	10,098	2,296	2,245	2,651	7,325	8,015	11,421	5,856	4,528	3,952	4,800	63,187

⑤ ha 當 草地造成費

1) 年度別 內譯(耕耘草地基準)

單位:千圓

區分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國庫補助	100.64 (40)	140 (44)	175 (49)	200 (50)	250 (50)	312.5 (50)	407.5 (50)	-	-	-	-	-	-	249.4 (20)
基金補助	-	-	-	-	-	-	-	534 (50)	600 (50)	490.8 (40)	245.4 (20)	242.4 (20)	487.6 (40)	249.4 (20)
基金融資	-	-	-	120 (30)	150 (30)	312.5 (50)	407.5 (50)	534 (50)	600 (50)	490.8 (40)	736.2 (60)	727.2 (60)	487.6 (40)	498.8 (40)
其他融資	65.82 (26)	84 (26)	105 (29)	-	-	-	-	-	-	-	-	-	-	-
自擔	84.14 (34)	96 (30)	80 (22)	80 (20)	100 (20)	-	-	-	-	245.4 (20)	245.4 (20)	242.4 (20)	243.8 (20)	249.4 (20)
計	250.6	320	360	400	500	625	815	1,068	1,200	1,227	1,227	1,212	1,219	1,247

※ ()는 支援比率임.

2) 造成方法別 內譯

單位：千圓

區 分	'81	'82	'83	'84	'85	'86	'87	'88
耕 耘 草 地	815	1,068	1,200	1,227	1,227	1,212	1,219	1,247
不 耕 耘 草 地	715	932	918	946	943	952	952	1,002
林 間 草 地	-	500	515	754	730	774	806	879

⑥ 草地造成 事業費 融資條件

區 分	'71 ~ '72	'73 ~ '76	'77 ~ '78	'79 ~ '81	'82 ~ '85	'86 ~ '88
融 資 條 件						
┌ 据置期間	2年	3	2	3	5	5
└ 償還期間	3年	5	3	2	3	5
年 利	9%	9	9, 10.5	12.5, 16	15, 10	10.8

4. 年度別 草地造成投資 內譯

單位：千圓

區 分	造成面積 (ha)	總投資額	財 源 內 譯					
			國 費	地方費	融 資	振 興 基 金		自 擔
						補 助	融 資	
'67	4,419	167,760	126,837	17,428	-	-	-	23,495
'68	5,100	258,736	168,182	39,384	1,600	-	-	49,570
'69	19,589	816,790	493,820	33,511	142,963	-	-	146,496
'70	12,627	740,711	379,482	80,322	160,031	-	-	120,876
'71	10,572	748,408	311,888	151,399	111,787	-	-	173,334
'72	2,523	326,197	178,684	29,007	79,032	-	-	39,474
'73	3,215	489,828	236,228	44,583	88,380	-	-	120,637
'74	3,190	624,293	146,118	74,934	167,272	-	-	235,969
'75	4,169	1,036,108	321,935	-	236,043	-	-	478,130
'76	3,803	911,395	434,087	-	229,693	-	-	247,615
'77	3,356	1,119,646	521,074	-	-	-	271,700	326,872
'78	5,536	2,858,234	674,678	-	-	-	1,018,783	1,164,773
'79	3,733	2,296,423	435,973	-	-	-	1,086,676	773,774
'80	3,125	2,244,633	437,844	2,501	-	-	1,280,056	524,232
'81	3,052	2,650,578	781,693	-	-	-	1,460,250	408,635
'82	7,053	7,324,693	-	-	-	3,358,318	2,993,495	972,880
'83	6,811	8,014,542	-	-	-	2,498,182	3,589,885	1,926,475
'84	10,028	11,421,013	-	-	-	3,792,278	4,070,978	3,557,757
'85	5,111	5,855,832	-	-	-	946,779	2,655,353	2,253,700
'86	3,871	4,402,048	-	-	-	818,744	1,752,163	1,831,141
'87	3,223	3,952,552	-	-	-	1,418,422	992,315	1,541,815
計	125,236	58,260,420	5,648,523	473,069	1,216,801	12,832,723	21,171,654	16,117,650

다. 年度別 草地造成 單費

年 度	造成別 區 分	投資額	財 源 別 內 譯			
			國庫補助	地方費	融 資	自 擔
'68	집 약 초 지	73,000	55,000 (75)	8,000 (11)	-	10,000 (14)
'69	집 약 초 지	102,000	71,000 (70)	-	31,000 (30)	-
	간 이 초 지	26,500	21,500 (81)	-	-	5,000 (19)
	야 초 지 개 량	17,000	17,000 (100)	-	-	-
'70	집 약 초 지	102,580	65,740 (64)	-	36,840 (36)	-
	간 이 초 지	32,000	14,000 (44)	16,000 (50)	-	2,000 (6)
'71	집 약 초 지	119,160	55,260 (46)	28,900 (25)	35,000 (29)	-
	간 이 초 지	38,000	16,000 (42)	22,000 (58)	-	-
'72	집 약 초 지	130,000	74,000 (57)	13,000 (10)	37,000 (28)	6,000 (5)
'73	집 약 초 지	160,000	80,000 (50)	16,000 (10)	40,000 (25)	24,000 (15)
'74	기 업 초 지(집약)	180,000	-	4,000 (2)	90,000 (50)	86,000 (48)
	일 반 초 지(집약)	180,000	86,000 (48)	36,000 (20)	25,800 (14)	32,200 (18)
'75	기 업 초 지(집약)	250,600	-	-	103,000 (41)	147,600 (59)
	일 반 초 지(집약)	250,600	100,640 (40)	-	65,820 (26)	84,140 (34)
	섬 바 디 재 배 포	174,100	100,640 (58)	-	65,820 (38)	7,640 (4)
'76	일 반(집약)초 지	320,000	160,000 (50)	-	96,000 (30)	64,000 (20)
	목 초 채 종 포 조성	340,000	180,000 (53)	-	101,000 (30)	59,000 (17)
	목 초 채 종 포 갱 신	200,000	-	-	100,000 (50)	100,000 (50)
	섬 바 디 묘 상 설 치	600,000	600,000 (100)	-	-	-
'77	집 약 초 지(채종포)	360,000	175,000 (49)	-	105,000 (29)	80,000 (22)
'78	일 반(집약)초 지	400,000	200,000 (50)	-	120,000 (30)	80,000 (20)
	용 자(집약)초 지 (30 ha이상)	400,000	-	-	320,000 (80)	80,000 (20)
	용 자(집약)초 지 (30 ha미만)	400,000	-	-	400,000	-
'79	일 반(집약)초 지	500,000	250,000 (50)	-	150,000 (30)	100,000 (20)
	용 자(집약)초 지	500,000	-	-	500,000 (100)	-

※ () 內 數字는 財源別 構成比.

集約草地와 耕耘草地, 걸쭉밭草地와 不耕耘草地는 같은 것임.

單位：원/ha

年 度	區 分 造成別	投資額	財 源 別 內 譯			
			國庫補助	振 興 基 金		自 擔
				補 助	融 資	
'80	일 반(집 약)초 지	625,000	312,500 (50)	-	312,500 (50)	-
	용 자(집 약)초 지	625,000	-	-	625,000 (100)	-
'81	일 반(집 약)초 지	815,000	407,500 (50)	-	407,500 (50)	-
	용 자(집 약)초 지	815,000	-	-	815,000 (100)	-
	결 뿌 립 초 지	715,000	407,500 (57)	-	307,500 (43)	-
'82	일 반(집 약)초 지	1,068,000	-	534,000 (50)	534,000 (50)	-
	일 반(결뿌림)초 지	932,000	-	534,000 (57)	398,000 (43)	-
	용 자(집 약)초 지	1,068,000	-	-	1,068,000 (100)	-
	단 지(집 약)초 지	1,068,000	-	1,068,000 (100)	-	-
	단 지(결뿌림)초 지	932,000	-	932,000 (100)	-	-
	임 초 지	500,000	-	500,000 (100)	-	-
'83	일 반(경 윤)초 지	1,200,000	-	600,000 (50)	600,000 (50)	-
	일 반(영세농)초 지	1,200,000	-	1,200,000 (100)	-	-
	일 반(용 자)초 지	1,200,000	-	-	1,200,000 (100)	-
	일 반(불경윤)초 지	918,000	-	600,000 (65)	318,000 (35)	-
	임 초 지	516,000	-	312,000 (60)	204,000 (40)	-
'84	일 반(경 윤)초 지	1,227,000	-	490,800 (40)	490,800 (40)	245,400 (20)
	일 반(불경윤)초 지	946,000	-	378,400 (40)	378,840 (40)	189,200 (20)
	일 반(임 간)초 지	754,000	-	301,600 (40)	301,600 (40)	150,800 (20)
	단 지(경 윤)초 지	1,227,000	-	490,800 (40)	490,800 (40)	245,400 (20)
	단 지(불경윤)초 지	946,000	-	378,400 (40)	378,400 (40)	189,200 (20)

單位：원/ha

年度	區分 造成別	投資額	財源別內譯			
			國庫補助	振興基金		自擔
				補助	融資	
'85	일 반(경 운)초 지	1,227,000	-	245,400 (20)	736,200 (60)	245,400 (20)
	일 반(불경운)초 지	943,000	-	188,600 (20)	565,800 (60)	188,600 (20)
	일 반(임 간)초 지	730,000	-	146,000 (20)	438,000 (60)	146,000 (20)
'86	일 반(경 운)초 지	1,212,000	-	242,400 (20)	727,200 (60)	242,400 (20)
	일 반(불경운)초 지	952,000	-	190,400 (20)	571,200 (60)	190,400 (20)
	일 반(임 간)초 지	774,000	-	154,800 (20)	464,400 (60)	154,800 (20)
'87	일 반(경 운)초 지	1,219,000	-	487,600 (40)	487,600 (40)	243,800 (20)
	일 반(불경운)초 지	952,000	-	380,800 (40)	380,800 (40)	190,400 (20)
	일 반(임 간)초 지	806,000	-	322,400 (40)	322,400 (40)	161,200 (20)
'88	일 반(경 운)초 지	1,247,000	249,400 (20)	249,400 (20)	498,800 (40)	249,400 (20)
	일 반(불경운)초 지	1,002,000	200,400 (20)	200,400 (20)	400,800 (40)	200,400 (20)
	일 반(임 간)초 지	879,000	175,800 (20)	175,800 (20)	351,600 (40)	175,800 (20)

2. 年度別 牧草 및 飼料作物 種子供給 實績

單位：噸

區 分	牧 草 種 子			飼 料 作 物 種 子		
	國 內 產	導 入 種	計	國 內 產	導 入 種	計
'76	99	154	253	-	18	18
'77	47	238	285	-	36	36
'78	31	429	460	-	64	64
'79	37	300	337	-	233	233
'80	43	256	299	-	23	23
'81	34	412	446	-	144	144
'82	32	480	512	401	100	501
'83	68	825	893	591	222	813
'84	49	624	673	5,796 (4,881)	4,690 (3,761)	10,486 (8,642)
'85	16	416	432	2,478 (2,099)	2,572 (1,542)	5,050 (3,641)
'86	15	267	282	609 (609)	5,193 (4,632)	5,802 (5,241)
'87	15	255	270	1,434 (1,055)	5,349 (4,063)	6,782 (5,118)

註：○ ()內는 畜養作 飼料作物 種子임.

○ 農家 自體確保分 未包含

ㄱ. 年度別 畜養作 飼料作物 栽培實績

區 分	面 積			支援金額	ha 當 支援金額	支 援 比 率
	示範栽培	一般栽培	計			
'76	ha -	12,764	12,764	千원 -	원 -	
'77	7,811	4,311	12,122	121,767	15,589	示範栽培 : 100 %補助
'78	10,027	3,302	13,329	115,363	11,505	50 %補助
'79	26,910	3,863	30,773	314,856	11,700	定額補助
'80	-	37,696	37,696	-	-	
'81	36,162	-	36,162	498,079	15,795	50 %補助
'82	399	43,045	43,444	17,716	44,000	100 %補助
'83	20,239	37,713	57,952	892,939	44,000 45,000	100 %補助
'84	23,525	53,674	77,199	1,103,471	40,000	100 %補助
'85	62,638	23,781	86,419	1,690,587	30,000	50 %補助
'86	79,317	20,963	100,280	1,723,937	29,400	40 %補助
'87	86,144	23,345	109,489	2,039,537	27,200	40 %補助
'88(P)	80,000	30,000	110,000	2,176,000	27,200	40 %補助

註 : ○ 支援資金은 種子代임.
 ○ 面積은 播種面積이며, 實際收穫은 播種翌年度에 利用함.
 ○ '88 支援金額 : 國費 952 百萬원, 地方費 952 百萬원, 畜産振興基金 272 百萬원
 ○ 一般栽培는 自力事業分임.

바. 牧草種子播種

① 조성방법별 혼파 조합과 파종량(kg/ha)

조성방목 이용목적 지대별 초종	완전경운(기계작업)			걸뿌림조성(제경범포함)			경운및걸뿌림
	채초전용 일부방목		채초위주 방목	방목이용중심			방목·채초
	남 구릉지 제주도	중부 구릉지	교산지	중부 구릉지	교산지	제주도	저습지
오 차 드 그 라 스	10	15	8	16	16	16	10
틀 페 스 큐	10	10	7	9	8	8	-
티 모 시	-	-	7	-	8	-	-
퍼레니얼라이그라스	-	-	-	7	-	10	6
리드카나리그라스	-	-	-	-	-	-	8
레 드 톱	-	2	-	2	2	3	-
켄터키블루그라스	-	-	-	3	3	-	3
알 팔 파	10	-	-	-	-	-	-
레 드 클 로 버	-	-	5	-	-	-	-
라 디 노 클 로 버	-	3	3	3	3	3	3
계	30	30	30	40	40	40	30

② 지대별 목초파종기

지대별	해발높이(m)			
	0 ~ 250	250 ~ 500	500 ~ 750	750 ~ 1,000
중 부 부	월·일 8.20 ~ 9.10	월·일 8.15 ~ 9.5	월·일 8.10 ~ 8.31	월·일 8.5 ~ 8.25
중 부	9.1 ~ 9.30	8.25 ~ 9.15	8.20 ~ 9.10	8.15 ~ 9.5
남 부	9.10 ~ 9.30	9.5 ~ 9.25	9.1 ~ 9.20	8.25 ~ 9.15
제 주	9.20 ~ 10.15	9.15 ~ 10.10	9.10 ~ 10.10	9.5 ~ 9.30

사. 草地의 利用

① 지역별 최종 예취적기

지역별	최종예취적기
북부	9월하순~10월상순
중부	10월중순
남부	10월하순
제주	11월상순

② 초지의 방목이용 기간

지역	1차방목시기	최종방목시기	이용기간
북부	5월상순	10월상순	150일
중부	4월하순	10월중순	170
남부	4월중순	10월하순	190
제주	4월상순	11월상순	210

아. 草地의 施肥

① 조성할때 비료주는 량

單位: kg/ha

구분	요소	용인 또는 용과린	염화카리	농용석회
시비량	110-170	1,000-1,500	80-170	3,000
(성분량)	N(50-80)	P ₂ O ₅ (200-300)	K ₂ O(200-300)	

② 관리비료의 기비 및 추비 사용량

單位: kg/10a

성분별	기비	추비				합계 (연간시비량)
		1차예취지후	2차예취지후	3차예취지후	4차예취지후	
질소(N)	6	6	6	6	4	28
인산(P ₂ O ₅)	10	-	-	-	10	20
칼리(K ₂ O)	5	5	5	5	4	24
붕소(B ₂ O ₃)	0.4	-	-	-	-	0.4

※ 고토(MgO)는 인산질비료의 부성분으로 총량, 성분량기준임.

자. 싸일리지所要量

① 가축별 연간 싸일리지 소요량(kg/두, 성우)

가 축 별	1 일급여량	여름철(30 일)	겨울철(200 일)	총 필 요 량
젖 소	20 ~ 25	600 ~ 750	4,000 ~ 5,000	4,600 ~ 5,750
한우·고기소	15 ~ 20	450 ~ 600	3,000 ~ 4,000	3,450 ~ 4,600

② 각종 싸일리지의 중량

재료의 종류	1 m ³ 당 중량(kg)	재료의 종류	1 m ³ 당 중량(kg)
옥 수 수	560 ~ 720	감 자	1,100
목 초	640 ~ 800	고 구 마	1,100
청 애 맥 류	640 ~ 800	자 운 영	900
고 구 마 덩 굴	800	야 초	650
청 애 해 바 라 기	960 ~ 1,280	클 로 버	800

③ 싸일르내에 있어서 깊이와 옥수수싸일리지의 중량

일정깊이에 있어서 평균중량		일정깊이까지의 평균중량	
깊 이 (m)	중 량(kg/m ²)	깊 이 (m)	중 량(kg/m ²)
표 면	284	-	-
1.5	637	1.5	506
3.1	754	3.1	610
4.6	809	4.6	670
6.1	839	6.1	710
7.6	860	7.6	738
9.1	871	9.1	759
10.7	878	10.7	777

④ 원통형 싸일로의 용적 (m³)

높이(m)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직경 (m) 1.2	2.26	3.39	4.52	5.65						
1.3	2.65	3.98	5.31	6.64	7.96					
1.4	3.08	4.62	6.15	7.70	9.24					
1.5	3.53	5.30	7.07	8.85	10.60					
1.6	4.02	6.03	8.04	10.05	12.06					
1.7	4.54	6.81	9.07	11.35	13.61					
1.8	5.09	7.63	10.17	12.72	15.26	17.8				
1.9		8.50	11.34	14.17	17.00	19.8				
2.0		9.42	12.56	15.70	18.84	22.0	25.1			
2.1		10.39	13.85	17.31	20.77	24.2	27.7			
2.2		11.83	15.20	19.00	22.79	26.6	30.4	34.2		
2.3			16.61	20.77	24.92	29.1	33.2	37.4		
2.4			18.09	22.61	27.13	31.7	36.2	40.7	45.2	
2.6			21.2	36.50	31.80	37.1	42.5	47.8	53.1	
2.8			24.6	30.80	36.90	43.1	49.2	55.4	61.5	
3.0				35.30	42.30	49.3	56.4	63.5	70.6	84.7
3.2				40.20	48.70	56.3	64.3	72.3	80.4	95.5
3.4				45.40	54.50	63.5	72.6	81.7	90.7	108.9
3.6				50.90	61.00	71.2	81.4	91.5	101.7	122.0
3.8					68.00	79.3	90.7	102.0	113.4	136.0
4.0					75.40	87.9	100.5	113.0	125.6	150.7
4.2					83.10	97.0	110.8	124.7	138.5	166.2
4.4						106.4	121.6	136.8	152.0	182.4
4.6						116.3	132.9	149.5	166.1	199.3

(산출공식)

○ 원통형싸일로의 용적 = $\frac{(\text{싸일로직경})^2}{2} \times 3.14 \times \text{싸일로의 높이}$

○ 트렌치싸일로의 용적 = 폭 × 높이 × 길이 (벽면이 수직일 때)

차. 主要거름의 含有成分

單位: %

비종		성분		질소	인산	칼리	알리	칼도	석회	고토	규산	기타
		질소	인산									
질소질비료	1) 유안	21										
	2) 요소	46										
	3) 석회질소	19						60				
인산질비료	1) 중과석		46					20				
	2) 과석		20									
	3) 용성인비		20		50		30		15		52	
	4) 용과린		20				33		4		9	
칼리질비료	1) 염화칼리				60							
복합비료	1) 18-18-18	18	18	18								
	2) 14-37-12	14	37	12								
	3) 22-22-11	22	22	11								
규산질비료	1) 규산 (1호)						40			10	30	
	(2호)						15			2	25	
	(3호)						30			5	15	
	2) 규회석						40				15~20	
석회	1) 석회석가루						40~50					
	2) 소석회						60					
기타	1) 날짚 (벧짚)	0.63	0.11	0.85				7.31				
	2) 퇴비	0.60	0.30	0.60								
	3) 인분뇨 (생)	0.55	0.12	0.30								
	4) 닭똥 (생)	1.30	1.50	0.50								
	(건)	2.60	3.40	1.20								
	5) 쇠똥	0.30	0.20	0.10								
	6) 돼지똥	0.60	0.50	0.40								
타	7) 재 (나뭇재)		2.00	8~9				20.2		6.5	22.5	
	(짚재)		2.00	4~5				2.0				

카. 山林의 角度와 구배표

경사각 : %				% : 경사각			
경사각	%	경사각	%	%	경사각	%	경사각
1도	1.75	20도	36.40	1	0.35	20	11.19
2	3.49	21	38.39	2	1.09	21	11.52
3	5.24	22	40.40	3	1.44	22	12.25
4	6.99	23	42.45	4	2.18	23	12.58
5	8.75	24	44.52	5	2.52	24	13.30
6	10.51	25	46.63	6	3.27	25	14.03
7	12.28	26	48.77	7	4.01	26	14.35
8	14.05	27	50.95	8	4.35	27	15.07
9	15.84	28	53.17	9	5.09	28	15.39
10	17.63	29	55.43	10	5.43	29	16.11
11	19.44	30	57.74	11	6.17	30	16.42
12	21.26	31	60.09	12	6.51	31	17.14
13	23.09	32	62.49	13	7.25	32	17.45
14	24.93	33	64.94	14	7.59	33	18.16
15	26.79	34	67.45	15	8.32	34	18.47
16	28.67	35	70.02	16	9.06	35	19.18
17	30.57	36	72.65	17	9.36	36	19.48
18	32.49	37	75.36	18	10.36	37	20.19
19	34.43	38	78.13	19	10.46	38	20.49

경 사 각 : %				% : 경 사 각			
경사각	%	경사각	%	%	경사각	%	경사각
39도	80.68	58도	160.03	39	21.19	58	30.07
40	83.91	59	166.43	40	21.49	59	30.33
41	86.93	60	173.21	41	22.18	60	30.58
42	90.04	61	180.40	42	22.47	61	31.23
43	93.25	62	188.07	43	23.17	62	31.48
44	96.57	63	196.26	44	23.45	63	32.13
45	100.00	64	205.03	45	24.14	64	32.78
46	103.55	65	214.45	46	24.43	65	33.02
47	107.24	66	224.60	47	25.11	66	33.26
48	111.06	67	235.59	48	25.39	67	33.50
49	115.04	68	247.51	49	26.07	68	34.13
50	119.18	69	260.51	50	26.34	69	34.37
51	123.49	70	274.75	51	27.02	70	35.00
52	127.99	71	290.42	52	27.29	71	35.23
53	132.70	72	307.77	53	27.56	72	35.46
54	137.54	73	327.09	54	28.23	73	36.08
55	142.81	74	348.74	55	28.49	74	36.31
56	148.26	75	378.21	56	29.15	75	36.53
57	153.99	76	401.08	57	29.41	76	37.15

타. 立木本數度 早見表

單位：헥타당

평균흉고직경 (cm)	정 상 입 목 본 수 (100%)		30% 입 목 본 수	
	연 료 림	용 재 림	연 료 림	용 재 림
4	3,140	2,350	940	700
6	2,720	2,040	820	610
8	2,310	1,740	690	520
10	1,870	1,400	560	420
12	1,540	1,150	460	340
14	1,310	980	330	290
16	1,100	820	300	250
18	970	730	290	220
20	840	630	250	190
22	750	570	220	170
24	680	510	200	150
26	620	470	190	140
28	570	430	170	130
30	520	390	160	120
32	480	360	140	110
34	440	330	130	100
36	400	300	120	90
38	370	280	110	80
40	350	260	100	80
42	320	240	100	70
44	290	220	90	70
46	280	210	80	60
48	260	200	80	60
50	240	180	70	60

파. 山地利用形態別 經濟性 比較

(農村經濟研究院調查)

利用形態別		IRR (%)		'82年價格		備考
		調整價格	'82年價格	目標年	年度收益	
				收益發生年數	年平均 헥타당 純收益	
開墾農業	開墾地平均	14.7	12.2	每 年	(천원) 865	全地區에 대한 平均작부 體系
	小規模食糧 作物生產	12.2	10.5	每 年	633	麥類+고구마+陸稻
	大規模經濟 作物生產	19.2	17.6	每 年	1,834	수박+무우, 담배, 고추, 마늘등
草地畜産	繁 殖 牛	15.4	12.7	每 年	361	5 주기 4 회전
	肥 育 牛	5.8	-	每 年	174	180日 短期肥育
	乳 牛	22.9	24.5	每 年	1,314	
山 林	잣 나 무	12.9	10.7	15年後每年	659	伐期 50年
	落 葉 松	10.1	8.9	30年後	258	
	소 나 무	7.8	6.6	30年後	131	
	삼 나 무	11.2	9.9	50年後	223	
	이태리포플러	22.5	20.6	15年後	491	
	밤 나 무	14.9	13.6	4年後每年	347	

7. 主要國의 家

가. 畜牛飼育

구 분	평균 (75/79)	'80	'81	'82
캐 나 다	13,447	12,125	12,166	12,088
멕 시 코	31,491	34,600	34,200	33,000
미 국	122,011	111,192	114,321	115,604
아르헨티나	60,417	58,938	58,807	57,948
브 라 질	90,600	91,000	93,000	93,000
프 랑 스	23,634	23,550	23,605	23,493
아일랜즈	6,260	6,171	5,826	5,758
스 웨 덴	1,885	1,936	1,939	1,938
소 련	111,446	115,100	115,057	115,900
일 본	3,874	4,248	4,385	4,485
한 국	1,692	1,762	1,604	1,506
호 주	30,840	26,203	25,168	24,553
뉴질랜드	8,955	8,022	8,131	8,035

* 每年度 飼育頭數는 1月1日 기준임. 1) 暫定值 2) 豫測值
 資料 : USDA(FAS), 1987. 9.

나. 돼지飼育

구 분	평균 (75/79)	'80	'81	'82
캐 나 다	6,508	10,091	10,190	10,035
멕 시 코	14,665	12,800	15,400	16,500
미 국	77,343	67,353	64,512	58,688
브 라 질	36,320	36,500	35,000	33,500
프 랑 스	11,576	11,438	11,658	11,573
스 페 인	9,748	10,531	11,263	12,119
소 련	67,444	73,898	73,382	73,300
인 도	8,914	9,700	10,200	8,780
일 본	8,309	9,998	10,065	10,040
한 국	2,458	2,843	1,784	1,832
필 리 핀	6,628	7,934	7,557	7,586
호 주	2,224	2,518	2,430	2,373

* 每年度 飼育頭數는 1月1日 기준임. 1) 暫定值 2) 豫測值
 資料 : USDA(FAS), 1987. 9.

畜飼育現況

單位：千頭

'83	'84	'85	'86 ¹⁾	'87 ²⁾
11,360	10,980	10,591	10,400	10,315
33,917	33,853	32,167	33,603	35,578
113,700	109,749	105,468	102,031	100,000
58,376	58,685	57,485	55,684	54,984
93,300	94,700	95,210	97,030	98,335
23,519	23,102	22,803	22,158	21,242
5,812	5,835	5,779	5,626	5,526
1,878	1,837	1,715	1,665	1,642
119,558	121,055	120,888	122,100	121,500
4,682	4,693	4,742	4,694	4,730
2,215	2,652	2,943	2,807	2,560
22,161	22,784	23,436	23,596	23,674
7,631	7,777	7,921	8,279	8,100

單位：千頭

'83	'84	'85	'86 ¹⁾	'87 ²⁾
10,741	11,032	10,664	10,826	11,276
13,137	12,320	13,115	12,357	11,438
56,694	54,073	52,314	51,160	55,500
30,000	30,000	30,500	31,700	32,700
11,251	10,975	10,956	12,002	13,572
12,124	11,800	15,782	15,782	15,661
78,722	77,914	77,772	79,400	78,000
-	-	-	-	-
10,423	10,718	11,061	11,354	11,600
3,649	2,958	2,852	3,347	4,200
7,613	7,304	7,275	6,950	7,000
2,527	2,512	2,553	2,640	2,748

8. 主要國의 畜

가. 牛 肉

구 분	평균 (75/79)	'80	'81	'82
캐 나 다	1,072	971	1,015	1,029
멕 시 코	840	1,065	1,129	1,200
미 국	11,298	9,999	10,353	10,425
아르헨티나	2,890	2,822	2,955	2,579
브 라 질	2,226	2,150	2,250	2,400
프 랑 스	1,737	1,836	1,839	1,698
독 일	1,418	1,564	1,532	1,471
아 일 랜 드	381	444	315	344
스 페 인	418	422	418	420
스 웨 덴	148	157	158	160
소 련	6,780	6,645	6,600	6,600
자 유 중 국	9	5	5	6
이 스 라 엘	22	16	12	13
한 국	109	133	99	88
호 주	1,930	1,533	1,420	1,680
뉴 질 랜 드	554	496	498	516

* 枝肉基準 1) 暫定値 2) 豫測値
 資料: USDA(FAS), 1987. 9.

나. 豚 肉

구 분	평균 (75/79)	'80	'81	'82
캐 나 다	593	877	869	833
멕 시 코	995	905	1,088	1,200
미 국	6,038	7,537	7,199	6,454
브 라 질	826	980	980	970
독 일	2,518	2,726	2,700	2,673
폴 란 드	1,748	1,787	1,384	1,510
소 련	5,103	5,183	5,204	5,200
자 유 중 국	451	537	537	525
일 본	1,196	1,475	1,396	1,427
한 국	326	294	261	298
필 리 핀	326	412	450	457
호 주	190	232	231	229
뉴 질 랜 드	38	38	39	40

* 枝肉基準 1) 暫定値 2) 豫測値
 資料: USDA(FAS), 1987. 9.

產物 生產 現 況

單位：千噸

'83	'84	'85	'86	'87 ¹⁾	'88 ²⁾
1,036	997	1,035	1,040	990	975
1,229	1,323	1,339	1,200	1,205	1,387
10,748	10,929	10,997	11,292	10,802	10,330
2,455	2,553	2,740	2,850	2,650	2,550
2,400	2,300	2,400	2,000	2,300	2,400
1,764	1,936	1,845	1,862	1,940	1,865
1,494	1,614	1,576	1,696	1,710	1,640
352	401	449	480	446	425
422	385	401	440	425	410
160	154	157	147	139	138
7,011	7,244	7,370	7,700	8,100	8,500
7	6	4	4	4	5
17	18	23	38	38	36
90	122	161	208	196	216
1,412	1,248	1,338	1,478	1,418	1,456
536	433	486	466	524	497

單位：千噸

'83	'84	'85	'86	'87 ¹⁾	'88 ²⁾
852	863	900	908	940	1,000
1,136	942	865	910	909	936
6,894	6,719	6,716	6,379	6,421	7,128
950	567	600	800	1,100	700
2,725	2,734	2,753	2,832	2,845	2,840
1,444	1,288	1,494	1,752	1,664	1,581
5,760	5,927	5,855	5,900	5,850	5,850
539	732	831	868	919	919
1,429	1,424	1,531	1,552	1,575	1,615
295	339	347	322	368	380
452	440	430	478	489	505
247	256	263	270	282	306
-	-	-	-	-	-

9. 主要國의 畜産

가. 牛 肉

구 분	평 균 (75/79)	'80	'81	'82
캐 나 다	46	65	79	83
멕 시 코	30	1	1	0
미 국	52	80	100	115
아르헨티나	563	469	486	522
브 라 질	138	169	279	357
프 랑 스	281	309	351	346
독 일	206	342	372	332
아 일 렌 드	291	382	258	251
스 웨 덴	7	14	13	34
소 련	31	35	53	30
호 주	977	840	703	942
뉴 질 렌 드	352	346	347	342

* 枝肉基準 1) 暫定値 2) 豫測値

資料: USDA, 「World Livestock and Poultry Situation」, 1987. 9.

나. 豚 肉

구 분	평 균 (75/79)	'80	'81	'82
캐 나 다	53	117	129	163
미 국	126	114	139	97
브 라 질	7	0	1	3
덴 마 크	556	683	729	737
프 랑 스	45	52	59	50
독 일	32	63	80	81
아 일 렌 드	37	55	50	49
네 덜 란 드	513	602	657	650
스 웨 덴	31	34	40	57
자 유 중 국	26	24	29	29
호 주	3	0	0	2

* 枝肉基準 1) 暫定値 2) 豫測値

資料: USDA, 「World Livestock and Poultry Situation」, 1987. 9.

物 輸 出 現 況

單位：千噸

'83	'84	'85	'86	'87 ¹⁾	'88 ²⁾
83	105	117	105	91	87
13	0	0	1	0	3
125	152	151	239	275	184
415	250	260	251	300	300
400	480	530	350	250	400
329	400	430	545	505	490
358	448	436	579	540	500
272	242	308	400	386	377
24	23	34	23	10	8
25	27	30	7	7	7
767	616	690	809	780	808
372	287	332	340	407	378

單位：千噸

'83	'84	'85	'86	'87 ¹⁾	'88 ²⁾
158	175	196	215	235	250
99	74	58	39	45	54
0	3	10	5	15	20
774	776	793	818	822	847
53	84	69	80	95	100
105	112	113	130	137	132
54	42	38	36	34	35
705	769	837	860	915	920
53	75	76	52	35	30
47	73	96	123	155	155
5	2	2	3	4	4

10. 主要國의 畜

가. 牛 肉

區 分	平 均 (75 / 79)	'80	'81	'82	'83
캐 나 다	101	80	80	88	91
미 국	916	946	799	888	873
독 일	253	246	217	205	258
이 태 리	334	366	378	453	453
소 련	231	385	452	400	529
자유중국	12	17	17	20	28
이스라엘	40	32	54	55	45
일 본	129	174	174	174	196
한 국	23	2	34	73	67

* 枝肉基準 1) 暫定值 2) 豫測值

資料 : USDA, 「World Livestock and poultry Situation」, 1987.9.

나. 豚 肉

區 分	平 均 (75 / 79)	'80	'81	'82	'83
캐 나 다	63	17	20	14	20
미 국	212	249	245	278	317
프 랑 스	240	289	287	311	335
독 일	341	424	449	464	499
이 태 리	267	344	298	356	365
영 국	512	534	506	565	550
스 페 인	37	9	3	6	4
소 련	70	120	115	115	100
일 본	174	155	262	202	238
뉴 질 랜드	1	1	1	2	2

* 枝肉基準 1) 暫定值 2) 豫測值

資料 : USDA, 「World Livestock and poultry Situaion」, 1987.9.

產物 輸入現況

單位：千噸

'84	'85	'86	'87 ¹⁾	'88 ²⁾
115	115	112	165	160
838	948	978	991	1,009
285	301	300	300	315
458	493	478	495	510
541	320	335	342	347
29	33	39	41	42
43	47	42	47	47
208	216	256	300	330
28	4	0	0	0

單位：千噸

'84	'85	'86	'87 ¹⁾	'88 ²⁾
15	17	14	12	12
433	512	509	533	510
368	373	435	420	400
489	515	511	555	560
350	436	464	466	469
560	500	515	520	500
12	8	62	70	80
120	246	261	260	260
279	272	297	310	340
2	1	1	1	3

11. 主要國의 肉類

구 분		'76	'77	'78	'79	'80	'81
쇠 고기 (枝肉)	한 국	3.0	3.2	4.4	4.3	3.7	3.4
	미 국	60.6	58.4	55.9	49.2	47.8	48.2
	네덜란드	21.6	21.2	18.9	19.0	18.5	18.7
	영 국	24.8	26.1	25.4	25.3	23.9	22.9
	대 만	2.1	1.1	1.2	0.9	1.2	1.2
	일 본	3.9	4.2	4.7	4.9	5.1	5.3
	호 주	74.0	76.5	72.1	52.3	49.8	48.8
돼지 고기 (枝肉)	한 국	3.8	4.8	6.0	7.5	7.8	6.8
	미 국	27.2	28.0	28.1	31.8	33.6	31.9
	네덜란드	32.0	31.4	33.6	36.2	35.0	38.5
	영 국	22.7	24.7	25.6	27.4	26.2	25.7
	대 만	26.4	32.8	31.3	39.5	36.0	35.2
	일 본	11.0	12.0	12.4	13.6	14.4	14.0
	호 주	12.8	13.7	14.2	14.3	15.9	15.7
가 금 육 (精肉)	한 국	1.7	2.0	2.2	2.4	2.4	2.3
	미 국	24.1	24.8	26.1	27.9	27.8	28.6
	네덜란드	6.8	7.4	8.4	8.6	8.9	9.0
	영 국	12.8	13.0	14.0	13.5	13.6	13.5
	이스라엘	37.8	38.8	34.5	38.1	35.0	38.0
	일 본	7.7	8.4	9.6	10.1	10.5	10.5
	호 주	14.7	15.8	17.1	18.8	20.1	20.9

1) 暫定値 2) 推定値

資料: USDA, 「World Livestock and Poultry Situation」, 1987. 9.

1 人當 消費量

單位：kg

'82	'83	'84	'85	'86	'87 ¹⁾	'88 ²⁾
3.9	4.1	3.5	3.9	4.7	4.6	4.8
48.1	49.1	49.0	49.5	50.0	47.4	45.5
18.7	17.5	17.6	17.6	17.5	17.5	18.8
22.6	21.4	21.2	20.7	21.8	21.9	20.8
1.2	1.4	1.8	1.9	2.2	2.3	2.3
5.5	5.6	6.1	6.5	6.8	7.2	7.6
53.7	42.6	40.4	40.9	42.1	40.5	39.6
7.6	9.3	8.1	8.1	7.4	8.3	8.5
28.1	30.2	30.0	30.1	28.5	28.4	30.8
40.4	-	36.8	37.2	42.7	45.0	45.4
26.0	27.2	25.7	25.6	26.0	26.4	26.2
34.7	29.6	34.6	38.0	38.0	38.5	38.1
13.9	13.8	14.2	14.5	15.3	15.7	16.0
15.0	15.9	16.4	16.7	17.0	17.4	18.6
2.5	3.0	3.1	3.1	3.1	-	-
29.2	29.8	31.8	31.8	25.9	27.5	28.9
9.1	-	9.8	10.4	10.8	11.3	12.0
13.7	14.8	15.7	15.7	13.6	13.9	14.1
37.6	-	30.6	31.0	22.6	23.3	22.9
10.9	11.5	12.2	12.2	11.8	12.5	12.9
18.5	19.7	20.9	20.7	21.0	21.3	21.7

여 백

IV. 飼料需給

여 백

1. 年度別 飼料需給 現況

가. 飼料供給 總括

區 分	濃 厚 飼 料					農家自給 飼 料 等	計
	配 合		飼 料				
	國內產原料(A)	輸入原料	小 計 (B)	自給率(A/B)			
'62	-	-	8	-	-	-	
'63	-	-	100	-	-	-	
'64	46	5	51	90.2	-	-	
'65	47	-	47	100.0	-	-	
'66	105	3	108	97.2	-	-	
'67	101	6	107	94.3	-	-	
'68	109	114	223	48.8	-	-	
'69	171	197	368	46.5	-	-	
'70	190	318	508	37.4	405	913	
'71	285	417	702	40.5	413	1,115	
'72	319	457	776	41.1	423	1,199	
'73	461	449	910	50.7	464	1,374	
'74	492	435	927	53.1	540	1,467	
'75	489	412	901	54.3	550	1,451	
'76	661	721	1,382	47.8	503	1,885	
'77	862	1,037	1,899	45.4	499	2,398	
'78	1,098	1,595	2,693	40.8	530	3,223	
'79	1,311	2,569	3,880	33.8	559	4,439	
'80	1,410	2,052	3,462	40.7	532	3,994	
'81	1,420	2,071	3,491	40.7	483	3,974	
'82	1,518	2,902	4,420	34.3	503	4,923	
'83	1,752	4,100	5,852	29.9	621	6,473	
'84	1,851	4,134	5,985	30.9	757	6,742	
'85	2,272	4,179	6,451	35.2	855	7,306	
'86	2,339	5,336	7,675	30.5	814	8,489	
'87	2,516	6,502	9,018	27.9	790	9,808	
'88 (p)	2,411	7,092	9,503	25.4	668	10,171	
'89							

資料：農林水産部 畜産局

單位：千%

草 地	粗 飼 料			計	合 計
	沓 裏 作 飼 料 作 物	青刈飼料作物	山 野 草 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50	3,463
-	-	-	-	2,611	3,726
-	-	-	-	2,681	3,880
-	-	-	-	2,958	4,332
-	-	-	-	3,458	4,925
-	-	-	-	3,570	5,021
-	-	-	-	3,272	5,157
-	-	-	-	3,260	5,658
-	-	-	-	3,515	6,738
-	-	-	-	3,684	8,123
-	-	-	-	3,565	7,559
-	-	-	-	3,325	7,299
-	-	-	-	3,455	8,378
-	-	-	-	4,200	10,673
475	394	504	3,775	5,148	11,890
519	587	868	3,954	5,928	13,234
599	642	1,333	3,256	5,830	14,319
533	791	1,615	3,126	6,065	15,873
694	749	1,690	2,944	6,077	16,248

나. 月別 配合飼料生産

區 分	1	2	3	4	5	6
'62	-	-	-	-	-	-
'63	-	-	-	-	-	-
'64	-	-	-	-	-	-
'65	-	-	-	-	-	-
'66	-	-	-	-	-	-
'67	7,016	7,845	8,492	7,769	8,477	8,563
'68	8,776	11,190	13,100	14,486	18,400	16,770
'69	25,469	23,634	29,053	34,584	35,077	32,567
'70	31,810	29,183	35,054	40,193	44,072	49,889
'71	39,586	46,791	53,023	61,813	60,322	67,377
'72	58,778	55,566	64,511	75,208	75,957	72,522
'73	68,330	58,325	76,794	77,050	75,257	72,959
'74	66,659	67,154	70,370	73,804	78,152	77,616
'75	67,620	72,748	71,770	63,013	70,468	76,164
'76	89,644	78,559	95,998	104,586	111,123	114,358
'77	133,843	138,098	156,616	159,483	167,979	170,920
'78	182,473	176,861	214,136	215,320	226,592	227,383
'79	293,274	304,182	331,273	334,149	361,262	319,725
'80	352,651	232,563	261,155	269,365	288,027	273,735
'81	262,717	223,582	258,011	265,282	292,693	274,456
'82	292,980	292,322	328,964	349,842	356,620	366,713
'83	410,782	397,611	474,902	478,194	498,765	517,567
'84	490,095	427,444	502,497	494,825	533,521	491,806
'85	539,545	509,541	534,630	538,413	533,547	495,881
'86	589,947	550,221	604,603	620,519	628,812	596,722
'87	653,693	636,881	699,400	726,090	734,404	754,710
'88						
'89						

* '85年 7月부터 其他 飼料中 養魚用 飼料는 除外함.

單位：%

7	8	9	10	11	12	計	月平均
-	-	-	-	-	-	7,814	651
-	-	-	-	-	-	100,235	8,353
-	-	-	-	-	-	50,785	4,232
-	-	-	-	-	-	47,152	3,929
-	-	-	-	-	-	107,700	8,917
11,554	11,056	8,396	9,429	8,822	9,747	107,256	8,939
16,176	20,675	23,254	25,893	25,960	28,634	223,314	18,610
32,147	29,751	29,318	33,529	30,719	21,670	367,518	30,627
50,051	43,529	44,854	44,709	44,510	49,704	507,564	42,297
58,718	60,402	61,482	59,255	62,491	70,850	702,110	58,509
64,803	57,308	64,398	62,607	58,631	66,037	776,326	64,694
81,276	79,832	84,986	80,616	76,601	77,594	909,620	75,802
78,078	76,492	81,693	92,618	80,185	84,349	927,170	77,264
66,718	73,927	77,839	83,139	84,408	93,181	900,995	75,083
125,736	124,078	130,184	135,595	132,058	139,607	1,381,526	115,127
149,126	163,386	157,116	162,520	158,499	181,086	1,898,690	158,224
215,082	225,622	236,269	239,216	251,861	282,290	2,693,105	224,425
319,187	320,580	352,516	328,928	311,064	304,095	3,880,235	323,353
285,073	299,680	287,498	331,679	258,611	322,381	3,462,418	288,534
298,364	307,887	326,267	339,562	315,025	346,610	3,490,456	290,871
388,046	362,149	425,097	374,734	400,565	481,769	4,419,801	368,317
455,334	470,041	518,672	574,959	504,477	550,282	5,851,586	487,632
469,010	474,455	488,047	521,193	513,841	578,225	5,984,959	498,747
492,854	509,653	527,074	571,057	565,845	633,032	6,451,072	537,589
627,792	614,254	681,193	709,121	675,180	776,877	7,675,241	639,603
761,152	766,368	821,503	825,159	775,165	863,704	9,018,229	751,519

다. 配合飼料種別生産

① 全 體

區 分	養 鷄 用							
	育 雛 用		產 卵 用		肉 鷄 用		小 計	
	生 產 量	構 成 比	生 產 量	構 成 比	生 產 量	構 成 比	生 產 量	構 成 比
'62	-	-	-	-	-	-	-	-
'63	-	-	-	-	-	-	-	-
'64	-	-	-	-	-	-	-	-
'65	-	-	-	-	-	-	-	-
'66	-	-	-	-	-	-	-	-
'67	15,779	14.7	69,688	65.0	1,873	1.8	87,340	81.5
'68	56,411	25.2	126,782	56.8	5,295	2.4	188,488	84.4
'69	49,815	13.6	235,763	64.5	15,134	4.2	300,712	82.3
'70	73,630	14.5	316,437	62.3	69,631	13.7	459,698	90.5
'71	86,963	12.4	427,285	60.9	98,905	14.0	613,153	87.3
'72	96,422	12.4	434,202	55.9	115,704	14.9	646,328	83.2
'73	111,751	12.3	448,843	49.3	124,736	13.7	685,330	75.3
'74	92,194	9.9	782,243	62.8	79,996	8.6	554,433	59.8
'75	104,202	11.6	371,370	41.2	92,994	10.3	568,566	63.1
'76	173,314	12.5	546,354	39.5	148,150	10.7	867,818	62.8
'77	217,089	11.4	697,274	36.7	240,561	12.7	1,154,924	60.8
'78	304,753	11.3	882,076	32.7	451,725	16.7	1,638,554	60.5
'79	330,230	8.5	1,141,449	29.4	571,890	14.7	2,043,569	52.6
'80	295,790	8.6	1,126,469	32.5	449,593	13.0	1,871,852	54.1
'81	248,385	7.1	1,055,516	30.3	538,171	15.4	1,842,072	52.8
'82	248,065	5.6	1,084,684	24.6	647,092	14.6	1,979,841	44.8
'83	265,789	4.6	1,182,352	20.2	797,480	13.6	2,245,621	38.4
'84	242,806	4.1	1,194,328	20.0	627,732	10.5	2,064,866	34.5
'85	276,227	4.3	1,373,135	21.3	660,364	10.2	2,309,726	35.8
'86	300,327	3.9	1,618,005	21.1	720,844	9.4	2,639,176	34.4
'87	317,382	3.5	1,746,501	19.4	869,141	9.6	2,933,024	32.5
'88								
'89								

* '85年 7月부터 其他 飼料中 養魚用 飼料는 除外함.

單位：%

養 豚 用		酪 農 用		肥 育 用		其 他		計	
生 產 量	構 成 比	生 產 量	構 成 比	生 產 量	構 成 比	生 產 量	構 成 比	生 產 量	構 成 比
-	-	-	-	-	-	-	-	7,814	-
-	-	-	-	-	-	-	-	100,235	-
-	-	-	-	-	-	-	-	50,785	-
-	-	-	-	-	-	-	-	47,152	-
-	-	-	-	-	-	-	-	107,700	-
8,246	7.7	4,579	4.3	-	-	7,091	6.5	107,256	100
14,671	6.5	7,659	3.5	-	-	12,496	5.6	223,314	100
26,512	7.3	13,489	3.7	-	-	24,805	6.7	365,518	100
9,917	2.0	19,333	3.8	-	-	18,616	3.7	507,564	100
19,919	2.8	33,186	4.7	7,184	1.0	28,668	4.1	702,110	100
48,317	6.2	52,980	6.8	6,194	0.8	22,417	2.9	776,236	100
121,822	13.4	82,544	9.1	5,412	0.6	14,512	1.6	909,620	100
188,828	20.4	122,409	13.2	45,347	4.9	16,153	1.7	927,170	100
135,505	15.0	150,671	16.7	33,495	3.7	12,758	1.4	900,995	100
207,074	15.0	174,004	12.5	43,549	3.2	90,081	6.5	1,381,526	100
350,236	18.5	265,707	14.0	95,528	5.0	32,295	1.7	1,898,690	100
498,110	18.5	320,728	11.5	233,088	8.5	2,625	1.0	2,693,105	100
1,129,895	29.1	438,512	11.3	266,206	6.9	2,053	0.1	3,880,235	100
769,357	22.2	513,541	14.8	306,333	8.8	1,335	0.0	3,462,418	100
761,204	21.8	470,831	13.5	414,699	11.9	1,650	0.0	3,490,456	100
1,150,528	26.0	592,346	13.4	692,739	15.7	4,347	0.1	4,419,801	100
2,013,007	34.4	709,936	12.1	870,595	14.9	12,427	0.2	5,851,586	100
1,987,411	33.2	852,589	14.3	1,072,394	17.9	7,699	0.1	5,984,959	100
1,923,692	29.8	994,282	15.4	1,209,042	18.7	14,330	0.2	6,451,072	100
2,178,297	28.4	1,208,477	15.7	1,624,251	21.2	25,040	0.3	7,675,241	100
2,953,297	32.7	1,404,234	15.6	1,673,467	18.6	54,207	0.6	9,018,229	100

② 飼 協

區分	養 鶏 用							
	育 雛 用		産 卵 用		肉 鶏 用		小 計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73							605,106	75.0
'74							502,908	60.0
'75	96,959	12.0	339,815	42.1	87,091	10.8	523,865	64.9
'76	161,158	13.3	500,220	41.3	137,407	11.3	798,785	65.9
'77	206,637	12.4	649,853	39.3	227,588	13.7	1,084,078	65.1
'78	290,225	12.4	827,770	35.4	432,000	18.5	1,549,995	66.3
'79	317,160	9.2	1,080,475	31.5	552,459	16.1	1,950,094	56.8
'80	284,325	9.4	1,081,534	36.0	438,785	14.6	1,804,644	60.0
'81	238,412	8.1	1,015,546	34.5	507,273	17.3	1,761,231	59.9
'82	236,259	6.6	1,046,706	29.3	584,682	16.4	1,867,647	52.3
'83	254,423	5.4	1,145,804	24.4	735,782	15.7	2,136,009	45.5
'84	234,754	5.0	1,100,699	24.5	599,654	12.6	1,995,107	42.1
'85	267,127	5.2	1,342,120	25.9	642,315	12.4	2,251,562	93.5
'86	291,167	4.8	1,587,536	26.3	702,534	11.6	2,581,237	42.7
'87	306,557	4.3	1,713,209	24.0	842,887	11.8	2,862,653	40.1
'88								
'89								

③ 畜 協

區分	養 鶏 用							
	育 雛 用		産 卵 用		肉 鶏 用		小 計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73							80,224	77.6
'74							51,525	58.3
'75	7,243	7.8	31,555	33.7	5,903	6.3	44,701	47.8
'76	12,156	7.2	46,134	27.2	10,743	6.3	69,033	40.7
'77	10,452	4.5	47,421	20.4	12,973	5.6	70,846	30.5
'78	14,528	4.1	54,306	15.3	19,725	5.5	88,559	24.9
'79	13,070	2.9	60,974	13.6	19,431	4.4	93,475	20.9
'80	11,465	2.5	44,935	9.9	10,808	2.4	67,208	14.7
'81	9,973	1.8	39,970	7.3	30,898	5.6	80,841	14.7
'82	11,806	1.4	39,978	4.5	62,410	7.3	112,194	13.2
'83	11,366	1.0	36,548	3.2	61,698	5.3	109,612	9.5
'84	8,052	0.6	33,629	2.7	28,078	2.3	69,759	5.6
'85	9,100	0.7	31,015	2.5	18,049	1.4	58,164	4.6
'86	9,160	0.6	30,469	1.9	18,310	1.1	57,939	3.6
'87	10,825	0.6	33,292	1.8	26,254	1.4	70,371	3.8
'88								
'89								

單位：%

養 豚 用		酪 農 用		肥 育 用		其 他		計	
生產量	構成比	生產量	構成比	生產量	構成比	生產量	構成比	生產量	構成比
113,908	14.1	67,352	8.4	5,412	0.7	14,512	1.8	806,290	100
177,647	21.2	98,069	11.7	44,030	5.2	16,153	1.9	838,807	100
123,528	15.3	120,024	14.9	27,307	3.4	12,758	1.5	807,482	100
191,830	15.8	131,628	10.9	17,080	1.4	72,407	6.9	1,211,730	100
325,218	19.5	208,571	12.5	24,697	1.5	23,861	1.4	1,666,425	100
451,324	19.3	235,190	10.1	101,041	4.3	467	-	2,338,017	100
1,042,738	30.4	317,870	9.2	122,955	3.6	182	-	3,433,839	100
704,334	23.4	392,304	13.1	104,482	3.5	-	-	3,005,868	100
658,116	22.4	346,493	11.8	174,165	5.9	256	-	2,940,261	100
966,286	27.1	428,952	12.0	303,186	8.5	2,760	0.1	3,568,831	100
1,656,856	35.3	496,018	10.6	393,767	8.4	11,057	0.2	4,693,707	100
1,661,725	35.0	587,165	12.4	492,500	10.4	7,299	0.1	4,743,796	100
1,665,721	32.1	673,009	13.0	577,828	11.1	13,472	0.3	5,181,592	100
1,892,445	31.3	765,448	12.7	784,630	12.9	23,315	0.4	6,047,075	100
2,506,991	35.1	888,923	12.4	842,504	11.8	44,405	0.6	7,145,476	100

單位：%

養 豚 用		酪 農 用		肥 育 用		其 他		計	
生產量	構成比	生產量	構成比	生產量	構成比	生產量	構成比	生產量	構成比
7,914	7.7	15,191	14.7					103,330	100
11,181	12.7	24,340	27.5	1,317	1.5			88,363	100
11,977	12.8	30,647	32.8	6,188	6.6			93,513	100
15,244	9.0	41,376	24.3	26,469	15.6	17,674	10.4	169,796	100
25,018	10.8	57,136	24.6	70,831	30.5	8,434	3.6	232,265	100
46,786	13.2	85,538	24.1	132,047	37.2	2,158	0.6	355,088	100
87,157	19.5	120,642	27.1	143,251	37.2	1,871	0.4	446,396	100
65,023	14.2	121,237	26.6	201,851	44.2	1,231	0.3	456,550	100
103,088	18.7	124,338	22.6	240,534	43.7	1,394	0.3	550,195	100
184,242	21.7	163,394	19.2	389,553	45.8	1,587	0.1	850,970	100
356,151	30.7	213,918	18.5	476,828	41.2	1,370	0.1	1,157,879	100
325,686	26.2	265,424	21.4	579,894	46.7	400	0.1	1,241,163	100
257,971	20.3	321,273	25.3	631,214	49.7	858	0.1	1,269,480	100
285,852	17.6	443,029	27.2	839,621	51.5	1,725	0.1	1,628,166	100
446,306	23.8	515,311	27.5	830,963	44.4	9,802	0.5	1,872,753	100

라. 年度別·月別·種別 配合飼料 生産

< 1973 >

單位：%

區分	育雛	産卵	肉鷄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8,197	40,024	8,608	56,829	4,700	5,712	168	921	68,330
2	8,071	32,788	6,646	47,505	4,744	4,793	224	1,059	58,325
3	10,714	41,324	10,692	62,730	6,591	6,696	280	497	76,794
4	11,277	39,665	11,389	62,331	7,370	6,280	186	883	77,050
5	9,781	37,380	12,528	59,689	8,578	6,192	356	442	75,257
6	9,600	37,084	12,272	58,956	8,376	5,110	274	243	72,959
7	9,851	39,735	12,961	62,547	11,226	6,435	441	627	81,276
8	9,174	36,331	13,518	59,023	11,666	6,345	444	2,354	79,832
9	10,575	36,498	12,803	59,876	14,762	8,421	87	1,836	84,986
10	8,780	35,797	10,021	54,598	15,404	8,701	719	1,194	80,616
11	8,108	35,828	7,178	51,114	14,023	7,844	1,272	2,348	76,601
12	7,623	36,389	6,120	50,132	14,378	10,015	961	2,108	77,594
計	111,751	448,843	124,736	685,330	121,822	82,544	5,412	14,512	909,620
平均	9,313	37,403	10,395	57,111	10,152	6,879	451	1,209	75,802

< 1974 >

單位：%

區分	育雛	産卵	肉鷄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7,167	30,612	3,702	41,481	12,463	9,022	1,177	516	64,659
2	6,075	30,113	3,144	39,332	14,539	8,701	1,786	796	65,154
3	6,743	30,827	3,630	41,200	14,953	8,774	2,005	3,438	70,370
4	6,963	31,017	6,005	44,045	15,023	9,179	2,933	2,624	73,804
5	8,114	30,114	7,987	46,215	17,253	9,461	3,254	1,969	78,152
6	8,181	31,736	8,974	48,891	16,708	8,045	3,265	707	77,616
7	8,163	31,664	9,730	49,557	16,214	8,306	3,265	736	78,078
8	7,730	29,753	8,585	46,068	15,886	9,046	4,557	935	76,492
9	7,248	31,354	8,007	46,609	17,246	11,222	5,846	770	81,693
10	8,796	35,801	7,882	52,479	18,328	13,543	7,149	1,119	92,618
11	7,555	31,388	5,561	44,504	15,951	13,011	5,340	1,369	80,185
12	9,459	37,864	6,729	54,052	14,254	14,099	4,770	1,174	88,349
計	92,194	382,243	79,996	554,433	188,828	122,409	45,347	16,153	927,170
平均	7,683	31,854	6,666	46,203	15,736	10,201	3,779	1,345	77,264

< 1975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6.934	26.268	4.51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	7.261	31.424	5.811	44.496	12.137	11.987	3.243	705	72.748
3	7.019	28.495	6.452	41.966	11.330	14.449	2.933	1.092	71.770
4	6.459	25.456	6.298	38.123	10.954	11.193	1.958	695	63.013
5	7.570	28.074	7.704	43.348	11.972	11.940	2.137	1.071	70.468
6	9.548	31.054	10.209	50.811	10.582	12.120	1.969	682	76.164
7	8.288	20.225	9.388	43.901	9.790	10.415	1.871	741	66.718
8	8.809	29.450	9.048	47.307	10.417	11.679	2.669	1.855	73.927
9	8.938	32.403	9.578	50.919	10.141	11.991	3.687	1.101	77.839
10	9.665	34.542	8.416	52.623	11.090	14.026	3.877	1.523	83.139
11	11.184	36.513	7.836	56.533	11.483	13.511	2.835	1.046	84.408
12	12.527	41.466	7.739	61.732	13.392	14.119	2.720	1.218	93.181
計	104.202	371.370	92.994	568.566	135.505	150.671	33.495	12.758	900.995
平均	8.684	30.947	7.750	47.381	11.292	12.556	2.791	1.063	75.083

< 1976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11.119	38.664	6.286	56.069	13.235	15.793	3.378	1.169	89.644
2	9.002	35.844	6.297	51.143	10.742	11.770	3.064	1.840	78.559
3	9.772	42.730	8.808	61.310	13.414	13.360	3.429	4.485	95.998
4	11.791	43.509	12.548	67.848	13.490	12.864	2.465	7.919	104.586
5	15.004	44.141	14.881	74.026	13.398	12.272	997	10.430	111.123
6	16.688	42.815	16.702	76.205	14.421	11.713	1.103	10.916	114.358
7	17.957	45.381	18.745	82.083	16.534	12.536	2.845	11.738	125.736
8	17.038	44.286	16.443	77.767	17.692	14.279	4.577	9.763	124.078
9	16.609	47.464	14.644	78.717	22.108	15.708	4.882	8.769	130.184
10	16.755	52.374	11.685	80.814	24.494	16.816	4.619	8.852	135.595
11	15.633	52.455	10.276	78.364	23.862	17.240	5.051	7.541	132.058
12	15.946	56.691	10.835	83.472	23.684	18.653	7.139	6.659	139.607
計	173.314	546.354	148.150	867.818	207.074	173.004	43.549	90.081	1,381.526
平均	14.443	45.529	12.346	72.318	17.256	14.417	3.629	7.507	115.127

< 1977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14,772	53,324	10,042	78,138	24,547	18,727	6,446	5,985	133,843
2	13,231	53,701	12,574	79,506	27,189	19,065	6,183	6,155	138,098
3	16,097	59,735	17,670	93,502	30,316	21,731	5,267	5,800	156,616
4	17,208	57,717	22,035	96,960	28,933	24,134	5,300	4,156	159,483
5	19,862	60,301	25,651	105,814	30,199	24,076	5,474	2,416	167,979
6	21,100	61,112	24,962	107,174	31,659	23,870	6,390	1,836	170,929
7	18,484	47,310	25,983	91,777	28,716	21,437	5,779	1,418	149,127
8	19,937	53,743	23,463	97,143	33,273	23,445	8,061	1,464	163,386
9	18,173	58,408	18,583	95,164	29,274	21,714	9,604	1,359	157,115
10	18,423	61,685	18,472	98,580	29,157	22,190	11,362	1,231	162,520
11	18,274	62,256	18,057	98,587	26,828	21,446	11,428	210	158,499
12	21,528	67,982	23,069	112,579	30,145	23,871	14,234	265	181,095
計	217,089	697,274	240,561	1,154,924	350,236	265,707	95,528	32,295	1,898,690
平均	18,091	58,106	20,047	96,244	29,186	22,142	7,961	2,691	158,224

< 1978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0,619	64,306	24,600	109,525	32,419	24,286	16,024	219	182,473
2	20,095	59,927	29,663	109,685	27,561	22,911	16,371	333	176,861
3	24,105	72,402	42,115	138,622	29,649	25,819	19,663	383	214,136
4	25,728	72,628	43,042	141,398	30,384	25,546	17,786	206	215,320
5	30,387	76,696	43,914	150,997	30,831	25,070	19,485	209	226,592
6	30,402	74,193	44,316	148,911	35,210	25,655	17,387	220	227,383
7	26,314	68,128	40,904	135,346	36,900	24,571	18,033	232	215,082
8	25,342	71,381	37,276	133,999	45,161	25,877	20,408	177	225,622
9	24,256	76,639	35,266	136,161	50,173	27,911	21,879	145	236,269
10	23,301	78,579	31,193	133,073	54,783	29,756	21,497	107	239,216
11	25,171	81,005	34,175	140,351	59,335	30,210	21,816	149	251,861
12	29,033	86,192	45,261	160,486	65,704	33,116	22,739	245	282,290
計	304,753	882,076	451,725	1,638,554	498,110	320,728	233,088	2,625	2,693,105
平均	25,396	73,506	37,644	136,546	41,509	26,727	19,424	219	224,425

< 1979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鷄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9,330	85,511	50,588	165,429	70,816	35,233	21,673	123	293,273
2	31,394	86,457	54,704	172,555	74,212	38,135	19,030	220	304,182
3	35,178	97,095	59,698	191,971	78,231	40,443	20,444	184	331,273
4	32,860	98,239	53,488	184,587	88,132	39,276	21,956	198	334,149
5	34,603	103,287	53,215	191,105	108,669	37,680	23,594	214	361,262
6	27,074	93,250	46,327	166,651	104,113	31,808	16,973	180	319,725
7	23,973	89,360	47,435	160,768	108,172	30,708	19,391	148	319,187
8	20,818	91,535	44,905	157,258	109,797	32,757	20,646	122	320,580
9	20,955	101,383	49,221	171,559	117,485	36,340	26,966	166	352,516
10	20,767	97,524	41,717	160,008	108,322	36,747	23,714	137	328,928
11	24,560	94,336	38,539	157,255	89,885	37,978	25,755	191	311,064
12	28,718	103,472	32,233	164,423	72,031	41,407	26,064	170	304,095
計	330,230	1,141,449	571,890	2,043,569	1,129,895	438,512	266,206	2,053	3,880,235
平均	27,519	95,121	47,658	170,298	94,158	36,543	22,184	171	323,353

< 1980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鷄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6,672	112,437	24,120	163,299	107,112	47,831	34,386	93	352,651
2	20,775	80,432	11,406	112,613	64,422	36,292	19,170	66	232,563
3	19,896	92,281	22,799	134,976	64,414	42,691	18,962	112	261,155
4	19,991	90,456	39,037	149,484	55,986	43,682	20,090	123	269,365
5	23,848	97,547	50,288	171,683	53,000	43,067	20,204	83	288,027
6	24,569	88,534	53,726	166,829	49,486	39,261	18,077	82	273,735
7	26,998	87,611	57,366	171,975	51,563	40,092	21,344	99	285,073
8	25,441	92,515	48,012	165,968	59,942	44,229	29,499	42	299,680
9	24,904	91,628	39,237	155,769	58,379	43,314	29,926	110	287,498
10	28,094	108,744	36,843	173,681	72,971	50,085	34,877	65	331,679
11	25,750	77,244	28,308	131,292	60,040	40,226	26,901	152	258,611
12	28,852	107,050	38,451	174,353	72,042	42,781	32,897	308	322,381
計	295,790	1,126,469	449,593	1,871,852	769,357	513,541	306,333	1,335	3,462,418
平均	24,649	93,872	37,466	155,989	64,113	42,752	25,528	111	288,535

< 1981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鷄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0,978	84,177	32,537	137,692	54,620	40,195	30,181	29	262,717
2	15,490	79,338	30,144	124,972	42,590	31,628	24,300	92	223,582
3	16,286	96,105	36,783	149,174	48,279	36,716	23,809	33	258,011
4	17,311	92,785	39,770	149,866	50,901	37,316	27,113	86	265,282
5	20,306	94,744	47,891	162,941	60,201	39,935	29,577	139	292,693
6	19,296	83,813	50,784	153,893	56,802	36,985	26,662	114	274,456
7	19,658	80,870	51,640	152,168	58,938	35,433	31,739	86	278,364
8	19,265	84,360	51,749	155,374	70,860	40,674	40,906	74	307,887
9	21,169	88,511	53,849	163,529	75,803	42,080	44,681	174	326,267
10	23,955	90,628	52,817	167,400	80,485	43,199	48,076	402	339,562
11	26,638	82,176	46,106	154,920	76,136	41,671	42,061	237	315,025
12	28,033	98,009	44,101	170,143	85,589	45,099	45,595	184	346,610
計	248,385	1,055,516	538,171	1,842,072	761,204	470,832	414,699	1,650	3,490,456
平均	20,699	87,960	44,827	153,506	63,434	39,236	34,558	137	290,871

< 1982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鷄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19,809	88,909	27,955	136,673	71,839	42,718	41,601	149	292,980
2	16,803	87,032	29,817	133,652	69,995	44,866	43,628	181	292,322
3	17,231	96,428	41,544	155,203	75,458	48,492	49,554	257	328,964
4	18,259	96,024	54,201	168,484	78,747	48,430	53,868	313	349,842
5	20,989	89,719	61,945	172,653	85,340	45,624	52,746	257	356,620
6	22,832	85,247	73,415	181,494	91,382	44,192	49,345	300	366,713
7	21,215	85,598	75,723	182,536	100,010	46,903	58,189	408	388,046
8	16,977	81,687	62,670	161,334	96,410	47,425	56,557	423	362,149
9	19,387	99,029	65,629	184,045	117,399	53,100	70,103	450	425,097
10	19,231	85,896	48,313	153,440	106,228	50,996	63,581	489	374,734
11	25,439	87,523	48,816	161,778	115,934	54,031	68,358	464	400,565
12	29,893	101,592	57,064	188,549	141,786	65,569	85,209	656	481,769
計	248,065	1,084,684	647,092	1,979,841	1,150,528	592,346	692,739	4,347	4,419,801
平均	20,672	90,390	53,924	164,986	95,877	49,362	57,728	362	368,317

< 1983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2,409	88,434	48,209	159,052	120,136	55,488	75,440	666	410,782
2	17,647	90,336	52,173	160,156	116,490	53,028	67,323	614	397,611
3	20,057	103,940	68,803	192,800	138,796	60,275	82,075	956	474,902
4	20,560	103,226	71,925	195,711	145,108	58,018	77,859	1,498	478,194
5	24,055	102,764	73,091	199,910	166,437	57,764	73,534	1,120	498,765
6	25,927	99,426	80,444	205,797	185,970	56,620	67,727	1,453	517,567
7	22,087	87,885	78,153	188,125	153,799	52,462	59,665	1,283	455,334
8	20,012	94,201	71,520	185,733	166,210	55,433	61,572	1,093	470,041
9	19,336	102,006	72,812	194,154	194,480	59,216	69,603	1,219	518,672
10	22,805	107,260	65,822	195,887	229,799	69,155	78,982	1,136	574,959
11	24,084	92,701	57,827	174,612	192,330	62,145	74,663	727	504,477
12	26,810	110,173	56,701	193,684	203,452	70,332	82,152	662	550,282
計	265,789	1,182,352	797,480	2,245,621	2,013,007	709,936	870,595	12,427	5,851,586
平均	22,149	98,529	66,457	187,135	167,751	59,161	72,550	1,036	487,633

< 1984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1,251	104,819	39,260	165,330	176,188	66,468	81,669	440	490,095
2	16,049	94,472	29,361	139,882	147,594	64,166	75,345	457	427,444
3	17,149	109,922	42,961	170,032	167,390	72,255	92,327	493	502,497
4	15,989	102,579	56,970	175,538	163,753	69,263	85,798	473	494,825
5	20,563	105,466	71,880	197,909	173,413	70,483	91,055	661	533,521
6	21,551	93,389	73,655	188,595	160,099	63,545	79,029	538	491,806
7	20,052	91,330	65,182	176,564	151,880	63,946	75,876	744	469,010
8	17,982	93,387	48,966	160,334	159,064	68,714	85,431	912	474,455
9	18,132	96,816	48,569	163,517	160,233	72,221	91,270	806	488,047
10	21,101	100,291	48,916	170,308	171,515	77,972	100,634	764	521,193
11	24,721	93,904	47,720	166,345	168,493	77,691	100,601	711	513,841
12	28,267	107,953	54,292	190,512	187,789	85,865	113,359	700	578,225
計	242,806	1,194,328	627,732	2,064,866	1,987,411	852,589	1,072,394	7,699	5,984,959
平均	20,234	99,527	52,311	172,072	165,618	71,049	89,366	642	498,747

<1985>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2,081	103,954	46,037	172,072	172,447	81,525	112,799	702	539,545
2	18,883	106,294	47,124	172,301	157,368	77,198	102,170	604	509,541
3	19,269	113,829	53,431	186,529	155,558	83,104	108,614	825	534,630
4	20,547	117,948	56,812	195,307	151,115	82,715	108,258	1,018	538,413
5	22,325	117,948	60,789	200,749	153,769	78,858	98,691	1,480	533,547
6	22,898	108,348	65,145	196,391	144,308	73,094	80,803	1,285	495,881
7	23,422	105,198	69,058	197,678	144,912	73,725	75,702	837	492,854
8	20,636	107,346	57,671	185,653	151,711	81,001	90,370	918	509,653
9	20,773	115,431	55,371	191,575	153,661	83,029	97,677	1,132	527,074
10	24,863	121,206	49,499	195,568	171,672	92,404	109,925	1,488	571,057
11	29,564	118,290	46,387	194,241	176,925	89,093	103,880	1,706	565,845
12	30,966	137,656	53,040	221,662	190,346	98,536	114,985	2,335	633,032
計	276,227	1,373,135	660,364	2,309,725	1,923,692	994,282	1,209,042	14,330	6,451,072
平均	23,019	114,428	55,030	192,477	160,308	82,857	100,754	1,194	537,590

<1986>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3,268	127,636	46,429	197,333	171,473	96,389	122,846	1,906	589,947
2	20,391	125,044	47,796	193,231	151,442	91,674	112,033	1,841	550,221
3	21,975	135,401	54,209	211,585	159,690	98,942	133,157	1,229	604,603
4	21,606	142,129	56,924	220,659	157,286	100,917	139,797	1,860	620,519
5	23,784	141,140	60,306	225,230	164,421	98,419	138,302	2,440	628,812
6	23,949	128,386	67,970	220,305	160,017	90,580	123,711	2,109	596,722
7	24,883	132,093	76,535	233,511	168,720	93,385	130,457	1,719	627,792
8	21,006	129,488	65,728	216,222	172,333	94,850	128,712	2,137	614,254
9	23,923	136,500	69,721	230,144	195,867	106,034	146,969	2,179	681,193
10	29,299	134,945	59,811	224,055	217,234	111,067	154,511	2,254	709,121
11	32,291	131,860	51,133	215,284	213,999	105,776	137,541	2,580	675,180
12	33,952	153,383	64,282	251,617	245,815	120,444	156,215	2,786	776,877
計	300,327	1,618,005	720,844	2,639,176	2,178,297	1,208,477	1,624,251	25,040	7,675,241
平均	25,027	134,834	60,070	219,931	181,525	100,706	135,354	2,087	639,603

< 1987 >

單位：%

區分	育雛	產卵	肉雞	小計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23,569	140,418	47,043	211,030	203,240	106,945	129,646	2,832	653,693
2	21,616	134,885	53,117	209,618	193,503	109,258	121,993	2,509	636,881
3	22,893	148,080	59,852	230,825	207,954	116,542	141,334	2,745	699,400
4	24,258	149,994	65,831	240,083	218,274	116,401	147,778	3,554	726,090
5	27,013	147,515	71,148	245,676	229,589	116,601	144,381	4,157	734,404
6	28,348	137,758	88,703	254,809	245,692	109,151	140,913	4,145	754,710
7	27,251	137,387	100,540	265,178	246,831	108,972	135,246	4,925	761,152
8	25,760	139,420	90,536	255,716	256,490	113,726	135,237	5,199	766,368
9	25,438	146,200	87,336	258,974	283,018	123,395	150,502	5,614	821,503
10	28,611	153,207	75,258	257,076	297,020	125,455	140,290	5,318	825,159
11	30,294	142,724	63,243	236,261	275,430	122,928	134,103	6,443	775,165
12	32,331	168,913	66,534	267,778	296,256	140,860	152,044	6,766	863,704
計	317,382	1,746,501	869,141	2,933,024	2,953,297	1,404,234	1,673,467	54,207	9,018,229
平均	26,449	145,542	72,428	244,419	246,108	117,020	139,456	4,517	751,519

마. 市道別·種別 配合飼料 生産

< 1977 >

區 分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어 린 병 아 리	8,787	4,720	6,777	348	1,512
중 병 아 리	17,406	8,969	10,333	730	3,064
큰 병 아 리	38,805	16,670	20,314	1,554	5,283
산 란 초 기	11,512	20,254	5,279	325	764
산 란 중 기	2,320	4,714	1,048	-	-
산 란 말 기	1,237	1,464	657	-	-
총 계	206,973	90,253	118,785	4,241	31,648
육 계 전 기	24,568	15,788	26,419	3,271	4,302
육 계 후 기	43,818	18,847	32,436	3,261	9,691
양 계 용 계	355,426	181,679	222,048	13,730	56,264
젖 먹 이 돼 지	7,249	11,766	18,301	1,781	1,385
육 성 돈	6,548	18,193	25,317	621	1,064
비 육 돈 전 기	18,305	23,898	23,352	997	1,420
비 육 돈 후 기	6,267	12,625	7,688	112	2,744
임 신 돈	2,388	5,150	15,261	1,391	-
포 유 돈	1,555	3,100	4,420	446	692
종 유 돈	2,463	8,668	1,869	136	104
양 돈 용 계	44,775	83,400	96,208	5,484	7,409
어 린 송 아 지	249	3,177	-	-	-
중 송 아 지	612	779	549	-	181
큰 송 아 지	4	-	1,333	-	-
임 신 우	-	-	-	-	-
착 유 1	1,277	9,515	1,121	412	-
착 유 2	72,611	27,667	86,195	5,999	3,308
착 유 3	-	-	-	-	-
종 모 우	1,660	-	54	-	-
낙 농 용 계	76,413	41,138	89,252	6,411	3,489
고 깃 소 전 기	-	-	-	388	-
고 깃 소 후 기	5,726	28,226	38,756	1,262	1,569
비 육 용 계	5,726	28,226	38,756	1,650	1,569
기 타 용	6,241	5,610	10,686	104	196
합 계	488,581	340,053	456,950	27,379	68,927
비 율 (%)	25.7	17.9	24.1	1.4	3.6

單位：%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3,545	1,952	1,171	3,731	362	-	32,905(1.7)
7,309	2,736	2,221	8,982	1,100	-	62,850(3.3)
11,257	8,869	3,313	13,621	1,648	-	121,334(6.4)
5,904	3,146	4,361	11,187	3,284	-	66,016(3.5)
1,558	2,604	232	93	24	-	12,593(10.7)
191	1,474	20	-	-	-	5,043(0.3)
54,468	9,808	9,694	80,727	7,025	-	613,622(32.3)
9,229	7,492	1,518	6,163	911	-	99,661(5.2)
13,918	5,022	718	10,658	2,531	-	140,900(7.4)
107,379	43,103	23,248	135,162	16,885	-	1,154,924(60.8)
4,015	1,908	1,554	860	853	985	50,657(2.7)
8,387	2,814	2,839	3,134	271	1,601	70,789(3.7)
9,451	5,366	2,556	9,143	403	2,000	96,891(5.1)
1,687	4,429	6,784	2,890	980	2,000	48,206(2.5)
2,768	199	1,396	1,282	2,019	-	31,854(1.7)
2,217	-	420	966	9	-	13,825(0.7)
-	8,659	11,333	1,021	1,160	2,601	38,014(2.0)
25,525	23,375	26,882	19,296	5,695	9,187	350,236(18.4)
-	169	1	-	-	-	3,596(0.1)
420	31	-	129	438	-	3,139(0.1)
4	-	460	-	-	-	1,801(0.1)
11	-	3,150	-	619	-	3,780(0.1)
382	32	1,622	785	17	-	15,163(0.7)
12,648	11,089	8,374	7,858	785	-	236,534(12.4)
-	-	-	-	-	-	-
-	-	-	-	-	-	1,714(0.1)
13,445	11,321	13,607	8,772	1,859	-	265,707(14.0)
-	70	379	-	-	-	837(0.1)
6,765	3,880	5,598	1,232	1,677	-	94,691(5.0)
6,765	3,950	5,977	1,232	1,677	-	95,528(5.1)
3,831	1,307	747	3,083	400	-	32,205(1.7)
159,945	83,056	70,461	167,545	26,516	9,187	1,898,690(100.0)
8.4	4.4	3.7	8.8	1.5	0.5	100

< 1978 >

區 分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어 린 병 아 리	11,200	6,587	8,973	561	1,583
중 병 아 리	21,486	13,740	14,268	1,088	3,771
큰 병 아 리	47,029	24,223	29,985	3,138	7,120
산 란 초 기	12,071	10,371	2,202	704	128
산 란 중 기	-	1,873	498	-	-
산 란 말 기	151	7	188	-	-
종 계	258,794	134,188	164,928	7,842	46,694
육 계 전 기	45,987	37,509	55,764	15,342	7,367
육 계 후 기	74,987	40,315	46,535	2,481	13,743
양 계 용 계	471,705	268,813	323,341	31,156	80,406
젓 먹 이 배 지	5,357	21,740	33,284	410	439
육 성 돈	15,054	47,556	63,044	3,034	1,210
비 육 돈 전 기	16,585	21,798	21,731	2,714	349
비 육 돈 후 기	5,748	10,126	10,652	-	3,650
임 신 돈	5,451	6,194	4,939	1,749	-
포 유 돈	2,991	10,120	18,693	219	245
종 계	4,207	4,201	11,858	328	270
양 돈 용 계	55,393	121,735	164,201	8,508	6,163
어 린 송 아 지	1,086	4,963	768	12	83
중 송 아 지	2,883	814	3,843	96	188
큰 송 아 지	30	2,369	2,207	-	-
임 신 우	-	1,058	-	-	-
착 유 1	1,592	3,560	1,841	-	-
착 유 2	90,183	38,555	86,952	5,045	3,497
착 유 3	1,796	2,108	14,060	1,053	-
종 모 우	-	612	193	-	-
낙 농 용 계	97,570	54,039	109,864	6,206	3,768
고 깃 소 전 기	8,111	478	3,678	3,235	-
고 깃 소 후 기	7,318	62,706	71,547	4,669	5,485
비 육 용 계	15,429	63,184	75,225	7,904	5,485
기 타 용	-	936	1,689	-	-
합 계	640,097	508,707	674,320	53,774	95,822
비 율 (%)	23.9	18.9	25.0	2.0	3.6

單位：%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計
4,970	3,100	1,877	6,073	852	152	45,928(1.7)
8,863	6,635	4,353	11,607	2,386	366	88,563(3.3)
15,508	12,125	7,367	20,433	2,399	935	170,262(6.3)
2,896	3,754	3,024	4,216	-	-	39,366(1.5)
3,743	534	77	6	-	-	6,731(0.2)
54	1,793	4	-	-	-	2,197(0.1)
60,481	13,182	20,877	108,703	15,098	2,995	833,782(30.9)
16,320	8,461	3,591	10,550	2,661	225	203,777(7.6)
28,382	9,206	2,882	22,219	6,645	553	247,958(9.2)
141,217	58,790	44,052	183,807	30,041	5,226	1,638,554(60.8)
8,781	1,680	2,952	2,625	1,108	470	78,846(2.9)
15,009	3,787	4,835	6,593	1,144	2,838	164,104(6.2)
7,350	1,887	2,217	10,013	1,188	479	86,311(3.2)
991	2,003	1,212	2,554	312	5,497	42,745(1.6)
685	174	1,506	1,318	1,959	745	24,720(0.9)
2,867	-	488	2,578	12	134	38,347(1.4)
11,578	12,341	13,417	4,445	130	208	63,037(2.3)
47,261	21,872	26,627	30,126	8,583	10,371	498,110(18.5)
-	310	1	-	-	18	7,241(0.3)
196	322	530	322	-	45	9,239(0.3)
1,646	-	981	-	-	-	7,233(0.3)
10	-	4	-	-	99	1,171(0.1)
106	-	417	-	296	4	7,816(0.3)
14,235	7,811	9,790	8,304	1,531	123	266,026(9.8)
930	416	-	359	-	-	20,722(0.7)
-	-	475	-	-	-	1,280(0.1)
17,123	8,859	12,198	8,985	1,827	289	320,728(11.9)
5,275	199	317	2,430	695	202	24,620(0.9)
17,063	20,800	14,284	4,528	68	-	208,088(7.8)
22,338	20,999	14,601	6,958	763	202	233,088(8.7)
-	-	-	-	-	-	2,625(0.1)
227,939	110,520	97,478	229,876	38,484	16,088	2,693,105(100)
8.5	4.1	3.6	8.5	1.4	0.6	100

< 1979 >

區 分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어 린 병 아 리	10,555	7,023	10,251	555	1,538
중 병 아 리	21,453	15,503	19,157	1,083	3,628
큰 병 아 리	42,609	28,598	47,057	2,509	7,525
산 란 초 기	203,390	113,596	194,662	7,752	34,739
산 란 중 기	6	55	1	-	-
산 란 말 기	26	-	5	-	-
중 계	80,037	81,063	78,267	2,274	20,125
육 계 전 기	35,024	38,801	74,771	20,820	6,677
육 계 후 기	82,448	59,579	99,319	1,840	17,142
양 계 용 계	475,548	344,218	523,490	36,833	91,374
젓 먹 이 돼 지	12,227	30,758	57,194	1,954	1,300
어 린 돼 지	-	-	-	-	-
육 성 돈	46,016	88,808	175,254	12,525	4,759
비 육 돈 전 기	13,042	21,815	39,406	578	172
비 육 돈 후 기	12,683	22,430	36,319	184	3,651
임 신 돈	7,640	7,298	19,637	542	183
포 유 돈	14,770	36,195	89,706	4,438	2,308
종 유 돈	15,098	6,561	29,988	2,044	2,956
양 돈 용 계	121,476	213,865	447,504	22,255	15,329
젓 먹 이 송 아 지	500	6,385	840	-	-
중 송 아 지	7,939	1,558	7,225	2,537	617
큰 송 아 지	912	3,873	5,464	-	-
임 신 우	-	17	-	-	-
착 유 1	45	50	6	-	-
착 유 2	73,680	22,307	61,861	781	2,405
착 유 3	45,061	29,020	78,511	3,294	1,769
중 모 우	-	619	291	-	-
낙 농 용 계	128,137	63,829	154,198	6,612	4,791
고 깃 소 전 기	7,905	898	9,720	423	1,358
고 깃 소 후 기	11,765	3,767	27,286	1,451	4,127
큰 소 비 육	-	56,002	66,811	-	-
비 육 용 계	19,670	60,667	103,817	1,874	5,485
기 타 용 계	-	543	1,510	-	-
합 계	744,831	683,122	1,230,519	67,574	116,979
비 율 (%)	19.2	17.6	31.7	1.7	3.0

單位：%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計
4,301	3,185	1,420	5,072	969	248	45,117 (1.2)
8,581	4,755	3,928	10,554	2,913	379	91,934 (2.4)
18,165	11,296	7,497	23,943	2,873	1,107	103,179 (5.0)
48,192	11,951	24,837	71,576	15,445	4,157	730,297 (18.8)
508	3	44	-	-	-	617 (-)
40	2,316	-	-	-	-	2,387 (0.1)
41,753	13,068	7,775	76,626	6,233	927	408,148 (10.5)
22,703	7,290	3,529	8,700	4,081	389	222,785 (5.7)
40,502	8,377	4,409	23,600	11,262	627	349,105 (9.0)
184,745	62,241	53,439	220,071	43,776	7,834	2,043,569 (52.7)
15,691	3,021	5,465	6,082	983	798	135,473 (3.5)
-	-	-	-	-	-	-
48,517	4,935	10,635	25,864	2,660	3,659	423,622 (10.9)
11,982	13,140	4,910	17,128	1,017	1,175	124,365 (3.2)
1,719	4,061	5,975	1,763	2,132	4,798	95,714 (2.5)
2,208	366	3,002	1,436	840	565	43,717 (1.1)
17,744	274	1,091	11,836	1,978	330	180,670 (4.7)
25,149	12,942	15,239	13,874	474	2,008	126,334 (3.3)
123,010	38,739	46,317	77,983	10,084	13,333	1,129,895 (29.1)
-	354	-	-	-	45	8,124 (0.2)
57	93	467	302	-	116	20,911 (0.5)
1	-	295	-	-	-	10,545 (0.3)
-	-	74	-	-	8	99 (-)
-	-	791	-	-	-	892 (0.1)
6,779	3,900	13,761	5,356	87	384	191,301 (4.9)
14,841	9,403	2,403	10,895	2,277	-	197,474 (5.1)
911	200	7,145	-	-	-	9,166 (0.2)
22,589	13,950	24,936	16,553	2,364	553	438,512 (11.3)
12,231	2,360	4,274	9,326	154	582	49,231 (1.3)
14,356	14,948	12,505	3,957	-	-	94,162 (1.3)
-	-	-	-	-	-	122,813 (3.1)
26,587	17,308	16,779	13,283	154	582	266,206 (6.8)
-	-	-	-	-	-	2,053 (0.1)
356,831	132,238	141,471	327,890	56,378	22,302	3,880,235 (100)
9.2	3.4	3.6	8.5	1.5	0.6	100

< 1980 >

區 分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어 린 병 아 리	6,676	5,764	15,790	756	1,189
중 병 아 리	11,664	12,842	30,160	1,692	2,184
큰 병 아 리	23,653	24,543	62,048	4,442	5,338
산 란 초 기	163,361	91,386	366,481	18,231	30,704
산 란 중 기	-	214	3,577	-	-
산 란 말 기	-	41	-	-	-
총 계	5,528	81,512	61,103	6,582	6,408
육 계 전 기	18,620	24,862	69,233	20,342	3,028
육 계 후 기	44,708	90,827	108,022	11,880	7,244
양 계 용 계	274,210	287,283	716,414	63,825	56,095
젓 먹 이 돼 지	8,754	20,776	63,633	4,414	1,055
육 성 돈	28,567	54,764	122,867	11,966	2,881
비 육 돈 전 기	6,925	7,520	31,247	574	-
비 육 돈 후 기	10,931	11,404	41,768	1,405	1,606
임 신 돈	4,747	9,115	17,200	855	281
포 유 돈	4,940	5,467	27,017	2,745	559
총 양 돈 용 계	10,872	11,710	40,019	4,912	2,801
양 돈 용 계	75,736	120,756	343,751	26,871	9,193
어 린 송 아 지	599	6,989	2,293	254	-
중 송 아 지	6,526	1,245	8,980	2,053	55
큰 송 아 지	2,075	3,169	10,507	6,511	976
임 신 우	-	81	190	-	-
착 유 1	-	286	123	-	-
착 유 2	64,603	19,842	92,495	10,442	2,077
착 유 3	33,074	26,474	75,058	6,493	2,322
총 모 우	2,797	1,759	4,023	-	1,180
낙 농 용 계	109,674	59,846	193,669	25,752	6,610
고 깃 소 전 기	4,692	572	4,693	1,822	460
고 깃 소 후 기	11,353	8,477	51,375	5,449	3,923
육 성 비 육	1,965	3,023	93,052	-	-
큰 소 비 육	10,546	64,188	3,392	-	-
비 육 용 계	28,556	76,260	152,512	7,271	4,383
기 타 용 계	-	314	803	-	-
합 계	488,176	544,459	1,407,149	123,720	76,271
비 율 (%)	14.1	15.7	40.6	3.6	2.2

單位：%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計
3,935	1,556	1,265	4,085	572	141	41,729(1.2)
7,890	2,498	2,803	10,716	1,306	319	84,074(2.4)
17,208	5,727	5,012	19,328	1,610	1,078	169,987(4.9)
63,821	7,791	19,090	38,013	8,084	5,061	812,023(23.5)
135	45	22	-	-	-	3,993(0.1)
2	1,785	1	-	-	-	1,829(0.1)
28,925	5,284	10,786	94,297	8,175	24	308,624(8.9)
14,825	3,783	3,688	5,663	3,141	311	167,486(4.8)
34,020	4,892	3,654	13,735	7,430	503	282,107(8.2)
170,751	33,361	46,321	185,837	30,318	7,437	1,871,852(54.1)
17,468	2,794	5,052	5,547	711	652	130,856(3.8)
28,461	5,035	9,063	18,946	1,873	1,916	286,339(8.3)
8,267	1,555	2,417	4,708	8	2,117	65,339(1.9)
2,404	2,204	1,795	1,664	735	3,498	79,414(2.3)
2,484	238	1,866	844	1,119	-	38,749(1.1)
4,709	291	850	1,842	373	450	49,243(1.4)
19,467	9,230	6,042	11,955	923	1,487	119,418(3.4)
83,260	21,347	27,085	45,506	5,742	10,120	769,357(22.2)
322	2	132	3	-	21	10,615(0.3)
369	89	360	466	-	14	20,257(0.6)
7,487	102	316	2,774	166	-	34,083(1.0)
1	-	354	-	-	-	627(-)
292	-	154	-	299	-	1,154(-)
9,498	3,484	14,145	5,172	284	379	222,421(6.4)
15,344	5,566	4,602	5,524	1,371	-	175,828(5.1)
4,114	13,054	17,997	3,101	6	525	48,556(1.4)
37,427	22,297	38,060	17,040	2,126	1,039	513,541(14.8)
2,664	268	423	1,919	37	338	17,888(0.5)
15,999	3,992	4,936	3,684	80	8	109,276(3.2)
-	-	-	2,918	-	-	100,958(2.9)
-	-	-	85	-	-	78,211(2.2)
18,663	4,260	5,359	8,806	117	346	306,333(8.8)
167	-	-	2	-	49	1,335(0.1)
310,268	81,265	116,825	256,991	38,303	18,991	3,462,418(100)
9.0	2.3	3.4	7.4	1.1	0.6	100

< 1981 >

區 分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京 畿	江 原
어 린 병 아 리	4,952	4,223	1,000	8,159	5,770	897
중 병 아 리	9,501	9,374	3,072	17,368	12,360	1,949
큰 병 아 리	17,617	18,152	5,617	32,106	21,376	3,968
산 란 초 기	112,536	67,634	15,015	237,642	130,433	20,652
산 란 중 기	-	218	4,679	9,478	63	-
산 란 말 기	-	299	-	-	-	-
총 계	27,548	77,392	23,495	22,130	42,553	10,423
육 계 전 기	18,487	24,366	3,513	36,549	51,796	18,397
육 계 후 기	39,261	47,357	9,238	81,451	52,222	20,458
양 계 용 계	229,902	249,015	65,639	444,903	316,573	76,744
젓 먹 이 패 지	9,974	22,810	3,074	42,612	31,506	4,431
육 성 돈	21,892	50,543	11,301	74,589	54,733	12,750
비 육 돈 전 기	2,020	7,016	675	18,620	9,750	-
비 육 돈 후 기	5,483	11,020	1,814	17,448	24,981	1,125
임 신 돈	4,098	9,805	1,090	13,716	5,029	276
포 유 돈	4,698	3,557	1,388	19,968	8,107	1,699
총 돈	7,353	14,372	5,936	11,065	28,877	6,145
양 돈 용 계	55,608	119,123	25,278	198,018	162,426	26,426
젓 먹 이 송 아 지	665	5,556	47	1,999	2,145	742
중 송 아 지	4,340	1,457	376	4,184	5,834	1,352
큰 송 아 지	1,130	996	535	3,170	3,727	5,032
임 신 우	-	39	-	-	-	-
착 유 1	429	-	-	501	83	-
착 유 2	49,153	16,117	1,569	34,616	57,634	19,362
착 유 3	32,387	18,283	2,127	46,106	26,165	11,324
총 모 우	1,438	2,200	-	1,285	3,395	-
낙 농 용 계	89,242	44,607	4,654	91,861	98,983	37,812
고 깃 소 전 기	2,623	432	390	1,079	2,018	1,333
고 깃 소 후 기	18,486	19,926	5,640	41,779	38,663	18,153
육 성 비 육	1,639	3,865	1,095	3,447	3,406	-
큰 소 비 육	8,758	57,061	12,193	54,477	31,836	-
비 육 우 용 계	31,506	81,284	19,318	100,782	75,923	19,486
기 타 용	-	471	-	353	-	179
합 계	456,258	494,500	114,889	835,917	653,908	160,646
비 율 (%)	11.6	14.2	3.3	24.0	18.7	4.6

單位：%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計
806	4,447	1,226	992	1,970	321	74	34,847 (1.0)
1,959	9,818	1,911	1,956	4,914	820	144	75,146 (2.2)
3,592	16,765	4,679	4,031	8,717	1,171	601	138,392 (4.0)
24,623	73,930	8,972	8,893	9,464	4,826	2,934	717,554 (20.6)
-	6,641	4	-	-	-	-	21,103 (0.6)
-	-	906	54	-	-	-	1,259 (-)
571	28,966	2,681	12,404	60,527	6,880	30	315,600 (9.0)
1,756	21,719	8,911	4,807	4,883	3,547	94	198,825 (5.7)
4,413	51,535	3,414	6,213	16,064	7,481	239	339,346 (9.7)
37,720	213,821	32,704	39,350	106,539	25,046	4,116	1,842,072 (52.8)
1,217	18,497	12,032	4,871	2,727	673	761	155,185 (4.5)
1,690	25,588	20,152	5,804	5,429	1,208	934	286,763 (8.2)
-	3,090	328	5,047	1,142	41	2,060	49,789 (1.4)
491	2,846	3,877	917	917	95	332	73,220 (2.1)
71	1,961	128	2,248	46	288	2,791	38,766 (1.1)
302	3,581	258	1,093	324	268	523	45,212 (1.3)
1,901	15,907	9,708	4,319	4,806	727	1,153	112,269 (3.2)
5,672	71,470	46,483	24,359	14,569	3,547	8,222	761,204 (21.8)
-	958	8,171	57	-	-	20	15,360 (0.4)
51	591	365	382	393	9	46	19,380 (0.6)
90	2,852	349	395	-	67	-	18,292 (0.5)
-	4	-	133	-	-	-	176 (-)
-	146	-	14	-	61	-	934 (-)
2,094	7,792	1,405	15,537	3,486	184	538	209,487 (6.0)
1,129	11,725	9,720	3,219	3,933	1,322	-	167,440 (4.8)
737	2,788	9,001	16,471	1,820	72	555	39,762 (1.2)
4,101	26,856	24,001	36,208	9,632	1,715	1,159	470,831 (13.5)
331	1,160	36	375	302	51	201	10,331 (0.3)
5,721	21,008	5,092	8,757	3,872	1,462	-	188,559 (5.4)
-	343	2,161	-	-	-	-	15,956 (0.5)
-	2,883	32,645	-	-	-	-	199,853 (5.7)
6,052	25,394	39,934	9,132	4,174	1,513	201	414,699 (11.9)
-	48	570	-	-	-	30	1,650 (-)
53,545	337,589	143,692	109,049	134,914	31,821	13,728	3,490,456 (100)
1.5	9.7	4.1	3.1	3.9	0.9	6.4	100

< 1982 >

區 分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京 畿	江 原
어 린 병 아 리	5,479	4,357	1,105	7,939	6,869	328
중 병 아 리	10,624	10,475	2,631	17,578	15,355	1,059
큰 병 아 리	15,937	17,724	4,799	27,758	19,294	1,739
산 란 초 기	107,189	77,336	16,925	236,666	139,436	6,834
산 란 중 기	-	1,230	2,299	21,248	866	-
산 란 말 기	1,070	74	-	281	-	-
종 육 계 전 기	34,457	76,407	19,689	21,886	32,120	2,743
육 계 후 기	19,100	31,173	3,494	49,054	68,401	6,333
양 계 용 계	38,010	54,808	9,858	96,555	71,117	14,940
양 계 용 계	231,866	273,584	60,800	478,965	353,458	33,976
젖 먹 이 돼 지	12,379	32,303	7,982	60,584	48,818	3,722
육 성 돈	27,450	75,922	21,463	97,949	88,619	11,797
비 육 돈 전 기	1,587	6,608	-	21,777	11,211	-
비 육 돈 후 기	5,487	12,891	2,570	20,309	26,668	885
임 신 돈	2,215	15,721	1,694	19,878	9,348	72
포 유 돈	6,346	6,094	2,268	30,288	15,483	809
종 육 돈 용 계	11,324	29,112	19,916	21,676	47,342	11,092
양 돈 용 계	66,788	178,651	55,893	272,461	247,489	28,377
젖 먹 이 송 아 지	1,700	6,424	6	3,994	3,555	1,580
중 송 아 지	4,286	2,425	829	8,084	8,907	1,836
큰 송 아 지	1,526	1,687	524	5,015	5,660	3,398
임 신 우 1	-	-	-	61	66	-
착 유 1	-	3	-	-	-	-
착 유 2	48,041	19,439	2,285	45,839	69,395	20,847
착 유 3	47,017	23,312	4,564	62,348	39,389	15,426
종 육 모 우	-	2,024	-	1,253	6,123	-
낙 농 용 계	102,570	55,314	8,208	126,594	133,095	43,087
고 깃 소 전 기	2,948	385	359	2,561	3,551	1,411
고 깃 소 후 기	32,751	26,779	15,838	62,173	50,211	20,918
육 성 비 육	2,295	8,033	4,370	6,587	9,709	-
큰 소 비 육	9,643	81,905	26,202	66,898	53,269	-
비 육 우 용 계	47,637	117,102	46,769	138,219	116,740	22,329
기 타 용	540	338	-	947	5	1,139
합 계	449,401	624,989	171,670	1,017,186	850,787	128,908
비 율 (%)	10.2	14.1	3.9	23.0	19.3	2.9

單位：%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合 計
757	4,714	1,655	730	2,274	827	83	37,117(0.8)
1,756	11,628	1,721	2,218	5,572	1,473	183	82,273(1.9)
3,022	17,320	6,421	4,188	8,254	1,789	430	128,675(2.9)
24,202	88,791	13,413	11,273	14,452	8,788	2,433	747,738(16.9)
-	7,960	5	-	-	-	-	33,608(0.8)
-	-	97	-	9	-	-	1,531(-)
1,191	26,310	3,740	11,174	61,851	10,239	-	301,807(6.8)
1,757	26,673	18,307	7,820	6,608	6,402	120	245,252(5.6)
4,461	56,396	9,890	11,384	19,971	14,242	218	401,840(9.1)
37,146	239,792	55,249	48,787	118,991	43,760	3,467	1,979,841(44.8)
1,804	31,540	25,353	6,315	5,161	2,476	1,014	239,391(5.4)
2,440	34,504	40,595	8,270	10,924	3,197	2,423	425,553(9.6)
16	1,658	33	5,564	1,537	187	1,379	51,557(1.2)
363	2,191	4,834	2,702	38	419	2,445	81,802(1.9)
160	844	132	2,910	40	787	-	53,801(1.2)
433	5,524	245	1,500	1,430	507	730	71,657(1.6)
3,720	32,593	28,226	8,068	10,560	1,823	1,315	226,767(5.1)
8,936	108,854	99,418	35,329	29,690	9,336	9,306	1,150,528(26.0)
-	3,318	8,812	140	-	39	104	29,672(0.7)
192	1,723	933	696	601	107	240	30,859(0.7)
121	2,867	1,190	349	50	159	-	22,546(0.5)
-	-	-	162	-	-	-	239(-)
-	-	-	24	-	13	-	40(-)
1,428	7,765	934	14,829	3,121	395	100	234,418(5.3)
1,415	15,123	15,686	4,830	3,034	1,695	436	234,275(5.3)
2,551	2,325	7,667	16,276	1,016	54	958	40,247(0.9)
5,707	33,121	35,222	37,306	7,822	2,462	1,838	592,346(13.4)
361	2,439	214	1,201	441	101	1,135	7,107(0.4)
12,861	47,135	9,040	27,618	7,795	2,186	774	316,079(7.2)
-	944	8,999	-	-	-	-	40,937(0.9)
-	6,755	73,499	-	-	445	-	318,616(7.2)
13,222	57,273	91,752	28,819	8,236	2,732	1,909	692,739(15.7)
-	156	1,222	-	-	-	-	4,347(0.1)
65,011	439,196	282,863	150,241	164,739	58,290	16,520	4,419,801(100)
1.5	9.9	6.4	3.4	3.7	1.3	0.4	100

< 1983 >

區 分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京 畿	江 原		
양	병아리용	어린병아리 4,741 중병아리 8,833 큰병아리 13,663 계 27,273	4,468 10,918 17,369 32,755	1,401 3,576 5,323 10,300	9,475 21,801 30,738 62,014	7,392 18,150 21,024 46,566	321 903 2,006 3,230		
	계	산란초기 103,879 산란중기 2,966 산란말기 - 총계 22,162 계 129,007	83,879 4,706 197 61,397 150,179	21,044 5,443 823 12,232 39,542	263,978 26,832 - 32,638 323,448	158,088 1,841 148 39,210 199,287	5,296 - - 2,043 7,339		
		용	육계전기 26,631 육계후기 1호 57,185 육계후기 2호 - 계 83,816	34,121 56,827 - 90,948	3,833 10,954 - 14,787	65,045 115,931 - 180,976	73,925 92,447 - 166,372	4,155 10,191 - 14,346	
			소 계 240,060	273,882	64,629	566,438	412,225	24,915	
양돈용	갓난 돼지 965 젖먹이 돼지 22,002 육성돈 58,261 비육돈 3,191 임신돈 7,996 포유돈 4,299 종돈 9,894 소 계 36,317 142,925		2,817 41,912 120,241 11,213 16,346 30,919 9,403 60,218 293,069	248 11,449 35,556 - 3,655 3,391 3,755 50,704 108,758	4,122 84,803 163,388 29,940 31,512 34,896 45,829 54,324 448,814	8,500 56,745 150,647 12,659 37,539 22,393 25,422 92,461 406,366	- 5,051 19,620 - 1,593 - 1,423 25,742 53,429		
	낙농용	젖먹이 송아지 3,049 중송아지 5,912 큰송아지 3,875 임신우 123 착유 I 28 착유 II 48,637 착유 III 60,946 종우 45 소 계 122,492	9,341 3,178 2,722 123 264 23,144 31,564 1,175 71,511	- 1,150 719 - - 1,610 5,383 - 8,862	6,210 11,061 8,226 78 109 59,452 81,259 2,290 168,685	4,432 12,311 8,810 32 876 81,205 52,836 1,727 162,229	2,202 2,247 4,037 - - 15,392 14,709 - 38,588		
		비육우용	고깃소 전기 3,003 고깃소 후기 40,582 육성비육소 2,782 큰소 비육소 15,487 소 계 61,854	570 19,462 13,273 98,801 132,106	215 16,218 5,985 37,893 60,311	2,886 66,184 12,191 78,044 159,305	5,404 60,801 12,914 77,324 156,443	1,149 24,424 - - 25,573	
			기타	소 농축 3,012	292 502	- -	147 1,234	- 124	- 3,752
				소 계 3,012	794	-	1,381	124	3,752
			합	계 570,343	771,362	242,560	1,344,623	1,137,387	146,257

單位：噸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合 計
770	4,655	1,488	1,037	2,578	1,004	105	39,435
1,952	12,225	2,078	3,067	6,068	2,442	278	92,291
3,348	17,103	6,035	4,606	9,077	3,183	588	134,063
6,070	33,983	9,601	8,710	17,723	6,629	971	265,789
25,853	109,434	16,694	17,842	20,823	16,663	3,299	846,772
-	11,147	205	-	2,602	-	-	55,742
-	-	66	-	-	-	-	1,234
1,710	20,622	5,223	9,208	58,983	13,018	158	278,604
27,563	141,283	22,188	27,050	82,408	29,681	3,457	1,182,352
2,371	29,108	28,048	9,225	7,427	11,426	631	295,946
5,438	64,185	20,049	13,794	22,628	30,706	982	501,517
-	-	-	-	-	-	17	17
8,009	93,293	48,097	23,019	30,055	42,132	1,630	797,480
41,642	268,479	79,886	58,779	130,186	78,442	6,058	2,245,621
29	1,487	539	2,069	206	96	54	21,132
2,604	42,888	35,333	11,865	6,041	4,454	1,628	326,775
5,083	72,840	67,063	16,819	18,000	11,895	4,752	744,165
-	1,082	3,185	7,923	2,151	664	1,807	73,979
314	4,235	6,719	3,962	885	1,306	3,613	119,511
232	905	1,032	4,414	125	2,629	-	105,235
564	9,049	1,576	2,820	2,902	1,129	1,212	114,973
7,969	72,569	54,141	20,370	20,481	9,714	2,222	507,232
16,795	205,055	169,588	70,242	50,791	31,887	15,288	2,013,007
54	5,024	10,614	222	268	313	135	41,864
292	2,976	875	1,560	1,043	382	132	43,120
138	3,609	1,705	946	193	507	-	35,487
-	-	-	272	-	-	-	505
-	-	160	-	-	-	-	1,461
760	6,928	397	14,485	2,771	1,123	-	255,885
1,833	20,014	19,293	7,921	4,271	3,058	503	303,585
1,878	1,864	3,362	12,770	1,303	191	1,424	28,029
4,955	40,415	36,406	38,176	9,849	5,574	2,194	709,936
215	1,598	800	2,905	507	119	1,200	20,571
14,003	64,632	7,779	47,902	7,449	3,139	896	373,471
-	1,821	14,907	-	74	25	-	63,972
-	16,048	78,569	-	2,080	8,335	-	412,581
14,218	84,099	102,055	50,807	10,110	11,618	2,096	870,595
-	-	865	1,991	-	-	-	3,295
-	205	119	-	104	-	-	9,132
-	205	1,064	1,991	104	-	-	12,427
77,610	598,253	388,999	219,995	201,040	127,521	25,636	5,851,586

< 1984 >

區 分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京 畿	江 原		
양	병아리용	어린병아리 3,124 중병아리 7,669 큰병아리 8,743 계 19,536	3,509 8,382 12,294 24,185	242 511 316 1,069	9,044 20,685 27,038 56,767	7,963 18,009 23,242 49,214	289 631 1,762 2,682		
	계	산란용	산란초기 88,223 산란중기 5,769 산란말기 - 계 7,307 101,299	67,724 5,809 7,771 41,038 122,342	2,068 - - 2,598 4,666	253,935 29,091 76 26,709 309,831	186,460 4,548 265 35,415 226,688	4,628 - - 1,475 6,103	
		용	육계용	육계전기 22,985 육계후기 1호 38,996 육계후기 2호 22 계 62,003	23,009 35,339 20 58,368	304 1,022 - 1,326	66,362 88,141 - 154,503	59,908 63,219 33 123,160	3,640 7,180 27 10,847
			소	계 182,838	204,895	7,061	521,101	399,062	19,632
양돈용	갓난돼지		1,169	1,339	-	3,670	7,747	49	
	젓먹이돼지	20,371	29,649	1,457	78,208	46,735	4,053		
	육성돈	69,584	120,691	12,069	197,796	167,606	21,245		
	비육돈	3,924	12,933	-	40,802	10,953	-		
	임포돈	9,190	12,529	1,894	44,365	37,999	2,492		
	종돈	2,904	22,972	1,810	28,844	11,665	-		
소	9,585	9,089	383	42,086	29,140	906			
계	34,998	47,715	19,763	56,550	75,330	28,645			
계	151,725	256,917	37,376	492,321	387,175	57,390			
낙농용	젓먹이송아지	4,724	12,956	-	9,616	6,591	3,648		
	중송아지	9,152	5,205	-	18,713	17,497	3,899		
	큰송아지	5,614	4,272	-	11,322	11,483	5,338		
	임착유우	-	304	-	111	46	27		
	착유우 I	740	2,540	-	662	7,809	-		
	착유우 II	45,488	23,904	1,476	71,127	94,123	18,762		
	착유우 III	51,073	30,065	1,705	94,249	65,877	17,157		
종모우	42	884	-	2,794	743	-			
소	116,833	80,130	3,181	208,594	204,169	48,831			
비육우용	고깃소	3,265	2,929	-	6,477	8,087	1,632		
	깃소	38,585	13,324	-	65,184	68,931	34,038		
	성비육소	2,966	13,846	8,044	13,967	13,359	-		
	큰비육소	24,759	118,794	41,379	85,390	94,022	-		
소	69,575	149,073	49,423	171,018	184,399	35,670			
타	소	-	4,381	-	84	-	-		
	기	2,014	50	-	2,252	106	1,844		
	소	2,014	4,431	-	2,336	106	1,844		
합	계	522,985	695,446	97,041	1,395,370	1,174,911	163,367		

單位：%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合 計
892	4,768	1,297	1,327	4,058	1,647	120	38,280
1,925	12,723	2,011	2,915	9,044	4,198	242	88,945
3,023	13,159	3,485	4,145	12,821	5,014	539	115,581
5,840	30,650	6,793	8,387	25,923	10,859	901	242,806
27,058	114,711	22,613	26,620	42,749	33,967	2,842	873,618
-	8,168	1,880	36	19,800	-	-	75,101
-	-	88	-	-	-	-	8,200
2,699	21,655	4,706	7,468	59,401	26,874	64	237,409
29,757	144,534	29,287	34,124	121,950	60,841	2,906	1,194,328
3,566	27,656	15,268	8,481	12,018	14,479	757	258,433
8,047	46,198	8,206	12,439	27,330	31,765	1,309	369,191
-	-	-	6	-	-	-	108
11,613	73,854	23,474	20,926	39,348	46,244	2,066	627,732
47,210	249,038	59,554	63,437	187,221	117,944	5,873	2,064,806
16	364	583	1,520	419	70	54	17,000
4,654	32,214	19,915	16,217	9,976	4,266	1,311	269,026
18,188	83,018	50,964	32,249	42,571	20,582	6,095	842,658
-	1,388	3,829	7,195	3,599	1,476	2,179	88,278
2,878	5,932	15,590	6,615	3,419	1,726	3,720	148,349
153	683	1,126	3,875	1,107	4,235	-	79,374
898	7,179	2,011	4,216	4,069	1,513	1,196	112,271
13,421	56,764	20,741	26,101	34,724	13,471	2,232	430,455
40,208	187,542	114,759	97,988	99,884	47,339	16,787	1,987,411
176	5,751	12,844	749	1,993	687	124	59,859
502	5,159	1,212	2,745	3,019	1,421	231	68,755
212	5,388	2,340	1,553	1,544	703	-	49,769
-	-	26	237	81	-	-	832
-	9,960	847	-	4,403	-	-	26,961
9,952	9,687	599	11,108	3,580	2,636	-	292,442
10,267	9,744	18,057	18,447	4,625	10,573	419	332,458
764	350	4,646	8,820	1,412	121	1,137	21,713
21,873	46,039	40,571	43,659	20,657	16,141	1,911	852,589
102	4,320	1,927	2,288	1,337	195	1,546	34,105
10,586	70,104	7,109	42,683	21,109	4,933	481	377,067
10,541	2,348	10,825	8,614	33	2	-	84,545
67,803	18,403	61,550	40,071	2,228	16,212	-	570,791
89,032	95,175	81,411	93,656	24,707	21,342	2,027	1,066,508
209	-	235	977	-	-	-	5,886
5	320	1,083	-	25	-	-	7,699
214	320	1,318	977	25	-	-	13,585
198,537	578,114	297,613	299,717	332,494	202,766	26,598	5,984,959

< 1985 >

.區 分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京 畿	江 原
양 계 용	어린 병아리	18,959	28,014	1,198	55,046	59,390	2,685
	산란 초기	82,423	84,359	1,258	247,491	242,706	4,289
	산란 중기	2,709	5,410	0	17,646	3,919	174
	산란 말기	1,230	6,293	0	15,787	292	0
	육계 전기	18,705	19,317	262	69,405	60,589	3,390
	육계 중기	0	0	0	0	0	0
	육계 후기 I	26,337	39,011	829	82,949	77,931	6,171
	육계 후기 II	5	343	0	0	441	375
	종특 계수	7,280	36,689	3,122	23,951	29,032	783
	특 계	2,795	29	0	20,286	2,440	0
	계	160,443	219,465	6,669	532,561	476,740	17,867
양 돈 용	어린 돼지	22,362	37,535	1,609	100,842	74,327	4,705
	육성 돈	59,908	112,007	9,749	189,622	173,271	14,965
	비육돈 전기	2,578	10,860	0	41,184	11,697	1,002
	비육돈 후기	6,311	7,045	1,155	21,308	20,066	1,124
	임신 돈	1,454	20,818	1,518	21,954	11,340	0
	포유 돈	9,423	12,479	457	40,256	40,300	862
	후보 종돈	0	128	0	0	221	0
	종특 계수	19,012	31,408	10,245	44,518	50,157	13,707
	특 계	254	241	0	39,333	3,325	0
		계	121,302	232,521	24,733	499,017	384,704
낙 농 용	송아지	23,005	25,961	0	50,289	46,039	14,575
	육성 우	0	0	0	0	587	0
	임신 우	0	215	0	0	1,182	32
	착유 I	3,765	4,692	0	974	13,649	0
	착유 II	37,487	23,619	1,438	64,358	96,777	20,585
	착유 III	53,873	38,100	2,903	113,421	80,434	23,236
	착유 IV	586	990	0	734	3,409	0
	농특 계수	787	0	0	68	185	0
	특 계	3,022	36	0	104	1,256	0
	계	122,526	93,613	4,341	229,948	243,518	58,428
비 육 우 용	고깃소	0	171	902	0	0	0
	육성 비육	4,418	20,665	13,733	23,150	20,633	707
	큰소 비육 I	9,249	6,169	5,110	41,349	39,803	9,843
	큰소 비육 II	46,596	138,145	40,517	129,924	141,338	23,679
	종모 우	2,875	2,658	0	7,738	3,665	0
	계	63,138	167,808	60,262	202,161	205,439	34,229
기 타	1,976	1,216	0	2,301	3,620	1,552	
합 계	469,385	714,623	96,005	1,465,988	1,314,021	148,441	

* 註 : 85年 7月부터 기타 飼料중 養魚用 飼料는 除外함 .

單位：%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合 計
6,220	36,169	9,120	11,325	27,646	19,713	742	276,227
23,194	132,398	23,374	39,397	60,130	64,300	2,555	1,007,874
0	9,375	3,999	0	18,302	0	0	61,534
0	118	899	0	0	0	0	24,619
3,675	31,331	12,626	12,101	14,903	17,050	439	263,793
0	0	144	2	0	0	0	146
7,924	52,394	15,120	20,205	28,248	37,349	778	395,246
0	3	10	2	0	0	0	1,179
4,176	25,990	4,253	4,083	53,961	33,161	0	226,481
0	1,753	2,184	50	25	23,065	0	52,627
45,189	289,531	71,729	87,165	203,215	194,638	4,514	2,309,726
5,276	45,600	22,250	24,410	18,983	12,622	1,616	372,137
13,944	71,172	37,759	31,951	46,744	30,679	7,243	799,014
23	1,003	794	8,628	3,605	4,407	2,882	88,663
1,715	4,309	2,384	5,740	3,388	1,817	3,513	79,875
331	789	1,154	5,406	3,325	6,944	0	75,033
904	9,710	3,398	4,555	6,086	2,999	1,338	132,767
0	0	0	0	0	0	0	349
9,837	33,787	21,175	21,299	19,015	10,663	2,822	287,645
0	0	44,539	193	45	279	0	88,209
32,030	166,370	133,453	102,182	101,191	70,410	19,414	1,923,692
1,200	19,297	22,879	6,696	9,719	6,874	316	226,853
0	0	0	0	0	1,226	0	1,813
110	1	229	148	147	0	0	2,064
0	13,368	3,493	2	4,940	0	0	44,883
11,011	11,000	2,963	8,322	3,232	4,868	0	285,660
23,724	12,605	22,814	25,309	6,272	17,654	365	420,710
0	85	650	0	214	0	0	6,668
95	24	0	0	0	7	0	1,166
0	0	8	4	0	35	0	4,465
36,142	56,380	53,036	40,481	24,524	30,664	681	974,282
0	34	112	2,461	2	0	0	3,682
17,318	5,578	15,632	12,947	42	20	0	134,843
4,264	7,737	21,783	6,195	2,045	3,000	1,716	158,263
84,876	84,079	56,031	77,563	22,787	29,651	1,971	877,157
165	5,002	3,305	5,524	2,979	363	823	35,097
106,623	102,430	96,863	104,690	27,855	33,034	4,510	1,209,042
67	143	3,188	154	113	0	0	14,330
220,051	614,854	358,269	334,672	356,898	328,746	29,119	6,451,072

區 分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京 畿	江 原
양 계 용	리병아리	3,573	4,297	155	8,722	10,759	523
	증분아리	8,891	10,574	431	20,628	24,997	986
	병방아리	10,108	14,807	414	29,561	30,785	2,548
	큰산란	114,000	88,790	808	287,659	277,079	9,427
	산란계	2,936	29,416	0	12,096	4,204	9
	산발계	132	5,690	0	9,439	171	0
	육계전	19,362	21,559	268	53,560	77,321	4,893
	육계중	0	1,502	0	6	1,939	331
	육계후	28,821	41,253	883	72,347	103,467	9,714
	육계후2	7	8	0	377	15	12
양 단 용	갓난돼지	1,454	2,277	0	12,184	11,937	224
	첫먹이	18,491	46,331	1,814	101,655	81,457	6,008
	덴돼지	4,125	1,168	0	1,699	7,489	0
	육성돈	56,952	110,814	8,798	190,544	203,314	17,764
	비육돈	2,214	7,151	0	43,790	12,252	909
	마돈	3,373	4,030	738	16,093	13,812	878
	인돈	118	25,837	1,421	26,869	16,247	388
	포돈	11,271	16,296	553	50,875	56,466	1,733
	보종돈	0	253	0	0	1,384	0
	육돈	19,160	27,107	7,755	44,830	52,798	12,559
낙 항 용	어린송아지	5,183	14,886	0	15,130	15,071	4,668
	증분송아지	9,644	8,429	0	26,173	35,303	5,379
	큰송아지	8,479	6,996	0	18,055	23,383	5,960
	입성우	0	0	0	0	1,397	0
	임신우	0	253	0	0	5	2
	유1호	908	37	0	1,721	625	0
	유2호	24,064	19,327	1,036	47,851	102,763	18,050
	유3호	55,370	44,705	4,207	132,571	134,256	29,256
	유4호	4,450	5,870	0	4,457	29,498	557
	유농축	833	0	0	308	1,224	27
비 육 우 용	육송아지	0	0	0	0	0	0
	육송성식	0	0	0	0	0	0
	육번우	0	401	0	104	0	40
	큰성비육	9,390	28,399	21,058	46,418	43,259	7,716
	큰소비육1호	13,587	10,316	0	72,893	59,153	15,391
	중소비육2호	40,397	134,814	59,955	103,629	163,519	40,526
	중모우	455	924	0	853	105	0
	육수사료	4,947	1,369	0	17,147	11,821	6,439
	(소계)	68,776	176,223	81,013	241,044	277,857	70,112
	기 타	말	0	0	0	5	0
개사료		0	356	0	7	92	1,452
도끼		0	0	0	0	224	190
오리칠면조		0	11,464	0	565	2,004	0
기타		1,731	253	0	1,021	0	441
(소계)	1,731	12,073	0	1,598	2,320	2,083	
합	계	504,255	779,694	113,274	1,654,308	1,679,221	205,411

單位：噸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合計
768	5,241	1,835	1,818	4,024	4,155	79	45,959
1,812	13,895	3,970	4,843	8,702	10,639	198	110,566
2,204	14,020	3,777	5,251	17,072	12,881	374	143,802
21,284	133,083	26,056	47,204	72,730	118,339	2,015	1,198,474
0	8,034	4,439	0	15,585	3	0	76,722
0	57	2,259	0	141	0	0	17,889
3,865	36,058	14,782	7,516	15,610	24,992	266	280,052
0	1	1,195	58	438	0	0	5,470
6,571	62,159	17,384	11,460	29,222	51,343	279	434,903
0	0	0	0	0	0	0	419
2,366	21,208	4,871	2,402	35,901	26,282	0	195,989
510	3,423	4,566	0	0	30,502	0	128,931
39,380	297,179	85,134	80,552	199,425	279,136	3,211	2,639,176
52	1,118	771	1,573	2,298	594	69	34,551
4,396	47,276	23,968	15,562	23,719	8,457	2,058	381,192
0	1,614	2,514	11,460	0	8,553	0	38,622
8,195	79,077	38,955	38,207	55,680	44,117	7,369	859,786
67	1,724	381	2,955	6,785	4,440	2,652	85,320
711	3,913	880	5,138	2,155	1,611	2,541	55,873
409	2,235	2,309	7,137	7,850	11,503	0	102,323
859	14,661	5,061	5,940	8,727	6,040	1,754	180,236
0	0	0	0	235	0	0	1,872
5,941	35,659	20,977	20,181	19,433	13,755	2,598	282,753
0	5,410	45,739	379	528	10,422	0	155,769
20,630	192,687	141,555	108,532	127,410	109,492	19,041	2,178,297
914	6,778	20,550	2,848	4,848	4,697	116	95,689
756	11,043	3,675	4,376	6,139	6,531	558	120,006
679	7,971	5,062	1,108	3,545	2,314	0	83,552
0	0	0	0	0	3,556	0	4,953
106	1	549	38	187	0	0	1,141
0	248	2,253	0	0	0	0	5,792
10,563	8,290	4,577	6,981	3,236	6,347	242	253,327
30,654	37,574	25,948	28,335	17,345	29,850	332	570,403
133	1,948	4,384	0	1,535	359	0	53,191
56	153	25	96	66	0	0	2,788
0	3	542	2	0	231	0	17,635
43,861	74,009	67,565	43,784	36,901	53,885	1,248	1,208,477
0	0	0	0	12	0	0	12
128	350	0	0	0	0	0	478
0	0	59	0	98	0	0	702
25,023	22,501	31,629	26,826	17,344	3,336	830	283,729
3,811	26,034	16,963	11,849	11,947	10,278	1,468	253,690
73,106	85,475	75,225	96,045	60,813	65,029	3,052	1,001,585
25	5,311	20	2,882	3,037	224	660	14,496
874	5,054	19,429	1,563	0	916	0	69,559
102,967	144,725	143,325	139,165	93,251	79,783	6,010	1,624,251
0	1	0	0	0	0	0	6
0	0	0	0	165	12	0	2,084
83	99	2,114	0	0	0	0	2,710
0	4	1,331	0	0	753	0	16,121
0	0	12	301	0	360	0	4,119
83	104	3,457	301	165	1,125	0	25,040
206,921	708,704	441,036	372,334	457,152	523,421	29,510	7,675,241

< 1987 >

區 分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京 畿
양 계 용	어린병아리	2,719	4,051	1,315	10,029	319	13,839
	중년병아리	5,918	10,647	3,030	23,586	975	31,040
	큰병아리	6,198	12,626	3,191	30,480	540	38,405
	산란계	77,392	88,991	20,932	336,124	8,869	367,307
	산란말기	4,596	32,047	0	26,424	0	9,198
	산란계	0	2,398	0	2,558	0	4,653
	육계	14,534	28,576	2,038	84,866	1,175	98,048
	육계	0	709	0	676	0	1,823
	육계	21,266	47,718	5,502	113,810	1,951	127,439
	육계	0	0	0	923	0	0
양 돈 용	수사료	5,353	32,108	18,767	29,433	0	45,832
	(소계)	70	0	0	2,439	0	969
	갓내기	138,051	259,871	54,775	661,348	13,829	738,553
	돼지	1,171	3,029	178	17,885	0	16,998
	멧돼지	13,257	49,936	5,237	134,046	2,741	117,101
	멧돼지	3,537	2,135	0	2,282	0	7,613
	육돈	50,189	130,732	24,184	255,242	9,024	307,927
	육돈	709	7,191	0	65,919	0	21,450
	육돈	3,918	2,724	1,618	27,719	1,154	23,893
	육돈	446	30,717	4,264	40,690	0	23,923
낙 농 용	보종	11,305	20,989	2,485	70,262	1,282	81,979
	보종	0	425	0	218	0	3,555
	수사료	19,143	30,479	14,247	56,800	6,749	77,594
	(소계)	111	1,534	0	38,656	0	1,092
	어린송아지	4,375	14,349	0	14,095	0	17,162
	중년송아지	8,233	6,569	1,081	28,486	1,557	40,810
	큰송아지	7,481	7,067	695	22,734	0	34,171
	육송아지	96	152	0	0	0	1,344
	육송아지	2,556	0	0	10,177	0	4,638
	육송아지	10,628	12,190	970	31,555	2,373	81,390
비 육 우 용	육송아지	53,454	47,421	6,542	155,211	5,247	192,213
	육송아지	8,546	10,649	1,456	19,930	0	62,321
	육송아지	0	0	0	540	0	2,042
	육송아지	4,975	0	0	250	0	11,119
	(소계)	100,344	98,397	10,744	282,978	9,177	447,210
	육송아지	0	0	0	395	0	0
	육송아지	0	0	0	925	0	1,134
	육송아지	0	458	0	173	0	0
	육송아지	11,236	32,905	26,245	45,599	4,738	52,902
	육송아지	12,460	11,329	1,111	86,183	2,253	71,548
기 타	육송아지	35,759	111,567	66,720	85,448	23,575	141,106
	육송아지	0	553	0	434	0	146
	육송아지	0	2,113	0	2,135	0	559
	(소계)	59,455	158,925	94,076	221,292	30,566	267,395
	개	0	0	0	18	0	0
	개	0	1,374	0	371	0	984
	개	0	0	0	79	0	2,269
	개	4	6,267	0	1,637	0	3,031
	개	4,537	621	0	2,816	0	2,671
	(소계)	4,541	8,262	0	4,921	0	8,955
합	계	406,177	805,346	211,808	1,878,258	74,522	2,145,238

單位：%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合 計
695	698	5,310	1,994	1,737	3,942	4,411	170	51,229
1,250	1,952	14,610	4,656	4,442	8,719	12,715	479	124,019
3,394	2,353	12,000	4,216	4,816	9,573	13,904	438	142,134
11,790	22,698	132,175	34,879	49,555	78,352	163,379	5,029	1,397,472
0	0	7,783	6,822	1	10,732	0	0	97,603
0	0	11	2,326	0	0	0	0	11,946
4,449	3,949	42,084	15,269	4,400	13,865	33,434	129	346,816
1,430	0	0	243	135	538	0	0	5,554
9,181	7,967	67,663	18,045	4,469	24,527	66,238	72	515,848
0	0	0	0	0	0	0	0	923
44	2,762	25,166	4,150	2,074	30,273	21,266	0	217,233
0	0	870	4,942	0	0	12,957	0	22,247
32,233	42,379	307,672	97,542	71,629	180,521	328,304	6,317	2,933,024
433	113	1,943	3,779	2,118	3,117	1,395	107	52,266
7,728	5,574	57,012	42,198	22,441	28,333	26,339	2,970	514,913
0	0	3,835	4,235	5,999	0	5,178	0	34,814
29,425	14,384	126,388	83,487	51,113	86,073	87,760	9,159	1,265,087
538	38	6,952	5,511	1,608	5,266	2,031	2,885	120,098
1,967	908	6,234	1,870	5,526	4,138	3,220	2,779	87,668
1,916	1,286	7,492	5,955	10,543	14,866	19,639	0	161,687
3,109	1,742	22,007	13,287	7,595	12,428	10,559	2,293	261,322
0	0	109	262	0	0	0	0	4,569
17,387	7,182	57,240	41,041	24,456	28,608	19,799	3,251	403,971
0	0	4,773	0	0	736	0	0	46,902
62,503	31,227	293,985	201,625	131,399	183,565	175,920	23,444	2,953,297
9,197	5,356	7,943	15,091	3,374	6,513	5,769	225	103,449
6,447	1,643	13,565	6,068	2,897	7,245	5,869	633	129,103
8,089	1,839	11,484	6,070	2,230	4,558	2,874	0	109,292
0	0	0	0	0	0	3,903	0	5,247
42	155	0	1,021	22	201	0	0	1,689
0	0	24	3,881	76	26	0	0	21,378
12,109	6,528	5,509	2,690	2,384	2,360	5,247	391	176,324
39,171	34,093	53,755	29,564	21,487	28,617	40,612	250	707,637
3,401	1,907	6,274	10,649	1,829	1,836	1,553	0	130,351
27	112	134	221	230	4	0	0	3,310
110	0	0	0	0	0	0	0	16,454
78,593	51,633	98,688	75,255	34,529	51,360	65,827	1,499	1,404,234
0	407	3	635	0	0	0	0	1,440
0	420	317	2,763	0	0	0	0	5,559
279	125	17	16	0	403	0	0	1,471
22,325	20,477	44,793	41,333	28,191	31,783	10,894	781	374,202
16,740	7,127	36,335	31,588	21,636	24,036	12,343	1,263	335,952
41,225	49,206	97,970	57,141	58,299	81,140	76,849	3,174	929,179
0	22	1,920	5	1,199	4,910	74	536	9,799
9,006	0	2,048	4	0	0	0	0	15,865
89,575	77,784	183,403	133,485	109,325	142,272	100,160	5,754	1,673,467
0	0	0	0	0	0	0	0	18
3,042	239	9	2,881	409	2,613	698	0	12,620
507	362	83	2,534	0	0	0	0	5,834
0	4,385	1,100	204	150	0	5,747	0	22,625
395	0	0	1,550	3	0	517	0	13,110
3,944	4,986	1,192	7,269	562	2,613	6,962	0	54,207
266,848	207,959	884,940	515,176	347,444	560,326	677,173	37,014	9,018,229

바. 會員社別 配合飼料 生産實績

單位 : %

會 員 名	'87	'86	'85	'84	'83	'82
건 국 사 료	22,213	12,672	13,448	12,941	6,971	1,086
미 원	(4) 437,247	(3) 359,278	(3) 280,665	(2) 204,487	166,097	(2) 85,864
삼 양 유 지	188,039	168,917	147,653	162,970	146,257	128,908
제 일 제 당	(3) 690,319	(2) 601,771	(2) 511,845	(2) 483,317	(2) 402,649	(2) 323,707
대 한 제 당	460,196	391,176	347,449	334,107	332,330	285,858
대 한 사 료	230,300	198,501	169,615	146,032	166,321	117,414
부 국 사 료	115,599	89,934	81,069	72,159	82,594	64,258
대 주 산 업	177,285	143,305	126,774	144,752	156,010	104,015
서 부 사 료	69,468	67,251	67,963	66,989	63,248	49,004
원 광	2,847	3,012	2,457	3,669	4,588	4,142
중 양 축 산	68,566	62,682	55,194	53,437	48,506	40,737
천 호 통 산	95,012	82,350	73,444	65,167	63,950	42,768
금 성 물 산	50,327	64,726	51,266	60,290	69,628	57,610
풍 진 화 학	223,137	190,712	163,837	174,981	184,295	119,626
동 방 유 량	197,764	180,407	130,712	91,842	37,608	20,743
서 울 사 료	(2) 222,407	(2) 193,268	(2) 200,055	(2) 150,238	114,598	81,850
보 거 사 료	51,946	39,422	27,106	25,068	24,543	22,870
경 기 사 료	35,344	33,504	34,172	33,641	30,926	34,731
천 광 산 업	60,858	50,835	48,019	46,185	43,629	39,971
퓨 리 나 코 리 아	(4) 515,696	(3) 432,642	(3) 371,885	(3) 321,047	(3) 427,222	(3) 333,132
신 촌 사 료	106,593	85,559	77,171	69,468	68,208	50,623
선 진 축 산	159,192	122,505	109,682	98,087	87,964	59,901
한 일 사 료	105,902	63,723	56,797	52,801	48,958	44,473
두 산 곡 산	187,071	156,340	118,842	130,604	130,980	103,771
삼 창 사 료	-	-	-	-	-	4,750
흥 성 사 료	136,202	118,329	104,209	105,016	116,302	89,870
삼 화 물 산	33,028	29,702	25,987	29,471	30,550	23,652
은 성 산 업	33,414	32,158	40,684	43,822	47,161	41,359
제 일 사 료	191,445	146,547	113,224	114,560	134,700	109,494
우 성 사 료	(3) 544,043	(3) 477,901	(3) 444,770	(3) 420,869	(3) 468,003	(3) 354,729
원 선 사 료	-	-	-	-	20,258	29,524
제 일 축 산	-	-	-	1,600	17,241	18,235

* ()는 공장수입.

: 單位 : %

會 員 名	'87	'86	'85	'84	'83	'82
현 대 사 료	62,242	59,469	49,989	43,451	5,656	-
카 길 코 리 아	-	-	-	-	-	-
삼양카네이션	-	163	788	397	-	-
화 성 산 업	44,567	37,874	40,042	43,249	24,790	11,316
소 생 원	17,376	12,183	9,466	6,732	4,391	731
중 앙 농 산	-	-	-	-	310	-
무 안 서 강	-	3,015	4,737	7,145	11,030	13,518
선 일 사 료	9,464	5,565	3,444	3,749	3,744	6,776
원 국	22,618	18,600	16,720	18,709	22,769	21,340
삼양사목포공장	(2)554,510	(2)404,705	(2)244,593	105,140	89,500	41,921
남 양 산 업	12,999	9,006	7,259	8,669	12,756	12,739
건 양 사 료	6,341	4,949	4,482	5,252	5,971	7,136
대 양 산 업	248	602	613	1,170	1,421	1,915
영 흥 물 산	-	7,032	11,885	7,412	9,666	6,480
한 성 사 료	57,623	51,451	53,830	60,709	63,577	52,940
고 려 산 업	(2) 249,071	(2)178,079	153,110	133,301	107,982	77,278
삼 화 양 유	1,019	8,333	5,417	8,199	9,723	9,475
금 성 사 료	148,249	138,135	114,860	131,229	142,591	94,999
삼 진 사 료	-	26,866	22,126	19,838	22,263	18,724
진 양 사 료	89,054	70,717	69,803	62,093	57,546	43,998
경 북 축 산	143,404	132,758	127,317	128,790	133,770	111,266
동 서 농 산	93,850	89,368	86,300	88,032	85,475	58,290
진 흥 사 료	90,026	80,070	62,524	59,464	61,698	39,780
영 남 제 분	94,341	79,496	67,174	55,270	40,552	22,164
대 왕 제 분	-	-	-	-	8,588	10,098
이 시 들 목 장	8,163	7,927	8,221	6,656	5,741	3,908
제 등 흥 산	28,851	21,583	20,898	19,942	19,895	12,615
합 계 (A)	7,145,476	6,047,075	5,181,592	4,744,215	4,693,700	3,568,082
축 협	1,872,753	1,628,166	1,269,480	1,240,744	1,157,886	851,719
전체생산실적(B)	'9,018,229	7,675,241	6,451,072	5,984,959	5,851,586	4,419,801
비 율 (A/B)	79.2	78.8	80.3	79.3	80.2	80.7

* ()는 공장수입.

사. 代用乳 生産實績

單位：噸

年 度	計	酪 農 用	養 豚 用	配 合 飼 料 用
'77	436	436	-	-
'78	341	341	-	-
'79	193	193	-	-
'80	1,718	1,043	625	50
'81	2,587	1,191	805	591
'82	4,390	3,130	669	591
'83	6,759	4,986	1,219	554
'84	7,600	6,325	964	311
'85	10,031	7,409	2,231	391
'86	10,690	7,724	2,566	400
'87	12,153	9,071	2,641	441

資料：農林水産部 畜産局

아. 養魚用 및 其他 實驗動物 飼料生産

單位 : kg

飼料名	業體名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양 어 용	미 원	30,780	211,000	495,000	
	금 성 제 분	378,175	1,260,715	2,567,520	
	제 일 제 당	289,760	491,560	1,513,820	
	대 한 제 당	3,862,760	5,480,040	8,750,875	
	고 려 특 수	1,934,660	4,097,270	7,421,840	
	삼 양 유 지	1,370,900	1,801,525	2,001,740	
	제 일 사 료	-	-	622,845	
	대 수 사 료	127,500	14,000	-	
	성 일 통 산	151,620	356,990	-	
	신 진 사 료	-	-	330,000	
	두 산 산 업	-	-	152,000	
	삼 립 개 발	-	-	412,450	
	퓨리나코리아(군산)	-	-	1,755,825	
	우 성 사 료	493,000	3,093,985	6,098,430	
	계	8,639,155	16,807,085	32,122,345	
기 타 실험	삼 양 유 지	158,380	199,360	202,100	
동 물 용	제 일 사 료	105,760	-	48,350	
합 계		8,903,295	17,006,445	32,372,795	
내 수 면 협 회 수입 추천		-	529,685	-	

여 백

2. 年度別 配合飼料 原料使用

가. 配合飼料生産 및 原料使用

區 分	飼 協		減 量 比 ($\frac{A-B}{A}$)	畜 原 料 使 用 (A)
	原 料 使 用 (A)	配 合 飼 料 生 産 (B)		
'73	814,525	806,290	1.01	104,003
'74	841,869	838,807	0.36	89,185
'75	818,695	807,482	1.37	95,014
'76	1,222,989	1,211,730	0.92	171,747
'77	1,684,619	1,666,425	1.08	234,426
'78	2,360,214	2,338,017	0.94	357,485
'79	3,462,130	3,433,839	0.82	450,384
'80	3,026,689	3,005,868	0.67	459,386
'81	2,957,590	2,940,261	0.59	552,809
'82	3,584,390	3,568,831	0.43	854,790
'83	4,709,407	4,693,707	0.33	1,161,927
'84	4,759,563	4,743,796	0.33	1,245,021
'85	5,195,409	5,181,592	0.27	1,272,577
'86	6,061,684	6,047,075	0.24	1,631,153
'87	7,162,177	7,145,476	0.23	1,875,765
'88				
'89				

單位：%

協		計		
配合飼料生產 (B)	減量比 $(\frac{A-B}{A})$	原料使用 (A)	配合飼料生產 (B)	減量比 $(\frac{A-B}{A})$
103,330	0.65	918,528	909,620	0.97
88,363	0.92	931,054	927,170	0.42
93,513	1.58	913,709	900,995	1.39
169,796	1.14	1,394,736	1,381,526	0.95
232,265	0.92	1,919,045	1,898,690	1.06
355,088	0.67	2,717,699	2,693,105	0.90
446,396	0.89	3,912,514	3,880,235	0.83
456,396	0.62	3,485,475	3,462,418	0.67
550,195	0.47	3,510,398	3,490,456	0.57
850,970	0.45	4,439,180	4,419,801	0.44
1,157,879	0.35	5,871,334	5,851,586	0.34
1,241,163	0.30	6,004,584	5,984,959	0.32
1,269,480	0.24	6,467,986	6,451,072	0.26
1,628,166	0.18	7,692,835	7,675,241	0.23
1,872,753	0.16	9,037,942	9,018,229	0.22

4. 飼料調節團體別 原料使用

①總括

單位：噸，%

區	分	穀類	糠類	植物性粕類	動物性蛋白質	其他	計
'72	數量	470,990	123,820	87,500	49,386	44,630	776,326
	構成比	60.7	15.9	11.3	6.4	5.9	100
'73	數量	507,525	217,093	85,406	49,291	59,213	918,528
	構成比	55.3	23.6	9.3	5.4	6.4	100
'74	數量	489,448	236,125	95,026	48,520	61,935	931,054
	構成比	52.6	25.4	10.2	5.2	6.6	100
'75	數量	441,709	262,295	97,756	50,029	61,923	913,709
	構成比	48.3	28.7	10.7	5.5	6.8	100
'76	數量	749,852	323,360	152,833	73,462	95,229	1,394,736
	構成比	53.8	23.2	10.9	5.3	6.8	100
'77	數量	1,061,596	440,347	191,483	98,736	126,833	1,919,045
	構成比	55.3	23.0	10.0	5.1	6.6	100
'78	數量	1,583,417	540,680	292,958	139,850	160,794	2,717,699
	構成比	58.3	19.9	10.8	5.1	5.9	100
'79	數量	2,439,739	626,944	488,114	133,820	223,897	3,912,514
	構成比	62.4	16.0	12.5	3.4	5.7	100
'80	數量	2,007,076	685,411	415,914	101,322	205,752	3,485,495
	構成比	59.6	19.7	11.9	2.9	5.8	100
'81	數量	2,086,477	679,703	447,225	93,698	203,295	3,510,398
	構成比	59.4	19.4	12.7	2.7	5.8	100
'82	數量	2,830,791	661,082	568,892	118,573	259,842	4,439,180
	構成比	63.8	14.9	12.8	2.7	5.8	100
'83	數量	3,894,958	666,562	832,081	127,280	350,453	5,871,334
	構成比	66.3	11.3	14.2	2.2	5.9	100
'84	數量	3,999,926	799,896	737,167	133,238	354,357	6,004,584
	構成比	66.6	13.0	12.3	2.2	5.9	100
'85	數量	4,094,628	1,000,153	847,858	124,121	401,226	6,467,986
	構成比	63.3	15.5	13.1	1.9	6.2	100
'86	數量	4,617,159	1,329,495	1,093,845	143,788	508,548	7,692,835
	構成比	60.0	17.3	14.2	1.9	6.6	100
'87	數量	5,648,672	1,323,795	1,293,233	150,432	621,810	9,037,942
	構成比	62.5	14.6	14.3	1.7	6.9	100

② 飼 協

單位：%，%

區 分	穀 類		糠 類		植物性粕類		動物性蛋白質		其 他		計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73	449,442	55.2	192,513	23.6	75,978	9.3	43,416	5.4	53,176	6.5	814,525	100
'74	446,204	53.0	209,677	24.9	85,568	10.2	44,361	5.3	56,059	6.6	841,869	100
'75	398,319	48.7	232,576	28.4	86,379	10.6	46,061	5.6	55,360	6.7	818,695	100
'76	657,289	53.7	281,459	23.0	134,489	11.0	66,703	5.5	83,049	6.8	1,222,989	100
'77	933,232	55.4	373,857	22.2	173,482	10.3	91,847	5.5	112,201	6.6	1,684,619	100
'78	1,379,406	58.5	443,345	18.8	266,597	11.3	130,804	5.5	140,062	5.9	2,360,214	100
'79	2,160,134	62.4	522,174	15.1	453,938	13.1	125,469	3.6	200,415	5.8	3,462,130	100
'80	1,794,925	59.3	567,273	18.7	385,852	12.8	95,083	3.1	183,016	6.1	3,026,089	100
'81	1,743,287	58.9	546,303	18.6	406,978	13.8	84,643	2.8	176,379	5.9	2,957,590	100
'82	2,251,154	62.8	514,373	14.4	499,500	13.9	103,511	2.9	215,852	6.0	3,584,390	100
'83	3,070,059	65.2	515,447	10.9	721,240	15.3	107,853	2.3	294,808	6.3	4,709,407	100
'84	3,125,344	65.7	578,273	12.1	641,074	13.5	118,375	2.5	296,907	6.2	4,759,563	100
'85	3,278,812	63.1	718,655	13.8	742,807	14.3	111,395	2.2	343,740	6.6	5,195,409	100
'86	3,598,707	59.4	974,853	16.1	929,044	15.3	129,523	2.1	429,557	7.1	6,061,684	100
'87	4,456,539	62.2	970,557	13.6	1,084,275	15.1	129,526	1.8	521,280	7.3	7,162,177	100
'88												
'89												

③ 畜 協

單位：%，%

區 分	穀 類		糠 類		植物性粕類		動物性蛋白質		其 他		計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73	58,083	55.8	24,580	23.6	9,428	9.1	5,875	5.7	6,037	5.8	104,003	100
'74	43,244	48.5	26,448	29.6	9,458	10.6	4,159	4.7	5,876	6.6	89,185	100
'75	43,387	45.6	29,719	31.3	11,377	12.0	3,968	4.2	6,563	6.9	95,014	100
'76	92,563	53.9	41,901	24.4	18,344	10.7	6,759	3.9	12,180	7.1	171,747	100
'77	128,364	54.7	66,490	28.4	18,001	7.7	6,889	2.9	14,682	6.3	234,426	100
'78	204,011	57.1	97,355	27.2	26,361	7.4	9,046	2.5	20,732	5.8	357,485	100
'79	279,605	62.1	104,770	23.3	34,176	7.6	8,351	1.8	23,482	5.2	450,384	100
'80	282,151	61.4	118,198	25.7	30,062	6.5	6,239	1.4	22,736	5.0	459,386	100
'81	343,190	62.1	133,400	24.1	40,247	7.3	9,055	1.6	26,916	4.9	552,808	100
'82	579,637	67.8	146,709	17.2	69,392	8.1	15,062	1.8	43,990	5.1	854,790	100
'83	824,899	71.0	151,115	13.0	110,841	9.5	19,427	1.7	55,645	4.8	1,161,927	100
'84	870,397	69.9	205,808	16.5	96,093	7.7	14,863	1.1	59,857	4.8	1,245,021	100
'85	815,816	64.1	281,498	22.1	105,051	8.3	12,726	1.0	57,486	4.5	1,272,577	100
'86	1,018,452	62.4	354,644	21.7	164,801	10.1	14,265	0.9	78,991	4.8	1,631,153	100
'87	1,192,133	63.6	353,238	18.8	208,958	11.1	20,906	1.1	100,530	5.4	1,875,765	100
'88												
'89												

ㄉ. 國產 및 輸入原料 使用

① 總 括

區 分	國 產					
	穀 類	糠 類	植物性粕類	動物性蛋白質	無 機 物	其 他
'72	47,990	123,820	70,870	32,276	42,480	2,150
'73	62,699	217,093	81,971	46,263	56,195	1,058
'74	52,540	236,125	95,026	48,420	55,908	6,027
'75	24,294	262,295	97,756	50,029	52,774	8,303
'76	22,874	323,360	152,833	73,462	83,063	11,277
'77	34,473	440,347	177,005	92,351	118,849	8,034
'78	38,708	540,680	236,060	131,440	141,788	19,006
'79	42,922	626,944	309,849	118,350	202,463	21,434
'80	69,520	685,411	359,706	99,549	183,872	21,880
'81	73,000	679,703	380,255	91,548	179,143	24,152
'82	54,355	661,082	433,561	116,505	217,364	41,272
'83	99,454	666,562	536,184	114,124	280,205	62,396
'84	202,370	653,921	528,726	124,349	273,526	74,261
'85	346,293	712,562	711,725	119,977	297,617	90,013
'86	72,299	845,283	813,159	136,450	351,270	127,064
'87	160,385	795,046	843,443	142,153	411,184	169,737
'88						
'89						

② 穀 類

區 分	國 產					小 計	外 國
	粳 米	麥 類	碎 屑 類	其 他	其 他		
'72	10,720	5,380	4,380	27,510	47,990	423,000	
'73	4,392	10,579	8,788	38,940	62,699	444,826	
'74	2,171	2,316	10,293	37,760	52,540	426,965	
'75	2,499	1,707	5,718	14,370	24,294	390,356	
'76	3,520	2,293	5,530	11,531	22,874	694,754	
'77	6,767	1,457	6,595	19,654	34,473	983,248	
'78	23,013	1,624	4,646	9,654	38,937	2,540,904	
'79	26,566	596	9,105	6,655	42,922	1,296,567	
'80	48,709	1,468	8,551	10,792	69,520	1,978,951	
'81	51,696	1,683	7,448	12,133	72,960	1,921,992	
'82	40,435	1,385	2,192	10,343	54,355	2,353,023	
'83	54,239	10,363	8,567	26,285	99,454	3,518,199	
'84	37,908	124,797	3,979	35,686	202,370	2,380,287	
'85	56,515	287,247	-	2,531	346,293	2,364,666	
'86	55,319	12,135	-	4,845	72,299	2,802,103	
'87	38,678	5	-	121,702	160,385	3,290,739	
'88							
'89							

單位：%

計	輸			入		計	合 計
	穀 類	植物性粕類	動物性蛋白質	其 他			
319,586	423,000	16,630	17,110	-	456,740	776,326	
465,279	444,826	3,435	3,028	1,960	453,249	918,528	
494,046	436,908	17,434	100	-	437,008	931,054	
495,451	417,412	23,940	-	806	418,218	913,709	
666,869	726,978	73,858	-	889	727,867	1,394,736	
871,059	1,027,123	14,478	6,385	-	1,047,986	1,919,045	
1,107,682	1,544,709	56,898	8,410	-	1,610,017	2,717,699	
1,321,962	2,396,817	178,265	15,470	-	2,590,552	3,912,514	
1,419,938	2,007,556	56,208	1,773	-	2,065,537	3,485,475	
1,427,801	2,013,477	66,970	2,150	-	2,082,597	3,510,398	
1,524,139	2,776,436	135,331	2,068	1,206	2,915,043	4,439,180	
1,758,925	3,795,504	295,897	13,156	7,852	4,112,409	5,871,334	
1,857,153	3,797,556	208,441	8,889	132,545	4,147,431	6,004,584	
2,278,187	3,748,335	136,133	4,144	301,187	4,189,799	6,467,986	
2,345,525	4,544,860	280,686	7,338	514,426	5,347,310	7,692,835	
2,521,948	5,488,287	449,790	8,279	569,638	6,515,994	9,037,942	

※ 輸入 其他에는 糠穀類 包含

單位：%

寸	寸	輸			入		小 計	計
		小	麥	豆 粕	穀 碎	其 他		
-	-	-	-	-	-	-	423,000	470,990
-	-	-	-	-	-	-	444,826	507,525
-	-	-	-	-	9,943	-	436,908	489,448
14,631	-	-	-	-	12,425	-	417,412	441,706
31,793	-	-	-	-	431	-	726,978	749,852
23,646	-	-	-	-	20,229	-	1,027,123	1,061,596
3,029	-	-	-	-	776	-	1,544,709	1,583,646
100,250	-	-	-	-	-	-	2,396,817	2,439,739
28,605	-	-	-	-	-	-	2,007,556	2,077,076
79,806	-	-	-	8,823	2,856	-	2,013,477	2,086,437
399,839	-	-	-	23,306	268	-	2,776,436	2,830,791
159,496	14,136	65,791	26,236	4,858	11,646	-	3,795,504	3,894,958
319,943	800,562	254,167	4,858	-	37,739	-	3,797,556	3,999,926
312,779	967,181	66,840	-	-	36,869	-	3,748,335	4,094,628
300,188	1,400,802	32,726	-	-	9,041	-	4,544,860	4,617,159
10,424	2,062,977	25,619	69,568	-	28,960	-	5,488,287	5,648,672

③ 糠 穀 類

區 分	國					
	小 麥 糠	脫 脂 糠	末 粉	糠 麥	호 午 午 糠	碎 屑 類
'72	89,590	20,650	30	10,400	-	-
'73	134,917	53,298	63	24,088	-	-
'74	173,347	27,743	640	23,592	-	-
'75	194,361	32,803	366	13,292	8,440	-
'76	249,032	39,057	406	8,600	12,780	-
'77	376,437	32,747	633	2,865	14,378	-
'78	399,043	81,603	2,175	29,595	19,068	-
'79	353,025	101,581	20,036	80,004	19,795	-
'80	421,311	118,314	7,522	79,240	19,336	-
'81	412,354	110,011	3,666	62,634	24,333	-
'82	390,847	118,068	211	39,258	21,422	-
'83	434,871	118,692	979	32,090	12,528	-
'84	434,689	106,012	-	5,650	14,258	-
'85	455,390	99,661	-	360	8,226	-
'86	473,286	152,144	11,865	1,008	9,452	7,446
'87	504,100	111,937	9,680	834	16,248	927
'88						
'89						

④ 植物性 粕類

區 分	國 產					
	大 豆 粕	菜 種 粕	荳 子 粕	胡 麻 粕	고 추 씨 粕	其 他
'72	23,010	5,210	7,370	18,280	1,690	15,310
'73	28,044	17,436	8,999	7,783	1,557	18,152
'74	17,434	27,001	13,021	9,742	3,446	24,382
'75	23,940	25,659	11,653	8,256	2,108	26,140
'76	73,858	23,142	12,432	9,701	3,273	30,427
'77	92,976	19,211	12,157	9,205	5,097	38,359
'78	144,157	22,588	10,104	10,357	5,206	43,653
'79	225,385	12,515	9,547	14,181	348	47,873
'80	286,549	12,137	10,340	10,719	2,877	37,084
'81	306,123	15,122	8,034	7,605	4,616	38,755
'82	349,603	16,662	8,000	9,024	5,493	44,779
'83	447,241	4,570	7,854	11,230	6,491	58,798
'84	432,930	955	8,893	9,312	7,303	69,333
'85	607,083	1,219	9,698	8,588	3,617	81,520
'86	676,075	3,012	13,340	7,226	6,768	106,738
'87	697,869	7,902	14,591	5,300	5,222	112,559
'88						
'89						

單位：噸

產		輸 入			計
其 他	小 計	小 麥 麩	其 他	小 計	
3,150	123,820	-	-	-	123,820
4,727	217,093	-	-	-	217,093
10,804	236,125	-	-	-	236,125
13,033	262,295	-	-	-	262,295
13,485	323,660	-	-	-	323,360
13,287	440,347	-	-	-	440,347
9,196	540,680	-	-	-	540,680
46,503	626,944	-	-	-	626,944
39,688	685,411	-	-	-	685,411
66,708	679,703	-	-	-	679,703
91,276	661,082	-	-	-	661,082
67,402	666,562	-	-	-	666,562
93,312	653,921	125,944	31	125,975	779,896
148,925	712,562	216,079	71,512	287,591	1,000,153
190,082	845,283	-	484,212	484,212	1,329,495
151,320	795,046	510,059	18,690	528,749	1,323,795

單位：噸

小 計	輸 入			小 計	計
	大 豆 粕	菜 種 粕	落 花 生 粕		
70,870	16,630	-	-	16,630	87,500
81,971	3,435	-	-	3,435	85,406
95,026	-	-	-	-	95,026
97,756	-	-	-	-	97,756
152,833	-	-	-	-	152,833
177,005	-	9,918	4,560	14,478	191,483
236,060	39,643	14,629	2,626	56,898	292,958
309,849	145,128	33,095	42	178,265	488,114
359,706	40,690	15,518	-	56,208	415,914
380,255	42,166	24,804	-	66,970	447,225
433,561	124,840	10,491	-	135,331	568,892
536,184	266,828	29,069	-	295,897	832,081
528,726	151,677	56,349	기타 415	208,441	737,167
711,725	117,914	14,155	// 4,064	136,133	847,858
813,159	110,234	108,634	// 61,818	280,686	1,093,845
843,443	231,648	150,854	// 67,288	449,790	1,293,233

⑤ 動物性蛋白質

區 分	國 產				
	魚 粉	雜 魚	肉 骨 粉	羽 毛 粉	其 他
'72	23,550	-	3,740	1,540	3,446
'73	37,252	6,319	541	1,484	729
'74	36,810	7,419	1,359	1,101	1,731
'75	40,368	4,494	1,408	1,059	2,700
'76	60,074	6,163	1,893	1,679	3,653
'77	57,656	17,799	3,357	4,394	9,145
'78	72,980	34,785	3,810	3,806	16,059
'79	85,405	20,168	1,466	3,643	7,668
'80	85,201	7,710	587	3,091	2,960
'81	83,890	2,716	684	1,116	3,142
'82	108,154	227	806	1,412	7,906
'83	103,946	-	400	1,536	8,242
'84	118,952	-	60	732	4,605
'85	116,825	-	321	455	2,376
'86	133,033	-	705	721	1,991
'87	136,317	-	1,340	877	3,619
'88					
'89					

⑥ 無機物(國產)

區 分	貝 粉	骨 粉	인산칼슘	조라이트	페 화 석
'72	31,920	3,030	-	-	-
'73	36,360	3,288	-	-	-
'74	36,812	3,635	-	-	-
'75	35,805	4,483	1,987	-	-
'76	56,078	6,900	3,069	-	-
'77	75,746	5,937	6,937	218	-
'78	89,476	4,990	12,475	5,620	681
'79	108,834	5,796	15,430	13,089	327
'80	70,688	4,167	15,216	6,722	178
'81	49,262	2,658	16,117	6,582	462
'82	31,792	1,777	23,528	10,359	-
'83	23,010	3,392	36,523	13,354	-
'84	11,808	4,031	32,842	9,933	-
'85	8,947	6,553	40,732	5,456	-
'86	7,608	6,642	47,049	6,037	-
'87	5,024	7,975	57,551	5,743	-
'88					
'89					

單位：噸

小 計	輸 入			計
	魚 粉	肉 骨 粉	小 計	
32,276	17,110	-	17,110	49,386
46,263	1,716	1,312	3,028	49,291
48,420	100	-	100	48,520
50,279	-	-	-	50,029
73,462	-	-	-	73,462
92,351	4,349	2,036	6,385	98,736
131,440	5,956	2,454	8,410	139,850
118,350	15,389	81	15,470	133,820
99,549	1,770	3	1,773	101,322
91,548	2,150	-	2,150	93,698
116,505	2,068	-	2,068	118,573
114,124	9,022	4,134	13,156	127,280
124,349	4,563	4,326	8,889	133,238
119,977	3,983	161	4,144	124,121
136,450	6,909	45	7,338	143,788
142,153	7,625	387	8,279	150,432

單位：噸

탄 산 칼 숯	食 鹽	添 加 劑	其 他	計
-	790	5,310	1,430	42,480
-	912	7,021	8,614	56,195
-	1,547	4,599	9,315	55,908
-	1,616	4,007	4,876	52,774
-	2,880	6,027	8,109	83,063
4	3,875	8,292	17,840	118,849
327	6,847	13,552	7,820	141,788
8,109	10,293	10,311	30,274	202,463
2,550	9,320	10,520	64,601	183,872
531	9,754	13,729	80,048	179,143
32,130	14,052	16,855	86,871	217,364
1,287	20,891	20,228	161,520	280,205
-	24,167	13,333	177,412	273,526
-	27,155	9,097	199,677	297,617
-	32,550	11,264	240,120	351,270
-	36,248	14,341	284,302	411,184

⑦ 其 他

區 分	綠 飼 料	代用蛋白	尿 素	海 藻 粉	牛	
					國 產	輸 入
'72	540	-	-	-	1,610	-
'73	996	-	-	-	62	1,906
'74	4,776	-	-	-	1,249	-
'75	7,749	-	-	288	266	806
'76	9,479	-	-	1,177	681	889
'77	4,779	-	-	626	1,571	-
'78	2,316	6,820	1,785	210	1,157	-
'79	221	8,803	4,269	113	928	-
'80	75	8,359	4,018	44	482	-
'81	26	7,343	4,463	63	777	-
'82	-	10,628	7,006	-	2,399	664
'83	-	7,322	11,464	-	3,822	5,241
'84	-	6,685	11,047	-	6,927	3,655
'85	-	6,002	10,035	-	15,602	9,051
'86	-	4,077	12,406	-	25,145	24,765
'87	-	2,538	10,984	-	45,524	30,364
'88						
'89						

라. 政府管理糧穀 副產物 供給現況

區 分	配 合 飼 料 用					單 味	
	小 麥 麩	麥 糠	脫 脂 糠	其 他	計	小 麥 麩	麥 糠
'72	-	-	-	-	-	-	-
'73	135	19	12	1	167	291	200
'74	207	24	12	5	247	89	307
'75	210	11	7	1	229	141	226
'76	274	5	10	3	292	108	155
'77	417	2	5	1	415	18	183
'78	403	29	75	5	512	16	65
'79	411	83	17	-	511	28	170
'80	464	52	118	1	635	18	303
'81	446	54	110	4	614	15	169
'82	441	23	203	-	667	24	119
'83	406	28	227	-	661	54	89
'84	-	-	-	-	-	-	-
'85	-	-	-	-	-	-	-

單位：%

脂	糖 蜜			其 他	計
	國 產	導 入	小 計		
小 計					
1,610	-	-	-	-	2,150
2,022	-	-	-	-	3,013
1,249	-	-	-	-	6,027
1,072	-	-	-	-	9,149
1,570	-	-	-	-	12,166
1,571	1,058	-	-	-	8,034
1,157	2,404	-	-	4,314	19,006
928	5,367	-	-	1,733	21,434
482	6,172	-	-	2,738	21,880
777	6,275	-	-	5,205	24,152
3,063	16,443	542	16,985	4,796	42,478
9,063	31,739	2,611	34,350	8,049	70,248
10,582	43,190	2,616	45,806	6,645	80,765
24,653	48,631	4,105	52,736	10,183	103,609
49,910	72,884	5,166	78,050	12,663	157,106
75,888	94,352	8,326	102,678	17,454	209,542

單位：%

飼 料 用			合 計				
脫 脂 糠	其 他	計	小 麥 麩	麥 糠	脫 脂 糠	其 他	計
-	-	-	387	271	59	-	717
32	7	530	426	219	43	8	696
39	35	470	296	331	51	40	718
18	22	207	351	237	52	23	636
42	24	329	382	160	52	27	621
37	21	259	435	185	42	22	684
16	44	191	419	94	141	49	703
-	64	262	439	253	17	64	773
-	85	406	482	355	118	86	1,041
-	80	274	471	223	110	84	888
-	20	163	465	142	203	20	830
-	30	173	460	117	227	30	834
-	-	-	-	-	-	-	-
-	-	-	-	-	-	-	-

여 백

3. 配合飼料 原料輸入

ガ. 種類別 輸入現況

① 總括

區分	穀 類		食用油用大豆		植 物 性 粕 類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2	21,466	1,032,068	-	-	-	-
'63	17,724	1,244,340	-	-	-	-
'64	5,000	325,000	-	-	-	-
'65	-	-	-	-	-	-
'66	2,875	205,994	-	-	-	-
'67	41,400	2,942,994	-	-	-	-
'68	69,030	4,569,647	-	-	2,360	278,896
'69	193,300	13,089,865	-	-	7,733	834,215
'70	259,408	18,992,205	-	-	28,856	3,271,831
'71	390,397	26,583,825	36,271	4,991,125	17,798	2,176,247
'72	425,696	26,258,869	39,470	5,612,147	15,544	2,006,068
'73	497,903	54,872,808	39,438	10,704,152	8,143	1,300,825
'74	443,656	68,263,714	22,346	7,621,550	-	-
'75	405,847	60,851,716	38,231	9,481,288	-	-
'76	655,765	84,270,592	100,362	26,671,937	-	-
'77	1,090,470	125,343,942	110,348	32,582,771	26,066	5,828,385
'78	1,573,647	189,587,733	214,573	58,407,012	50,640	10,624,511
'79	2,585,829	347,112,215	353,419	110,932,667	188,234	46,574,627
'80	1,881,086	301,718,599	374,091	117,413,291	6,200	1,217,017
'81	2,060,644	350,040,176	344,462	112,444,891	58,063	16,857,647
'82	2,853,763	376,131,278	474,271	124,283,730	141,059	33,448,973
'83	4,002,935	588,031,683	536,072	148,400,008	383,731	90,465,285
'84	3,770,792	569,369,235	602,747	188,134,140	126,778	31,094,602
'85	3,984,216	483,771,905	733,593	181,052,618	132,791	19,758,648
'86	4,415,584	430,446,206	882,457	196,596,668	115,825	21,603,970
'87	5,677,088	493,486,186	932,907	205,925,717	264,123	50,866,320

單位：%，\$

動物性蛋白質		其 他		合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	-	-	-	21,466	1,032,068
-	-	-	-	17,724	1,244,340
-	-	-	-	5,000	325,000
-	-	-	-	-	-
-	-	-	-	2,875	205,994
-	-	-	-	41,400	2,942,090
13,240	2,019,585	125	8,500	84,755	6,877,628
11,819	2,120,979	2,659	239,490	218,511	16,284,549
19,404	3,962,205	2,816	451,973	310,484	26,678,214
22,733	4,479,963	874	199,825	468,073	38,430,985
16,138	3,170,865	1,139	275,202	497,987	37,323,151
647	170,285	4,168	1,051,626	550,299	68,099,696
-	-	1,797	319,785	467,799	76,205,049
-	-	-	-	444,078	70,333,004
-	-	-	-	756,127	110,942,529
8,672	3,528,108	-	-	1,235,556	167,283,206
6,127	2,931,591	-	-	1,844,987	261,550,847
17,200	7,620,560	-	-	3,144,682	512,240,069
-	-	71	104,529	2,261,448	420,453,436
3,900	2,109,800	64	276,323	2,467,133	481,728,837
228	66,928	1,693	1,109,091	3,471,014	535,040,000
16,000	6,200,085	4,076	2,243,272	4,942,814	835,340,333
5,635	2,801,848	6,333	4,468,452	4,512,285	795,868,277
4,606	1,535,396	6,560	3,773,866	4,861,765	689,892,433
7,356	2,492,023	104,116	9,897,817	5,525,338	661,036,684
14,005	6,474,639	59,149	7,699,214	6,947,272	764,452,076

② 穀類

區分	全 全		全		小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2	21,466	1,032,068	-	-	-
'63	17,724	1,244,340	-	-	-
'64	5,000	325,000	-	-	-
'65	-	-	-	-	-
'66	2,875	205,994	-	-	-
'67	41,400	2,942,090	-	-	-
'68	69,030	4,569,647	-	-	-
'69	196,300	13,089,865	-	-	-
'70	259,408	18,992,205	-	-	-
'71	390,397	26,583,825	-	-	-
'72	425,696	26,258,869	-	-	-
'73	497,903	54,872,808	-	-	-
'74	379,787	59,867,368	47,678	6,728,241	-
'75	387,365	58,466,544	9,926	1,482,146	-
'76	620,148	79,737,375	35,617	4,533,217	-
'77	1,046,370	120,871,278	23,100	2,320,164	21,000
'78	1,573,647	189,587,733	-	-	-
'79	2,456,157	330,601,049	129,672	16,511,166	-
'80	1,881,086	301,718,599	-	-	-
'81	1,947,610	333,591,379	95,260	14,459,327	-
'82	2,430,341	320,549,389	403,447	53,330,920	-
'83	3,556,254	529,034,188	178,161	24,456,304	68,949
'84	2,377,807	373,152,297	337,869	48,031,427	843,974
'85	2,471,192	309,115,277	323,689	34,687,410	1,038,705
'86	2,735,881	272,296,315	246,653	22,573,199	1,391,226
'87	3,515,279	319,006,796	-	-	2,094,212

區分	麥 碎		穀 碎		早 粳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2	-	-	-	-	-
'63	-	-	-	-	-
'64	-	-	-	-	-
'65	-	-	-	-	-
'66	-	-	-	-	-
'67	-	-	-	-	-
'68	-	-	-	-	-
'69	-	-	-	-	-
'70	-	-	-	-	-
'71	-	-	-	-	-
'72	-	-	-	-	-
'73	-	-	-	-	-
'74	-	-	-	-	-
'75	-	-	-	-	-
'76	-	-	-	-	-
'77	-	-	-	-	-
'78	-	-	-	-	-
'79	-	-	-	-	-
'80	-	-	-	-	-
'81	-	-	14,274	1,524,470	-
'82	-	-	19,975	2,250,969	-
'83	11,647	1,265,104	27,218	2,620,276	-
'84	-	-	-	-	40
'85	-	-	-	-	36,775
'86	-	-	-	-	-
'87	-	-	-	-	44,880

※ 麥碎・穀碎：'84年부터 輸入自由化

單位：%, \$

麥	호		밀		귀		리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52,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74,361	153,979	18,935,269	6,667	646,181			
121,949,285	210,950	26,189,122	152	41,560			
126,981,281	241,150	2,673,812	68	13,758			
132,011,084	41,712	3,541,032	112	24,576			
167,107,498	16,299	1,302,264	6,418	421,645			

시 드	타 피 오 카		計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	-	-	21,466	1,032,068
-	-	-	17,724	1,244,340
-	-	-	5,000	325,000
-	-	-	-	-
-	-	-	2,875	205,994
-	-	-	41,400	2,942,090
-	-	-	69,030	4,589,647
-	-	-	196,300	13,089,865
-	-	-	259,408	18,992,205
-	-	-	390,397	26,583,825
-	-	-	425,696	26,258,869
-	-	-	497,903	54,872,808
-	16,191	1,668,105	443,656	68,263,714
-	8,556	903,026	405,847	60,851,716
-	-	-	655,765	84,270,592
-	-	-	1,090,470	125,343,942
-	-	-	1,573,647	189,587,733
-	-	-	2,585,829	347,112,215
-	-	-	1,881,086	301,718,599
-	3,500	465,000	2,060,644	350,040,176
-	-	-	2,853,763	376,131,278
-	-	-	4,002,935	588,031,683
-	-	-	3,770,792	569,369,235
5,544	-	-	3,984,216	483,771,905
4,796,704	89,637	5,503,663	4,415,584	430,446,206
-	99,938	7,933,088	-	-
5,647,983	-	-	5,677,088	493,486,186

③ 食用油用大豆 및 植物性粕類

區 分	食 用 油 用 大 豆		植 物 性	
	數 量	金 額	大 豆 粕	
			數 量	金 額
'68	-	-	2,360	279,896
'69	-	-	7,733	834,215
'70	-	-	28,856	3,271,831
'71	36,271	4,991,125	17,798	2,176,247
'72	39,470	5,612,147	15,544	2,006,068
'73	39,438	10,704,152	8,143	1,300,825
'74	22,346	7,621,550	-	-
'75	38,231	9,481,288	-	-
'76	100,362	26,671,937	-	-
'77	110,348	32,582,771	-	-
'78	214,573	58,407,012	39,643	8,773,030
'79	353,419	110,932,667	158,950	41,585,488
'80	374,091	117,413,291	-	-
'81	344,462	112,444,891	52,316	15,678,647
'82	474,271	124,283,730	136,103	32,457,781
'83	536,072	148,400,008	329,850	80,674,938
'84	602,747	188,134,140	92,060	23,800,789
'85	733,593	181,052,618	126,204	18,748,679
'86	882,457	196,596,668	115,825	21,603,970
'87	932,907	205,925,717	264,123	50,866,320

④ 動物性蛋白質 및 其他

區 分	動 物 性 蛋 白			
	魚 粉		肉 骨 粉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8	13,240	2,019,585	-	-
'69	11,819	2,120,979	-	-
'70	19,404	3,962,205	-	-
'71	22,733	4,479,963	-	-
'72	16,138	3,170,865	-	-
'73	647	170,285	-	-
'74	-	-	-	-
'75	-	-	-	-
'76	-	-	-	-
'77	3,300	1,742,100	5,372	1,786,008
'78	6,127	2,931,591	-	-
'79	17,200	7,620,560	-	-
'80	-	-	-	-
'81	3,900	2,109,800	-	-
'82	-	-	228	66,928
'83	9,613	4,261,959	6,387	1,938,126
'84	4,400	2,390,300	1,235	411,548
'85	4,400	1,488,120	206	47,276
'86	7,130	2,422,596	226	69,427
'87	13,844	6,424,618	161	50,021

單位：%, \$

粕 類					
雜 種 粕		其 他 粕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	-	-	-	2,360	279,896
-	-	-	-	7,733	834,215
-	-	-	-	28,856	3,271,831
-	-	-	-	17,798	2,176,247
-	-	-	-	15,544	2,006,068
-	-	-	-	8,143	1,300,825
-	-	-	-	-	-
-	-	-	-	-	-
16,705	3,309,627	1) 9,361	2,518,758	26,066	5,828,385
10,997	1,851,481	-	-	50,640	10,624,511
29,284	4,989,139	-	-	188,234	46,574,627
6,200	1,217,017	-	-	6,200	1,217,017
5,747	1,179,000	-	-	58,063	16,857,647
4,956	991,192	-	-	141,059	33,448,973
52,870	9,643,761	2) 1,011	146,586	383,731	90,465,285
34,718	7,293,813	-	-	126,778	31,094,602
5,489	684,466	3) 1,098	125,503	132,791	19,758,648
-	-	-	-	115,825	21,603,970
-	-	-	-	264,123	50,866,320

1) 낙화생박 2) 해바라기박 3) 면실박

單位：%, \$

質 計		其 他		合 計	
小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3,240	2,019,585	125	8,500	13,365	2,028,085
11,819	2,120,979	2,659	239,490	14,478	2,360,469
19,404	3,962,205	2,816	451,973	22,220	4,414,178
22,733	4,479,963	874	199,825	23,607	4,679,788
16,138	3,170,865	1,139	275,202	17,277	3,446,067
647	170,285	4,168	1,051,626	4,815	1,221,911
-	-	1,797	319,785	1,797	319,785
-	-	-	-	-	-
-	-	-	-	-	-
8,672	3,528,108	-	-	8,672	3,528,108
6,127	2,931,591	-	-	6,127	2,931,591
17,200	7,620,560	-	-	17,200	7,620,560
-	-	71	104,529	71	104,529
3,900	2,109,800	64	276,323	3,964	2,386,123
228	66,928	1,693	1,109,091	1,921	1,176,019
16,000	6,200,085	4,076	2,243,272	20,076	8,443,357
5,635	2,801,848	6,333	4,468,452	11,968	7,270,300
4,606	1,535,396	6,560	3,773,866	11,166	5,309,262
7,356	2,492,023	104,116	9,897,817	111,472	12,389,840
14,005	6,474,639	59,149	7,699,214	73,154	14,173,853

나. 月別 穀類輸入

區 分	1	2	3	4	5	6
'72	21,744	27,290	45,331	26,621	77,952	77,954
'73	35,175	56,837	15,240	40,711	48,168	20,877
'74	1,833	31,223	46,758	57,096	30,202	32,459
'75	70,691	24,691	9,439	-	60,500	-
'76	-	41,132	61,210	-	38,322	91,364
'77	139,318	63,410	87,669	43,743	117,688	83,660
'78	120,389	80,226	131,672	125,390	121,841	169,323
'79	72,302	252,433	271,361	157,856	405,132	283,138
'80	144,700	139,846	139,488	43,858	260,426	145,895
'81	253,035	118,361	166,375	76,153	78,750	169,901
'82	171,398	162,945	186,181	189,146	307,331	355,141
'83	218,814	155,318	417,126	266,027	494,339	247,931
'84	285,676	338,364	366,585	303,114	339,612	280,053
'85	340,022	203,953	415,634	303,638	277,615	470,528
'86	303,953	393,402	367,526	267,545	393,080	367,844
'87	398,833	526,296	509,976	365,893	553,369	475,207

다. 國別 穀類輸入

① 穀 類

區 分	목 수									
	美 國		泰 國		아르헨티나		홍 콩		뉴질랜드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2	21,466	1,032,068	-	-	-	-	-	-	-	-
'63	17,724	1,244,340	-	-	-	-	-	-	-	-
'64	5,000	325,000	-	-	-	-	-	-	-	-
'65	-	-	-	-	-	-	-	-	-	-
'66	2,875	205,994	-	-	-	-	-	-	-	-
'67	41,400	2,942,090	-	-	-	-	-	-	-	-
'68	69,030	4,569,647	-	-	-	-	-	-	-	-
'69	196,300	13,089,865	-	-	-	-	-	-	-	-
'70	259,408	18,992,205	-	-	-	-	-	-	-	-
'71	390,397	26,583,825	-	-	-	-	-	-	-	-
'72	425,696	26,258,869	-	-	-	-	-	-	-	-
'73	439,864	47,347,779	24,770	3,452,469	-	-	-	-	-	-
'74	312,379	49,291,767	67,408	10,525,601	-	-	-	-	-	-
'75	292,868	44,776,236	94,497	13,690,308	-	-	-	-	-	-
'76	575,621	73,789,424	44,527	5,947,960	-	-	-	-	-	-
'77	1,046,370	120,871,278	-	-	-	-	-	-	-	-
'78	1,573,647	189,587,733	-	-	-	-	-	-	-	-
'79	2,456,157	330,601,049	-	-	-	-	-	-	-	-
'80	1,881,086	301,718,599	-	-	-	-	-	-	-	-
'81	1,896,753	326,354,151	50,857	7,237,228	-	-	-	-	-	-
'82	2,414,381	318,462,619	15,960	2,086,770	-	-	15,960	2,086,770	-	-
'83	3,443,759	512,313,622	60,245	8,919,186	52,250	7,801,380	-	-	-	-
'84	1,913,123	306,637,776	99,778	15,302,536	364,906 ¹⁾	51,211,985	-	-	-	-
'85	1,280,383	166,118,674	321,820	34,602,584	868,989 ¹⁾	108,394,019	-	-	-	-
'86	1,011,016	99,498,731	629,293	60,126,287	230,204	24,196,268	850,368	87,023,778	15,000	1,451,251
'87	3,278,409	298,384,697	6,362	630,285	-	-	183,526	15,965,728	-	-

區分	小						麥			
	洲		美 國		日 本		P R C		E · C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2	-	-	-	-	-	-	-	-	-	-
'63	-	-	-	-	-	-	-	-	-	-
'64	-	-	-	-	-	-	-	-	-	-
'65	-	-	-	-	-	-	-	-	-	-
'66	-	-	-	-	-	-	-	-	-	-
'67	-	-	-	-	-	-	-	-	-	-
'68	-	-	-	-	-	-	-	-	-	-
'69	-	-	-	-	-	-	-	-	-	-
'70	-	-	-	-	-	-	-	-	-	-
'71	-	-	-	-	-	-	-	-	-	-
'72	-	-	-	-	-	-	-	-	-	-
'73	-	-	-	-	-	-	-	-	-	-
'74	-	-	-	-	-	-	-	-	-	-
'75	-	-	-	-	-	-	-	-	-	-
'76	-	-	-	-	-	-	-	-	-	-
'77	21,000	2,152,500	-	-	-	-	-	-	-	-
'78	-	-	-	-	-	-	-	-	-	-
'79	-	-	-	-	-	-	-	-	-	-
'80	-	-	-	-	-	-	-	-	-	-
'81	-	-	-	-	-	-	-	-	-	-
'82	-	-	-	-	-	-	-	-	-	-
'83	-	-	47,547	7,593,197	21,402	3,481,164	-	-	-	-
'84	632,213	90,628,913	111,250	16,712,693	48,014	6,857,493	52,497	7,750,186	-	-
'85	969,608	119,485,650	-	-	-	-	-	-	-	-
'86	540,973	52,336,815	-	-	23,100	1,830,457	18,217	1,411,244	158,758	14,702,312
'87	319,647	23,583,992	-	-	-	-	8,037	597,025	249,172	20,113,744

區 分	日 本				麥 碎		麥
	カ ナ ダ		美 國		カ ナ ダ		カ ナ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62	-	-	-	-	-	-	-
'63	-	-	-	-	-	-	-
'64	-	-	-	-	-	-	-
'65	-	-	-	-	-	-	-
'66	-	-	-	-	-	-	-
'67	-	-	-	-	-	-	-
'68	-	-	-	-	-	-	-
'69	-	-	-	-	-	-	-
'70	-	-	-	-	-	-	-
'71	-	-	-	-	-	-	-
'72	-	-	-	-	-	-	-
'73	-	-	-	-	-	-	-
'74	-	-	-	-	-	-	-
'75	-	-	-	-	-	-	-
'76	-	-	-	-	-	-	-
'77	-	-	-	-	-	-	-
'78	-	-	-	-	-	-	-
'79	-	-	-	-	-	-	-
'80	-	-	-	-	-	-	-
'81	-	-	-	-	14,274	1,524,470	-
'82	-	-	-	-	19,975	2,250,969	-
'83	6,667	646,181	-	-	27,278	2,620,276	11,647
'84	-	-	152	41,560	-	-	-
'85	-	-	-	-	-	-	-
'86	-	-	-	-	-	-	-
'87	6,400	417,650	-	-	-	-	-

② 大豆 및 植物性粕類

區分	食 用 油 用 大 豆				大 國			
	美 國		브 라 질		美 國		브 라 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8	-	-	-	-	2,360	279.896	-	-
'69	-	-	-	-	7,733	834.215	-	-
'70	-	-	-	-	28,856	3,271.831	-	-
'71	36,271	4,991,125	-	-	17,798	2,176.247	-	-
'72	39,470	5,612,147	-	-	15,544	2,006.068	-	-
'73	39,438	10,704,152	-	-	8,143	1,300.825	-	-
'74	22,346	7,621,550	-	-	-	-	-	-
'75	38,231	9,481,288	-	-	-	-	-	-
'76	100,362	26,671,937	-	-	-	-	-	-
'77	110,348	32,582,771	-	-	-	-	-	-
'78	214,573	58,407,012	-	-	18,643	3,948.940	21,000	4,824.090
'79	353,419	110,932,667	-	-	92,889	23,615.829	66,061	17,969.659
'80	374,091	117,413,291	-	-	-	-	-	-
'81	344,462	112,444,891	-	-	16,280	4,883.040	36,036	10,795.607
'82	474,271	124,283,730	-	-	63,885	16,543.817	68,543	14,884.964
'83	536,072	148,400,008	-	-	112,365	8,820.877	197,412	47,117.012
'84	602,747	188,134,140	-	-	27,483	7,705.624	10,310	1,997.872
'85	643,244	-	90,349	-	-	-	-	-
'86	855,799	190,727,951	26,658	5,868.717	42,374	8,247.669	-	-
'87	909,063	200,712,642	23,844	5,213.075	48,175	9,323.747	30,000	6,242.400

區分	菜 種							
	파 키 스타		인 도		카 나 다		日 本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8	-	-	-	-	-	-	-	-
'69	-	-	-	-	-	-	-	-
'70	-	-	-	-	-	-	-	-
'71	-	-	-	-	-	-	-	-
'72	-	-	-	-	-	-	-	-
'73	-	-	-	-	-	-	-	-
'74	-	-	-	-	-	-	-	-
'75	-	-	-	-	-	-	-	-
'76	-	-	-	-	-	-	-	-
'77	-	-	11,452	2,126,955	5,253	1,182,672	-	-
'78	10,997	1,851,481	-	-	-	-	-	-
'79	-	-	-	-	3,849	635,085	-	-
'80	-	-	-	-	-	-	-	-
'81	1,517	326,155	-	-	-	-	2,969	590,005
'82	-	-	-	-	4,956	991,192	-	-
'83	2,695	471,405	-	-	50,175	9,172,356	-	-
'84	-	-	-	-	16,115	3,322,943	-	-
'85	-	-	-	-	5,489	684,466	-	-
'86	-	-	-	-	-	-	-	-
'87	-	-	-	-	-	-	-	-

單位：%, \$

알 쟈 틈		豆 本		홍 콩 柏		小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	-	-	-	-	-	2,360	279,896
-	-	-	-	-	-	7,733	834,215
-	-	-	-	-	-	28,856	3,217,831
-	-	-	-	-	-	17,798	2,176,247
-	-	-	-	-	-	15,544	2,006,068
-	-	-	-	-	-	8,143	1,300,8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643	8,773,030
-	-	-	-	-	-	158,950	41,585,488
-	-	-	-	-	-	52,316	15,678,647
-	-	3,675	1,029,000	-	-	136,103	32,457,781
-	-	-	-	20,073	4,937,049	329,850	80,674,938
41,193	12,736,488	-	-	5,074	360,805	92,060	23,800,789
-	-	-	-	126,204	18,758,648	126,204	18,758,648
-	-	-	-	73,451	13,356,301	115,825	21,603,970
-	-	(인도) 23,462	4,587,541	162,486	30,712,632	264,123	50,866,320

單位：%, \$

홍 콩 柏		小 計		其 他 柏		植 物 性 柏 類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	-	-	-	-	-	2,360	279,896
-	-	-	-	-	-	7,730	834,215
-	-	-	-	-	-	28,856	3,271,831
-	-	-	-	-	-	17,798	2,176,247
-	-	-	-	-	-	15,544	2,006,068
-	-	-	-	-	-	8,143	1,300,825
-	-	-	-	-	-	-	-
-	-	-	-	-	-	-	-
-	-	16,705	3,309,627	9,361 ¹⁾	-	26,066	5,828,385
-	-	10,997	1,851,481	-	-	50,640	10,624,511
-	-	29,284	4,989,139	-	-	188,234	46,574,627
6,200	1,217,017	6,200	1,217,017	-	-	6,200	1,217,017
1,261	262,840	5,747	1,179,000	-	-	58,063	16,857,647
-	-	4,956	991,192	-	-	141,059	33,448,973
-	-	52,870	9,643,761	1,011 ²⁾	146,586	383,731	90,465,285
198	37,292	16,313	3,360,235	18,405 ³⁾	3,933,578	126,778	31,094,602
-	-	5,489	684,466	1,098 ³⁾	125,503	132,791	19,758,648
-	-	-	-	-	-	115,825	21,603,970
-	-	-	-	-	-	264,123	50,866,320

1) 낙화생박(인도) 2) 해바라기박(홍콩) 3) 면실박(홍콩)

③ 動物性蛋白質 및 其他

區分	魚							
	페 루		칠 레		美 國		카 나 다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8	13,240	2,019,585	-	-	-	-	-	-
'69	11,819	2,120,979	-	-	-	-	-	-
'70	19,404	3,962,205	-	-	-	-	-	-
'71	22,733	4,479,963	-	-	-	-	-	-
'72	16,138	3,170,865	-	-	-	-	-	-
'73	647	170,285	-	-	-	-	-	-
'74	-	-	-	-	-	-	-	-
'75	-	-	-	-	-	-	-	-
'76	-	-	-	-	-	-	-	-
'77	3,300	1,742,100	-	-	-	-	-	-
'78	4,127	1,957,598	2,000	973,993	-	-	-	-
'79	14,200	6,309,560	3,000	1,311,000	-	-	-	-
'80	-	-	-	-	-	-	-	-
'81	3,900	2,109,800	-	-	-	-	-	-
'82	-	-	-	-	-	-	-	-
'83	5,213	2,057,559	4,400	2,204,400	-	-	-	-
'84	-	-	4,400	2,390,300	-	-	-	-
'85	2,200	808,320	2,200	679,800	-	-	-	-
'86	2,930	913,326	4,200	1,509,270	-	-	-	-
'87	8,285	3,318,713	-	-	602	366,086	899	571,131

區分	肉 骨 粉							
	美 國		아 지 린 트		濠 洲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8	-	-	-	-	-	-	-	-
'69	-	-	-	-	-	-	-	-
'70	-	-	-	-	-	-	-	-
'71	-	-	-	-	-	-	-	-
'72	-	-	-	-	-	-	-	-
'73	-	-	-	-	-	-	-	-
'74	-	-	-	-	-	-	-	-
'75	-	-	-	-	-	-	-	-
'76	-	-	-	-	-	-	-	-
'77	498	154,288	2,876	987,012	1,998	644,708	5,372	1,786,008
'78	-	-	-	-	-	-	-	-
'79	-	-	-	-	-	-	-	-
'80	-	-	-	-	-	-	-	-
'81	-	-	-	-	-	-	-	-
'82	228	66,928	-	-	-	-	228	66,928
'83	6,387	1,938,126	-	-	-	-	6,387	1,938,126
'84	1,235	411,548	-	-	-	-	1,235	411,548
'85	206	47,276	-	-	-	-	206	47,276
'86	226	69,427	-	-	-	-	226	69,427
'87	161	50,021	-	-	-	-	161	50,021

單位：%，\$

粉							
남 아 공		뉴 질 랜 드		日 本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	-	-	-	-	-	13,240	2,019,585
-	-	-	-	-	-	11,819	2,120,979
-	-	-	-	-	-	19,404	3,962,205
-	-	-	-	-	-	22,733	4,479,963
-	-	-	-	-	-	16,138	3,170,865
-	-	-	-	-	-	647	170,285
-	-	-	-	-	-	-	-
-	-	-	-	-	-	-	-
-	-	-	-	-	-	3,300	1,742,100
-	-	-	-	-	-	6,127	2,931,591
-	-	-	-	-	-	17,200	7,620,560
-	-	-	-	-	-	-	-
-	-	-	-	-	-	3,900	2,109,800
-	-	-	-	-	-	-	-
-	-	-	-	-	-	9,613	4,261,959
-	-	-	-	-	-	4,400	2,390,300
-	-	-	-	-	-	4,400	1,488,120
-	-	-	-	-	-	7,130	2,422,596
1,996	908,271	682	422,940	1,380	833,478	13,844	6,424,618

單位：%，\$

其 他					
美 國		其 他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	-	125	8,500	125	8,500
-	-	2,659	239,490	2,659	239,490
-	-	2,816	451,973	2,816	451,973
-	-	874	199,825	874	199,825
-	-	1,139	275,202	1,139	275,202
-	-	4,168	1,051,626	4,168	1,051,626
-	-	1,797	319,785	1,797	319,7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104,529	-	-	71	104,529
64	276,323	-	-	64	276,323
1,693	1,109,091	-	-	1,693	1,109,091
4,076	2,243,272	-	-	4,076	2,243,272
1,053	1,079,789	5,280	3,388,663	6,333	4,468,452
7	29,162	6,553	3,744,704	6,560	3,773,866
67	66,731	104,049	9,831,086	104,116	9,897,817
8,920	1,556,241	50,229	6,142,973	59,149	7,699,214

라. 財源別 數類輸入 (C & F 基準)

區 分	P L 480		C C C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2	21,466	1,032,068	-	-
'63	17,724	1,244,340	-	-
'64	-	-	-	-
'65	-	-	-	-
'66	-	-	-	-
'67	-	-	-	-
'68	-	-	-	-
'69	78,471	5,293,144	-	-
'70	94,198	7,132,080	-	-
'71	135,003	9,084,849	-	-
'72	317,300	19,866,486	-	-
'73	159,165	12,834,083	-	-
'74	-	-	-	-
'75	-	-	-	-
'76	-	-	-	-
'77	-	-	-	-
'78	274,790	31,389,399(26,325,048)	625,686	74,851,636(70,323,953)
'79	67,400	10,482,124(8,598,295)	543,648	67,877,927(59,383,793)
'80	69,030	10,933,706(9,979,032)	483,811	74,474,274(61,303,557)
'81	-	-	221,157	41,718,896
'82	-	-	216,454	26,856,206
'83	-	-	277,908	36,332,738
'84	-	-	271,785	43,715,321
'85	-	-	187,501	23,354,170
'86	-	-	452,972	38,087,671
'87	-	-	728,617	58,512,531

* ()는 PL 480, CCC 자금으로 구매한 金額임 (FOB로 購買한 一部船賃은 KFX로 支拂)

單位：%, \$

K F X		民間借款		計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	-	-	-	21,466	1,032,068
-	-	-	-	17,724	1,244,340
5,000	325,000	-	-	5,000	325,000
-	-	-	-	-	-
2,875	205,994	-	-	2,875	205,994
45,268	3,216,971	-	-	45,268	3,216,971
77,221	5,195,820	5,030	249,032	82,251	5,444,852
96,062	6,444,931	21,767	1,351,790	196,300	13,089,865
129,436	9,518,785	35,774	2,341,340	259,408	18,992,205
231,621	15,979,507	23,773	1,519,469	390,397	26,583,825
108,396	6,392,383	-	-	425,696	26,258,869
323,955	39,931,063	14,783	2,107,662	497,903	54,872,808
443,656	68,263,714	-	-	443,656	68,263,714
405,847	60,851,716	-	-	405,847	60,851,716
655,765	84,270,592	-	-	655,765	84,270,592
1,090,470	125,343,942	-	-	1,090,470	125,343,942
673,171	83,346,698	-	-	1,573,647	189,587,733
1,974,781	268,752,164	-	-	2,585,829	347,112,215
1,328,245	215,310,619	-	-	1,881,086	301,718,599
1,839,487	308,321,280	-	-	2,060,644	350,040,176
2,637,309	349,275,072	-	-	2,853,763	376,131,278
3,725,027	551,698,945	-	-	4,002,935	588,031,683
3,499,007	525,653,914	-	-	3,770,792	569,369,235
3,796,715	460,419,735	-	-	3,984,216	483,771,905
3,962,612	392,358,535	-	-	4,415,584	430,446,206
4,948,471	434,973,655	-	-	5,677,088	493,486,186

마. 代用乳 및 代用乳原料輸入

區 分	'73		'74		'75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代 用 乳	612	365,777	32	16,466	50	31,507
넨 카 비 트	185	120,787	-	-	-	-
비 나 비 이 트	138	85,028	-	-	-	-
안 칼 프	91	54,627	-	-	-	-
스 프 레 이 프	116	63,037	-	-	-	-
도보이카프밀크	41	22,425	-	-	-	-
칼 비 타 밀 크	18	7,600	7	4,566	-	-
디엠브이그 린	-	-	25	11,900	50	31,507
이 시 락	-	-	-	-	-	-
아 티 포 크	-	-	-	-	-	-
씨 엠 알	-	-	-	-	-	-
씨 엠 알 - C R	-	-	-	-	-	-
其 他	23	12,273	-	-	-	-
代 用 乳 原 料	-	-	-	-	-	-
脫 脂 粉 乳	-	-	-	-	-	-
脫 脂 大 豆 粉	-	-	-	-	-	-
乳 獎 粉 末	-	-	-	-	-	-
調 製 飼 料	-	-	-	-	-	-

區 分	'80		'81		'82		'83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代 用 乳	1,400	1,136,800	-	-	-	-	500	340,000
넨 카 비 트	-	-	-	-	-	-	-	-
비 나 비 이 트	-	-	-	-	-	-	-	-
안 칼 프	-	-	-	-	-	-	-	-
스 프 레 이 프	450	365,400	-	-	-	-	500	340,000
도보이카프밀크	-	-	-	-	-	-	-	-
칼 비 타 밀 크	-	-	-	-	-	-	-	-
디엠브이그 린	-	-	-	-	-	-	-	-
이 시 락	950	771,400	-	-	-	-	-	-
아 티 포 크	-	-	-	-	-	-	-	-
시 엠 알	-	-	-	-	-	-	-	-
씨 엠 알 - C R	-	-	-	-	-	-	-	-
其 他	-	-	-	-	-	-	-	-
代 用 乳 原 料	819	375,901	1,193	681,134	2,716	2,045,944	4,824	3,198,850
脫 脂 粉 乳	179	147,635	300	335,600	1,457	1,524,700	2,811	2,411,255
脫 脂 大 豆 粉	-	-	-	-	-	-	-	-
乳 獎 粉 末	-	-	893	345,534	1,259	512,244	2,013	787,595
調 製 飼 料	649	228,266	-	-	-	-	-	-

單位：%, \$

'76		'77		'78		'79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463	261,790	797	428,727	2,597	1,486,878	2,701	1,609,142
62	50,568	-	-	-	-	-	-
-	-	-	-	-	-	-	-
-	-	-	-	900	513,000	-	-
84	52,267	-	-	699	418,701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37,468	373	191,349	499	280,937	2,023	1,236,242
250	121,487	-	-	-	-	-	-
-	-	424	237,368	499	274,240	-	-
-	-	-	-	-	-	678	372,900
-	-	-	-	-	-	-	-
-	-	640	275,455	546	305,266	714	355,178
-	-	100	35,775	300	142,050	402	239,835
-	-	250	145,741	-	-	-	-
-	-	290	93,939	-	-	312	115,343
-	-	-	-	246	163,216	-	-

單位：%, \$

'84		'85		'86		'87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	-	50	341,1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329,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1,591	-	-	-	-
6,044	3,664,625	6,052	3,402,653	4,144	1,870,122	4,016	2,172,261
3,684	2,689,007	2,872	2,082,521	49	36,900	-	-
-	-	-	-	-	-	-	-
2,360	975,618	3,180	1,320,132	4,095	1,833,222	4,016	2,172,261
-	-	-	-	-	-	-	-

4. 1987年度 原料別 輸入内譯

(1) 飼料穀物

(2) 옥수수

○ 輸入推薦機關別, 月別 輸入實績

單位: 噸, \$

區分	計		畜協		飼協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1	296,087.544	25,850,160	107,519.213	9,300,209	188,568.331	16,549,951
2	203,819.867	17,455,056	62,078.517	5,450,938	141,741.350	12,004,118
3	341,472.998	29,442,701	120,120.858	10,508,084	221,352.140	18,934,617
4	156,659.958	13,375,428	64,748.675	5,521,826	91,911.283	7,853,602
5	333,850.882	28,026,103	122,784.411	10,214,256	211,066.471	17,811,847
6	375,206.851	32,859,244	139,131.135	12,299,204	236,075.716	20,560,040
7	287,534.819	27,741,431	132,007.243	12,785,239	155,527.576	14,956,192
8	234,832.341	23,634,272	131,982.011	13,277,989	102,850.330	10,356,283
9	224,796.373	21,956,765	68,192.647	6,570,391	156,603.726	15,386,374
10	473,267.614	44,123,739	190,939.912	17,805,601	282,327.702	26,318,138
11	305,924.701	27,847,353	117,816.239	10,456,081	188,108.462	17,391,272
12	281,825.595	26,694,544	115,516.162	10,871,226	166,309.433	15,823,318
計	3,515,279.543	319,006,796	1,372,837.023	125,061,044	2,142,442.520	193,945,752

○ 輸入國別, 入港地別, 財源別 實績

單位: 噸, \$

區分	計		畜協		飼協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輸入國別	美國	3,278,409.587	298,384,697	1,341,551.617	122,215,177	1,936,857.970	176,169,520
	香港	183,525.76	15,965,728	26,903.470	2,408,632	156,622.290	13,557,096
	泰國	6,361.936	630,285	4,381.936	437,235	1,980,000	193,050
	남아공	46,982.260	4,026,086	-	-	46,982.260	4,026,086
	計	3,515,279.543	319,006,796	1,372,837.023	125,061,044	2,142,442.520	193,945,752
入港地別	仁川	2,469,483.185	223,709,665	1,067,253.931	97,033,231	1,402,229.254	126,676,434
	釜山	402,638.338	36,290,809	143,644.681	12,817,545	258,993.657	23,473,264
	群山	55,225.689	5,340,665	32,341.889	3,106,555	22,883.800	2,234,110
	蔚山	528,470.971	48,345,804	129,596.522	12,103,713	398,874.449	36,242,091
	木浦	59,461.360	5,319,853	-	-	59,461.360	5,319,853
財源別	K F X	2,786,662.128	260,494,265	1,140,703.147	106,247,318	1,645,958.981	154,246,947
	C C C	728,617.415	58,512,531	232,133.876	18,813,726	496,483.539	39,698,805
	計	3,515,279.543	319,006,796	1,372,837.023	125,061,044	2,142,442.520	193,945,752

(4) 小 麥

○ 輸入推慮機關別, 月別 輸入實績

單位: 噸,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102,745.950	7,808,853.01	—	—	102,745.950	7,808,853.01
2	322,475.811	23,381,998.35	162,909.311	11,780,702	159,566.500	11,601,296.35
3	168,502.630	12,160,946.11	117,006.960	8,487,245	51,495.670	3,673,701.11
4	209,233.620	15,426,245.98	17,370.310	1,282,624	191,863.310	14,143,621.98
5	219,517.780	16,822,109.99	112,038.380	8,600,059	107,479.400	8,222,050.99
6	100,000.325	7,648,942.88	61,740.000	4,932,707	38,260.325	2,716,235.88
7	167,667.230	14,352,395.02	57,244.000	4,768,504	110,423.230	9,583,891.02
8	163,200.000	14,454,016.60	61,615.000	5,697,251	101,585.000	8,756,765.60
9	158,754.970	14,488,587.39	64,141.555	5,967,754	94,613.414	8,520,833.39
10	164,634.580	13,948,419.10	120,392.580	10,207,758	44,242.000	3,740,661.10
11	209,855.896	18,013,383.21	64,440.495	5,412,933	145,415.401	12,600,450.21
12	107,623.000	8,601,599.70	57,265.000	4,640,943	50,358.000	3,960,656.70
計	2,094,211.792	167,107,497.34	896,163.592	71,778,480	1,198,048.200	95,329,017.34

○ 輸入國別, 入港地別, 財源別 實績

單位: 噸,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홍 콩	8,037.211	597,025.15	4,891.911	359,555	3,145.300	237,470.15
	濠 洲	319,647.230	23,583,991.59	114,647.600	8,360,517	204,999.630	15,223,474.59
	카나다	1,517,355.406	122,812,736.88	671,278.481	5,943,634	846,076.925	67,869,102.88
	E · C	249,171.945	20,113,743.72	105,345.600	8,114,774	143,826.345	11,998,969.72
	計	2,094,211.792	167,107,497.34	896,163.592	71,778,480	1,198,048.200	95,329,017.34
入 港 地 別	仁 川	1,542,782.635	123,039,470.89	699,594.485	55,904,473	843,188.150	67,134,997.89
	釜 山	225,778.403	18,162,298.96	97,218.196	8,009,064	128,560.207	10,153,234.96
	群 山	4,891.911	359,555.00	4,891.911	359,555	—	—
	蔚 山	314,880.143	25,076,363.34	94,459.000	7,505,388	220,421.143	17,570,975.34
	木 浦	5,878.700	469,809.15	—	—	5,878.700	469,809.15
財 源 別	K F X	2,094,211.792	167,107,497.34	896,163.592	71,778,480	1,198,048.200	95,329,017.34
	C C C	—	—	—	—	—	—
	計	2,094,211.792	167,107,497.34	896,163.592	71,778,480	1,198,048.200	95,329,017.34

(ㄷ) 호 밀

○ 輸入推薦機關別，月別 輸入實績

單位：噸，\$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16,298.669	1,302,264	16,298.669	1,302,264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計	16,298.669	1,302,264	16,298.669	1,302,264	-	-

○ 輸入國別，入港地別，財源別 實績

單位：噸，\$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入國別	E·C	16,298.669	1,302,264	16,298.669	1,302,264	-	-
	計	16,298.669	1,302,264	16,298.669	1,302,264	-	-
入港地別	仁 川	16,298.669	1,302,264	16,298.669	1,302,264	-	-
	釜 山	-	-	-	-	-	-
	群 山	-	-	-	-	-	-
	蔚 山	-	-	-	-	-	-
	木 浦	-	-	-	-	-	-
財源別	K F X	16,298.669	1,302,264	16,298.669	1,302,264	-	-
	C C C	-	-	-	-	-	-
	計	16,298.669	1,302,264	16,298.669	1,302,264	-	-

(라) 귀 리

○ 輸入推薦機關別, 月別 輸入實績

單位: 噸,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18.160	3,995.20	-	-	18.160	3,995.20
8	-	-	-	-	-	-
9	4,400.000	287,650.00	1,100.000	71,500	3,300.000	216,150.00
10	-	-	-	-	-	-
11	2,000.000	130,000.00	500.000	32,500	1,500.000	97,500.00
12	-	-	-	-	-	-
計	6,418.160	421,645.20	1,600.000	104,000	4,818.160	317,645.20

○ 輸入國別, 入港地別, 財源別 實績

單位: 噸,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濠 洲	18.160	3,995.20	-	-	18.160	3,995.20
	카나다	6,400.000	417,650.00	1,600.000	104,000	4,800.000	313,650.00
	計	6,418.160	421,645.20	1,600.000	104,000	4,818.160	317,645.20
入 港 地 別	仁 川	4,880.000	318,575.00	1,330.000	86,450	3,550.000	232,125.00
	釜 山	1,538.160	103,070.20	270.000	17,550	1,268.160	85,520.20
	群 山	-	-	-	-	-	-
	蔚 山	-	-	-	-	-	-
	木 浦	-	-	-	-	-	-
財 源 別	K F X	6,418.160	421,645.20	1,600.000	104,000	4,818.160	317,645.20
	C C C	-	-	-	-	-	-
	計	6,418.160	421,645.20	1,600.000	104,000	4,818.160	317,645.20

(甲) 루핀시드

○ 輸入推薦機關別，月別 輸入實績

單位：톤,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11,110	1,399,860	3,190	401,940	7,920	997,920
8	-	-	-	-	-	-
9	-	-	-	-	-	-
10	16,170	2,035,803	6,270	789,393	9,900	1,246,410
11	-	-	-	-	-	-
12	17,600	2,212,320	6,600	829,620	11,000	1,382,700
計	44,880	5,647,983	16,060	2,020,953	28,820	3,627,030

○ 輸入國別，入港地別，財源別 實績

單位：톤,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入國別	濠 洲	44,880	5,647,983	16,060	2,020,953	28,820	3,627,030
	計	44,880	5,647,983	16,060	2,020,953	28,820	3,627,030
入港地別	仁 川	44,880	5,647,983	16,060	2,020,953	28,820	3,627,030
	釜 山	-	-	-	-	-	-
	群 山	-	-	-	-	-	-
	蔚 山	-	-	-	-	-	-
財源別	木 浦	-	-	-	-	-	-
	K F X	44,880	5,647,983	16,060	2,020,953	28,820	3,627,030
	C C C	-	-	-	-	-	-
	計	44,880	5,647,983	16,060	2,020,953	28,820	3,627,030

(2) 타피오카

○ 輸入推薦機關別, 月別 輸入實績

單位: 톤,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11,335.000	1,028,170.00	2,700	245,025	8,635.000	783,145.00
8	-	-	-	-	-	-
9	-	-	-	-	-	-
10	-	-	-	-	-	-
11	4,644.020	358,822.56	-	-	4,644.020	358,822.56
12	28,720.000	1,999,500.00	12,220	844,500	16,500.000	1,155,000.00
計	44,699.020	3,386,492.56	14,920	1,089,525	29,779.020	2,296,967.56

○ 輸入國別, 入港地別, 財源別 實績

單位: 톤,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泰 國	44,699.020	3,386,492.56	14,920	1,089,525	29,779.020	2,296,967.56
	計	44,699.020	3,386,492.56	14,920	1,089,525	29,779.020	2,296,967.56
入 港 地 別	仁 川	37,205.000	2,842,220.00	12,170	899,375	25,035.000	1,942,845.00
	釜 山	7,494.020	544,272.56	2,750	190,150	4,744.020	354,122.56
	群 山	-	-	-	-	-	-
	蔚 山	-	-	-	-	-	-
財 源 別	木 浦	-	-	-	-	-	-
	K F X	44,699.020	3,386,492.56	14,920	1,089,525	29,779.020	2,296,967.56
	C C C	-	-	-	-	-	-
	計	44,699.020	3,386,492.56	14,920	1,089,525	29,779.020	2,296,967.56

(3) 大豆

○ 輸入者別，月別 輸入実績

區 分	計		東 邦 油 糧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112,770.669	23,630,810	68,624.750	14,356,092
2	32,272.439	6,758,817	32,272.439	6,758,817
3	78,140.371	16,235,292	—	—
4	36,241.763	7,488,635	36,241.763	7,488,635
5	97,805.161	20,154,674	35,250.600	7,291,587
6	64,157.219	13,748,431	35,759.682	7,600,363
7	70,969.445	17,005,225	70,969.445	17,005,225
8	54,342.646	12,052,640	—	—
9	145,445.783	33,263,174	62,248.669	14,381,542
10	53,792.736	12,407,823	36,748.738	8,542,244
11	52,712.597	12,066,719	31,773.565	7,470,601
12	134,255.745	31,113,477	64,249.845	14,971,417
計	932,906.574	205,925,717	474,139.496	105,866,523

○ 輸入國別，入港地別，財源別 実績

區 分	計		東 邦 油 糧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美 國	909,062.304	200,712,642	474,139.496	105,866,523
	브 라 질	23,844.270	5,213,075	—	—
	計	932,906.574	205,925,717	474,139.496	105,866,523
入 港 地 別	仁 川	766,183.057	168,606,005	307,415.979	68,546,811
	진 해	166,723.517	37,319,712	166,723.517	37,319,712
	計	932,906.574	205,925,717	474,139.496	105,866,523
財 源 別	K F X	664,188.847	152,526,490	332,897.279	77,520,197
	C C C	268,717.727	53,399,227	141,242.217	28,346,326
	計	932,906.574	205,925,717	474,139.496	105,866,523

單位：噸，\$

第一製糖		三養油脂	
數量	金額	數量	金額
26,545.923	5,509,198	17,599.996	3,765,520
—	—	—	—
59,440.465	12,223,601	18,699.906	4,011,691
—	—	—	—
47,349.123	9,686,823	15,205.438	3,176,264
28,397.537	6,148,068	—	—
—	—	—	—
54,342.646	12,052,640	—	—
55,289.808	12,522,942	27,907.306	6,358,690
—	—	17,043.998	3,865,579
20,939.032	4,596,118	—	—
45,999.989	10,544,062	24,005.911	5,597,998
338,304.523	73,283,452	120,462.555	26,775,742

單位：噸，\$

第一製糖		三養油脂	
數量	金額	數量	金額
314,460.253	68,070,377	120,462.555	26,775,742
23,844.270	5,213,075	—	—
338,304.523	73,283,452	120,462.555	26,775,742
338,304.523	73,283,452	120,462.555	26,775,742
—	—	—	—
338,304.523	73,283,452	120,462.555	26,775,742
236,920.282	53,410,347	94,371.286	21,595,946
101,384.241	19,873,105	26,091.269	5,179,796
338,304.523	73,283,452	120,462.555	26,775,742

(4) 大豆 粕

○ 輸入者別, 月別 輸入実績

單位: 噸,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38,964.900	7,011,716.86	—	—	38,964.900	7,011,716.86
2	7,052.500	1,380,526.87	—	—	7,052.500	1,380,526.87
3	53,452.583	9,473,214.66	10,969.000	2,143,781	42,483.583	7,329,433.66
4	37,245.517	7,187,119.04	9,573.620	1,825,689	27,671.897	5,361,430.04
5	—	—	—	—	—	—
6	9,453.600	1,800,911.00	9,453.600	1,800,911	—	—
7	30,000.000	6,242,399.99	—	—	30,000.000	6,242,399.99
8	9,806.216	1,887,402.00	9,806.216	1,887,402	—	—
9	28,854.183	5,772,730.20	—	—	28,854.183	5,772,730.20
10	—	—	—	—	—	—
11	40,038.130	8,210,793.46	8,922.910	1,742,555	31,115.220	6,468,238.46
12	9,255.050	1,899,506.46	—	—	9,255.050	1,899,506.46
計	264,122.679	50,866,320.54	48,725.346	9,400,338	215,397.333	41,465,982.54

○ 輸入國別, 入港地別, 財源別 実績

單位: 噸,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美 國	48,175.480	9,323,747.48	—	—	48,175.480	9,323,747.48
	홍 콩	162,485.499	30,712,632.51	37,756.346	7,256,557	124,729.153	23,456,075.51
	브라질	30,000.000	6,242,399.99	—	—	30,000.000	6,242,399.99
	인 도	23,461.700	4,587,540.56	10,969.000	2,143,781	12,492.700	2,443,759.56
	計	264,122.679	50,866,320.54	48,725.346	9,400,338	215,397.333	41,465,982.54
入 港 地 別	仁 川	201,115.016	38,716,063.34	38,615.346	7,449,670	162,499.670	31,266,393.34
	釜 山	63,007.663	12,150,257.20	10,110.000	1,950,668	52,897.663	10,199,589.20
	群 山	—	—	—	—	—	—
	蔚 山 補	—	—	—	—	—	—
財 源 別	K F X	264,122.679	50,866,320.54	48,725.346	9,400,338	215,397.333	41,465,982.54
	C C C	—	—	—	—	—	—
	計	264,122.679	50,866,320.54	48,725.346	9,400,338	215,397.333	41,465,982.54

(5) 魚粉

○ 輸入者別, 月別 輸入實績

單位: 噸,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4,400.000	1,638,450.000	1,650.000	613,387.5	2,750.000	1,025,062.5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1,469.527	892,427.020	-	-	1,469.527	892,427.02
9	2,531.708	1,224,167.406	-	-	2,531.708	1,224,167.406
10	3,272.000	1,647,552.500	-	-	3,272.000	1,647,552.500
11	-	-	-	-	-	-
12	2,171.200	1,022,021.000	1,996.200	908,271.0	175.000	113,750.00
計	13,844.435	6,424,617.926	3,646.200	1,521,658.5	10,198.235	4,902,959.426

○ 輸入國別, 入港地別, 財源別 實績

單位: 噸,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페 루	8,285.000	3,318,712.500	1,650.00	613,387.50	6,635.000	2,705,325.000
	남 아 공	1,996.200	908,271.000	1,996.20	908,271.00	-	-
	日 本	1,380.210	833,477.800	-	-	1,380.210	833,477.800
	카 나 다	899.062	575,130.920	-	-	899.062	575,130.920
	美 國	601.963	366,085.706	-	-	601.963	366,085.706
	뉴질랜드	682.000	422,940.000	-	-	682.000	422,940.000
	計	13,844.435	6,424,617.926	3,646.20	1,521,658.50	10,198.235	4,902,959.426
入 港 地 別	仁 川	10,883.237	4,601,820.670	3,646.20	1,521,658.50	7,237.037	3,080,162.170
	釜 山	2,961.198	1,822,797.256	-	-	2,961.198	1,822,797.256
	計	13,844.435	6,424,617.926	3,646.20	1,521,658.50	10,198.235	4,902,959.426
財 源 別	K F X	13,844.435	6,424,617.926	3,646.20	1,521,658.50	10,198.235	4,902,959.426
	C C C	-	-	-	-	-	-
	計	13,844.435	6,424,617.926	3,646.20	1,521,658.50	10,198.235	4,902,959.426

(6) 肉 骨 粉

○ 輸入者別，月別 輸入實績

單位：噸，\$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63.040	20,832.20	-	-	63.040	20,832.20
8	97.950	29,189.10	-	-	97.950	29,189.10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計	160.990	50,021.30	-	-	160.990	50,021.30

○ 輸入國別，入港地別，財源別 實績

單位：噸，\$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美 國	160.99	50,021.30	-	-	160.99	50,021.30
	計	160.99	50,021.30	-	-	160.99	50,021.30
入 港 地 別	釜 山	160.99	50,021.30	-	-	160.99	50,021.30
	計	160.99	50,021.30	-	-	160.99	50,021.30
財 源 別	K F X	160.99	50,021.30	-	-	-	-
	C C C	-	-	-	-	-	-
	計	160.99	50,021.30	-	-	160.99	50,021.30

(7) 알 팔 파

○ 輸入者別, 月別 輸入實績

單位: 톤,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1,021,798	142,029.93	-	-	1,021,798	142,029.93
11	9,341,267	1,178,001.48	2,391,489	325,635	6,949,778	852,366.48
12	-	-	-	-	-	-
計	10,363,065	1,320,031.41	2,391,489	325,635	7,971,576	994,396.41

○ 輸入國別, 入港地別, 財源別 實績

單位: 톤, \$

區 分	計		畜 協		飼 協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美 國	8,344.696	1,067,735.28	1,907,081	265,084	6,437,615	802,651.28
	카나다	2,018.369	252,296.13	484,408	60,551	1,533,961	191,745.13
	計	10,363,065	1,320,031.41	2,391,489	325,635	7,971,576	994,396.41
入 港 地 別	仁 川	5,134.751	669,264.69	1,891,772	257,644	3,242,979	411,620.69
	釜 山	5,228.314	650,766.72	499,717	67,991	4,728,597	582,775.72
	群 山	-	-	-	-	-	-
	蔚 山	-	-	-	-	-	-
	補 木	-	-	-	-	-	-
計	10,363,065	1,320,031.41	2,391,489	325,635	7,971,576	994,396.41	
財 源 別	K F X	10,363,065	1,320,031.41	2,391,489	325,635	7,971,576	994,396.41
	C C C	-	-	-	-	-	-
	計	10,363,065	1,320,031.41	2,391,489	325,635	7,971,576	994,396.41

(8) 香 味 料

○ 輸 入 年 度 別

單位：%, \$

區 分	'83		'84		'85		'86		'87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8.0	10,454	15	26,516	-	-	0.6	11,074	0.2	6,409
2	14.5	101,424	22	166,501	-	-	-	-	1.1	15,529
3	18.5	26,994	8	12,726	0.45	3,722	-	-	-	-
4	18.5	25,476	23	110,463	1.50	7,855	1.0	17,402	1.1	7,987
5	20.0	172,967	17	83,987	-	-	-	-	3.2	33,974
6	21.1	33,609	23	35,663	0.80	3,386	-	-	34.0	269,156
7	7.1	84,415	22	135,843	0.20	971	-	-	0.3	6,588
8	23.0	168,144	59	38,099	0.20	307	-	-	13.1	304,591
9	15.6	23,711	-	-	-	-	27.8	23,100	0.8	17,721
10	26.4	40,217	-	-	1.00	3,950	1.2	9,989	3.9	48,846
11	26.4	71,978	94	88,723	0.50	9,631	1.4	5,467	9.3	105,941
12	34.3	52,906	6	105,306	-	-	2.3	27,574	4.5	3,687
計	234.4	736,295	289	803,827	4.65	29,822	34.3	94,606	71.5	820,429

○ 輸 入 國 別, 財 源 別 및 入 港 地 別 輸 入 實 績

單位：%, \$

區 分	'83		'84		'85		'86		'87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미 國	243.4	736,295	289	803,827	3,850	17,571	32.2	54,149	40.0	246,918
	벨 기 에	-	-	-	-	500	9,631	2.1	40,457	0.2	6,409
	네덜란드	-	-	-	-	300	2,620	-	-	-	-
	스 위 스	-	-	-	-	-	-	-	-	25.5	527,996
	영 국	-	-	-	-	-	-	-	-	5.3	30,696
서 독	-	-	-	-	-	-	-	-	0.5	8,410	
計	243.4	736,295	289	803,827	4,650	29,822	34.3	94,606	71.5	820,429	
入 港 地 別	인 천	-	-	-	-	-	-	26.8	8,100	-	-
	부 산	239.6	729,594	289	803,827	3,250	13,731	6.0	61,836	69.1	769,785
	김 포	3.8	6,700	-	-	1,400	16,091	1.5	24,670	2.4	50,644
計	243.4	736,295	289	803,827	4,650	29,822	34.3	94,606	71.5	820,429	
財 源 別	K F X	243.4	736,295	289	803,827	4,650	29,822	34.3	94,606	71.5	820,429
	計	243.4	736,295	289	803,827	4,650	29,822	34.3	94,606	71.5	820,429

(9) 乳 獎 粉 末

○ 輸 入 年 度 別

單位：%, \$

區 分	'83		'84		'85		'86		'87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1	150	64,500	275	100,150	150	53,790	403	189,125	239	139,645
2	125	51,800	225	93,375	145	58,878	73	39,664	454	237,489
3	250	104,500	122	47,179	377	149,597	321	136,057	210	107,364
4	220	87,561	72	26,429	194.85	83,306	425	184,560	457	235,866
5	80	32,400	125	65,682	317	120,769	383	175,835	221	103,851
6	191	74,712	272	135,907	128.50	56,182	375	136,950	383	198,737
7	-	-	177	61,582	383	158,552	333	164,204	381	186,797
8	296	111,202	150	53,750	170	73,697	444	188,574	340	192,508
9	54	20,790	72	25,357	300	126,549	397	160,877	500	259,712
10	225	84,655	251	119,534	342	162,736	260	113,149	306	176,704
11	111	41,995	228	78,508	348	134,810	351	188,398	188	109,233
12	311	113,470	391	168,165	325	141,255	330	155,829	337	224,355
計	2,013	787,595	2,360	975,618	3,180.35	1,320,131	4,095	1,833,222	4,016	2,172,261

○ 輸 入 國 別, 財 源 別 入 港 地 別 輸 入 實 績

單位：%, \$

區 分	'83		'84		'85		'86		'87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輸 入 國 別	미 國	526	207,340	764	275,962	-	-	35	12,581	535	241,587
	E · C	-	-	540	308,695	905	502,938	1,102	708,641	1,713	1,112,271
	카 나 다	1,487	580,255	981	359,836	1,905.35	693,993	2,181	827,859	1,208	561,748
	뉴질랜드	-	-	75	31,125	350	12,300	777	284,141	-	-
	호 주	-	-	-	-	-	-	-	-	340	157,930
	스 웨 덴	-	-	-	-	-	-	-	-	220	98,725
計	2,013	787,595	2,360	975,618	3,180.35	1,320,131	4,095	1,833,222	4,016	2,172,261	
入 港 地 別	부 산	2,013	787,595	2,360	975,618	3,108.35	1,294,417	3,795	1,720,572	4,016	2,172,261
	인 천	-	-	-	-	72	25,714	300	112,650	-	-
	計	2,013	787,595	2,360	975,618	3,180.35	1,320,131	4,095	1,833,222	4,016	2,172,261
財 源 別	KFX	2,013	787,595	2,360	975,618	3,180.35	1,320,131	4,095	1,833,222	4,016	2,172,261
	計	2,013	787,595	2,360	975,618	3,180.35	1,320,131	4,095	1,833,222	4,016	2,172,261

(10) 脫脂粉乳

○ 輸入 年度別

單位：%, \$

區分	'83		'84		'85		'86		'87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1	150	141,750	351	257,360	452.55	330,361	31	23,940	-	-
2	150	138,750	243	177,390	201.50	145,700	-	-	-	-
3	225	207,000	340	247,470	397.50	291,415	-	-	-	-
4	225	207,000	201	147,095	351.85	254,585	18	12,960	-	-
5	225	206,250	248	181,040	93	67,580	-	-	-	-
6	196.5	180,315	375	273,000	62	44,640	-	-	-	-
7	124	112,065	171	124,465	446.25	321,300	-	-	-	-
8	227.5	204,750	264	192,355	93.50	67,320	-	-	-	-
9	274	244,740	411	300,395	291.75	210,060	-	-	-	-
10	355	270,932	291	212,795	271	195,120	-	-	-	-
11	274	209,013	321	233,965	141.65	103,968	-	-	-	-
12	384.5	288,690	468	341,677	68.35	50,472	-	-	-	-
計	2,810.5	2,411,255	3,684	2,689,007	2,871.90	2,082,521	49	36,900	-	-

○ 輸入國別, 財源別 入港地別 輸入實績

單位：%, \$

區分	'83		'84		'85		'86		'87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輸入國別	미국	-	-	-	-	-	-	-	-	-
	캐나다	-	-	-	-	-	-	-	-	-
	뉴질랜드	2,654.5	2,282,375	2,663	1,944,792	2,871.9	2,082,521	49	36,900	-
	E·C	75	69,750	75	54,000	-	-	-	-	-
	호주 체코슬로 바키아	-	-	946	690,215	-	-	-	-	-
計	2,810.5	2,411,255	3,684	2,689,007	2,871.9	2,082,521	49	36,900	-	
入港地別	부산	2,748.5	2,355,184	3,684	2,689,007	2,871.9	2,082,521	49	36,900	-
	인천	62	56,071	-	-	-	-	-	-	-
	計	2,810.5	2,411,255	3,684	2,689,007	2,871.9	2,082,521	49	36,900	-
財源別	KFX	2,810.5	2,411,255	3,684	2,689,007	2,871.9	2,082,521	49	36,900	-
	計	2,810.5	2,411,255	3,684	2,689,007	2,871.9	2,082,521	49	36,900	-

사. 飼料用 原料 輸入推薦機關

H · S	品 名	推 薦 機 關					A · A
		農水産部	飼 協	畜 協	單味協	乳加工協	
0402	乳 獎 粉 末 , 脫 脂 粉 乳					○	
0505	羽 毛 粉						○
0506	골 분				○		
0511	魚 類 의 웨 이 스투				○		
0714	타 피 오 카		○	○			
1001	밀		○	○			
1002	호 밀		○	○			
1003	보 리		○	○			
1004	귀 리		○	○			
1005	옥 수 수		○	○			
1007	수 수 수		○	○			
1008	기 타 의 곡 물		○	○			
1201	大 豆			○			
1214	飼 料 用 根 菜 類			○			
1502	우 지						○
1703	당 밀						○
2301	魚 粉				○		
2302	강 피 류						○
2303	설 당 박 , 양 조 박						○
2304~ 2307	대두박, 참깨박, 들깨박, 기타박		○	○			
2308	其他의 飼料用植物性生産品		○	○			
2309	調 製 飼 料 및 添 加 劑				○		

아. 配合飼料 原料 輸入關稅率

H · S	品 名	關 稅 率					잠 정 (할당)
		'84	'85	'86	'87	'88	
0402	유 장 분 말 , 탈 지 분 유	20	20	20	20	20	
0505	우 모 분	10	10	10	10	10	
0506	골 분	10	10	10	10	10	
0511	어 류 의 웨 이 스트	10	10	10	10	10	
0714	타 피 오 카	20	20	20	20	20	(7)
1001	밀	5	5	5	5	5	(3)
1002	호 밀	10	10	10	10	10	7(3)
1003	보 리	5	5	5	5	5	(3)
1004	귀 리	10	10	10	10	10	7(3)
1005	옥 수	10	10	10	10	10	7(3)
1007	수 수	10	10	10	10	10	7(3)
1008	기 타 의 곡 물	20	20	20	20	20	(3)
1201	대 두	10	10	10	20	10	(3)
1214	사 료 용 근 채 류	20	20	20	20	20	
1502	우 지	12	12	10	10	10	(5)
1703	당 밀	15	15	10	10	10	
2301	어 분	15	15	10	10	10	
2302	강 피 류	10	10	10	10	10	7
2303	설 당 박 , 양 조 박	15	15	10	10	10	
2304~ 2307	식 물 성 유 박	15	15	10	10	10	대두박(3)
2308	기 타의 사료용 식물성생 산품	20	20	20	20	20	
2309	조 제 사 료 및 첨 가 제	20	20	20	20	20	

자. 飼料穀物の 價値比較

	粗 蛋 白	에 너 지	可消化總營養分 (TDN)	N . E 價
	%	Kcal	%	%
옥 수 수	8.7	3,320	78.5	100
수 수	8.5	3,270	74.8	97
보 리	11.0	2,670	73.9	89
호 밀	12.8	2,550	72.1	88
귀 리	9.7	2,500	75.4	90
밀	11.7	3,020	75.1	100

여 백

4. 配合飼料價格

가. 配合飼料價格 調整方法 및 變遷內譯

日 字 別	價 格 決 定 方 法	期 間 別	價
			產 卵 用 (산란초기)
○ 72.8.3 以前 ○ 72.8.3	○ 市·道知事が 價格査定 ○ 農水産部長官이 代表的인 產卵用(產卵初期) 飼料價格을 經濟企劃院과 事前 協議하여 市·道知事が 동가격 範圍內에서 價格査定	72.8.3 以前	38.05
		72.8.3 ~ 73. 2.25	39.12
		73. 2.26 ~ 73. 7.10	49.57 (49.64)
		73. 7.11 ~ 73.12. 3	56.16 (56.26)
		73.12. 4 ~ 74.10. 3	70.50 (70.59)
○ 74.10. 4	○ 自由價格販賣制	74.10. 4 ~ 75.12.31	86.19
○ 76. 1. 1	○ 經濟企劃院과 事前 協議 主宗品目 3種 產卵初期, 씨돼지, 搾乳 1號 ○ 其他品目 自律規制 (飼料調節團體)	76. 1. 1 ~ 77. 6.30	86.03
○ 77. 7. 1	○ 附加價值稅制 實施로 配合飼料價格 1.58% 引上	77. 7. 1 ~ 77. 8.11	87.39

* () 내는 經濟企劃院 承認 價格임.

格 (원 / kg : 工場渡)			經 緯 及 事 由
肉 鷄 用 (육계전기)	養 豚 用 (종 돈)	酪 農 用 (착유 1)	
45.68	24.82	24.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 措置로 諸物價凍結 ○ 原料價格昂騰(% 當옥수수 : 60 \$ → 94.34 \$, 大豆 : 138 \$ → 225 \$, 어분 : 84,467 원 → 88,000 원) ○ 原料價格昂騰(옥수수 : 94.34 \$ → 95.22 \$, 大豆 : 225 \$ → 254.87 \$, 어분 : 88,000 원 → 112,500 원 , 기타 國內原料上昇) ○ 原料價格昂騰(옥수수 : 95.22 \$ → 145.17 \$, 大豆 : 254.87 \$ → 310 \$, 其他 國內原料上昇) ○ 製造管理費 現實化 (% 當 4,410 → 5,544 원 (26 %) (包裝費 1,100 → 1,978 원)
47.44	26.26	27.66	
58.81	33.25	40.61	
60.00	37.62	40.46	
85.44	47.22	50.98	
105.05	59.49	62.17	○ EPB에서 配合飼料價格을 統制價格에서 해제하 여 價格自律化
110	73.01	6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價格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施行 ○ 糠類價格引上(時價의 85 %) 脫脂糠 930 → 1,350 원 麥 糠 980 → 1,380 원 小麥殼 1,080 → 1,520 원 ○ 糠類價格의 引上으로 糠類가 많이 所要되는 養豚 및 酪農飼料價格을 引上調整 ○ 經濟企劃院 事前 協議價格에 準하여 飼料管理法 第 17 條의 規定에 依據 調節團體가 自律規制
111.74	74.16	70.55	

日 字 別	價 格 決 定 方 法	期 間 別	價
			產 卵 期 (산란초기)
○ 77. 8.12	○ 經濟企劃院과 事前協議하여 品目別 最高 價格을 지정	77. 8.12 ~ 78. 5.31	101.03
○ 78. 6. 1	○ 現行價格이내에서 品目別 最高價格을 再調整	78. 6.1 ~ 79. 3.31	101.03
○ 79. 4. 1	○ 經濟企劃院과 事前協議하여 品目別 最高價格을 上向調整	79. 4.1 ~ 80. 1.22	104.25
○ 80. 1.21	○ 經濟企劃院과 事前協議하여 品目別 最高販賣價格을 指定	80. 1.22	134.51
○ 80. 7. 1	○ 配合飼料價格自律化	80. 7. 1	

務 (원 / kg, 工場渡)			經 緯 및 事 由
肉 鷄 用 (육계전기)	養 豚 用 (중 돈)	酪 農 用 (착유 1)	
122.92	86.35	8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穀類 供給價格引下 (135 \$ → 130 \$) ○ 製造減量引下 (2 % → 1.5 %) ○ 하역減量引下 (0.6 % → 0.24 %) ○ 利潤引下 (4 % → 3 %) ○ 製造管理費 現實化 (6,763 원 → 7,361 원)
122.85	86.31	8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配合飼料 성분량 한도고시의 개정 ○ 의제買入 稅額공제 對象品目の 變動 ○ 導入穀類 供給價格 引上 (130 \$ → 135 \$) ○ 利潤引上 (3 % → 4 %) ○ 製造減量 引下 (1.5 % → 1.2 %) ○ 製造管理費 現實化 (7,361 원 → 8,126 원)
128.24	95.05	8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糠類 配合比調整 (20 % → 15 %) ○ 製造管理費 現實化 (8,126 → 9,797 원) ○ 製造減量 引下 (1.2 % → 1.0 %) ○ 大豆粕 供給價格 引上調整 (130.37 → 139.70 원) ○ 탈지강價格 引上調整 (1,350 → 1,535 원)
158.44	125.72	1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옥수수 價格昂騰에 따른 옥수수 安定基準價格引上 C & F \$ 135 /톤 → \$ 160 /톤 ○ 國際옥수수 使用에 따른 導入 옥수수와 의 價格 差合算反映 ○ 國際大豆價格昂騰에 따른 大豆粕供給價格 調整 C & F \$ 295.15 /톤 → \$ 309.50 /톤 ○ 國際油類價格 引上에 따른 包裝費, 製造管理費 等の 現實化 (9,797 → 11,258 원) ○ 80.1.12 換率調整에 따른 國際穀類 (옥수수, 大豆) 價格의 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穀物時勢의 變動과 換率連動制 實施 ○ 自律의인 飼料品質改善 및 良質의 飼料生産 誘導

나. 配合飼料 工場渡 價格

區 分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양 계 용	어린병아리	-	-	-	-	-	-	-	-	-	98.49
	중 병 아 리	-	-	-	-	-	-	-	-	-	85.89
	큰 병 아 리	-	-	-	-	-	-	-	-	-	75.84
	산 란 초 기	24.92	26.87	27.90	28.84	30.59	38.05	38.69	50.61	70.48	86.19
	산 란 중 기	-	-	-	-	-	-	-	-	-	81.49
	산 란 말 기	-	-	-	-	-	-	-	-	-	76.94
	육 계 전 기	-	-	-	-	-	45.77	47.31	61.35	85.46	105.05
	육 계 후 기 1	-	-	-	-	-	-	-	-	-	100.04
	육 계 후 기 2	-	-	-	-	-	-	-	-	-	-
증 계	-	-	-	-	-	-	-	-	-	-	-
양 돈 용	젖 먹 이 돼 지	-	-	-	-	-	-	-	-	-	-
	육 성 돈	-	-	-	-	-	-	-	-	-	-
	비 육 돈 전 기	-	-	-	-	-	-	-	-	-	-
	비 육 돈 후 기	-	-	-	-	-	-	-	-	-	-
	임 신 돈	-	-	-	-	-	-	-	-	-	-
	포 유 돈	-	-	-	-	-	-	-	-	-	-
종 돈	-	-	-	-	-	24.58	26.59	36.43	51.08	62.17	
축 우 용	어린 송 아 지	-	-	-	-	-	-	-	-	-	-
	중 송 아 지	-	-	-	-	-	-	-	-	-	-
	큰 송 아 지	-	-	-	-	-	-	-	-	-	-
	임 신 우	-	-	-	-	-	-	-	-	-	-
	착 유 1	-	-	-	-	-	24.92	25.44	33.93	47.21	59.49
	착 유 2	-	-	-	-	-	-	-	-	-	-
	착 유 3	-	-	-	-	-	-	-	-	-	-
	고깃 소 전 기	-	-	-	-	-	-	-	-	-	-
	고깃 소 후 기	-	-	-	-	-	-	-	-	-	59.43
종 모 우	-	-	-	-	-	-	-	-	-	-	
특수 용	소 농 축	-	-	-	-	-	-	-	-	-	-
	육 성 비 육	-	-	-	-	-	-	-	-	-	-
	큰 소 비 육	-	-	-	-	-	-	-	-	-	-

單位：원 / kg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98.95	108.32	118.56	122.45	155.80	213.19	210.62	221.85	247.85	236.65	211.30	194.33
87.60	95.15	102.55	107.32	141.99	193.65	189.56	201.29	225.18	214.77	195.27	175.98
79.09	82.57	83.09	90.18	123.54	166.71	163.53	176.78	200.36	190.29	170.18	150.55
85.36	91.94	100.01	103.12	142.77	185.84	177.16	190.45	216.22	201.98	176.42	156.09
82.45	88.64	90.02	96.66	149.61	177.76	161.23	192.09	216.63	212.00	186.31	168.30
78.81	82.10	93.03	-	140.43	175.11	156.73	166.03	183.90	189.79	175.65	155.05
106.45	114.87	121.43	125.57	170.48	233.34	227.53	240.14	269.40	256.08	239.02	217.01
101.92	109.80	118.09	121.66	161.57	223.66	217.41	232.47	258.74	246.70	229.23	205.92
-	-	-	-	174.47	211.59	186.00	186.00	-	-	-	-
-	-	-	-	146.78	193.41	185.23	200.32	227.22	215.25	193.03	173.09
-	-	-	118.01	155.06	220.15	210.25	221.74	251.06	241.18	226.03	211.03
-	-	-	105.88	142.64	190.35	180.52	195.88	223.39	211.16	191.44	176.05
-	-	-	96.52	143.09	184.06	177.24	189.62	213.28	208.34	190.46	175.15
-	-	-	91.47	137.06	178.48	171.29	185.31	207.94	198.46	180.89	162.91
-	-	-	83.82	130.34	161.62	157.57	174.07	199.80	191.77	176.71	161.65
-	-	-	97.60	139.86	181.76	174.93	189.07	218.36	203.43	186.97	172.68
71.09	76.18	87.85	89.57	131.40	161.99	156.74	173.18	195.10	185.14	170.16	155.93
-	-	-	110.40	177.33	216.87	215.00	227.20	251.11	243.13	228.70	210.31
-	-	-	103.82	151.02	185.19	178.55	194.42	213.89	206.46	193.68	173.31
-	-	-	-	125.61	155.53	151.06	163.78	181.38	175.06	163.24	147.42
-	-	-	-	114.95	162.79	127.93	131.85	143.36	210.54	197.38	152.02
68.42	70.97	83.39	-	122.13	-	135.50	153.16	173.36	193.21	177.68	150.41
-	-	-	82.05	126.27	159.24	154.49	168.74	190.67	180.85	166.38	149.81
-	-	-	95.96	136.03	171.12	165.32	176.27	199.28	189.09	172.83	157.22
-	-	-	88.84	132.71	168.07	160.96	173.76	192.98	181.16	167.37	145.67
58.73	74.27	77.12	102.56	137.53	140.84	141.70	154.38	178.02	164.98	149.40	135.06
-	-	-	-	-	-	133.91	147.49	-	-	148.62	135.93
-	-	-	-	141.05	-	-	-	-	-	-	-
-	-	-	-	127.34	157.29	149.01	163.92	183.12	185.25	171.94	155.53
-	-	-	-	118.53	148.69	137.96	149.31	172.23	-	-	-

다. 配合飼料 月別價格(工場渡價格)

○ 1983

區 分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어린병아리	211.73	214.31	214.09	212.58	213.69	215.21
중 병 아 리	191.95	195.16	195.11	193.80	195.64	196.67
큰 병 아 리	165.72	168.57	168.27	167.51	169.31	170.05
산 란 초 기	179.17	181.52	181.57	181.16	182.29	183.54
산 란 중 기	168.33	179.09	177.83	186.23	187.02	187.94
산 란 말 기	164.78	169.06	165.47	164.48	157.67	157.67
종 계	187.76	191.56	191.76	189.97	191.33	191.84
육 계 전 기	229.55	231.82	231.87	230.72	233.09	233.68
육계 후기 1	221.21	224.41	223.78	222.34	225.02	226.04
육계 후기 2	186.00	186.00	186.00	186.10	-	-
젖먹이돼지	212.45	214.40	214.41	212.80	214.99	215.50
육 성 돈	183.27	185.67	185.74	185.19	186.82	187.54
비육돈전기	179.87	182.70	182.31	181.80	181.76	182.94
비육돈후기	174.95	175.58	176.15	178.32	179.44	180.46
임 신 돈	161.00	163.26	163.79	168.00	169.79	168.36
포 유 돈	177.43	179.91	180.17	180.52	182.26	182.70
총 돈	162.04	165.04	165.06	165.62	165.03	166.21
어린송아지	215.88	218.38	218.07	217.98	220.43	221.76
중 송 아 지	185.00	189.72	189.18	187.17	188.91	189.94
큰 송 아 지	155.18	157.59	156.51	155.71	157.26	157.41
임 신 우	127.20	127.20	127.20	128.07	129.80	129.80
착 유 1	137.31	-	-	155.68	145.79	145.77
착 유 2	158.86	160.49	160.58	160.71	162.49	163.21
착 유 3	167.77	168.68	168.57	168.04	168.86	169.31
종 모 우	138.11	140.23	138.64	140.61	138.61	138.47
고깃소전기	164.53	167.28	167.89	165.87	167.75	169.81
고깃소후기	143.71	145.38	145.55	145.23	147.31	146.86
육 성 비 육	147.95	156.64	156.43	161.19	160.96	161.09
큰 소 비 육	142.04	141.72	141.52	142.34	143.49	143.54

單位：원 / kg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12 月	平 均
221.11	223.35	221.65	222.20	242.36	249.92	221.85
200.04	201.07	201.02	201.00	219.74	226.25	201.29
177.61	179.03	178.50	179.14	196.12	201.52	176.78
191.27	192.21	192.54	193.73	210.09	216.35	190.45
195.65	194.78	195.27	196.96	215.19	220.78	192.09
162.95	159.75	166.46	164.57	177.14	182.35	166.03
200.87	201.64	202.26	204.18	220.00	230.63	200.32
239.51	240.62	239.85	239.87	216.35	269.74	240.14
231.59	233.26	233.15	235.50	253.56	259.78	232.47
-	-	-	-	-	-	186.00
222.59	222.97	223.71	224.17	243.78	251.07	221.74
197.28	199.48	199.35	199.50	217.09	223.65	195.88
189.67	190.59	191.02	190.77	207.83	214.19	189.62
185.58	185.58	185.40	188.34	204.51	209.43	185.31
174.61	175.63	176.53	176.55	192.40	198.87	174.07
189.80	190.82	190.66	192.00	208.71	213.90	189.07
174.30	175.14	175.71	176.81	190.43	196.82	173.18
228.43	228.92	227.96	229.18	246.72	252.68	227.20
193.26	193.62	192.89	193.73	213.76	215.87	194.42
164.30	165.40	166.58	165.98	179.47	183.93	163.78
129.80	128.10	134.20	134.20	143.29	143.36	131.85
149.95	147.03	159.77	156.64	163.97	169.73	153.16
169.00	169.81	170.71	171.18	186.17	191.62	168.74
176.63	177.48	177.53	178.55	193.88	199.98	176.27
147.79	149.26	151.75	151.59	165.74	169.20	147.49
175.71	175.43	176.11	176.47	182.59	195.87	173.76
156.46	157.38	158.71	159.13	167.43	179.36	154.38
164.71	163.60	169.96	169.96	175.17	179.33	163.92
148.25	150.14	154.43	151.07	160.95	172.25	149.31

區 分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어린병아리	245.00	249.92	249.82	247.82	247.81	247.81
중병아리	221.86	226.25	226.25	224.72	224.72	225.70
큰병아리	197.86	201.52	200.96	200.95	200.95	200.95
산란초기	213.86	216.35	216.35	216.54	216.54	216.54
산란중기	208.56	220.78	220.78	216.60	216.61	216.61
산란말기	187.00	182.35	182.35	-	-	-
총 계	221.91	230.63	230.63	227.16	227.16	227.16
육계전기	265.01	269.74	269.74	269.91	269.90	269.90
육계후기 1	254.79	259.78	259.78	259.05	259.05	259.05
젖먹이돼지	247.89	251.07	251.07	251.51	251.50	251.50
육성돈	220.32	223.65	223.65	223.76	223.76	223.76
비육돈전기	210.22	214.19	214.19	213.42	213.42	213.42
비육돈후기	203.21	209.43	209.43	208.06	208.06	208.30
임신돈	195.39	198.87	198.87	200.49	200.49	200.49
포유돈	210.26	213.90	213.90	214.41	214.43	214.43
종돈	191.87	196.82	196.82	195.18	195.18	195.18
어린송아지	243.32	252.68	252.68	251.63	251.63	251.63
중송아지	208.52	215.87	215.87	214.14	214.14	214.14
큰송아지	172.72	183.93	183.93	181.78	181.78	181.78
임신우	-	143.36	143.36	-	-	-
착유 1	180.62	169.73	169.73	-	-	-
착유 2	188.92	191.62	191.62	190.75	190.75	190.75
착유 3	197.49	199.98	199.98	199.52	199.51	199.37
종모우	161.24	169.20	169.20	163.22	163.22	163.22
고깃소전기	186.51	195.87	195.87	193.16	193.16	193.16
고깃소후기	177.18	179.36	179.36	177.92	177.92	177.92
육성비육	180.58	179.33	179.33	184.25	184.25	184.25
큰소비육	174.24	172.25	172.25	172.23	172.23	172.23

單位：원 / kg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12 月	平 均
247.67	247.67	247.67	247.67	247.67	247.67	247.85
225.56	225.56	225.56	225.56	225.56	225.56	225.18
200.81	200.81	200.81	200.81	200.81	200.81	200.72
216.40	216.40	216.40	216.40	216.40	216.40	216.22
216.61	216.61	216.61	216.61	216.61	216.61	216.63
-	-	-	-	-	-	183.90
227.00	227.00	227.00	227.00	227.00	227.00	227.22
269.76	269.76	269.76	269.76	269.76	269.76	269.40
258.89	258.89	258.89	258.89	258.89	258.89	258.74
251.36	251.36	251.36	251.36	251.36	251.36	251.06
223.62	223.62	223.62	223.62	223.62	223.62	223.39
213.42	213.42	213.42	213.42	213.42	213.42	213.28
208.14	208.14	208.14	208.14	208.14	208.14	207.94
200.49	200.49	200.49	200.49	200.49	200.49	199.80
214.19	214.19	214.19	214.19	214.19	214.19	218.36
195.03	195.03	195.03	195.03	195.03	195.03	195.10
251.63	251.63	251.63	251.63	251.63	251.63	252.11
213.99	213.99	213.99	213.99	213.99	213.99	213.89
181.78	181.78	181.78	181.78	181.78	181.78	181.38
-	-	-	-	-	-	143.36
-	-	-	-	-	-	173.36
190.60	190.60	190.60	190.60	190.60	190.60	190.67
199.37	199.22	199.22	199.22	199.22	199.22	199.28
163.22	163.22	163.22	163.22	163.22	163.22	164.05
193.00	193.00	193.00	193.00	193.00	193.00	192.98
177.77	177.77	177.77	177.77	177.77	177.77	178.02
184.25	184.25	184.25	184.25	184.25	184.25	183.12
172.23	172.23	172.23	172.23	172.23	172.23	172.23

○ 1985

區 分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어린병아리	247.67	247.67	247.67	247.43	239.14	236.66
중 병 아 리	225.56	225.56	225.56	225.33	216.73	214.12
큰 병 아 리	200.81	200.81	200.81	200.81	193.52	190.19
산 란 초 기	216.24	216.24	216.24	215.93	204.30	201.11
산 란 중 기	216.60	216.60	216.60	215.60	227.30	213.36
산 란 말 기	-	-	-	-	-	-
총 계	227.00	227.00	227.00	226.77	217.41	214.14
육 계 전 기	269.68	269.68	269.68	269.68	258.57	256.20
육 계 후 기 1	258.89	258.89	258.89	258.89	248.72 ^o	245.26
육 계 후 기 2	-	-	-	-	-	-
젖 먹 이 패 지	251.36	251.36	251.36	251.20	238.97	236.26
육 성 돈	223.62	223.62	223.62	223.46	212.59	209.59
비육돈전기	213.42	213.42	213.42	213.06	212.58	214.65
비육돈후기	208.06	208.06	208.06	207.90	197.46	194.37
임 신 돈	200.49	200.49	200.30	200.05	194.74	192.81
포 유 돈	214.19	214.19	214.19	214.03	203.70	201.20
총 돈	195.03	195.03	195.03	194.85	185.47	183.38
어린송아지	251.63	251.63	251.27	251.27	241.58	240.24
중 송 아 지	213.99	213.99	213.66	213.66	209.01	201.58
큰 송 아 지	181.78	181.78	181.41	181.41	177.92	175.11
임 신 우	-	-	-	-	-	-
착 유 1	-	-	-	-	-	-
착 유 2	190.60	190.60	190.27	190.27	181.51	178.74
착 유 3	199.22	199.22	190.97	198.97	190.00	186.73
총 모 우	163.22	163.22	163.22	163.22	185.00	183.69
큰 소비육 I	190.32	190.32	190.32	190.56	183.00	182.22
큰 소비육 II	176.83	176.83	176.83	175.91	166.02	163.50
육 성 비 육	184.25	184.25	184.25	184.25	183.12	187.83

單位：원 / kg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12 月	平 均
235.65	232.86	228.31	227.30	225.22	224.27	236.65
-	210.37	206.34	206.51	202.68	202.49	214.77
186.97	187.53	183.73	182.40	179.03	176.85	190.29
201.67	198.09	193.62	190.83	186.62	182.30	201.93
215.05	210.28	217.14	201.71	198.90	194.83	212.00
-	204.86	191.42	188.14	184.69	179.85	189.79
214.79	213.50	206.57	203.62	203.46	201.70	215.25
230.11	254.69	251.51	249.81	246.89	246.50	256.08
221.86	249.43	241.76	240.46	237.30	240.06	246.70
-	250.66	247.70	242.03	243.22	243.10	245.35
237.75	238.80	238.67	235.11	232.49	230.88	241.18
210.04	207.25	202.73	202.26	197.16	197.96	211.16
212.41	206.33	202.36	202.16	198.70	197.51	208.34
195.91	196.91	193.24	192.02	190.52	189.05	198.46
192.77	187.83	184.83	183.59	181.71	181.71	191.77
202.07	200.46	196.48	195.53	192.81	192.36	203.43
183.29	181.26	178.82	177.58	176.79	175.09	185.14
241.12	242.88	239.13	236.99	233.52	236.27	243.13
202.87	205.88	203.69	202.06	198.73	198.43	206.46
176.11	173.02	169.67	168.98	167.33	166.17	175.06
-	209.58	204.59	210.95	213.44	214.12	210.54
-	197.73	195.00	192.68	190.86	189.77	193.21
179.64	178.24	174.62	173.52	171.48	170.72	180.85
187.53	185.85	182.64	181.10	180.60	178.26	189.09
185.33	168.72	165.07	163.02	153.34	151.17	153.75
178.53	177.78	174.50	178.91	169.23	168.24	181.16
164.58	161.06	156.85	155.87	152.20	153.33	164.98
186.82	208.80	177.07	176.91	190.78	174.65	185.25

○ 1986

區 分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어린병아리	221.85	213.66	220.47	178.72	221.12	219.03
중 병 아리	200.31	199.98	200.01	199.64	199.81	197.89
큰 병 아 리	176.19	175.30	174.66	174.23	174.62	171.87
산 란 초 기	182.32	166.88	181.51	180.50	180.23	178.81
산 란 중 기	192.80	193.14	192.68	192.77	190.06	185.92
산 란 말 기	179.57	178.44	178.31	177.74	176.51	177.18
중 계	199.52	199.56	195.46	194.86	196.17	196.91
육 계 전 기	244.32	243.86	243.89	243.03	243.32	241.09
육 계 후 기	234.05	239.12	231.43	232.94	232.98	228.86
젖 먹 이 돼 지	229.54	223.77	229.55	228.43	229.02	227.48
육 성 돈	196.13	195.91	195.46	195.50	194.90	193.76
비육돈전기	196.37	193.70	195.48	194.10	194.02	192.83
비육돈후기	188.54	184.66	187.49	186.63	186.94	179.40
임 신 돈	179.01	179.40	193.79	178.71	177.64	177.65
포 유 돈	191.16	190.99	190.75	189.93	189.56	188.40
총 돈	174.42	173.78	173.35	172.63	172.34	170.55
어린송아지	234.13	230.68	233.97	240.21	232.74	228.86
중 송 아 지	203.66	197.20	196.84	195.77	196.18	195.73
큰 송 아 지	166.07	164.91	165.92	166.19	165.32	165.48
임 신 우	214.97	207.20	210.54	208.99	214.78	212.79
착 유 1	191.04	189.01	186.03	187.55	187.69	180.07
착 유 2	170.04	169.35	169.94	169.09	169.43	168.01
착 유 3	177.45	176.97	176.61	175.90	176.85	174.85
종 모 우	159.46	158.39	151.32	148.74	150.47	150.15
큰 소비육 I	167.49	166.68	166.70	165.77	165.97	164.01
큰 소비육 II	152.78	152.28	152.33	152.31	152.67	151.23
육 성 비 육	174.81	174.41	173.65	188.48	172.02	172.67

單位：원 / kg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12 月	平 均
216.75	213.56	210.19	209.05	206.46	204.79	211.30
196.54	193.84	191.00	190.39	187.98	185.89	195.27
170.61	169.58	166.54	162.93	164.02	161.57	170.18
178.25	175.97	172.57	171.27	167.84	166.83	175.25
186.02	186.26	181.53	179.80	178.48	176.31	186.31
177.45	174.04	169.77	172.61	174.61	171.55	175.65
195.93	193.10	186.53	187.86	186.30	184.17	193.03
240.36	238.09	233.85	234.69	232.53	229.24	239.02
239.59	227.02	223.63	222.69	220.50	217.91	229.23
235.02	226.95	220.71	220.18	219.68	216.03	225.53
192.75	190.80	187.43	186.62	184.80	181.25	191.44
191.33	190.46	187.30	185.66	183.15	181.12	190.46
181.95	179.23	176.02	174.77	173.80	171.26	180.89
176.83	174.76	172.00	171.34	170.39	168.96	176.71
188.21	186.22	183.61	183.25	181.56	180.02	186.97
171.33	169.79	167.48	166.62	165.65	164.01	170.16
228.56	226.78	222.60	223.62	221.95	220.32	228.70
201.47	201.24	186.95	186.24	180.32	182.60	193.68
165.33	164.29	160.53	159.49	158.79	156.58	163.24
212.18	215.93	167.90	168.28	166.56	168.44	197.38
180.22	173.73	171.38	166.93	160.16	158.39	177.68
167.00	164.99	162.96	162.17	165.16	158.39	166.38
174.01	172.36	169.39	168.11	166.97	165.30	172.81
149.54	147.97	146.95	144.43	144.15	143.86	149.62
163.97	161.93	158.48	157.17	156.19	154.07	162.37
150.51	149.27	146.21	145.32	145.12	142.82	149.40
171.98	170.34	167.57	167.09	165.90	164.38	171.94

○ 1987

區 分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어린병아리	202.10	196.38	197.44	194.52	194.22	193.06
중 병 아 리	184.46	180.86	178.98	176.18	173.02	175.37
큰 병 아 리	158.98	155.22	152.34	150.18	149.41	148.73
산 란 초 기	164.26	160.83	158.49	156.77	155.84	155.58
산 란 중 기	175.26	173.85	171.49	169.97	170.12	167.07
산 란 말 기	164.51	157.93	157.54	153.02	157.74	152.59
총 계	187.16	177.38	174.72	173.44	171.55	171.61
육 계 전 기	227.27	222.80	220.86	216.39	216.81	216.21
육 계 후 기	215.13	211.54	208.49	205.91	204.70	204.59
젓먹이돼지	216.47	214.92	213.75	210.04	210.76	210.60
육 성 돈	182.57	179.38	179.00	175.87	175.66	175.15
비육돈전기	181.61	179.51	178.43	173.76	174.24	174.30
비육돈후기	170.01	167.71	166.93	162.04	163.71	162.51
임 신 돈	169.10	166.08	164.77	161.67	161.11	161.42
포 유 돈	179.38	176.60	176.44	172.58	170.46	172.39
총 돈	163.43	160.71	158.65	156.41	155.36	155.26
어린송아지	217.34	215.83	214.37	210.24	209.79	208.73
중 송 아 지	181.64	178.83	177.72	174.01	172.45	173.63
큰 송 아 지	155.00	152.14	150.35	146.89	146.52	146.55
임 신 우	168.92	167.43	135.32	157.91	151.72	150.08
착 유 1	154.58	153.48	151.20	152.28	149.03	148.78
착 유 2	156.98	154.27	152.97	150.47	149.25	149.14
착 유 3	163.86	161.68	166.60	155.27	156.42	155.42
총 모 우	142.78	141.52	140.01	135.67	134.18	133.92
큰소비육I	151.76	149.61	147.97	145.55	144.79	144.79
큰소비육II	141.74	139.11	137.74	135.16	136.60	134.27
육 성 비 육	163.49	160.32	158.79	156.03	152.32	154.53

單位：원 / kg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12 月	平 均
193.25	192.29	193.39	191.16	192.31	191.77	194.33
173.99	175.57	173.52	173.05	173.60	173.14	175.98
148.84	153.19	148.59	147.23	147.47	146.43	150.55
154.94	152.11	154.07	153.24	153.81	153.10	156.09
167.29	165.81	165.05	164.58	164.44	164.69	168.30
155.62	155.87	151.20	151.47	151.16	150.94	155.05
169.93	170.35	170.92	170.12	169.79	170.09	171.61
215.80	215.53	213.97	210.45	214.05	213.95	217.01
204.37	204.96	203.81	203.07	201.86	202.57	205.92
210.00	210.07	209.34	208.65	209.04	208.67	211.03
174.88	175.21	173.37	173.51	174.40	173.56	176.05
173.21	174.53	170.82	173.28	174.00	174.12	175.15
161.45	162.16	160.55	159.55	159.20	159.13	162.91
160.74	160.85	163.75	157.69	157.74	154.92	161.65
171.35	172.15	170.07	170.39	170.23	170.14	172.68
154.69	155.06	153.19	152.84	152.74	152.84	155.93
209.85	207.41	208.34	205.51	208.29	207.98	210.31
172.00	171.06	170.37	169.70	169.37	168.90	173.31
145.59	145.94	146.64	144.26	144.50	144.69	147.42
151.03	151.59	149.23	148.63	144.18	148.16	152.02
147.33	149.64	148.05	147.96	149.79	152.83	150.41
148.24	148.30	146.73	147.07	147.07	147.24	149.82
155.69	155.78	154.30	153.94	153.88	153.75	157.22
134.84	134.04	132.51	132.48	134.25	134.91	135.93
144.51	145.30	143.62	143.50	143.43	143.23	145.67
133.89	133.79	132.80	132.52	132.53	132.53	135.06
154.62	154.00	153.20	152.82	153.02	153.21	155.53

㉒. 政府管理 糧穀副產物價格

區 分	單 量	'62.12.26	'61. 1. 1.	'64. 1. 1.	'65.12. 1.	'67. 3. 1
白 碎 米	54 kg	350	350	480	580	630
屑 米	54	300	300	450	550	604
米 糠	36	120	120	180	210	330
脫脂糠(壓搾)	42	-	134	190	-	280
脫脂糠(抽出)	36	-	-	-	163	240
麥 碎	54	-	192	330	410	500
麥 糠	36	70	70	120	130	220
壓 麥 碎	54	-	215	330	410	500
壓 麥 糠	36	-	70	120	130	220
小 麥 碎	54	200	200	370	560	600
小 麥 斗	36	122	122	170	180	300
小 麥 糠	36	-	51	120	-	220
壓 小 麥 碎	54	-	215	320	560	600
壓 小 麥 糠	36	-	36	120	130	220

註：脫脂糠 '79.4.13 自由價格

小麥斗 '83.11.1 自由價格

㉓. 輸入 小麥加工 副產物 價格

單位：원

區 分	單 量	指 定 價 格		備 考
		噸 當	kg 當	
'68. 7. 1	36 kg	400	11.11	
'71. 6. 7	"	440	12.22	
'71. 8.25	"	500	13.89	
'73. 7.11	"	650	18.06	
'75. 9.24	"	1,080	30.00	
'75.12.31	"	1,520	42.22	
'80.10.13	"	2,412	67.00	
'82. 1.28	"	2,772	77.00	
'82.12.11	"	3,456	96.00	
'83.11. 1	"	價格 自律化		

單位：元/呎

'68.4.1	'71.11.1	'73.4.3	'75.9.24	'75.12.31	'80.10.13	'82.1.28	'82.12.11
1,100	1,200	1,240	2,160	3,100	4,320	4,968	5,508
1,100	1,200	1,240	1,980	3,070	4,320	4,968	5,508
360	560	580	1,380	2,000	2,160	2,484	2,481
300	450	450	-	-	-	-	-
257	390	390	930	1,350	-	-	-
700	1,000	1,000	1,660	2,410	4,104	4,698	4,752
270	410	420	980	1,380	1,980	2,268	3,348
700	1,000	1,000	1,700	2,150	4,104	4,698	4,752
270	410	420	980	1,300	1,980	2,268	3,348
910	1,000	1,000	1,700	2,960	4,104	4,698	4,752
320	450	460	1,080	1,520	2,412	2,772	3,456
270	410	420	980	1,270	1,980	2,268	3,348
910	1,000	1,000	1,700	2,340	4,104	4,698	4,752
270	450	460	1,080	1,490	1,980	2,268	3,348

4. 飼料用 輸入穀類 安定 基準價格

年度別	產地別	品目別	基準價格		摘要
			\$	₩	
'75. 7/31	泰國產	호 수 수	-	72,750	C & F \$150 基準
	美國產	"	-	74,205	" 153
'76. 1/ 1	泰國產	"	132		
	美國產	"	135		
	湄 湄	수 수 수	130		
'77. 8/12	泰國產	호 수 수	127		
	美國產	"	130		
	湄 湄	수 수 수	125		
'78. 5/21	"	小 麥	135		
'78. 5/22	"	호 수 수	130		
	"	수 수 수	132		
'79. 6/ 4	"	小 麥	132		
'79. 6/ 5	"	호 수 수	-	70,500	C & F \$ 135 基準
	"	수 수 수			基準價格制을 撤廢
'80. 1/21	"	小 麥			"
'80. 1/22	"	호 수 수	160		
	"	수 수 수	150		基準價格制을 復活
'80.10/30	"	호 수 수	185		
	"	수 수 수			基準價格制을 撤廢
'80.12/26	"	호 수 수	195		
'81.12/17	"	"	180		
'82. 1/19	"	"	160		
'82. 3/ 3	"	"	150		
'82. 4/ 1	"	"	145		
'82.11/ 1	"	"	135		
'83. 6/ 1	"	"	145		
'83.10/ 1	"	"	160		
'84. 1/ 1	"	"	-		基準價格制을 撤廢

5. 配合飼料 工場施設

가. 配合飼料 生産施設 現況

(稼動時間 : 8 H / 日 기준)

區分	飼料工場		飼料工場増設		許可取消		新規許可		合 計	
	工場數	年産能力 千% _年	工場數	年産能力 千% _年	工場數	年産能力 千% _年	工場數	年産能力 千% _年	工場數	年産能力 千% _年
'75	74	1,608	△ 12	△ 153	2	72	1	30	73	1,413
'76	73	1,413	1	5	4	18	5	84	74	1,483
'77	74	1,483	△ 1	△ 36	-	-	1	12	75	1,496
'78	75	1,496	1	99	-	-	-	-	75	1,595
'79	75	1,595	10	477	-	-	3	561	78	2,633
'80	78	2,633	10	526	1	9	1	30	78	3,180
'81	78	3,180	6	206	2	114	3	311	79	3,583
'82	79	3,583	2	74	1	60	-	-	78	3,597
'83	78	3,597	9	918	2	72	2	180	78	4,623
'84	78	4,623	11	567	-	-	-	-	78	5,190
'85	78	5,190	7	392	-	-	-	-	78	5,582
'86	78	5,582	9	375	-	-	2	180	80	6,137
'87	80	6,137	9	370	-	-	-	-	80	6,507

나. 飼料調節 團體別, 市道別 生産能力

'88.1.1 기준(單位: %)

區分	飼 協		畜 協		計		年間生産量 ('87)
	工場數	日産能力	工場數	日産能力	工場數	日産能力	
서울	2	530	1	130	3	660	406,177
釜山	5	1,430	1	220	6	1,650	805,346
大邱	1	330	1	190	2	520	211,808
仁川	9	3,710	1	260	10	3,970	1,878,258
光州	-	-	1	150	1	150	74,522
京畿	14	4,015	4	740	18	4,755	2,145,238
江原	1	600	1	300	2	900	266,848
忠北	2	240	1	300	3	540	207,959
忠南	7	2,030	4	310	11	2,340	884,940
全北	5	1,375	1	345	6	1,720	515,176
全南	5	680	1	300	6	980	347,444
慶北	4	1,290	1	300	5	1,590	560,326
慶南	5	1,795	-	-	5	1,795	677,173
濟州	2	120	-	-	2	120	37,014
計	62	18,145	18	3,545	80	21,690	9,018,229

다. 配合飼料 生産計劃 對 實績

單位：千噸，%

區 分	生産能力(A)	配 合 飼 料 生 産			稼 動 率 (C/A)	備 考
		計 劃(B)	實 績(C)	對 比(C/B)		
'62	-	-	8	-	-	
'63	123	-	100	-	81	
'64	582	90	51	56	9	
'65	600	110	47	43	8	
'66	561	130	108	83	19	
'67	677	150	107	71	19	
'68	885	217	223	103	25	
'69	1,062	308	368	119	35	
'70	1,126	450	508	113	45	
'71	1,117	627	702	112	63	
'72	1,391	757	776	103	56	
'73	1,559	902	910	101	58	
'74	1,608	1,075	927	86	58	
'75	1,413	1,000	901	90	64	
'76	1,483	1,281	1,382	108	93	
'77	1,496	1,820	1,899	104	127	
'78	1,596	2,500	2,693	108	169	
'79	2,633	4,300	3,880	90	147	
'80	3,181	3,500	3,462	98.9	109	
'81	3,583	3,500	3,491	99.7	97	
'82	3,597	4,200	4,420	105	123	
'83	4,623	5,500	5,852	106	127	
'84	5,190	5,922	5,985	101	115	
'85	5,582	6,016	6,451	107.2	116	
'86	6,137	7,236	7,675	106.1	125	
'87	6,507	8,750	9,018	103.1	139	
'88						
'89						

라. 市道別 生産能力 與 生産實績

單位：千噸

區 分	'75			'76			'77		
	工場數	年産能力	生産實績	工場數	年産能力	生産實績	工場數	年産能力	生産實績
서 울	18	317	259	17	354	387	17	354	489
釜 山	11	290	156	11	290	249	11	290	340
大 邱	-	-	-	-	-	-	-	-	-
仁 川	-	-	-	-	-	-	-	-	-
京 畿	15	301	195	16	308	338	16	312	457
江 原	1	11	9	1	11	17	1	18	27
忠 北	2	60	33	2	60	50	2	50	69
忠 南	6	79	87	6	84	120	6	84	160
全 北	4	117	47	4	117	45	4	117	83
全 南	8	82	21	10	103	40	10	103	70
慶 北	5	117	76	5	117	112	5	117	168
慶 南	1	24	10	1	24	17	1	24	27
濟 州	1	15	8	1	15	7	2	27	9
計	72	1,413	901	74	1,483	1,382	75	1,496	1,899

※ 許可能力 基準임. (但, '81年은 製造施設 能力基準)

單位：千噸

區 分	'78			'79			'80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서울	17	354	640	14	395	745	10	386	488
釜山	11	290	509	11	398	683	10	368	544
大邱	-	-	-	-	-	-	-	-	-
仁川	-	-	-	-	-	-	-	-	-
京畿	16	338	674	21	993	1,231	23	1,105	1,407
江原	1	18	54	2	150	68	2	150	124
忠北	2	60	96	2	60	117	2	60	76
忠南	6	148	228	7	249	357	9	431	310
全北	4	117	111	4	117	132	5	211	81
全南	10	103	97	10	103	141	10	130	117
慶北	5	117	230	5	117	328	5	292	260
慶南	1	24	38	1	24	56	1	24	38
濟州	2	27	16	2	27	22	2	27	19
計	75	1,596	2,693	79	2,633	3,880	79	3,181	3,462

單位：千噸

區 分	'81			'82			'83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서울	9	363	406	9	360	449	8	378	570
釜山	10	373	496	10	368	625	10	402	771
大邱	2	82	115	2	81	172	2	96	243
仁川	9	799	836	9	792	1,017	10	948	1,345
京畿	15	577	654	15	570	851	15	759	1,137
江原	2	150	161	2	150	129	2	180	146
忠北	2	61	53	2	60	65	2	162	78
忠南	8	480	338	8	476	439	8	638	598
全北	5	312	144	5	311	283	5	333	389
全南	10	129	109	10	177	150	10	349	220
慶北	3	204	135	3	201	165	3	213	201
慶南	1	25	32	1	24	58	1	129	128
濟州	2	28	14	2	27	17	2	36	26
計	78	3,583	3,491	78	3,597	4,420	78	4,623	5,852

單位：千噸

區 分	'84			'85			'86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서 울	6	348	523	5	363	469	5	363	504
釜 山	8	423	695	8	423	715	7	438	780
大 邱	1	57	97	1	57	96	2	156	113
仁 川	10	1,008	1,395	10	1,023	1,466	10	1,164	1,654
京 畿	15	966	1,175	15	1,115	1,314	16	1,133	1,679
江 原	2	156	163	2	156	148	9	270	206
忠 北	3	162	199	3	162	220	3	162	207
忠 南	9	638	578	9	637	615	10	661	709
全 北	5	426	298	5	426	358	5	426	441
全 南	11	397	300	10	377	335	9	368	372
慶 北	4	384	332	4	384	357	5	477	457
慶 南	3	189	203	4	423	329	4	483	523
濟 州	2	36	27	2	36	29	2	36	30
計	79	5,190	5,985	79	5,582	6,451	80	6,137	7,675

單位：千噸

區 分	'87			'88			'89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工場數	年產能力	生產實績
서 울	3	198	406						
釜 山	6	495	805						
大 邱	2	156	212						
仁 川	10	1,191	1,878						
光 州	1	45	75						
京 畿	18	1,427	2,145						
江 原	2	270	267						
忠 北	3	162	208						
忠 南	11	702	885						
全 北	6	516	515						
全 南	6	294	348						
慶 北	5	477	560						
慶 南	5	538	677						
濟 州	2	36	37						
計	80	6,507	9,018						

여 백

6. 配合飼料 検査内訳

가. 配合飼料 檢査 實績

單位：點

區 分	檢 査			違背件數(C)	違背率 (C/B)	備 考
	計 劃 (A)	實 績 (B)	比 率 (B/A)			
'67	-	555	-	119	21.4	
'68	-	679	-	133	19.6	
'69	-	748	-	110	14.7	
'70	-	663	-	105	15.8	
'71	-	768	-	87	11.3	
'72	-	1,555	-	135	8.7	
'73	-	1,817	-	328	18.1	
'74	-	2,133	-	312	14.6	
'75	-	2,746	-	193	7.0	
'76	2,000	1,969	98.5	121	6.1	
'77	2,200	2,162	98.3	164	7.6	
'78	3,000	3,225	107.5	156	4.8	
'79	4,200	5,061	121	288	5.7	
'80	4,200	5,138	122	133	2.6	
'81	4,200	5,004	119	110	2.2	
'82	4,200	4,904	117.6	155	3.2	
'83	5,000	5,299	106	136	2.6	
'84	5,000	5,345	107	74	1.4	
'85	5,000	6,006	120	74	1.2	
'86	5,000	6,058	121	53	0.9	
'87	5,000	6,225	125	60	1.0	
'88						
'89						

나. 配合飼料 種別 檢査 與 違背內譯

區 分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養 鷄 用	檢査件數	1,143	1,220	1,703	2,428	2,131	2,055	1,890	1,877	1,813	1,959	1,926	1,778
	違背件數	67	99	90	151	56	56	63	48	26	20	19	10
	違背率	5.9	8.1	5.3	6.2	2.6	2.7	3.3	2.6	1.4	1.0	1.0	0.6
養 豚 用	檢査件數	494	570	928	1,615	1,614	1,544	1,546	1,770	1,772	1,981	2,019	2,063
	違背件數	30	38	37	90	45	25	42	33	15	23	12	10
	違背率	5.1	6.7	4.0	5.6	2.8	1.6	2.7	1.9	0.8	1.2	0.6	0.5
乳 牛 用	檢査件數	189	244	320	655	796	125	826	904	952	1,119	1,129	1,224
	違背件數	16	15	14	31	20	11	21	21	14	22	9	26
	違背率	8.5	6.1	4.4	4.7	2.5	1.5	2.5	2.3	1.5	2.0	0.8	2.1
肥 育 用	檢査件數	143	128	274	363	597	680	602	682	733	846	896	1,012
	違背件數	8	12	15	16	12	18	27	29	11	3	3	6
	違背率	5.6	9.4	5.5	4.4	2.0	2.6	4.5	4.2	1.5	0.4	0.3	0.6
其 他	檢査件數	-	-	-	-	-	-	40	66	74	101	88	148
	違背件數	-	-	-	-	-	-	2	5	8	6	10	8
	違背率	-	-	-	-	-	-	5.0	7.6	1.1	5.9	11.4	1.3
計	檢査件數	1,969	2,162	3,225	5,061	5,138	5,004	1,148	5,299	5,345	6,006	6,058	6,225
	違背件數	121	164	156	288	133	110	61	136	74	74	53	60
	違背率	6.1	7.6	4.8	5.7	2.6	2.2	3.2	1.6	1.4	1.2	0.9	1.0

㉔. 單味飼料 檢查 實績

單位：點

區 分	檢 查			違背件數(C)	違背率 (C / B)	備 考
	計 劃 (A)	實 績 (B)	比率 (B/A)			
'78	600	354	59	107	30.2	
'79	600	653	109	133	20.4	
'80	600	595	99	89	14.9	
'81	600	628	105	72	11.5	
'82	600	707	118	76	10.8	
'83	800	917	115	102	11.1	
'84	1,000	1,011	101	116	11.5	
'85	1,500	1,437	96	126	8.8	
'86	1,500	1,497	100	96	6.4	
'87	1,500	1,608	107	78	4.9	
'88						
'89						

여 백

7. 單味飼料現況

가. 單味飼料 製造業의 現況

單位：個所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어 분	28	40	57	73	81	85	84	81	78	70	63	62		
어즙흡착	-	12	18	17	15	17	22	24	21	14	11	11		
육 분	2	11	11	11	7	7	6	6	7	-	1	2		
우 모 분	2	14	6	7	8	8	8	8	8	10	13	15		
육 골 분	2	6	9	7	4	6	6	5	4	1	1	1		
피 혁 분	6	19	13	-	-	1	1	-	-	1	1	1		
골 분	3	12	16	14	11	9	5	7	8	7	6	6		
인산칼슘	3	3	6	6	5	5	3	5	5	4	3	3		
광 물 질	-	-	-	-	-	-	9	14	20	16	20	24		
해 조 분	2	3	3	4	2	2	2	1	-	-	-	-		
패 분	-	-	-	-	-	-	-	10	-	-	-	-		
대 두 박	1	1	3	4	5	5	3	3	3	3	4	4		

나. 市道別 生産能力 및 實績('87.12月末 現在)

單位：톤

區 分	서울	釜山	大邱	仁川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魚 粉	生産能力 16	261.8		33	16	48		12	3	94	44	108.7		636.5
	生産實績 2,645	61,467		10,294	1,058	9,496		155	1,650	22,254	7,079	33,060		149,158
魚汁吸着	生産能力	14		30	12	18					20	5		99
	生産實績			55		382						17		454
肉汁吸着	生産能力										3			3
	生産實績													
肉 粉	生産能力						2.5	4						6.5
	生産實績						119							119
羽 毛 粉	生産能力	0.5		5.7	2	8			2.5	7	5			30.7
	生産實績	163		794	255	561				78	374			2,225
肉 骨 粉	生産能力									2				2
	生産實績									1,194				1,194
皮 革 粉	生産能力							4						4
	生産實績													
骨 粉	生産能力			1.4	3			3		4				11.4
	生産實績			77	1,740					5,793				7,610
磷酸칼슘	生産能力			60				15				45		120
	生産實績			23,884								37,351		59,821
磷 酸	生産能力											30		30
암모니아	生産實績											1,414		1,414
補助飼料	生産能力 4			12	22.5			3			416			457.5
	生産實績 669			465	1,269						8,517			10,920

다. 年度別 生産實績 및 使用實績

單位：千噸

區分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어분	54,225 (78,936)	71,061 (100,794)	76,396 (86,971)	91,816 (86,040)	102,906 (108,222)	104,150 (112,968)	125,239 (123,515)	114,778 (120,808)	144,792 (139,942)	149,158 (143,942)
어즙흡착	339 (102)	60 (305)	-	3,059 (183)	7,753 (5,395)	12,807 (5,961)	10,732 (2,900)	4,675 (-)	3,326 (126)	454 (65)
육분	3,653 (3,727)	3,910 (4,576)	1,509 (2,402)	106 (1,424)	948 (1,931)	1,475 (216)	429 (869)	55 (498)	- (347)	119 (507)
우모분	1,402 (3,806)	2,088 (3,643)	1,855 (3,091)	749 (1,116)	1,359 (1,412)	1,927 (1,536)	1,069 (722)	749 (455)	937 (1,105)	2,225 (1,144)
육골분	2,473 (6,264)	898 (1,547)	246 (592)	149 (684)	255 (806)	249 (4,534)	316 (4,210)	42 (482)	1,158 (750)	1,194 (1,727)
피혁분	10,413 (11,120)	- (1,131)	-	-	-	-	-	-	-	-
골분	2,213 (4,990)	3,709 (5,796)	2,536 (4,167)	2,463 (2,658)	2,225 (1,777)	3,058 (3,392)	4,816 (4,031)	4,935 (6,553)	6,805 (6,642)	7,610 (7,975)
인산칼슘	14,692 (12,475)	21,245 (15,430)	20,128 (15,126)	21,402 (16,117)	26,155 (23,528)	40,758 (36,523)	36,713 (32,842)	45,598 (40,732)	54,463 (47,049)	59,821 (57,551)
해조분	1,032	445 (113)	89 (44)	47	139	73	232	32	48	-

* ()內는 使用實績임.

라. 月別 魚粉 生産實績 및 使用實績

○ 1978

單位：噸

區分	生産(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産實績(B)					計
				養鷄	養豚	酪農	肥育	其他	
1	3,073(2,183)	5,107	2.8	109,525	32,419	24,286	16,024	219	182,473
2	2,580(1,838)	5,316	3.0	109,685	27,561	22,911	16,371	333	176,861
3	3,381(1,291)	7,151	3.3	138,622	29,649	25,819	19,663	383	214,136
4	3,854(1,006)	7,488	3.5	141,398	30,384	25,546	17,786	206	215,320
5	5,101(1,604)	6,607	2.9	150,997	30,831	25,070	19,485	209	226,592
6	5,805(3,033)	6,479	2.9	148,911	35,210	25,655	17,387	220	227,383
7	5,500(4,019)	6,591	3.1	135,346	36,900	24,571	18,033	232	215,082
8	4,750(4,135)	6,826	3.0	133,999	45,161	25,877	20,408	177	225,622
9	5,213(4,290)	6,861	2.9	136,161	50,173	27,911	21,879	145	236,269
10	4,849(3,879)	6,400	2.7	133,073	54,783	29,756	21,497	107	239,216
11	4,893(3,587)	6,808	2.7	140,351	59,335	30,210	21,816	149	251,861
12	5,226(2,601)	7,302	2.6	160,486	65,704	33,116	22,739	245	282,290
計	54,225	78,936	2.9	1,638,554	498,110	320,728	233,088	2,625	2,693,105

○ 1979

單位：%

區分	生產(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產實績(B)					
				養雞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5,815 (2,600)	-	-	165,429	70,816	35,233	21,673	123	293,274
2	6,147 (2,152)	-	-	172,555	74,242	38,135	19,030	220	304,182
3	6,866 (1,195)	-	-	191,971	78,231	40,443	20,444	184	331,273
4	5,316 (1,409)	59,880	3.1	184,587	88,132	39,276	21,956	198	334,149
5	7,925 (1,562)	-	-	191,105	108,669	37,680	23,594	214	361,262
6	7,528 (3,612)	-	-	166,651	104,113	31,808	16,973	180	319,725
7	6,296 (4,797)	7,009	2.2	160,768	108,172	30,708	19,391	148	319,187
8	5,640 (6,434)	6,779	2.1	157,258	109,797	32,757	20,646	122	320,580
9	3,973 (6,169)	7,330	2.1	171,559	117,485	36,340	26,966	166	352,516
10	4,629 (6,742)	7,342	2.2	160,008	108,322	36,747	23,714	137	328,928
11	5,674 (7,675)	6,371	2.1	157,255	89,885	37,978	25,755	191	311,064
12	5,252 (8,686)	6,083	2.0	164,423	72,031	41,407	26,064	170	304,095
計	71,061	100,794	2.6	2,043,569	1,129,895	438,512	266,206	2,053	3,880,235

○ 1980

單位：%

區分	生產(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產實績(B)					
				養雞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6,391 (6,753)	6,469	1.8	163,229	107,112	47,831	34,386	93	352,651
2	4,090 (5,627)	5,034	2.2	112,613	64,422	36,292	19,170	66	232,563
3	4,796 (6,079)	6,076	2.3	134,976	64,414	42,691	18,962	112	261,155
4	5,249 (5,942)	7,302	2.7	149,484	55,986	43,682	20,090	123	269,365
5	6,503 (5,185)	7,849	2.7	171,683	53,000	43,057	20,204	83	288,027
6	7,747 (5,038)	7,653	2.8	166,829	49,486	39,261	18,077	82	273,735
7	8,600 (4,789)	8,388	2.9	171,975	51,563	40,092	21,344	99	285,073
8	7,136 (3,673)	10,692	3.6	165,981	59,959	44,355	29,503	42	299,840
9	5,761 (3,397)	8,134	2.8	155,769	58,379	43,314	29,926	110	287,498
10	5,962 (3,100)	7,459	2.3	173,681	72,971	50,085	34,877	65	331,679
11	8,602 (4,098)	5,458	2.1	131,292	60,040	40,226	26,901	152	258,611
12	5,559 (3,837)	6,457	2.0	174,353	72,042	42,781	32,897	308	322,381
計	76,396	86,971	2.5	1,871,865	769,374	513,667	306,337	1,335	3,462,578

○ 1981

單位：%

區分	生產(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產實績(B)					
				養雞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5,757 (3,448)	5,337	2.0	137,692	54,620	40,460	29,916	29	262,717
2	4,086 (3,657)	5,234	2.3	124,972	42,590	31,628	24,300	92	223,582
3	5,846 (3,177)	6,478	2.5	149,174	48,279	36,716	23,809	33	258,011
4	7,678 (3,387)	6,770	2.6	149,866	50,901	37,316	27,113	86	265,282
5	9,852 (4,670)	7,381	2.5	162,941	60,201	39,835	29,577	139	292,693
6	9,767 (5,376)	6,839	2.5	153,895	56,802	36,985	26,662	114	274,456
7	7,208 (6,733)	7,855	2.8	152,168	58,938	35,433	31,739	86	278,364
8	6,515 (5,850)	8,030	2.6	155,374	70,860	40,674	40,905	74	307,887
9	7,727 (4,238)	8,547	2.6	163,529	75,803	42,080	44,681	174	326,267
10	8,989 (3,623)	8,525	2.5	167,400	80,485	43,199	48,076	402	339,562
11	9,047 (3,633)	7,756	2.5	154,920	76,136	41,671	42,061	237	315,025
12	9,344 (4,713)	7,288	2.1	170,143	85,589	45,099	45,595	184	346,610
計	91,816	86,040	2.5	1,842,074	761,204	471,096	414,434	1,650	3,490,456

○ 1982

單位：%

區分	生產(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產實績(B)					
				養雞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5,619 (3,998)	6,141	2.1	134,473	72,239	43,818	42,301	149	292,980
2	5,896 (4,722)	6,695	2.3	130,750	70,797	46,466	44,128	181	292,322
3	8,790 (4,955)	8,375	2.6	155,203	75,458	48,492	49,554	257	328,964
4	8,990 (3,960)	10,469	3.0	168,484	78,747	48,430	53,868	313	349,842
5	10,661 (4,038)	11,233	3.2	172,653	85,340	45,624	52,746	257	356,620
6	10,438 (3,529)	10,993	3.0	181,494	91,382	44,192	49,345	300	366,713
7	9,795 (3,367)	11,298	2.9	182,536	100,010	46,903	58,189	408	388,046
8	9,170 (3,261)	9,582	2.7	161,334	96,410	47,425	56,557	423	362,149
9	8,121 (2,952)	9,740	2.3	184,045	117,399	53,100	70,103	450	425,097
10	8,220 (2,643)	7,583	1.8	153,440	106,228	50,996	63,581	489	374,734
11	8,220 (2,725)	7,508	1.9	161,778	115,934	54,031	68,358	464	400,565
12	8,986 (2,625)	8,605	1.8	188,549	141,786	65,569	85,209	656	481,769
計	102,906	108,222	2.5	1,974,739	1,151,730	595,046	693,939	4,347	4,419,801

○ 1983

單位：%

區分	生產(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產實績(B)					
				養雞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6,768 (2,299)	7,441	1.8	159,052	120,136	55,488	75,440	666	410,782
2	5,787 (2,460)	8,095	2.0	160,156	116,490	53,028	67,323	614	397,611
3	13,219 (4,699)	10,776	2.3	192,800	138,796	60,275	82,075	956	474,902
4	13,546 (5,514)	10,851	2.3	195,711	145,108	58,018	77,859	1,498	478,194
5	9,504 (5,147)	11,063	2.3	199,910	166,437	57,764	73,534	1,120	498,765
6	8,945 (3,476)	10,316	2.0	105,797	185,970	56,620	67,727	1,453	517,567
7	9,455 (3,472)	8,800	1.9	188,125	153,799	52,462	59,665	1,283	455,334
8	5,523 (2,820)	9,327	2.0	185,733	166,210	55,433	61,572	1,093	470,041
9	5,342 (2,263)	9,573	1.8	194,154	194,480	59,216	69,603	1,219	518,672
10	6,090 (1,631)	9,369	1.6	195,887	229,799	69,155	78,982	1,136	574,959
11	8,631 (1,833)	8,203	1.6	174,612	192,330	62,145	74,663	727	504,477
12	11,340 (2,540)	9,154	1.7	193,684	203,452	70,332	82,152	662	550,282
計	104,150	112,968	1.9	2,245,621	2,013,007	709,936	870,595	12,427	5,851,586

○ 1984

單位：%

區分	生產(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產實績(B)					
				養雞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7,382 (2,882)	8,482	1.7	165,330	176,188	66,468	81,669	440	490,095
2	6,521 (4,352)	7,907	1.9	139,882	147,594	64,166	75,345	457	427,444
3	12,272 (7,707)	9,926	2.0	170,032	167,390	72,255	95,327	493	502,497
4	12,918 (8,488)	10,999	2.2	175,538	163,753	69,263	85,798	473	494,825
5	15,068 (8,399)	12,853	2.4	197,909	173,413	70,483	91,055	661	533,521
6	11,222 (8,057)	11,277	2.3	188,595	160,099	63,545	79,029	538	491,806
7	12,116 (10,176)	10,824	2.2	176,564	151,880	63,946	75,876	744	469,010
8	7,561 (9,057)	10,617	2.2	160,334	159,064	68,714	85,431	912	474,455
9	8,526 (7,643)	10,839	2.2	163,517	160,233	72,221	91,270	806	488,047
10	8,595 (5,477)	10,815	2.0	170,308	171,515	77,972	100,634	764	521,193
11	10,314 (5,435)	9,237	1.8	166,345	168,493	77,691	100,601	711	513,841
12	12,744 (6,051)	10,351	1.8	190,512	187,789	85,865	113,359	700	578,225
計	125,239 (6,051)	123,515	2.1	2,064,866	1,987,411	852,589	1,072,394	7,699	5,984,959

○ 1985

單位：%

區分	生產(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產實績(B)					
				養雞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7,475 (6,051)	9,937	1.8	172,072	172,447	81,525	112,799	702	539,545
2	5,874 (5,304)	9,941	1.9	172,301	157,368	77,198	102,170	604	509,541
3	12,749 (5,082)	10,298	1.9	186,529	155,558	83,104	108,614	825	534,630
4	14,669 (8,815)	10,078	1.9	195,307	151,115	82,715	108,258	1,018	538,413
5	9,988 (7,317)	11,141	2.1	200,749	153,769	78,858	98,691	1,480	533,547
6	8,111 (6,110)	11,395	2.3	196,391	144,308	73,094	80,803	1,285	495,881
7	9,520 (5,200)	10,325	2.1	197,678	144,912	73,725	75,702	837	492,854
8	8,220 (4,509)	9,433	1.9	185,653	151,711	81,001	90,370	918	509,653
9	7,630 (4,223)	9,035	1.7	191,575	153,661	83,029	97,677	1,132	527,074
10	7,988 (4,296)	8,964	1.6	195,568	171,672	92,404	109,925	1,488	571,057
11	10,497 (4,520)	8,983	1.6	194,241	176,925	89,693	103,880	1,706	565,845
12	12,057 (4,834)	11,278	1.7	221,662	190,346	98,536	120,153	2,335	633,032
計	114,778 (4,834)	120,808	1.9	2,309,726	1,923,692	994,282	1,209,042	14,330	6,451,072

○ 1986

單位：%

區分	生產(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產實績(B)					
				養雞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11,340 (4,868)	9,834	1.7	197,333	171,473	96,389	122,846	1,906	589,947
2	7,772 (4,760)	9,212	1.7	193,231	151,442	91,674	112,033	1,841	550,221
3	11,737 (5,623)	9,935	1.6	211,585	159,690	98,942	133,157	1,229	604,603
4	19,091 (9,703)	10,813	1.7	220,659	157,286	100,917	139,797	1,860	620,519
5	14,677 (10,344)	12,004	1.9	225,230	164,421	98,419	138,309	2,440	628,812
6	11,281 (9,919)	12,510	2.1	220,305	160,017	90,580	123,711	2,109	596,722
7	11,185 (9,535)	13,553	2.2	233,511	168,720	93,385	130,457	1,719	627,792
8	9,921 (8,541)	12,166	2.0	216,222	172,333	94,850	128,712	2,137	614,254
9	11,094 (8,239)	12,911	1.9	230,144	195,867	106,034	146,969	2,179	681,193
10	12,370 (7,253)	12,013	1.7	224,055	217,234	111,067	154,511	2,254	709,121
11	12,641 (6,822)	12,316	1.8	215,284	213,999	105,776	137,541	2,580	675,180
12	11,683 (7,279)	12,725	1.6	251,617	245,815	120,444	156,215	2,786	776,877
計	144,792	139,942	1.8	2,639,176	2,178,297	1,208,477	1,624,251	25,040	7,675,180

○ 1987

單位：%

區分	生産(在庫)	使用(A)	A/B (%)	配合飼料生産實績(B)					
				養鷄	養豚	酪農	肥育	其他	計
1	10,676 (7,414)	10,699	1.6	211,030	203,240	106,945	129,646	2,832	653,693
2	11,324 (9,389)	10,707	1.7	209,618	193,503	109,258	121,993	2,509	636,881
3	14,672(11,743)	12,050	1.7	230,825	207,954	116,542	141,334	2,745	699,400
4	16,886(13,162)	12,569	1.7	240,083	218,274	116,401	147,778	3,554	726,090
5	16,658(13,561)	13,524	1.8	245,676	229,589	110,601	144,381	4,157	734,404
6	13,430 (9,446)	14,498	1.9	254,809	245,692	109,151	140,913	4,145	754,710
7	10,511 (7,538)	14,803	1.9	265,178	246,831	108,972	135,246	4,925	761,152
8	8,792 (5,919)	12,415	1.6	255,716	256,490	113,726	135,237	5,199	766,368
9	8,868 (5,320)	11,601	1.4	258,974	283,018	123,395	150,502	5,614	821,503
10	10,223 (5,175)	10,592	1.3	257,076	297,020	125,455	140,290	5,318	825,159
11	13,441 (6,906)	9,528	1.2	236,261	275,430	122,928	134,103	6,443	775,165
12	13,677 (7,398)	10,956	1.3	267,778	296,256	140,860	152,044	6,766	863,704
計	149,158	143,942	1.6	2,933,024	2,953,271	1,404,234	1,673,467	54,207	9,018,229

마. 魚粉 및 磷酸칼슘 輸出現況

單位：%, 百\$

區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備考	
魚	2301	物量	2,414	784	791	2,787	3,327	2,010	2,842	3,277	'87 年은 수출추천 물량임.
		金額	15,391	4,968	3,783	15,354	22,314	11,321	16,604	21,297	
粉	0505	物量	3,810	141	233	523	2,642	382	767	705	
		金額	16,334	731	1,399	2,682	1,179	1,395	3,084	3,560	
磷酸칼슘		5,309	5,015	3,472	1,186	1,198	2,600	4,545	1,669		

V. 國際飼料穀物需給

여 백

1. 世界の穀物需給現況

가. 全體穀物*

單位：百萬噸

區分		1981 /82	1982 /83	1983 /84	1984 /85	1985 /86	1986 /87	1987 /88	1988/89 6.9(推定)
輸 出	5 個國 ¹⁾	61.7	61.3	68.2	67.2	65.0	59.8	55.6	56.2
	西유럽	21.2	22.6	22.3	30.5	34.3	25.4	24.5	26.3
	蘇聯	0.5	0.5	0.5	0.5	0.5	0.5	0.5	1.0
	其他	7.2	10.0	9.0	16.0	14.4	12.6	10.7	9.9
	(小計)	90.7	94.6	100.1	114.3	114.2	98.3	91.3	93.4
出	美國	107.2	93.9	94.7	93.5	61.4	75.9	95.8	93.5
	(總計)	197.9	188.3	194.7	207.8	175.6	174.2	187.1	186.9
輸 入	西유럽	28.0	20.9	19.2	17.6	13.4	8.9	7.3	6.5
	蘇聯	39.9	31.2	32.4	55.4	29.3	26.8	31.5	25.0
	日本	23.4	24.5	26.6	26.3	27.0	27.8	28.2	28.6
	東유럽	12.4	9.4	8.0	6.4	9.0	7.0	7.7	5.9
	中共	14.7	15.5	9.8	7.5	7.3	10.6	14.8	15.4
	其他	79.5	86.9	98.7	94.6	89.5	93.2	97.7	105.6
	(總計)	197.9	188.3	194.7	207.8	175.6	174.2	187.1	186.9
生 產	5 個國	114.0	107.0	118.5	116.3	112.6	114.1	105.5	105.5
	西유럽	148.8	161.9	154.1	191.0	177.1	169.9	168.2	176.1
	蘇聯	152.0	172.0	178.0	159.1	178.1	198.2	197.0	201.0
	東유럽	95.1	106.7	102.5	114.8	102.6	113.0	103.2	112.1
	中共	140.4	150.8	174.0	184.0	168.1	178.5	183.5	184.2
	其他	245.5	233.9	246.2	252.3	262.0	280.1	262.1	270.1
	(小計)	895.8	932.4	973.3	1,017.6	1,000.7	1,053.8	1,019.4	1,048.9
美國	322.4	326.0	203.0	308.3	340.9	309.7	273.0	277.6	
(總計)	1,218.3	1,258.4	1,176.3	1,325.9	1,341.5	1,363.5	1,292.4	1,326.5	
消 費	西유럽	159.3	157.4	158.4	162.6	158.1	153.0	153.0	152.2
	蘇聯	200.5	204.0	206.5	205.0	205.0	217.7	222.1	219.0
	中共	154.8	166.4	184.6	180.8	187.3	192.7	199.5	196.8
	其他	488.9	501.0	516.8	530.3	524.3	553.0	556.0	573.9
	(小計)	1,003.4	1,028.9	1,066.2	1,078.7	1,074.7	1,116.4	1,130.7	1,141.9
	美國	177.8	192.5	178.1	195.2	198.8	214.3	216.8	219.0
(總計)	1,181.2	1,221.4	1,244.3	1,273.9	1,273.5	1,330.7	1,347.4	1,360.8	
期 末 在 庫	主要國 ²⁾	98.3	96.3	97.1	211.3	197.2	206.9	189.5	188.1
	蘇聯 ³⁾	-4.0	-1.0	3.0	8.6	2.0	7.0	5.9	6.0
	美國	99.8	138.7	69.8	96.8	178.7	201.9	164.2	131.3
	(總計)	198.0	235.0	166.9	308.0	375.9	408.8	353.7	319.4

資料：USDA (FAS), 1988.6.

* 小麥,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수수, 기장과 混穀

* 小麥年度는 7月 / 6月, 飼料穀物年度는 10月 / 9月 基準임.

註：1)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泰國

2) 아시아와 東유럽 一部國家는 除外됨.

3) 蘇聯의 期末在庫 增減.

나. 飼料穀物

① 飼料穀物 全體

單位：百萬噸

區 分		1981 /82	1982 /83	1983 /84	1984 /85	1985 /86	1986 /87	1987 /88	1988/89 6.9(推定)	
輸 入	캐 나 다	7.2	7.1	5.4	3.3	5.8	6.6	5.4	5.0	
	瀛 洲	3.1	1.0	5.6	6.4	5.0	3.1	3.2	3.8	
	아르헨티나	10.3	11.6	10.9	10.6	9.7	5.0	5.6	5.6	
	남아프리카	4.7	2.3	0.1	0.2	1.5	2.6	1.5	1.5	
	泰國	3.5	2.3	3.3	3.5	4.0	2.6	1.0	2.8	
	5 個 國 計	28.8	24.3	25.2	24.0	26.0	19.9	16.6	18.7	
	西 歐 諸 國	4.7	5.2	5.4	10.3	10.1	7.6	8.9	9.1	
	中 共 他	0.2	0.1	0.6	5.7	7.1	4.1	3.1	3.1	
	其 他 (小 計)	4.4	6.2	4.9	5.0	3.6	4.3	2.4	2.9	
	美 國 (總 計)	38.2	35.9	36.1	44.9	46.8	36.0	31.1	33.9	
輸 入	美 國	58.4	54.0	55.8	55.4	36.4	47.5	52.3	52.5	
	(總 計)	96.6	89.9	91.9	100.4	83.2	83.4	83.4	86.4	
	西 歐 諸 國	21.0	15.6	13.9	10.8	6.6	4.9	5.6	5.0	
	蘇 聯	20.4	11.0	11.9	27.3	13.6	10.8	10.0	10.0	
	日 本	17.9	13.7	20.7	20.7	21.5	22.0	22.8	23.2	
	東 歐 諸 國	6.1	4.9	4.2	3.8	5.6	3.2	4.2	2.9	
	中 共 他	1.5	2.5	0.2	0.1	0.7	2.1	1.3	1.9	
	其 他 (小 計)	29.7	37.1	40.9	37.7	35.2	40.5	39.5	43.4	
	美 國 (總 計)	96.6	89.9	91.9	100.4	83.2	83.4	83.4	86.4	
	生 產	캐 나 다	26.0	26.5	21.0	21.6	23.9	25.5	26.0	22.2
瀛 洲		6.7	3.9	9.4	8.6	7.9	6.6	6.8	7.8	
아르헨티나		18.4	17.8	17.4	19.3	17.4	13.0	13.0	13.2	
남아프리카		8.8	4.5	5.1	9.0	8.9	7.9	8.3	8.9	
泰國		4.7	3.7	4.2	4.7	5.7	4.6	3.0	5.1	
西 歐 諸 國		87.9	93.6	86.1	103.6	101.4	93.6	92.9	97.5	
蘇 聯		72.0	86.0	99.0	90.5	100.0	105.9	113.7	109.0	
東 歐 諸 國		64.5	72.0	67.1	72.8	65.5	73.9	64.0	70.5	
中 共 他		80.8	82.0	92.6	96.2	82.3	88.4	95.8	93.2	
其 他 (小 計)		153.5	138.1	146.3	150.1	154.0	161.5	148.4	157.9	
美 國 (總 計)	523.3	528.5	548.2	576.4	566.9	581.0	571.9	585.2		
消 費	美 國	246.6	250.7	137.1	237.7	274.9	252.8	215.7	219.9	
	(總 計)	769.9	779.2	685.3	814.1	841.8	833.8	787.5	805.1	
	美 國	154.8	167.9	147.8	163.8	170.3	181.8	186.7	189.3	
	蘇 聯	98.5	98.3	109.5	113.8	113.4	114.9	121.6	117.0	
	中 共 他	81.9	85.0	92.3	88.6	86.9	91.1	94.2	91.8	
	其 他 (小 計)	404.6	402.4	408.0	414.9	407.2	421.1	410.6	427.0	
	(總 計)	739.8	753.6	757.7	781.0	777.8	808.9	813.2	825.1	
	期 末 在 庫	主 要 國 1)	44.7	41.1	34.4	85.9	80.9	80.3	76.4	76.9
		蘇 聯 2)	-1.0	-1.0	1.0	3.6	0.3	2.0	2.1	2.0
		美 國	68.2	97.5	31.8	58.0	126.9	152.3	130.6	110.0
(總 計)	112.9	138.5	66.1	143.9	207.8	232.6	207.0	186.9		

資料：USDA (FAS), 1988.6.

註：1) 아시아와 東유럽 一部國家는 除外됨.

2) 蘇聯의 期末在庫 增減

* 飼料穀物年度는 10月/9月 基準임.

② 옥수수

單位：百萬噸

區分		1981 /82	1982 /83	1983 /84	1984 /85	1985 /86	1986 /87	1987 /88	1988/89 (6.9推定)
輸 出	아르헨티나	4.9	6.5	5.9	7.1	7.4	4.0	4.2	4.2
	남아프리카	4.7	2.3	0.1	0.2	1.5	2.6	1.5	1.5
	泰國	3.3	2.1	3.0	3.2	3.8	2.5	0.9	2.6
	中其他	0.1	0.0	0.5	5.2	6.4	3.8	3.0	3.0
	(小計)	4.3	5.0	4.3	4.2	3.9	4.1	3.1	3.1
	美國	17.3	15.9	13.8	19.9	23.0	16.9	12.7	14.4
(總計)	50.0	47.5	47.4	46.7	31.5	39.4	43.2	44.5	
輸 入	멕시코	67.3	63.4	61.2	66.6	54.5	56.2	55.9	58.9
	EC-12	0.6	4.0	2.5	1.7	1.7	3.4	3.5	3.8
	蘇聯	7.6	5.3	5.0	9.0	4.8	2.8	3.0	3.0
	日本	13.4	6.5	9.5	20.3	10.3	7.6	7.2	7.3
	東유럽	13.3	14.5	14.5	14.0	14.6	16.1	17.1	17.6
	中其他	4.8	3.3	1.9	1.8	2.2	1.7	2.4	1.5
	台灣	1.2	2.4	0.1	0.1	0.4	1.6	1.0	1.5
	韓國	2.6	3.2	3.0	3.1	3.1	3.5	3.6	3.6
	스페인	2.8	3.9	3.3	3.0	3.6	4.6	5.1	5.6
	포르투갈	5.6	4.0	3.5	-	-	-	-	-
其他	2.2	2.2	2.1	-	-	-	-	-	
(總計)	13.3	14.1	15.8	13.6	13.9	15.0	13.1	15.1	
生 產	브라질	67.3	63.4	61.2	66.6	54.5	56.2	55.9	58.9
	멕시코	22.9	19.5	21.0	22.0	21.0	26.5	24.0	22.0
	아르헨티나	12.5	7.0	9.3	9.9	10.5	10.0	9.9	10.3
	남아프리카	9.6	9.0	9.2	11.9	12.4	9.3	9.0	9.0
	泰國	3.4	4.1	4.4	8.1	8.1	7.2	7.5	8.0
	EC-12	4.3	3.4	3.9	4.4	5.4	4.3	2.7	4.8
	蘇聯	18.4	19.8	19.6	23.1	25.7	25.1	25.7	25.6
	東유럽	8.0	13.5	12.0	13.6	14.4	12.5	14.8	15.0
	中其他	32.2	36.5	33.4	35.4	30.6	38.9	29.3	35.5
	(小計)	57.7	56.4	53.7	62.0	62.4	62.6	62.3	64.6
	美國	233.2	229.5	239.7	263.8	254.3	267.1	263.3	270.8
	(總計)	206.2	209.2	106.0	194.9	225.5	209.6	179.4	185.4
		439.5	438.7	345.7	458.7	479.8	476.6	442.7	456.2
	消 費	西유럽	39.7	37.2	35.0	33.2	31.7	31.0	29.9
蘇聯		25.3	19.8	20.7	32.9	24.8	19.6	22.2	22.3
日本		13.6	14.2	14.5	14.2	14.4	15.5	17.1	17.7
中其他		60.2	62.8	67.8	66.3	65.5	72.8	75.5	74.1
(小計)		146.9	147.3	151.5	156.9	155.3	170.2	163.5	171.7
美國		285.6	281.3	289.5	303.5	291.6	309.1	308.3	315.2
(總計)	127.3	137.7	119.6	131.3	133.5	150.0	155.9	159.4	
期末在庫	413.0	419.0	409.1	434.8	425.1	459.1	464.1	474.6	
主要國	21.6	17.2	14.6	47.6	41.5	37.7	35.7	35.8	
美國	55.2	79.3	18.4	41.9	102.6	124.0	104.5	86.1	
(總計)	76.8	96.5	33.0	89.4	144.1	161.7	140.2	121.9	

資料：USDA (FAS), 1988.6.

註：1) 아시아와 東유럽 一部國家는 除外됨.

* 옥수수 年度는 10月/9月 基準임.

③ 寸 寸

單位：百萬噸

區 分		1981 /82	1982 /83	1983 /84	1984 /85	1985 /86	1986 /87	1987 /88	1988/89 (6.9推定)
輸 出	濠 洲	1.2	0.3	1.4	1.2	1.1	0.6	0.7	1.0
	아르헨티나	5.2	4.9	4.8	3.4	2.2	1.0	1.0	1.1
	其 他	0.9	1.0	0.6	1.0	1.3	1.3	0.5	0.5
	(小 計)	7.4	6.2	6.9	5.6	4.6	2.9	2.2	2.6
	美 國	6.3	5.4	6.2	7.5	4.1	5.1	5.8	5.3
(總 計)	13.7	11.6	13.1	13.1	8.7	8.0	7.9	7.9	
輸 入	蘇 聯	2.9	2.4	1.0	1.5	0.1	0.1	0	0
	日 本	3.0	2.7	4.2	4.6	5.1	4.2	4.0	3.9
	멕시코	0.9	3.2	3.3	2.5	0.6	0.8	0.8	0.9
	베네수엘라	0.9	0.4	0.2	0.9	0.8	0.8	1.4	1.4
	台灣	0.8	0.6	0.6	0.6	0.8	0.8	0.6	0.7
	韓國	0.4	0.2	0.4	0.3	0.3	0	0.1	0.1
	스페인	1.5	0.3	0.8	-	-	-	-	-
	포르투갈	0.2	0.2	0.1	-	-	-	-	-
	시우디아라비아	0.9	0.6	0.3	0.2	0.2	0.1	0.1	0.1
	이스라엘	0.4	0.3	0.6	0.5	0.5	0.2	0.4	0.4
	其 他	1.8	0.7	0.7	2.0	0.3	1.0	0.6	0.4
(總 計)	13.7	11.6	13.1	13.1	8.7	8.0	7.9	7.9	
生 產	濠 洲	1.3	1.0	1.9	1.4	1.4	1.2	1.4	1.8
	아르헨티나	8.0	7.6	7.2	6.2	4.2	3.1	3.0	3.1
	남아프리카	0.3	0.2	0.5	0.6	0.4	0.5	0.5	0.6
	泰國	0.3	0.2	0.3	0.4	0.3	0.3	0.2	0.3
	멕시코	4.0	2.8	4.0	4.1	3.7	4.3	4.0	4.0
	印度	12.1	10.8	11.9	11.4	10.2	8.9	8.6	10.5
	中 共	6.6	7.0	8.4	7.7	5.6	5.4	5.8	5.4
	나이지리아	3.7	4.1	2.7	3.7	3.5	3.6	2.9	3.5
	수단	3.3	2.0	1.8	1.1	3.6	3.4	1.6	2.2
	其 他	8.4	8.3	7.8	7.5	9.1	9.9	8.6	9.5
	(小 計)	48.0	43.9	46.4	44.1	42.1	40.5	36.6	40.9
美 國	22.2	21.2	12.4	22.0	28.5	23.8	18.8	16.5	
(總 計)	70.3	65.1	58.8	66.1	70.5	64.3	55.4	57.4	
消 費	美 國	11.2	13.1	9.9	14.1	17.6	14.2	14.4	13.1
	蘇 聯	3.4	2.9	2.0	1.5	0.6	0.1	0	0
	中 共	6.6	6.9	8.3	7.5	5.8	5.3	5.9	5.4
	멕시코	6.8	6.1	6.3	6.4	5.7	5.1	4.8	4.8
	日 本	3.6	2.8	3.7	4.7	5.0	4.1	4.1	3.9
	其 他	34.5	31.9	31.7	31.9	30.5	31.3	28.9	32.6
(總 計)	66.0	63.8	62.0	66.2	65.2	60.2	58.0	59.8	
期 末 在 庫	主 要 國	4.8	3.5	4.1	6.1	5.1	4.6	3.3	2.8
	其 他 國	7.5	10.2	6.4	7.6	14.0	18.6	17.3	15.4
	(總 計)	12.3	13.6	10.4	13.7	19.1	23.1	20.6	18.2

資料：USDA (FAS), 1988.6.

註：1) 아시아와 東유럽 一部國家는 除外됨.

* 寸寸 年度는 10月/9月 基準임.

④ 보 리

單位：百萬噸

區 分		1981 /82	1982 /83	1983 /84	1984 /85	1985 /86	1986 /87	1987 /88	1988/89 (6.9推定)
輸 出	캐 나 다	5.5	6.1	4.2	2.4	4.8	6.0	4.5	4.4
	濠 洲	1.7	0.6	3.7	4.7	3.7	2.2	2.1	2.5
	EC-12	3.5	3.9	3.8	7.6	7.3	5.7	7.0	7.0
	其 他	1.3	1.9	1.5	2.1	1.9	1.2	0.6	0.9
	(小 計)	12.0	12.5	13.3	16.8	17.6	15.1	14.2	14.9
美 國	(總 計)	2.0	1.0	2.1	1.2	0.8	3.0	3.3	2.7
		14.1	13.4	15.4	18.0	18.4	18.0	17.5	17.6
輸 入	EC-12	0.6	0.2	0.5	0.2	0.1	0.2	0.3	0.2
	蘇 聯	3.6	2.2	0.5	4.7	2.9	3.0	2.7	2.5
	日 本	1.5	1.3	1.6	1.7	1.5	1.2	1.2	1.2
	東 歐	1.2	1.5	2.0	1.7	3.3	1.3	1.6	1.2
	사우디아라비아	3.4	2.5	5.1	4.7	6.6	8.5	5.5	6.0
	스 페 인	0.7	1.6	0.2	-	-	-	-	-
	其 他	3.1	4.1	5.4	5.1	3.9	3.9	6.3	6.4
(總 計)	14.1	13.4	15.4	18.0	18.4	18.0	17.5	17.6	
生 產	캐 나 다	13.7	14.0	10.3	10.3	12.4	14.6	14.4	11.3
	濠 洲	3.4	1.9	4.9	5.6	4.9	3.6	3.3	3.7
	EC-12	39.3	41.7	36.1	54.5	50.8	46.5	46.9	49.9
	蘇 聯	37.5	41.0	54.0	41.8	46.5	53.9	58.4	54.5
	中 共	7.5	6.9	6.9	7.3	6.2	6.1	6.3	6.5
	東 歐	16.0	17.4	15.4	17.1	16.4	16.9	16.1	16.9
	其 他	29.2	30.9	30.3	25.2	27.2	27.0	23.8	26.7
	(小 計)	146.7	153.5	157.9	161.7	164.4	168.7	169.2	169.5
美 國	10.3	11.2	11.1	13.0	12.9	13.3	11.5	10.9	
(總 計)	157.0	164.7	168.9	174.8	177.2	182.0	180.7	180.4	
消 費	東 歐	48.3	49.5	49.1	50.2	47.5	46.5	46.7	45.6
	蘇 聯	42.8	44.0	53.8	45.2	48.6	56.6	59.9	56.0
	東 歐	17.0	17.8	16.8	18.6	18.6	19.1	17.3	18.3
	其 他	40.9	41.7	44.8	43.3	46.4	46.5	48.6	51.0
	(小 計)	149.1	153.0	164.5	157.4	161.1	168.7	172.5	170.9
	美 國	8.1	8.9	9.8	10.3	10.9	10.2	9.8	9.6
(總 計)	157.2	162.0	174.3	167.7	172.0	179.0	182.3	180.5	
期 末 在 庫	主 要 國 ¹⁾	13.7	15.0	10.2	18.7	22.3	25.0	24.2	24.6
	美 國	3.2	4.7	4.1	5.4	7.1	7.3	6.5	5.9
	(總 計)	17.0	19.7	14.3	24.1	29.3	32.3	30.7	30.6

資料：USDA(FAS), 1988.6.

註：1) 아시아와 東유럽 一部國家는 除外됨.

다. 小 麥

單位：百萬噸

區 分		1981 /82	1982 /83	1983 /84	1984 /85	1985 /86	1986 /87	1987 /88	1988/89 (6.9推定)
輸 出	캐 나 다	17.6	21.4	21.8	19.4	16.8	20.8	22.5	21.0
	豪 洲	11.0	8.1	11.6	15.8	16.0	14.8	12.5	10.5
	아르헨티나	4.3	7.5	9.6	8.0	6.1	4.3	4.0	6.0
	(小計)	32.9	37.0	42.9	43.2	39.0	39.9	39.0	37.5
	EC-12	15.5	15.6	15.4	18.5	15.6	16.4	14.5	16.0
	蘇 聯	0.5	0.5	0.5	0.5	0.5	0.5	0.5	1.0
	其 他	3.6	5.6	5.2	6.6	4.9	5.5	6.3	5.1
(小計)	52.5	58.7	64.0	68.9	60.0	62.3	60.3	59.6	
美 國	48.8	39.9	38.9	38.1	25.0	28.4	43.5	41.0	
(總計)	101.3	98.6	102.9	107.0	85.0	90.7	103.8	100.6	
輸 入	EC-12	4.7	3.9	3.6	3.4	2.8	2.4	2.5	2.4
	蘇 聯	19.5	20.2	20.5	28.1	15.7	16.0	21.5	15.0
	日 本	5.6	5.8	5.9	5.6	5.5	5.8	5.4	5.4
	東 南 亞	6.2	4.5	3.8	2.6	3.4	3.7	3.5	3.0
	中 共 他	13.2	13.0	9.6	7.4	6.6	8.5	13.5	13.5
	(小計)	52.1	51.2	59.6	59.8	50.9	54.3	57.4	61.4
	(總計)	101.3	98.6	102.9	107.0	85.0	90.7	103.8	100.6
生 產	캐 나 다	24.8	26.7	26.6	21.2	24.3	31.4	26.3	25.4
	豪 洲	16.4	8.9	22.0	18.7	16.2	16.2	12.1	13.0
	아르헨티나	8.3	15.0	12.8	13.2	8.5	8.9	10.0	10.0
	EC-12	54.4	59.8	59.2	82.9	71.6	71.9	71.2	74.9
	蘇 聯	80.0	86.0	79.0	68.6	78.1	92.3	83.3	92.0
	東 南 亞	30.6	34.7	35.4	42.1	37.1	39.1	39.2	41.6
	中 共 他	59.6	68.4	81.4	87.8	85.8	90.0	87.7	91.0
	印 度	36.3	37.5	42.8	45.5	44.1	47.1	45.6	44.0
	其 他	62.2	66.9	66.0	61.3	68.1	75.9	72.1	71.9
	(小計)	372.6	403.9	425.1	441.2	433.8	472.8	447.5	463.8
美 國	75.8	75.3	65.9	70.6	66.0	56.9	57.3	57.7	
(總計)	448.4	479.1	491.0	511.8	499.8	529.7	504.8	521.5	
消 費	美 國	23.1	24.7	30.2	31.4	28.5	32.5	30.1	29.7
	蘇 聯	102.0	105.7	97.0	91.2	91.6	102.8	100.5	102.0
	中 共 他	72.8	81.4	92.2	92.2	100.4	101.5	105.2	105.0
	(小計)	243.6	256.1	267.2	278.0	275.2	284.9	298.4	299.0
	(總計)	418.4	443.2	456.4	461.4	467.2	489.3	504.2	506.0
期 末 在 庫	主 要 國 ¹⁾	53.6	55.2	62.7	125.4	116.3	126.6	113.1	111.2
	蘇 聯 ²⁾	-3.0	0.0	2.0	5.0	1.7	5.0	3.8	4.0
	美 國	31.5	41.2	38.1	38.8	51.8	49.6	33.6	21.3
	(總計)	85.1	96.4	100.8	164.2	168.2	176.1	146.7	132.5

資料：USDA(FAS), 1988.6.

註：1) 아시아와 東유럽 一部國家는 除外됨. 2) 蘇聯의 期末在庫增減.

* 小麥年度는 7月 / 6月基準임.

라. 쌀

單位：百萬噸

區分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6.9推定)
輸 出	버어마	0.7	0.8	0.7	0.5	0.6	0.5	0.2
	日本	0.5	0.6	1.2	1.0	1.0	1.0	1.1
	日	0.3	0.3	0.1	0	0	.0	0
	파키스탄	0.8	1.3	1.0	1.0	1.1	1.2	1.1
	泰其他	3.6	3.7	4.5	4.0	4.3	4.3	2.7
	其(小計)	3.4	2.9	2.9	3.1	3.3	3.2	3.2
	美(總計)	9.3	9.6	10.4	9.6	10.4	10.3	8.3
	(總計)	2.5	2.3	2.1	1.9	2.4	2.4	2.6
輸 入	EC-12	1.2	1.0	1.1	1.3	1.3	1.1	1.1
	인도네시아	0.3	1.2	0.4	0	0	0.2	0.2
	이란	0.6	0.7	0.7	0.6	0.5	1.0	0.6
	라트비아	0.4	0.5	0.5	0.5	0.5	0.6	0.6
	韓國	0.2	0.2	0	0	0	0	.0
	나이지리아	0.7	0.7	0.4	0.4	0.3	0.4	0.3
	사우디아라비아	0.5	0.5	0.5	0.5	0.5	0.5	0.5
	其(總計)	8.0	7.2	8.9	8.2	9.6	9.0	7.7
(總計)	11.8	11.9	12.6	11.5	12.8	12.7	10.9	
生 產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아르헨티나	0.4	0.3	0.5	0.4	0.4	0.4	0.4
	湄公河	0.9	0.5	0.6	0.9	0.7	0.5	0.8
	방글라데시	20.5	21.3	21.8	21.9	22.6	23.1	22.2
	브루나이	9.2	7.8	9.0	9.0	10.3	10.4	11.0
	버마	14.1	14.4	14.4	14.3	13.3	12.5	12.2
	EC-12	144.0	161.2	168.9	178.3	168.6	172.2	173.9
	인도	1.1	1.1	1.5	1.7	2.0	1.9	1.9
	인도네시아	80.0	70.7	90.2	87.5	95.7	90.6	76.5
	日本	32.8	33.6	35.3	38.1	39.0	39.0	38.7
	日	12.8	12.8	13.0	14.8	14.6	14.6	13.3
	韓	7.1	7.3	7.6	8.0	7.9	7.9	7.6
	파키스탄	5.1	5.2	5.0	5.0	4.4	5.2	4.8
	泰其他	17.8	16.9	19.5	19.9	19.7	18.9	15.5
	其(小計)	58.8	59.4	62.2	62.6	63.8	63.8	61.7
	美(總計)	404.4	412.6	449.3	462.4	462.8	461.0	440.4
(總計)	8.3	7.0	4.5	6.3	6.1	6.0	5.8	
(總計)	412.7	419.5	453.8	468.7	469.0	467.1	446.2	
消 費	방글라데시	14.1	14.6	14.9	14.9	15.2	15.8	15.3
	인도	100.5	112.4	113.6	120.9	122.3	123.0	123.3
	인도네시아	54.1	46.5	58.2	56.7	62.1	60.1	55.8
	日本	22.3	23.7	25.3	25.2	26.2	26.8	27.0
	韓	5.4	5.3	5.5	5.5	5.8	5.7	5.6
	其(小計)	82.8	83.2	85.7	85.9	86.5	88.4	84.0
	美(總計)	279.2	287.6	303.3	309.1	318.0	319.7	310.9
	(總計)	2.2	2.0	1.8	1.9	2.1	2.5	2.6
(總計)	281.5	289.6	305.1	311.0	320.2	322.2	313.5	
期 末 在 庫	방글라데시	0.3	0.3	0.1	0.5	0.4	0.2	0.4
	인도	5.0	3.5	6.0	7.5	9.0	9.0	4.8
	인도네시아	2.3	1.8	1.6	2.8	2.8	2.3	1.6
	日本	1.4	1.5	1.2	1.4	1.3	1.2	1.1
	韓	1.0	0.8	1.1	1.5	1.4	1.0	0.4
	其(小計)	9.3	7.2	35.2	39.1	36.5	34.3	31.1
	美(總計)	19.7	15.0	45.3	52.8	51.3	47.9	39.2
	(總計)	1.6	2.3	1.5	2.1	2.5	1.6	1.0
(總計)	21.3	17.3	46.7	54.8	53.8	49.0	40.2	

資料：USDA(FAS), 1988.6.

* 生産은 粗穀基準, 輸出入·消費·在庫는 精穀基準임.

註：1) 輸出 및 輸入은 Calendar Year 基準.

2. 世界的 穀物 交易現況

가. 飼料穀物

單位：千%

區 分		1981 /82	1982 /83	1983 /84	1984 /85	1985 /86	1986 /87	1987 /88	1988/89 (6.9推定)
輸	美國	58,441	53,990	55,798	55,449	36,409	47,470	52,300	52,500
	나	7,222	7,074	5,426	3,314	5,790	6,576	5,400	5,000
	아르헨티나	10,328	11,624	10,854	10,630	9,667	5,015	5,570	5,600
	호주	3,075	979	5,555	6,370	4,975	3,136	3,150	3,800
	E C-12	4,000	4,290	4,230	8,530	8,051	6,226	8,300	8,300
	西유럽	720	945	1,159	1,738	2,037	1,367	620	800
	東유럽	2,148	3,260	3,032	2,828	1,899	2,680	950	1,850
	蘇聯	3,512	2,326	3,293	-	-	-	-	-
	泰國	4,701	2,300	100	3,509	4,034	2,620	1,000	2,800
	남아프리카	200	100	560	157	1,538	2,550	1,500	1,500
出	中(小計)	-	-	-	5,740	7,115	4,140	3,100	3,200
	其他	94,347	86,894	90,027	98,265	81,515	81,790	81,890	85,350
	(總計)	2,270	2,959	1,857	2,129	1,702	1,647	1,490	1,000
		96,617	89,853	91,884	100,394	83,217	83,437	83,380	86,350
輸	E C-12	8,300	5,650	5,750	9,542	5,506	3,423	3,900	3,600
	西유럽	12,696	9,962	8,120	1,261	1,074	1,522	1,725	1,400
	日本	6,148	4,852	4,218	3,762	5,606	3,209	4,175	2,900
	中本共	17,866	18,693	20,721	20,717	21,515	21,990	22,800	23,200
	蘇聯	1,468	2,548	231	140	702	2,071	1,300	1,900
	아프리카	20,400	11,000	11,900	27,300	13,645	10,760	10,000	10,000
	중남미	1,350	1,516	1,500	1,700	1,855	2,400	1,700	2,200
	아제리	559	750	1,143	1,145	690	1,165	1,600	1,700
	모로코	427	140	235	257	148	225	300	300
	튀니지	377	160	296	229	340	240	500	700
	남아프리카	130	767	2,922	865	150	72	0	0
	캐나다	904	750	226	560	365	540	400	600
	멕시코	1,633	7,232	5,856	4,213	2,402	4,210	4,350	4,700
	브라질	118	115	370	312	2,124	1,590	300	900
	페루	345	340	66	25	20	205	200	100
	베네수엘라	555	446	467	318	413	510	625	550
	자카르타	1,653	1,318	1,620	1,631	781	800	1,400	1,400
	쿠바	159	0	180	141	126	150	150	150
	콜롬비아	475	500	274	581	535	510	550	550
	이스라엘	302	309	181	260	209	124	150	200
	레바논	1,166	1,222	1,085	1,043	1,144	1,085	1,200	1,200
	시리아	255	225	122	135	120	175	150	150
	아라비아	4,680	3,510	5,932	5,480	7,425	9,225	6,200	6,700
	이란	275	225	425	265	160	185	100	100
	이탈리아	870	1,649	1,170	1,280	1,545	935	1,100	1,100
	말레이시아	425	489	605	825	220	660	1,000	700
	인도네시아	794	945	1,139	1,205	1,196	1,257	1,400	1,500
	한국	2	198	66	64	65	120	200	100
	핀란드	3,149	4,146	4,049	3,353	3,954	4,640	5,150	5,700
	臺灣	301	556	217	305	0	80	150	200
	싱가포르	3,871	4,150	3,989	4,278	4,117	4,727	4,500	4,600
	小計	460	490	474	728	345	370	450	450
其他	92,113	84,864	85,549	93,920	78,497	79,175	77,725	79,450	
輸入國未詳	3,898	4,384	5,451	6,440	4,645	3,917	5,469	5,725	
(總計)	606	605	884	34	75	345	186	1,175	
		96,617	89,853	91,884	100,394	83,217	83,437	83,380	86,350

資料：USDA(FAS), 1988.6.

* : 飼料穀物 交易年度는 10月/9月 基準임.

나. 小 麥

單位: 千噸

區 分		1982/ 82	1982/ 83	1983/ 84	1984/ 85	1985/ 86	1986/ 87	1987/ 88	1988/ 89 (6.9추경)
輸 出	美國	48,776	39,939	38,860	38,092	25,000	28,418	43,500	41,000
	캐나다	17,618	21,368	21,764	19,432	16,846	20,762	22,500	21,000
	러시아	4,305	7,501	9,572	8,034	6,122	4,300	4,000	6,000
	태평양	10,983	8,131	11,600	15,775	16,000	14,838	12,500	10,500
	EC-12	15,500	15,600	15,400	18,500	15,600	16,408	14,500	16,000
	西東	971	1,806	1,525	1,316	1,165	1,372	1,175	1,280
	蘇聯	1,950	2,370	2,255	4,100	2,514	1,932	1,990	2,040
	其他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其他	337	573	600	517	112	52	500	300
	(總計)	101,304	98,644	102,894	106,955	84,961	90,703	103,810	100,600
輸 入	EC-12	4,675	3,950	3,600	3,436	2,849	2,391	2,500	2,400
	西東	2,316	1,301	1,764	630	766	775	810	840
	日本	6,205	4,523	3,757	2,602	3,373	3,744	3,500	2,950
	中華民國	5,577	5,795	5,857	5,603	5,532	5,781	5,400	5,400
	日蘇	13,200	13,000	9,600	7,400	6,600	8,500	13,500	13,500
	其他	19,500	20,200	20,500	28,100	15,700	16,000	21,500	15,000
	其他	5,800	5,350	6,712	6,600	6,300	6,500	6,700	6,700
	其他	2,294	2,548	2,840	2,800	2,800	3,410	3,800	4,000
	其他	2,228	1,331	2,128	2,450	2,019	1,500	2,300	1,500
	其他	1,550	1,500	1,600	1,750	1,200	1,000	200	250
	其他	626	695	1,035	858	632	1,129	800	1,200
	其他	529	449	380	400	400	600	600	600
	其他	363	448	450	600	600	600	600	600
	其他	900	50	566	491	92	463	600	1,200
	其他	4,470	3,600	3,948	5,400	2,500	2,800	2,000	1,500
	其他	950	1,080	1,001	750	445	155	80	150
	其他	961	1,006	970	987	913	1,200	1,150	1,200
	其他	830	826	925	1,028	1,000	1,050	1,050	1,100
	其他	312	325	358	362	400	370	400	350
	其他	151	202	250	275	330	350	250	365
	其他	1,500	1,100	1,300	1,300	1,300	1,300	1,400	1,400
	其他	555	574	650	600	600	625	650	800
	其他	450	625	500	700	607	750	535	600
	其他	310	335	335	384	410	450	345	400
	其他	345	373	375	375	375	350	400	400
	其他	682	700	336	300	100	100	115	100
	其他	294	430	935	1,280	850	600	600	600
	其他	450	450	600	575	600	650	685	685
	其他	1,377	1,405	3,700	3,200	2,200	2,500	3,600	3,500
	其他	1,600	1,800	3,000	3,000	1,700	2,800	2,700	2,800
	其他	544	541	602	640	561	615	650	660
	其他	56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其他	1,111	1,500	1,876	1,898	1,164	1,500	2,200	1,700	
其他	1,529	1,485	1,587	1,587	1,376	1,500	1,600	1,750	
其他	400	580	366	1,036	1,534	370	500	1,800	
其他	748	50	350	1,048	980	500	200	200	
其他	2,265	3,700	2,500	150	50	15	400	2,600	
其他	529	474	648	648	593	555	700	650	
其他	1,868	1,880	2,351	3,111	3,032	3,895	3,900	3,900	
其他	860	925	693	785	929	1,000	1,000	1,150	
其他	673	737	655	780	690	866	870	900	
其他	398	200	300	550	550	550	575	575	
其他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其他	92,671	88,843	92,900	97,269	75,452	80,609	92,165	88,775	
其他	5,233	5,102	6,071	7,374	7,067	7,712	7,924	7,904	
其他	3,400	4,699	3,923	2,312	2,442	2,382	3,721	3,921	
(總計)	101,304	98,644	102,894	106,955	84,961	90,703	103,810	100,600	

資料: USDA(FAS),1988. 6.

* 小麥 및 小麥粉 交易年度는 7月/6月 基準임.

다. 쌀

單位：千噸

區 分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6.9 추정)
輸	美國	2,487	2,330	2,129	1,906	2,401	2,444	2,600
	亞洲	92	68	115	165	150	150	160
	歐洲	530	281	370	450	400	350	500
	中東	701	750	727	450	636	467	150
	EC-12	470	580	1,168	1,010	950	1,000	1,100
	其他	307	533	210	40	169	240	225
	日本	826	807	763	885	1,136	988	1,045
	印度	22	21	50	16	92	105	100
	菲律賓	35	45	47	35	35	35	35
	泰國	633	200	200	200	200	350	200
	南亞	318	321	102	0	0	0	0
	其他	250	250	250	250	250	250	250
	其他	50	0	20	50	0	0	0
	其他	794	1,299	1,050	962	1,146	1,226	1,100
	其他	0	40	-	-	-	-	-
	出	美國	3,620	3,700	4,528	3,993	4,338	4,345
亞洲		227	189	155	231	246	190	200
歐洲		15	140	150	50	50	50	50
中東		-	-	-	392	220	100	0
EC-12		11,377	11,554	12,034	11,085	12,419	12,290	10,415
其他		446	370	524	380	333	431	480
日本		11,823	11,924	12,558	11,465	12,752	12,721	10,895
印度		296	82	588	246	90	746	300
菲律賓		124	326	0	400	1,250	200	0
南亞		108	115	115	115	120	120	125
其他		250	75	100	100	250	400	200
其他		201	207	184	200	200	200	200
其他		303	291	366	285	290	290	280
其他		1,169	979	1,246	1,259	1,343	1,108	1,070
其他		10	315	560	10	10	5	600
入		美國	328	1,175	-	-	-	-
	亞洲	369	474	490	475	500	550	550
	歐洲	587	680	730	600	450	1,000	550
	中東	357	434	320	162	351	425	200
	EC-12	228	216	7	0	0	0	0
	其他	64	55	80	90	90	90	90
	日本	357	185	99	170	150	125	70
	印度	403	357	437	480	300	280	350
	菲律賓	16	0	168	165	5	0	0
	南亞	666	711	400	360	320	400	300
	其他	58	101	48	5	186	210	200
	其他	110	30	-	-	-	-	-
	其他	471	491	530	500	500	500	500
	其他	370	362	375	350	345	355	335
	其他	146	158	186	178	190	200	175
	其他	217	157	40	195	220	100	200
	其他	102	120	130	130	130	120	100
	其他	102	100	120	130	135	150	150
	其他	859	323	150	150	200	200	150
	其他	150	30	300	400	500	450	400
	其他	-	-	212	528	150	3	250
	其他	8,421	8,549	7,981	7,683	8,275	8,224	7,345
	其他	2,883	2,823	3,775	3,142	3,738	3,404	3,443
	其他	519	552	802	640	739	1,093	107
其他	11,823	11,924	12,558	11,465	12,752	12,721	10,895	

資料：USDA(FAS), 1988. 6.

3. 主要國의 穀物需給 現況

3. 主要國의 穀

가. 美國

① 全體穀物

品目	年 度	期 初 在 庫	收 穫 面 積	單 位 當 收 穫 量
飼 料 穀 物 및 小 麥	1970/71	72.8	58.4	3.1
	1971/72	54.6	62.9	3.7
	1972/73	73.4	57.5	3.9
	1973/74	47.9	63.5	3.7
	1974/75	31.1	67.2	3.0
	1975/76	32.3	70.7	3.4
	1976/77	41.3	72.0	3.5
	1977/78	65.6	71.2	3.7
	1978/79	81.0	66.1	4.1
	1979/80	81.5	67.1	4.4
	1980/81	88.7	70.1	3.8
	1981/82	71.2	76.1	4.2
	1982/83	109.6	74.8	4.4
	1983/84	149.9	57.7	3.5
	1984/85	77.9	70.6	4.4
	1985/86	96.8	71.7	4.8
	1986/87	178.7	66.1	4.7
	1987/88	201.9	58.0	4.7
	1988/89	164.2	22.6	12.3
	1989/90	131.3		
小 麥	1970/71	26.8	17.7	2.1
	1971/72	22.4	19.3	2.3
	1972/73	26.8	19.1	2.2
	1973/74	16.2	21.9	2.1
	1974/75	9.3	26.5	1.8
	1975/76	11.8	28.1	2.1
	1976/77	18.1	28.7	2.0
	1977/78	30.3	27.0	2.1
	1978/79	32.1	22.9	2.1
	1979/80	25.1	25.3	2.3

物 需 給 現 況

單位：百萬 ha，百萬噸

生 產	輸 入	輸 出	國 內 飼 料 用	國 內 總 使 用
182.9	0.4	38.8	132.1	162.8
233.6	0.4	40.5	143.1	174.6
224.1	0.4	69.1	147.8	180.9
233.4	0.3	73.8	143.0	176.7
199.4	0.6	63.6	101.5	135.1
243.3	0.5	81.2	116.6	153.6
252.9	0.4	76.0	115.6	153.0
261.4	0.4	86.2	122.2	160.3
270.4	0.3	92.0	138.9	178.2
296.5	0.4	108.4	142.2	182.8
263.1	0.4	111.9	125.6	169.0
322.4	0.4	108.2	131.2	176.3
326.0	0.6	94.1	144.6	192.1
203.0	0.8	95.5	130.2	180.3
308.3	1.1	95.4	141.6	195.2
340.9	1.4	61.5	142.4	198.8
309.7	1.3	73.6	156.5	214.3
273.0	1.4	95.3	157.9	216.8
277.6	1.2	92.8	158.1	219.0
36.8	0.0	20.2	5.3	21.0
44.1	0.0	16.3	7.1	23.4
42.1	0.0	30.4	5.5	22.3
46.6	0.1	33.1	3.5	20.5
48.5	0.1	27.7	1.1	18.3
57.9	0.1	31.9	1.0	19.7
58.5	0.1	25.9	2.0	20.5
55.7	0.1	30.6	5.3	23.4
48.3	0.0	32.5	4.3	22.8
58.1	0.1	37.4	2.3	21.3

品目	年 度	期 初 在 庫	收 穫 面 積	單 位 當 收 穫 量
小 麥	1980/81	24.5	28.8	2.3
	1981/82	26.9	32.6	2.3
	1982/83	31.5	31.5	2.4
	1983/84	41.2	24.8	2.7
	1984/85	38.1	27.1	2.6
	1985/86	38.8	26.2	2.5
	1986/87	51.8	24.6	2.3
	1987/88	49.6	22.6	2.5
	1988/89	33.6	22.6	2.6
	1989/90	21.3		
飼 ¹⁾ 料 穀 物	1970/71	46.1	40.7	3.6
	1971/72	32.2	43.6	4.3
	1972/73	46.6	38.4	4.7
	1973/74	31.7	41.6	4.5
	1974/75	21.8	40.7	3.7
	1975/76	20.5	42.6	4.4
	1976/77	23.2	43.3	4.5
	1977/78	35.3	44.2	4.7
	1978/79	48.9	43.2	5.1
	1979/80	56.4	41.8	5.7
	1980/81	64.1	41.3	4.8
	1981/82	44.3	43.4	5.7
	1982/83	78.0	43.2	5.8
	1983/84	108.7	32.9	4.2
	1984/85	39.9	43.6	5.5
	1985/86	58.0	45.5	6.0
	1986/87	126.9	41.5	6.1
	1987/88	152.3	35.4	6.1
	1988/89	130.6	0.0	ERR
1989/90	110.0			

資料：USDA(FAS), 1988.6.

註：1) 옥수수, 수수, 보리, 호밀, 귀리

單位：百萬 ha，百萬噸

生 產	輸 入	輸 出	國內飼料用	國內總使用
64.8	0.1	41.2	1.6	21.3
75.8	0.1	48.2	3.6	23.1
75.3	0.2	41.1	5.3	24.7
65.9	0.1	38.9	10.2	30.2
70.6	0.3	38.8	11.0	31.4
66.0	0.4	24.9	7.3	28.5
56.9	0.6	27.3	10.5	32.5
57.3	0.4	43.5	8.2	30.1
57.7	0.4	40.8	6.8	29.7
146.1	0.4	18.6	126.9	141.8
189.5	0.3	24.2	136.0	151.3
182.0	0.4	38.7	142.3	158.6
186.8	0.2	40.7	139.5	156.2
150.9	0.5	35.9	100.4	116.8
185.4	0.4	49.3	115.6	133.9
194.4	0.3	50.1	113.6	132.5
205.7	0.3	55.6	116.9	136.9
222.1	0.3	59.5	134.6	155.4
238.4	0.3	71.0	139.9	161.5
198.3	0.3	70.7	124.0	147.7
246.6	0.3	60.0	127.6	153.3
250.7	0.4	53.0	139.3	167.4
137.1	0.7	56.6	120.0	150.1
237.7	0.8	56.6	130.6	163.8
274.9	0.9	36.6	135.1	170.3
252.8	0.7	46.3	146.1	181.8
215.7	1.0	51.8	149.8	186.7
219.9	0.8	52.0	151.3	189.3

② 小麥, 옥수수

單位: 百萬부셴, 百萬에이커

品目	年 度	期 初 在 庫	收 穫 面 積	單 位 當 量 收 穫 量	生 產	輸 入	輸 出	國 內 飼 料 用	國 內 總 使 用
小 麥	1975/76	435	69.5	30.6	2,127	3	1,173	37	725
	1976/77	666	70.9	30.3	2,149	3	950	75	755
	1977/78	1,113	66.7	30.7	2,046	2	1,124	192	859
	1978/79	1,178	56.5	31.4	1,776	2	1,194	158	837
	1979/80	924	62.5	34.2	2,134	2	1,375	86	783
	1980/81	902	71.1	33.5	2,381	3	1,514	60	783
	1981/82	989	80.6	34.5	2,785	3	1,771	135	847
	1982/83	1,159	77.9	35.5	2,765	8	1,509	195	908
	1983/84	1,515	61.4	39.4	2,420	4	1,429	369	1,111
	1984/85	1,398	66.9	38.8	2,595	9	1,425	405	1,154
	1985/86	1,425	64.7	37.5	2,425	16	915	270	1,046
	1986/87	1,905	60.7	34.4	2,092	21	1,004	385	1,193
	1987/88	1,821	55.9	37.6	2,105	15	1,600	275	1,110
1988/89	1,231	-	-	2,170	15	1,500	250	1,120	
1989/90	796								
옥 수 수	1975/76	361	67.6	86.4	5,841	2	1,711	3,603	4,093
	1976/77	400	71.5	88.0	6,289	3	1,684	3,609	4,122
	1977/78	1,136	70.6	92.1	6,505	3	1,909	3,717	4,298
	1978/79	1,436	71.9	101.0	7,268	1	2,124	4,264	4,872
	1979/80	1,710	72.4	109.5	7,928	1	2,415	4,549	5,189
	1980/81	2,034	73.0	91.0	6,639	1	2,408	4,157	4,875
	1981/82	1,392	74.6	108.9	8,119	1	2,010	4,169	4,966
	1982/83	2,537	72.7	113.2	8,235	1	1,834	4,521	5,416
	1983/84	3,523	51.5	81.1	4,175	3	1,902	3,818	4,793
	1984/85	1,006	71.9	106.7	7,674	4	1,865	4,116	5,170
	1985/86	1,648	75.2	118.0	8,877	11	1,241	4,095	5,255
	1986/87	4,040	69.2	119.3	8,250	2	1,504	4,715	5,906
	1987/88	4,882	59.2	119.4	7,064	2	1,700	4,900	6,136
1988/89	4,112	-	-	7,300	2	1,750	5,000	6,275	
1989/90	3,389								

資料: USDA(FAS), 1988. 6.

③ 수수, 보리

單位：百萬부셀, 百萬에이커

品目	年度	期在 初庫	收面 穫積	單位當 收穫量	生産	輸入	輸出	國內 飼料用	國內 總使用
수	1975/76	35	15.4	49.0	754	-	229	502	509
	1976/77	51	14.5	49.0	711	-	246	419	425
	1977/78	47	13.8	56.6	781	-	223	436	447
	1978/79	157	13.4	54.5	731	-	190	540	552
	1979/80	146	12.9	62.6	807	-	330	494	506
	1980/81	118	12.5	46.3	579	-	293	336	347
	1981/82	57	13.7	64.0	876	-	260	416	427
	1982/83	247	14.1	59.1	835	-	210	475	485
	1983/84	387	10.0	48.7	488	-	245	412	422
	1984/85	287	15.3	56.4	866	-	297	539	557
수	1985/86	300	16.8	66.8	1,120	-	178	664	691
	1986/87	551	13.9	67.7	938	-	198	545	559
	1987/88	732	10.6	69.9	741	-	225	550	565
	1988/89	682	-	-	650	-	210	500	515
	1989/90	607							
보리	1975/76	92	8.6	44.1	379	16	24	186	335
	1976/77	128	8.4	45.6	383	11	66	172	330
	1977/78	126	9.7	44.0	428	9	57	177	333
	1978/79	173	9.2	49.2	455	10	26	217	384
	1979/80	228	7.5	50.9	383	12	55	204	376
	1980/81	192	7.3	49.7	361	10	77	174	349
	1981/82	137	9.0	52.4	474	10	100	198	372
	1982/83	148	9.0	57.2	516	11	47	241	411
	1983/84	217	9.7	52.3	509	7	92	283	452
	1984/85	189	11.2	53.4	599	10	77	304	474
	1985/86	247	11.6	51.0	591	9	22	333	501
	1986/87	325	12.0	50.8	611	7	137	296	470
	1987/88	336	10.0	52.6	527	15	130	275	450
	1988/89	298	-	-	500	15	100	265	440
	1989/90	273							

資料：USDA(FAS), 1988. 6.

④ 귀리, 호밀

單位：百萬부셀, 百萬에이커

品目	年度	期在 初庫	收面 積	單位當 收稈量	生産	輸 入	輸 出	國 內 飼料用	國 內 總使用
귀	1975/76	224	13.0	49.0	639	1	14	560	645
	1976/77	205	11.8	45.9	540	2	10	490	573
	1977/78	164	13.5	55.6	753	2	12	509	594
	1978/79	313	11.1	52.3	582	1	13	525	603
	1979/80	280	9.7	54.4	527	1	4	492	568
	1980/81	236	8.7	53.0	459	1	13	432	506
	1981/82	177	9.4	54.2	510	2	7	454	530
	1982/83	152	10.3	57.8	593	4	3	441	526
	1983/84	220	9.1	52.6	477	30	2	466	544
	1984/85	181	8.2	58.0	474	34	1	433	508
	1985/86	180	8.2	63.7	521	28	2	460	542
	1986/87	184	6.9	56.3	386	33	3	395	468
	1987/88	133	6.9	54.0	374	35	1	350	425
	1988/89	116	-	-	450	30	1	380	461
1989/90	135								
호	1975/76	7	0.7	22.9	16	1	1	7	18
	1976/77	4	0.7	21.4	15	-	-	5	15
	1977/78	4	0.7	24.4	17	-	-	7	17
	1978/79	4	0.9	26.0	24	-	-	8	19
	1979/80	9	0.9	25.7	22	-	2	7	17
	1980/81	12	0.7	24.6	16	-	8	7	16
	1981/82	4	0.7	26.6	18	-	2	8	18
	1982/83	3	0.7	28.9	20	3	-	10	20
	1983/84	6	0.9	30.3	27	2	1	12	22
	1984/85	11	1.0	33.1	33	1	1	15	24
	1985/86	20	0.7	28.8	21	2	-	11	21
	1986/87	22	0.7	28.8	20	1	1	13	22
	1987/88	20	0.7	28.9	20	2	1	11	20
	1988/89	21	-	-	20	1	1	13	22
1989/90	20								

資料：USDA(FAS), 1988. 6.

⑤ 쌀

單位：千噸

年 度	收穫面積 (千 ha)	單位當 收穫量 (MT/Ha)	粗穀生產	期初在庫	精穀生產	輸 入	輸 出	國內使用
1960/61	645	3.84	2,477	395	1,756	9	919	911
1961/62	643	3.82	2,459	330	1,763	13	936	997
1962/63	718	4.17	2,996	173	2,133	1	1,119	937
1963/64	717	4.45	3,188	251	2,295	1	1,385	917
1964/65	723	4.59	3,318	245	2,386	15	1,387	1,008
1965/66	725	4.77	3,460	251	2,497	22	1,418	1,081
1966/67	796	4.84	3,856	271	2,805	-	1,719	1,079
1967/68	797	5.09	4,054	278	2,950	-	1,816	1,190
1968/69	952	4.96	4,723	222	3,459	-	1,729	1,420
1969/70	861	4.84	4,169	532	3,003	7	1,781	1,220
1970/71	734	5.18	3,801	536	2,796	48	1,461	1,308
1971/72	736	5.28	3,890	611	2,838	36	1,804	1,309
1972/73	736	5.26	3,875	372	2,828	17	1,726	1,324
1973/74	878	4.79	4,208	167	3,034	7	1,604	1,349
1974/75	1,024	4.97	5,098	255	3,667	-	2,194	1,496
1975/76	1,140	5.23	5,824	232	4,099	-	1,732	1,394
1976/77	1,004	5.23	5,244	1,205	3,781	3	2,097	1,618
1977/78	910	4.94	4,500	1,274	3,120	3	2,270	1,248
1978/79	1,202	5.01	6,039	879	4,271	3	2,431	1,708
1979/80	1,161	5.16	5,986	1,014	4,324	3	2,706	1,794
1980/81	1,340	4.95	6,629	841	4,838	7	3,028	2,113
1981/82	1,535	5.40	8,289	545	5,974	13	2,683	2,247
1982/83	1,320	5.28	6,969	1,602	4,948	21	2,219	2,049
1983/84	878	5.15	4,523	2,303	3,216	27	2,272	1,794
1984/85	1,134	5.55	6,296	1,481	4,382	51	1,960	1,876
1985/86	1,008	6.07	6,482	2,078	4,333	71	1,885	2,114
1986/87	955	6.33	6,812	2,483	4,246	83	2,719	2,450
1987/88	943	6.14	5,793	1,643	4,055	95	2,318	2,569
1988/89	NA	NA	6,088	1,001	4,985	102	2,445	2,652
1989/90				991				

資料：USDA(FAS), 1988. 6.

品目	年度	收穫面積	單位別收穫量	生產	輸入 ¹⁾		輸出 ¹⁾		國內飼料用	總使用	期末在庫
					會計年度	交易年度	會計年度	交易年度			
小麥 飼料穀物	1977/78	35.6	3.41	121.1	45.9	28.7	26.0	10.5	85.7	142.5	15.9
	1978/79	36.8	3.73	137.2	42.9	26.1	28.5	14.3	89.3	146.3	21.2
	1979/80	36.6	3.62	132.3	43.0	27.3	31.1	15.7	90.1	147.1	18.3
	1980/81	36.9	3.90	144.2	39.7	25.2	36.7	21.6	87.9	144.5	20.9
	1981/82	36.6	3.67	134.2	42.4	24.0	36.7	19.7	86.3	142.8	18.0
	1982/83	36.6	3.97	145.3	36.1	18.9	36.9	20.6	85.7	140.9	21.6
	1983/84	36.0	3.83	137.7	34.1	16.2	37.0	19.7	87.2	142.2	14.1
	1984/85	36.1	4.77	172.4	33.7	13.0	47.4	27.0	88.9	145.9	26.9
	1985/86	35.5	4.50	159.9	33.6	8.4	47.4	23.7	87.8	141.7	31.2
	1986/87	35.4	4.33	153.2	29.7	5.8	48.4	22.6	81.1	136.9	28.9
1987/88 ²⁾	35.0	4.39	153.5	30.2	6.4	46.9	22.8	80.3	137.2	28.5	
1988/89 ³⁾	34.8	4.61	160.2	27.3	6.0	49.9	24.3	79.4	136.4	29.7	
小麥	1977/78	14.0	3.19	44.5	13.3	6.3	12.7	5.1	10.8	47.5	7.4
	1978/79	15.1	3.67	55.3	11.7	5.7	15.3	8.8	12.1	47.9	11.3
	1979/80	14.8	3.59	53.2	12.0	6.4	17.8	10.7	12.8	48.9	9.7
	1980/81	15.6	3.94	61.5	11.4	5.6	21.7	15.7	13.3	49.4	11.6
	1981/82	15.7	3.71	58.1	12.1	5.6	22.3	15.7	14.0	49.6	9.8
	1982/83	16.0	4.04	64.7	10.1	4.6	21.9	16.3	15.9	50.2	12.4
	1983/84	16.1	3.97	63.8	10.9	4.0	22.3	15.5	21.1	56.0	8.8
	1984/85	16.2	5.13	82.9	13.0	3.4	28.4	18.5	23.2	59.9	16.4
	1985/86	15.3	4.69	71.6	15.3	2.8	27.8	15.6	23.7	59.3	16.3
	1986/87	15.7	4.58	71.9	13.5	2.4	28.0	16.4	21.7	57.6	16.0
1987/88 ²⁾	15.9	4.48	71.2	13.5	2.5	27.3	14.5	22.1	58.3	15.2	
1988/89 ³⁾	15.6	4.81	74.9	12.3	2.4	27.8	16.0	21.9	59.0	15.6	
飼料穀物 ⁴⁾	1977/78	21.6	3.55	76.6	32.6	22.4	13.3	5.5	74.9	95.0	8.4
	1978/79	21.7	3.77	81.9	31.1	20.4	13.2	5.5	77.3	98.4	9.9
	1979/80	21.7	3.64	79.2	31.0	20.9	13.3	5.0	77.4	98.3	8.5
	1980/81	21.3	3.87	82.6	28.3	19.7	15.0	5.9	74.5	95.1	9.4
	1981/82	20.9	3.64	76.1	30.4	18.5	14.4	4.0	72.3	93.2	8.3
	1982/83	20.6	3.91	80.7	25.9	14.3	15.0	4.2	69.8	90.6	9.2
	1983/84	19.9	3.72	73.9	23.2	12.2	14.7	4.3	66.1	86.2	5.4
	1984/85	20.0	4.49	89.6	20.7	9.5	19.0	8.5	65.7	86.1	10.5
	1985/86	20.3	4.36	88.3	18.3	5.5	19.7	8.1	64.1	82.5	14.9
	1986/87	19.7	4.13	81.3	16.3	3.4	20.3	6.2	59.4	79.2	12.9
1987/88 ²⁾	19.1	4.31	82.2	16.7	3.9	19.6	8.3	58.2	78.9	13.3	
1988/89 ³⁾	19.2	4.44	85.3	15.0	3.6	22.1	8.3	57.5	77.4	14.0	

資料：USDA(FAS), 1988. 6.

註：1) EC 域內間 交易分은 除外되었음

2) 잠정치

3) 추정치

4)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混穀

* 小麥年度는 7月/6月, 飼料穀物年度는 10月/9月基準

다. 東유럽

單位：百萬ha, 百萬%

品目	年 度	收穫面積	單位當 收穫量	生 產	輸 入	輸 出	純輸入	總使用	在 庫 增 減
小 麥 및 飼 料 穀 物	1978/79	29.2	3.30	96.4	15.0	3.4	11.6	109.6	-0.4
	1979/80	29.0	3.14	91.1	17.6	2.9	14.7	104.4	0.0
	1980/81	28.9	3.32	96.0	16.1	4.5	11.6	110.2	-0.4
	1981/82	28.8	3.31	95.2	12.5	4.1	8.3	104.1	0.2
	1982/83	28.8	3.70	106.5	9.6	5.6	3.9	108.0	1.6
	1983/84	28.9	3.54	102.3	7.7	5.3	2.4	105.4	-0.7
	1984/85	29.0	3.96	114.8	6.4	6.9	-0.6	112.5	2.1
	1985/86	28.7	3.57	102.6	9.0	4.4	4.6	107.7	-0.7
	1986/87	29.1	3.88	113.0	7.0	4.6	2.3	112.2	3.4
	1987/88 ²⁾	28.8	3.59	103.2	7.7	2.9	4.7	110.4	-2.2
1988/89 ³⁾	29.3	3.82	112.1	5.9	3.9	2.0	114.0	0.6	
小 麥	1978/79	10.2	3.52	35.9	4.4	2.2	2.2	39.1	-0.5
	1979/80	9.3	2.97	27.6	6.1	1.1	5.0	32.1	0.0
	1980/81	9.7	3.56	34.6	5.8	2.5	3.4	38.5	0.1
	1981/82	9.0	3.38	30.6	6.2	2.0	4.3	35.1	-0.1
	1982/83	9.4	3.69	34.7	4.5	2.4	2.2	36.8	-0.1
	1983/84	10.0	3.54	35.4	3.8	2.3	1.5	37.1	-0.3
	1984/85	10.2	4.14	42.1	2.6	4.1	-1.5	40.1	0.6
	1985/86	10.2	3.65	37.1	3.4	2.5	0.9	38.2	-0.2
	1986/87	10.5	3.73	39.1	3.7	1.9	1.8	39.1	2.0
	1987/88 ²⁾	10.6	3.70	39.2	3.5	2.0	1.5	41.3	-0.4
1988/89 ³⁾	10.7	3.89	41.6	3.0	2.0	0.9	42.7	0.0	
飼 ¹⁾ 料 穀 物	1978/79	18.9	3.20	60.5	10.6	1.2	9.4	70.6	0.1
	1979/80	19.8	3.20	63.4	11.5	1.8	9.7	72.3	-0.1
	1980/81	19.2	3.24	62.3	10.2	2.1	8.1	72.5	-0.5
	1981/82	19.7	3.27	64.5	6.1	2.1	3.9	69.1	0.3
	1982/83	19.4	3.71	71.8	5.0	3.3	1.8	71.2	1.7
	1983/84	18.9	3.54	66.9	3.9	3.0	0.9	68.3	-0.5
	1984/85	18.8	3.87	72.8	3.8	2.8	0.9	72.4	1.5
	1985/86	18.6	3.53	65.5	5.6	1.9	3.7	69.6	-0.5
	1986/87	18.6	3.97	73.9	3.2	2.7	0.5	73.0	1.4
	1987/88 ²⁾	18.2	3.52	64.0	4.2	1.0	3.2	69.1	-1.8
1988/89 ³⁾	18.7	3.78	70.5	2.9	1.9	1.1	71.3	0.6	

資料：USDA(FAS), 1988. 6.

註 1) 옥수수, 수수, 보리, 호밀, 귀리, 混穀

2) 잠정치

3) 계획치

라. 蘇 聯

單位：百萬ha, 百萬%

品目	年 度	收 穫 面 積	單位當 收 穫 量	生 產	輸 入	輸 出	純輸入	總使用	在 庫 增 減
小 麥 및 飼 料 穀 物	1978/79	120.9	1.87	226.2	15.1	2.5	12.5	219.7	19.0
	1979/80	118.9	1.44	171.3	30.5	0.5	30.0	214.4	-13.0
	1980/81	119.3	1.50	178.7	34.0	0.5	33.5	212.2	0.0
	1981/82	117.3	1.28	150.5	46.3	0.5	45.8	203.3	-7.0
	1982/83	115.3	1.53	176.1	33.3	0.5	32.8	201.3	7.6
	1983/84	112.0	1.60	179.4	32.1	0.5	31.6	204.8	6.2
	1984/85	110.3	1.44	159.1	55.0	0.5	54.5	205.0	8.6
	1985/86	108.7	1.64	178.1	29.4	0.5	28.9	205.0	2.0
	1986/87	107.3	1.85	198.2	27.0	0.5	26.5	217.7	7.0
	1987/88 ²⁾	106.2	1.86	197.0	31.5	0.5	31.0	222.1	5.9
1988/89 ³⁾	107.0	1.88	201.0	25.0	1.0	24.0	219.0	6.0	
小 麥	1978/79	62.9	1.92	120.8	5.1	1.5	3.6	106.5	18.0
	1979/80	57.7	1.56	90.2	12.1	0.5	11.6	114.8	-13.0
	1980/81	61.5	1.60	98.2	16.0	0.5	15.5	112.7	1.0
	1981/82	59.2	1.37	81.1	20.3	0.5	19.8	104.9	-4.0
	1982/83	57.3	1.47	84.3	20.8	0.5	20.3	100.6	4.0
	1983/84	50.8	1.53	77.5	20.5	0.5	20.0	93.0	4.5
	1984/85	51.1	1.34	68.6	28.1	0.5	27.6	91.2	5.0
	1985/86	50.3	1.55	78.1	15.7	0.5	15.2	91.6	1.7
	1986/87	48.7	1.89	92.3	16.0	0.5	15.5	102.8	5.0
	1987/88 ²⁾	46.7	1.78	83.3	21.5	0.5	21.0	100.5	3.8
1988/89 ³⁾	48.5	1.90	92.0	15.0	1.0	14.0	102.0	4.0	
飼 ¹⁾ 料 穀 物	1978/79	58.0	1.82	105.3	9.9	1.0	8.9	113.2	1.0
	1979/80	61.2	1.33	81.1	18.4	0.0	18.4	99.5	0.0
	1980/81	57.9	1.39	80.5	18.0	0.0	18.0	99.5	-1.0
	1981/82	58.0	1.19	69.4	26.0	0.0	26.0	98.4	-3.0
	1982/83	58.0	1.58	91.8	12.5	0.0	12.5	100.7	3.6
	1983/84	61.2	1.66	101.9	11.6	0.0	11.6	111.8	1.7
	1984/85	59.2	1.53	90.5	26.9	0.0	26.9	113.8	3.6
	1985/86	58.5	1.71	100.0	13.7	0.0	13.7	113.4	0.3
	1986/87	58.6	1.81	105.9	11.0	0.0	11.0	114.9	2.0
	1987/88 ²⁾	59.5	1.91	113.7	10.0	0.0	10.0	121.6	2.1
1988/89 ³⁾	58.5	1.86	109.0	10.0	0.0	10.0	117.0	2.0	

資料：USDA(FAS), 1988. 6.

註：1) 옥수수, 수수, 보리, 호밀, 귀리, 기장

2) 잠정치

3) 계획치

中 共

單位：百萬ha, 百萬%

品目	年度	收面 穫積	單位當 收穫量	生 產	輸 入	輸 出	純輸入	總使用	在 庫 增 減
小 麥 飼 料 穀 物	1978/79	62.7	2.12	132.9	11.1	0.1	11.0	143.9	0.0
	1979/80	63.1	2.31	145.8	10.9	0.1	10.8	156.5	0.0
	1980/81	60.9	2.26	137.6	14.6	0.2	14.4	163.0	-11.0
	1981/82	59.0	2.36	139.1	14.5	0.2	14.3	162.4	-9.0
	1982/83	57.8	2.60	150.2	15.7	0.1	15.6	164.8	1.0
	1983/84	59.2	2.92	173.0	9.8	0.4	9.5	170.5	12.0
	1984/85	58.8	3.13	184.0	7.5	5.7	1.8	180.8	5.0
	1985/86	56.2	2.99	168.1	7.3	7.1	0.2	187.3	-19.0
	1986/87	57.5	3.10	178.5	10.6	4.1	6.5	192.7	-7.7
	1987/88 ²⁾	57.8	3.18	183.5	14.8	3.1	11.7	199.5	-4.3
1988/89 ³⁾	57.5	3.21	184.2	15.4	3.2	12.2	196.8	-0.4	
小 麥	1978/79	29.2	1.84	53.8	8.0	0.0	8.0	61.9	0.0
	1979/80	29.4	2.14	62.7	8.9	0.0	8.9	71.6	0.0
	1980/81	29.2	1.89	55.2	13.8	0.0	13.8	76.0	-7.0
	1981/82	28.3	2.11	59.6	13.2	0.0	13.2	78.8	-6.0
	1982/83	27.9	2.45	68.4	13.0	0.0	13.0	79.4	2.0
	1983/84	29.1	2.80	81.4	9.6	0.0	9.6	83.0	8.0
	1984/85	29.6	2.97	87.8	7.4	0.0	7.4	92.2	3.0
	1985/86	29.2	2.94	85.8	6.6	0.0	6.6	100.4	-8.0
	1986/87	29.6	3.04	90.0	8.5	0.0	8.5	101.5	-3.0
	1987/88 ²⁾	28.9	3.03	87.7	13.5	0.0	13.5	105.2	-4.0
1988/89 ³⁾	29.5	3.08	91.0	13.5	0.0	13.5	105.0	-0.5	
飼 ¹⁾ 料 穀 物	1978/79	33.5	2.36	79.0	3.1	0.1	3.0	82.0	0.0
	1979/80	33.7	2.46	83.1	2.0	0.1	1.9	85.0	0.0
	1980/81	31.7	2.60	82.4	0.9	0.2	0.7	87.0	-4.0
	1981/82	30.7	2.59	79.5	1.3	0.2	1.1	83.6	-3.0
	1982/83	29.9	2.74	81.8	2.7	0.1	2.6	85.4	-1.0
	1983/84	30.1	3.04	91.6	0.2	0.4	-0.1	87.5	4.0
	1984/85	29.2	3.30	96.2	0.1	5.7	-5.6	88.6	2.0
	1985/86	27.0	3.05	82.3	0.7	7.1	-6.4	86.9	-11.0
	1986/87	27.9	3.17	88.4	2.1	4.1	-2.0	91.1	-4.7
	1987/88 ²⁾	28.8	3.32	95.8	1.3	3.1	-1.8	94.2	-0.3
1988/89 ³⁾	28.0	3.33	93.2	1.9	3.2	-1.3	91.8	0.1	

資料：USDA(FAS), 1988. 6.

註：1) 옥수수, 수수, 보리, 호밀, 귀리, 기장

2) 감정치

3) 계획치

4. 飼料穀物別 主要國 需給現況

가. 옥수수

單位：百萬ha, 百萬%

區分	年度	收穫面積	單位當收穫量	生産	國內消費	輸 出		期末在庫
						10月/9月	會計年度	
아 르 헨 티 나 (3月/2月)	1979/80	2,899	3.10	9,000	3,296	3,460	5,965	173
	1980/81	2,490	2.57	6,400	3,048	9,016	3,417	108
	1981/82	3,394	3.80	12,900	3,700	—	—	—
	1982/83	3,170	3.03	9,600	3,500	6,483	5,765	545
	1983/84	2,970	3.03	9,000	3,200	5,885	6,056	289
	1984/85	3,024	3.14	9,500	4,250	7,072	5,448	91
	1985/86	3,340	3.56	11,900	4,475	7,430	7,126	390
	1986/87	3,351	3.70	12,400	5,000	3,965	7,367	423
	1987/88	2,900	3.19	9,250	5,350	4,200	4,000	323
	1988/89 ¹⁾	2,600	3.46	9,000	5,000	4,200	4,200	123
1989/90 ²⁾	2,700	3.33	9,000	4,800	—	4,200	123	
남 아 프 리 카 (5月/4月)	1979/80	4,305	1.92	3,271	6,702	3,303	2,325	1,359
	1980/81	4,322	2.50	10,794	6,757	3,930	3,444	1,952
	1981/82	4,339	3.33	14,645	7,097	4,700	4,955	4,545
	1982/83	4,278	1.95	8,359	7,784	2,376	3,787	1,333
	1983/84	4,065	1.00	4,083	7,450	192	238	42
	1984/85	3,953	1.11	4,405	6,182	150	9	264
	1985/86	3,887	2.09	8,136	6,211	1,470	517	1,865
	1986/87	4,044	2.00	8,078	5,764	2,560	2,899	1,289
	1987/88	4,014	1.78	7,150	5,510	1,500	2,000	929
	1988/89 ¹⁾	3,600	2.08	7,500	5,500	1,500	2,000	929
1989/90 ²⁾	3,700	2.16	8,000	6,400	—	1,400	1,129	
泰 國 (7月/6月)	1978/79	1,386	2.01	2,791	691	1,927	2,078	53
	1979/80	1,424	2.32	3,300	1,050	2,067	2,150	153
	1980/81	1,450	2.21	3,200	1,108	2,113	2,142	103
	1981/82	1,750	2.49	4,350	1,050	3,260	3,260	143
	1982/83	1,850	1.86	3,450	1,160	2,136	2,136	297
	1983/84	1,825	2.16	3,950	1,174	3,096	2,846	227
	1984/85	1,955	2.23	4,350	1,290	3,167	3,180	107
	1985/86	2,266	2.36	5,350	1,270	3,766	3,674	513
	1986/87	1,815	2.37	4,309	1,630	2,465	2,916	276
	1987/88 ¹⁾	1,754	1.56	2,736	2,052	935	800	160
1988/89 ²⁾	2,100	2.29	4,800	2,150	2,600	2,600	210	

資料：USDA(FAS), 1988. 6.

註：1) 잠정치
2) 계획치

나. 수 수

單位：百萬ha, 百萬%

區分	年度	收穫面積	單位當收穫量	生產	國內消費	輸出		期末在庫
						10月/9月	會計年度	
아르헨티나 (3月/2月)	1979/80	2,117	3.07	6,500	2,856	1,611	3,755	141
	1980/81	1,279	2.31	2,960	1,585	4,860	1,494	22
	1981/82	2,100	3.38	7,100	2,050	5,216	4,940	132
	1982/83	2,510	3.19	8,000	2,090	4,931	5,544	498
	1983/84	2,520	3.02	7,600	2,700	4,788	5,197	201
	1984/85	2,370	2.91	6,900	2,900	3,360	4,134	67
	1985/86	1,965	3.16	6,200	2,800	2,165	3,140	327
	1986/87	1,400	3.00	4,200	2,400	950	1,950	177
	1987/88	1,000	3.10	3,100	2,300	1,000	800	177
	1988/89 ¹⁾	1,000	3.00	3,000	1,900	1,100	1,100	177
	1989/90 ²⁾	1,000	3.10	3,100	2,000	-	1,100	177
濠洲 (3月/2月)	1979/80	469	2.40	1,125	502	650	669	134
	1980/81	519	1.78	922	367	510	506	183
	1981/82	658	1.83	1,204	466	1,238	856	65
	1982/83	649	2.03	1,317	366	281	961	55
	1983/84	707	1.36	958	701	1,393	282	30
	1984/85	730	2.58	1,885	304	1,196	1,553	58
	1985/86	723	1.89	1,369	331	1,084	1,086	10
	1986/87	734	1.93	1,416	270	645	1,064	92
	1987/88	767	1.54	1,184	667	650	609	0
	1988/89 ¹⁾	853	1.64	1,400	705	1,000	685	10
	1989/90 ²⁾	950	1.86	1,770	815	-	950	15

資料：USDA (FAS), 1988. 6.

註：1) 잠정치
2) 계획치

다. 보 리

單位：百萬ha, 百萬%

區分	年度	收穫面積	單位當收穫量	生產	國內消費	輸出		期末在庫
						10月/9月	會計年度	
濠洲 (11月/10月)	1978/79	2,785	1.44	4,006	1,560	2,007	2,112	533
	1979/80	2,482	1.49	3,703	1,357	2,900	2,824	55
	1980/81	2,451	1.09	2,682	831	1,540	1,781	125
	1981/82	2,685	1.28	3,450	1,691	2,071	1,834	50
	1982/83	2,452	0.79	1,939	1,419	600	480	90
	1983/84	3,109	1.57	4,890	1,146	3,574	3,781	53
	1984/85	3,518	1.58	5,554	766	4,665	4,643	198
	1985/86	3,284	1.48	4,868	1,321	3,675	3,661	84
	1986/87	2,315	1.55	3,586	1,388	2,230	2,211	71
	1987/88 ¹⁾	2,408	1.37	3,295	1,194	2,100	2,100	72
	1988/89 ²⁾	2,500	1.48	3,700	1,050	2,500	2,650	72
캐나다 (8月/7月)	1978/79	4,259	2.44	10,387	7,146	3,898	3,554	4,895
	1979/80	3,724	2.27	8,460	7,537	2,963	3,832	2,006
	1980/81	4,634	2.43	11,259	6,835	4,012	3,236	3,203
	1981/82	5,476	2.51	13,724	7,046	5,543	5,722	4,161
	1982/83	5,149	2.71	13,966	7,275	6,071	5,648	5,204
	1983/84	4,353	2.35	10,209	8,174	4,240	5,268	1,971
	1984/85	4,566	2.26	10,297	7,592	2,439	2,604	2,156
	1985/86	4,750	2.61	12,387	7,653	4,790	3,592	3,304
	1986/87	4,829	2.03	14,634	8,148	6,015	6,528	3,262
	1987/88 ¹⁾	5,046	2.85	14,382	8,640	4,500	4,500	4,504
	1988/89 ²⁾	4,300	2.63	11,300	8,640	4,400	4,500	2,664

資料：USDA (FAS), 1988. 6.

註：1) 잠정치
2) 계획치

5. 國 際 穀 物 時

區 分	年 度 別	1	2	3	4	5	6
옥수수	74	163.49	168.16	155.45	154.52	150.79	155.66
	75	161.97	151.01	142.49	144.41	126.47	125.92
	76	128.93	128.24	126.97	125.54	132.82	137.80
	77	130.11	130.49	124.96	124.79	119.82	114.96
	78	121.86	122.65	130.31	132.78	134.48	129.62
	79	126.08	128.48	126.44	136.43	141.80	161.73
	80	156.77	152.79	150.29	152.94	155.92	156.29
	81	199.39	189.98	184.09	183.66	175.94	170.92
	82	138.94	136.30	135.72	143.86	143.05	134.24
	83	125.23	139.19	146.66	155.34	157.19	155.85
	84	161.17	157.35	166.37	168.60	166.92	164.35
	85	139.63	138.25	138.67	139.56	136.69	134.31
	86	126.72	121.68	114.27	113.46	118.45	113.68
	87	85.90	84.62	88.20	94.21	100.87	100.27
大 豆	74	285.17	290.55	267.50	255.30	246.27	251.29
	75	277.88	252.94	244.05	245.95	218.82	219.15
	76	198.96	200.98	199.39	206.97	220.97	259.17
	77	293.73	301.35	333.82	367.06	356.08	318.23
	78	247.07	244.50	280.62	284.13	294.65	284.94
	79	291.96	308.28	308.94	310.34	310.28	338.07
	80	292.57	293.36	281.36	272.86	277.77	282.05
	81	354.99	340.17	333.00	341.19	328.04	309.40
	82	277.26	273.19	268.98	284.29	287.80	269.99
	83	247.79	255.30	257.72	269.69	262.80	258.35
	84	316.35	306.52	326.50	327.97	348.80	323.23
	85	255.42	251.87	253.88	254.52	244.60	246.17
	86	233.13	229.70	226.47	222.60	223.76	220.98
	87	207.67	204.89	206.31	214.46	229.25	231.78
大豆粕	74	270.00	234.00	206.50	208.85	202.97	196.53
	75	210.45	198.80	201.29	207.49	197.74	201.47
	76	192.70	193.26	189.43	191.95	213.73	249.13
	77	292.16	292.96	315.41	347.99	328.40	288.47
	78	215.68	209.49	235.16	236.49	237.80	231.56
	79	248.82	259.58	258.29	261.01	262.15	296.67
	80	267.98	263.95	254.10	248.47	250.35	251.23
	81	331.73	318.66	304.82	313.74	307.79	292.35
	82	268.50	260.41	252.69	264.02	265.99	251.07
	83	247.60	244.70	244.79	251.35	248.26	243.24
	84	266.39	252.02	264.29	251.89	254.23	238.56
	85	194.63	181.38	179.13	175.78	166.52	165.75
	86	216.19	214.41	219.40	211.14	208.90	207.04
	87	200.50	201.48	196.98	206.67	223.50	237.38

※ 價格 = CBT價格 + Premium + Freight

勢 變 動 狀 況

單位：C&F, US\$/%

7	8	9	10	11	12	年平均	前年對比
167.95	181.71	171.68	187.27	181.12	173.08	167.57	%
129.18	146.36	143.32	138.41	130.06	128.63	139.02	83
137.17	132.55	135.38	130.17	121.51	121.98	129.96	93
108.22	100.37	102.17	107.63	113.35	120.19	116.48	87
120.54	116.44	115.38	119.99	119.46	118.30	123.48	106
169.40	160.62	160.59	161.95	165.16	166.41	150.54	122
173.39	182.37	182.63	186.54	197.77	200.67	170.70	113
169.52	158.45	144.39	143.80	142.91	136.55	166.63	98
126.21	116.35	114.14	110.35	122.40	124.26	128.82	77
159.45	173.14	169.44	167.14	165.97	162.37	156.41	121
154.13	148.47	145.36	139.42	139.81	136.33	154.02	98
126.79	115.00	113.76	118.38	129.17	129.27	129.79	84
94.32	85.99	83.98	86.03	92.68	89.04	103.58	80
93.32	90.84	94.75	100.25	103.54	104.96	95.14	92
304.61	338.80	322.12	364.05	336.06	315.26	298.08	
231.74	252.38	236.04	217.43	202.74	202.02	233.43	78
277.38	259.71	274.88	262.63	269.32	277.69	242.34	100
254.45	225.56	224.76	226.04	250.60	252.88	255.42	105
271.77	271.54	280.52	289.28	285.66	286.64	276.94	112
330.04	313.29	314.31	301.15	302.69	305.16	311.46	112
326.83	336.61	360.62	376.30	400.98	371.80	322.80	104
315.91	297.99	281.80	282.29	279.39	274.46	311.55	97
262.09	242.56	234.67	229.85	245.56	246.84	260.30	84
275.22	345.73	357.84	342.69	334.87	327.98	294.67	113
275.81	270.03	257.39	260.28	263.68	255.19	294.31	100
235.01	219.00	216.64	216.97	221.79	227.42	236.94	81
215.95	208.87	202.77	204.22	210.30	206.49	217.10	92
225.95	221.09	224.05	228.00	238.60	250.43	223.54	103
216.74	261.72	244.14	273.18	250.31	241.96	233.90	
207.19	219.42	215.10	206.02	192.52	183.34	203.40	90
255.99	244.46	259.58	—	265.90	276.90	230.28	88
237.94	205.59	195.43	198.12	211.63	217.95	224.96	98
220.82	223.35	232.42	245.27	246.60	249.70	232.02	97
287.92	274.17	275.42	269.42	276.48	278.04	270.83	117
286.09	305.19	341.30	363.11	389.16	342.30	296.96	110
290.62	280.32	267.81	266.70	266.46	266.64	292.30	98
243.48	224.44	216.14	213.29	232.61	242.70	244.61	84
256.37	308.66	307.74	299.99	299.97	291.22	270.32	111
213.24	208.87	194.89	194.79	196.05	193.15	227.36	84
171.81	173.05	182.15	196.34	202.09	205.21	182.82	80
207.09	211.10	212.37	204.64	204.16	195.90	209.36	115
224.63	215.62	232.25	241.55	265.67	265.92	226.01	108

6. 日 本 の 配

가. 配合飼料 生産

區 分	養 鷄 用			
	育 雛 用	肉 鷄 用	成 鷄 用	小 計
'65	793	455	4,064	5,312
'75	829	2,315	5,694	8,838
'76	856	2,579	5,948	9,383
'77	875	2,925	6,130	9,930
'78	893	3,107	6,246	10,245
'79	905	3,302	6,324	10,532
'80	944	3,345	6,403	10,692
'81	986	3,358	6,493	10,837
'82	1,038	3,590	6,772	11,400
'83	1,034	3,773	6,059	10,865
'84	998	3,981	5,968	10,947
'85	980	4,087	5,977	11,044
'86	1,032	4,223	6,092	11,347
'87	1,020	4,336	6,238	11,594

資料：日本農林水産省 畜産局 流通飼料課，飼料月報，1988. 5.

나. 飼料用 原料使用

區 分	옥수수	수수	小 麥	大 麥	쌀	其他穀類
'65	2,869,471 (35.0)	1,594,393 (18.9)	20,999 (0.3)	125,218 (1.5)	—	144,737 (1.8)
'75	6,262,563 (37.1)	3,814,888 (22.6)	15,285 (0.1)	157,146 (0.9)	—	398,770 (2.4)
'76	6,786,546 (36.2)	4,613,334 (24.7)	57,752 (0.3)	166,396 (0.9)	—	284,865 (1.5)
'77	7,356,487 (36.8)	5,030,996 (25.2)	132,136 (0.3)	164,559 (0.8)	—	263,462 (1.3)
'78	8,164,293 (38.5)	5,105,458 (24.1)	163,346 (0.7)	200,383 (0.9)	—	256,148 (1.2)
'79	8,934,014 (39.2)	5,481,351 (24.0)	177,934 (0.8)	204,367 (0.9)	—	319,834 (1.4)
'80	10,305,903 (46.2)	3,689,189 (16.6)	144,832 (0.7)	197,973 (0.9)	—	298,010 (1.3)
'81	10,369,240 (46.8)	3,456,174 (15.6)	161,421 (0.7)	187,282 (0.9)	74,957 (0.9)	334,885 (1.5)
'82	10,537,564 (46.0)	3,079,653 (13.5)	148,677 (0.6)	193,891 (0.8)	748,251 (3.3)	300,584 (1.3)
'83	11,477,592 (47.1)	3,290,885 (13.5)	141,035 (0.6)	224,648 (0.9)	532,647 (2.2)	334,273 (1.4)
'84	10,821,403 (44.0)	4,568,945 (18.6)	136,076 (0.6)	181,639 (0.7)	378 (0.0)	554,403 (2.3)
'85	11,017,600 (43.4)	4,787,042 (18.9)	98,871 (0.4)	169,167 (0.6)	13,513 (0.1)	823,652 (3.2)
'86	11,709,287 (45.2)	4,796,297 (18.5)	108,645 (0.4)	165,018 (0.7)	67,646 (0.3)	543,387 (2.1)
'87	13,064,951 (49.2)	3,830,936 (14.4)	118,581 (0.4)	166,737 (0.6)	677 (0.0)	623,092 (2.3)

資料：日本 農林水産省 畜産局 流通飼料課，飼料月報，1988. 5.

合飼料現況

單位：千%

養豚用	乳牛用	肉牛用	메추리用	其他가금用	合計
1,774	804	77	—	183	8,150
4,538	1,833	1,544	—	65	16,818
5,197	1,960	2,004	—	74	18,618
5,597	2,115	2,154	—	81	19,878
6,262	2,268	2,197	—	95	21,067
6,911	2,350	2,536	—	109	22,438
6,399	2,323	2,724	—	116	22,252
6,257	2,295	2,653	—	117	22,159
6,233	2,376	2,735	—	134	22,877
6,330	2,521	2,768	63	22	22,579
6,466	2,537	2,782	64	25	22,821
6,957	2,581	2,810	59	26	23,479
6,912	2,581	2,966	58	20	23,884
7,049	2,641	3,037	59	23	24,403

單位：%

小麥麩	米糠	脫脂糠	其他糠類	알팔과	大豆粕	菜種粕
554,281 (6.8)	73,677 (0.9)	241,167 (2.9)	439,342 (5.4)	—	623,205 (7.6)	—
494,687 (2.9)	145,453 (1.9)	320,845 (1.9)	531,532 (3.1)	331,613 (2.0)	1,786,913 (10.6)	—
544,663 (2.9)	141,835 (0.8)	314,698 (2.8)	524,198 (2.8)	340,673 (1.8)	1,942,094 (10.4)	—
520,774 (2.5)	139,172 (0.7)	321,277 (1.6)	562,209 (2.8)	340,117 (1.7)	2,204,715 (11.1)	—
561,199 (2.7)	139,775 (0.7)	294,423 (1.4)	611,113 (2.9)	343,660 (1.6)	2,362,578 (11.1)	—
578,457 (2.5)	151,284 (0.7)	311,208 (1.4)	732,855 (3.2)	340,791 (1.5)	2,474,007 (10.9)	—
633,291 (2.9)	158,117 (0.7)	281,548 (1.3)	811,245 (3.6)	311,523 (1.4)	2,488,846 (11.2)	—
673,163 (3.0)	115,193 (0.7)	290,035 (1.3)	855,735 (3.9)	289,574 (1.3)	2,321,733 (10.5)	—
706,721 (3.1)	174,443 (0.8)	289,768 (1.3)	861,522 (3.7)	276,173 (1.2)	2,464,312 (10.8)	—
741,561 (3.0)	190,651 (0.8)	272,614 (1.1)	944,979 (3.9)	315,487 (1.3)	2,591,255 (10.6)	403,450 (1.7)
740,302 (3.0)	163,633 (0.7)	279,223 (1.1)	1,016,315 (4.2)	295,280 (1.2)	2,499,613 (10.2)	434,937 (1.8)
755,665 (3.0)	118,897 (0.5)	268,156 (1.1)	959,476 (3.8)	253,259 (1.0)	2,629,070 (10.3)	528,152 (2.1)
735,806 (2.8)	156,517 (0.6)	279,287 (1.1)	1,002,542 (3.9)	219,488 (0.8)	2,577,388 (10.0)	563,889 (2.2)
731,781 (2.8)	169,115 (0.6)	241,009 (0.9)	1,043,305 (3.9)	205,506 (0.8)	2,653,693 (10.0)	665,134 (2.5)

區 分	其 他 植物性粕類	魚 粉	魚 汁 同吸着飼料	脫脂粉乳	헤어파우더	肉 骨 粉
'65	377,655 (4.6)	345,542 (4.2)	69,320 (0.8)	-	-	-
'75	434,324 (2.6)	588,032 (3.5)	96,772 (0.6)	34,247 (0.2)	-	-
'76	479,741 (2.6)	615,045 (3.3)	100,479 (0.5)	57,470 (0.3)	-	-
'77	393,034 (2.0)	564,947 (2.8)	90,370 (0.5)	97,576 (0.5)	-	-
'78	361,146 (1.7)	619,221 (2.9)	83,700 (0.5)	101,342 (0.5)	-	-
'79	403,111 (1.8)	644,785 (2.8)	91,341 (0.4)	103,502 (0.5)	-	-
'80	450,704 (2.0)	565,553 (2.5)	77,100 (0.3)	81,038 (0.4)	-	-
'81	483,098 (2.2)	607,313 (2.7)	74,053 (0.3)	76,463 (0.3)	-	-
'82	518,780 (2.3)	671,908 (2.9)	70,103 (0.3)	72,454 (0.3)	-	-
'83	193,447 (0.8)	679,391 (2.8)	72,041 (0.3)	73,921 (0.3)	13,931 (0.0)	358,759 (1.5)
'84	178,560 (0.7)	714,407 (2.9)	67,528 (0.3)	74,436 (0.3)	13,986 (0.0)	342,631 (1.4)
'85	194,166 (0.8)	711,615 (2.8)	59,345 (0.2)	74,983 (0.3)	14,170 (0.1)	393,731 (1.6)
'86	183,541 (0.7)	726,876 (2.8)	55,187 (0.2)	72,694 (0.3)	14,132 (0.1)	414,327 (1.6)
'87	175,877 (0.7)	701,257 (2.6)	52,908 (0.2)	75,795 (0.3)	13,840 (0.1)	441,473 (1.7)

다. 飼料 原料 輸入

區 分	옥 수 수 ¹⁾		수 수 ¹⁾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5	2,994,756	72,419,732	1,621,769	34,460,524
'75	5,813,260	247,655,064	3,409,239	138,624,976
'76	6,517,154	245,838,263	4,384,497	154,102,426
'77	6,966,696	200,608,582	4,648,010	124,621,426
'78	8,023,750	189,849,591	4,666,574	101,928,209
'79	8,658,852	271,035,441	5,111,354	150,153,109
'80	10,117,276	361,008,558	3,477,919	123,433,662
'81	10,156,563	387,909,992	3,274,663	118,788,653
'82	10,756,532	345,038,442	2,945,315	93,261,036
'83	10,939,667	398,765,420	3,088,855	108,672,933
'84	10,042,961	379,059,828	4,289,155	148,871,197
'85	10,350,207	300,601,995	4,555,766	117,901,084
'86	10,571,197	174,651,343	4,461,136	68,040,132
'87	12,098,030	160,916,656	3,563,147	45,498,781

註: 1) 옥수수, 수수는 배합사료용임.

單位：%

其 他 動物性飼料	油 脂 同吸着飼料	糖 密 同吸着飼料	微量添加物	特殊飼料	其他飼料	合 計
69,419 (0.8)	—	275,626 (3.4)	27,790 (0.2)	320,647 (3.9)	70,648 (1.0)	8,188,137 (100.0)
159,725 (0.9)	136,188 (0.8)	357,705 (2.1)	64,383 (0.4)	706,144 (4.2)	60,111 (0.4)	16,897,325 (100.0)
193,635 (1.0)	152,409 (0.8)	399,865 (2.1)	64,611 (0.3)	723,982 (3.9)	166,672 (0.9)	18,670,963 (100.0)
287,566 (1.4)	160,407 (0.8)	384,947 (1.9)	70,090 (0.4)	713,430 (3.6)	155,013 (0.8)	19,948,284 (100.0)
327,082 (1.5)	178,452 (0.8)	380,166 (1.8)	73,653 (0.3)	719,362 (3.4)	163,530 (0.8)	21,210,030 (100.0)
330,644 (1.4)	190,794 (0.8)	385,257 (1.7)	77,216 (0.3)	749,923 (3.3)	115,431 (0.5)	22,796,106 (100.0)
343,209 (1.5)	192,343 (0.9)	340,585 (1.5)	77,298 (0.3)	759,055 (3.4)	90,118 (0.4)	22,292,480 (100.0)
353,336 (1.6)	195,495 (0.9)	309,382 (1.4)	70,221 (0.3)	747,644 (3.4)	86,180 (0.4)	22,172,577 (100.0)
372,779 (1.6)	194,915 (0.9)	312,549 (1.4)	71,141 (0.3)	761,576 (3.3)	68,733 (0.3)	22,896,487 (100.0)
61,583 (0.3)	209,897 (0.9)	322,496 (1.3)	77,008 (0.3)	780,592 (3.2)	52,976 (0.2)	24,357,119 (100.0)
51,735 (0.2)	218,260 (0.9)	303,134 (1.2)	47,276 (0.3)	783,689 (3.2)	51,770 (0.2)	24,569,560 (100.0)
62,648 (0.2)	236,991 (0.9)	295,949 (1.2)	79,074 (0.3)	782,838 (3.1)	53,802 (0.2)	25,380,832 (100.0)
62,132 (0.2)	253,676 (1.0)	265,930 (1.0)	79,363 (0.3)	796,410 (3.1)	53,801 (0.2)	25,903,266 (100.0)
73,420 (0.3)	282,169 (1.1)	253,389 (1.0)	79,267 (0.3)	808,724 (3.0)	71,138 (0.3)	26,543,774 (100.0)

單位：%, 千円

大 麥		小 麥		호 밀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532,293	11,033,829	—	—	55,749	1,177,836
1,304,518	58,575,941	618,213	33,219,028	45,435	1,799,987
1,420,239	57,846,006	1,106,706	50,052,930	44,417	1,619,115
1,367,371	42,388,776	1,228,181	38,752,152	125,264	3,841,301
1,318,721	32,085,015	1,224,706	37,286,137	54,762	1,218,515
1,419,505	48,593,062	1,201,656	51,566,873	47,339	1,187,598
1,417,895	57,571,663	1,280,781	59,583,016	14,643	614,416
1,492,650	61,746,001	1,257,858	58,740,860	13,562	574,825
1,137,446	41,384,994	1,256,095	58,079,172	23,133	835,018
1,561,361	54,003,538	1,265,978	55,267,533	174,196	5,117,251
1,575,285	56,066,262	1,270,549	53,789,791	294,615	8,588,646
1,505,821	42,862,728	1,116,326	41,561,731	234,081	5,794,281
1,265,238	10,761,128	1,071,305	23,609,362	246,502	3,508,705
1,262,162	19,129,088	1,067,451	20,478,501	336,378	3,941,919

區 分	귀 리		小 麥 麩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65	112,114	290,890	393,628	9,763,831
'75	143,043	6,046,150	100,534	3,542,304
'76	153,337	5,743,976	200,541	7,386,293
'77	164,895	5,446,915	193,324	6,226,816
'78	146,903	3,971,411	159,933	3,500,561
'79	215,460	6,303,991	165,341	5,238,370
'80	169,546	6,305,295	182,887	5,774,692
'81	95,006	4,966,827	231,522	7,515,058
'82	92,242	4,405,144	231,596	7,330,796
'83	88,661	3,631,166	340,159	10,225,684
'84	111,046	4,130,446	247,815	7,975,857
'85	125,764	3,569,173	254,352	5,772,261
'86	89,772	1,803,725	270,545	4,088,785
'87	88,341	1,629,305	257,961	3,331,962

라. 配合飼料 價格 (20 kg, 공장도가격 기준)

區 分	큰 병 아 리	産 卵 用
'65	667	699
'75	1,190	1,247
'76	1,209	1,270
'77	1,147	1,219
'78	996	1,038
'79	1,148	1,168
'80	1,360	1,390
'81	1,388	1,404
'82	1,295	1,291
'83	1,245	1,313
'84	1,231	1,296
'85	1,093	1,136
'86	858	901
'87	783	824

資料 : 日本 農林水産省 畜産局 流通飼料課, 飼料月報, 1988. 5.

單位：%, 千円

大豆粕（他用途 包含）		魚 粉		脫 脂 粉 乳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52,805	1,988,038	83,626	4,666,244	7,400	799,200
25,725	1,415,916	66,801	5,316,884	26,859	5,204,989
234,439	15,766,816	83,902	9,773,904	62,526	5,117,988
338,744	23,555,924	180,755	24,412,985	105,476	7,382,844
308,592	14,662,181	66,854	6,606,698	104,801	7,858,262
307,854	18,513,714	122,292	13,161,990	112,661	14,305,080
363,366	23,537,581	138,046	17,536,968	66,916	12,406,230
115,347	8,104,712	47,456	6,330,701	57,112	13,614,378
89,191	5,587,189	70,684	8,150,512	73,943	18,450,853
255,504	16,314,085	72,636	9,099,087	73,916	13,129,760
99,034	5,609,823	59,296	7,474,064	71,382	12,029,016
188,741	7,233,077	86,430	7,899,254	76,774	11,835,834
200,859	6,619,477	174,105	14,162,622	69,833	8,072,738
316,885	9,677,567	232,181	17,634,842	83,069	9,631,018

單位：円

肉 鷄 用	乳 牛 用	肉 牛 用	養 豚 用
739	615	616	627
1,441	1,103	1,111	1,204
1,502	1,152	1,127	1,231
1,464	1,119	1,068	1,172
1,277	970	918	1,002
1,396	1,093	1,041	1,129
1,606	1,264	1,235	1,337
1,621	1,287	1,270	1,357
1,487	1,216	1,202	1,268
1,509	1,237	1,168	1,272
1,479	1,177	1,143	1,269
1,295	1,047	1,029	1,121
1,025	858	822	883
927	789	755	803

여 백

法 令 編

여 백

1. 飼料管理法・施行令・施行規則

여 백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飼料管理法</p> <p>制 定 1963. 8. 14 法律 第 1393 號 全文改定 1981. 3. 24 法律 第 3396 號 改 定 1984. 12. 31 法律 第 3761 號</p> <p style="text-align: center;">第 1 章 總 則</p> <p>第 1 條(目的) 이 법은 飼料의 需給 및 價格의 安定을 도모하고, 그 品質上 및 安全性의 확보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飼料生産의 安定과 畜産業 발전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 2 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p> <p>1. “飼料”라 함은 畜産法에 의한 家畜 기타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動物·魚類등(이하 “動物”이라 한다)에 營業이 되거나 그 健康維持 또는 成長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單味飼料·配合飼料 및 補助飼料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飼料管理法施行令</p> <p>제 정 1963. 11. 30 각 령 제 1659 호 전문개정 1981. 9. 3 대통령령 제 10454 호 개 정 1985. 6. 28 대통령령 제 11711 호</p> <p>제 1 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飼料管理法施行規則</p> <p>제 정 1963. 12. 11 농림부령 제 147 호 전문개정 1981. 12. 31 농수산부령 제 850 호 개 정 1983. 2. 16 농수산부령 제 884 호 개 정 1985. 7. 20 농수산부령 제 942 호</p> <p>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기타 동물·어류 등의 범위) 법 제 2 조 제 1 호의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 등”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용 동물: 쥐·생쥐·기니피그 2. 애완용 동물: 고양이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조류 3. 양식용 어류: 양식하는 어류 및 갑각류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2. “單味飼料”라 함은 植物性·動物性 또는 礦物性物質로서 飼料로 直接 사용되거나 配合飼料의 原料로 사용되는 것으로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 配合飼料”라 함은 2種 이상의 單味飼料를 一定한 比率로 配合·化合 또는 加工한 것으로 農水産部長官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補助飼料”라 함은 飼料의 品質低下 防止 또는 飼料의 効用을 높이기 위하여 飼料에 添加하는 것으로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製造業”이라 함은 飼料를 製造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함을 말하며, “輸入業”이라 함은 飼料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함을 말한다.</p> <p>6. “製造業者”라 함은 製造業을 營爲하는 者, “販賣業者”라 함은 製</p>		<p>〈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p> <p>제 3 조(단미사료의 범위) 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는 별표 1과 같다.</p> <p>제 4 조(보조사료의 범위) 법 제 2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는 별표 2와 같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造業者 및 輸入業者 이외의 者로서 飼料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p> <p>第3條(飼料施策의 樹立·施行 및 財政支援) ① 農水産部長官은 飼料의 需給調節·價格安定·品質向上 및 安定性的의 확보와 飼料資源開發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p> <p>② 農水産部長官은 每年 飼料의 生産·輸出·輸入 및 供給 등에 관한 需給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p> <p>③ 政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 및 需給計劃의 樹立·施行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p> <p>第4條(飼料品質管理委員會) ① 飼料의 品質管理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거나 農水産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農水産部에 飼料品</p>	<p>제2조(제정지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시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용자를 하는 경우의 그 지원대상자·지원비율·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제정자금용자조건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p>제3조(사료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質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②委員會의 構成·機能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농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사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p> <p>제 4 조(위원회 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공정규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의 사료성분 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p>②위원회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인정되는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p> <p>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p> <p>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간사 및 서기는 농수산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2章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p> <p>第5條(飼料의 需給調節등) ①農水産部長官은 飼料의 圓滑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畜産振興 또는 飼料의 需給調節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中에서 指定하는 者(이하 “飼料調節團體”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飼料를 指定하여 이를 輸出·輸入하게 하</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사료조절단체) ① 농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조절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인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p> <p>② 농수산부장관은 사료조절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수급 및 가격안정을</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거나 備蓄·供給하게 할 수 있다.</p> <p>② 農水産部長官은 飼料調節團體가 飼料를 輸出·輸入하거나 備蓄·供給하는 경우에는 그 需給에 관한 管理指針을 정할 수 있다.</p> <p>③ 農水産部長官은 飼料調節團體가 第2項의 管理指針을 遵守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有害飼料를 輸入 또는 供給한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p> <p>第6條(飼料의 價格安定措置) 農水産部長官은 飼料의 圓滑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飼料에 대하여 販賣方法을 정하거나 販賣價格을 指定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輸入飼料 2. 配合飼料 3. 政府管理糧數 또는 輸入糧數의 副産物인 飼料 	<p>위한 사료의 수출·수입이나 비축·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지정대상사료의 범위)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판매방법을 정하거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사료는 정부가 사료수급계획에 따라 수매하거나 판매하는 옥수수 기타 사료용곡물 및 녹사료로 한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飼料</p> <p>第7條(飼料의 用途의 販賣禁止) 누구든지 第6條 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飼料를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用途 이외로 販賣하여서는 아니 된다.</p> <p>第8條(買占·賣惜의 금지)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暴利를 目的으로 飼料를 買占하거나 飼料의 製造 또는 販賣를 忌避하여</p>		<p>제6조(사료의 용도)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용도는 배합사료 원료용·국공립 연구기관용 및 실수요양축가용으로 한다.</p> <p>② 농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양곡을 절약하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 3. 양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서는 안된다.</p> <p>第3章 品質管理</p> <p>第9條(製造業의 許可 또는 登錄 등) ① 配合飼料 또는 補助飼料의 製造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農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제조업의 허가)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의 배합사료(이하 “양축용 배합사료”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와 보조사료 중 향미제의 제조업허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어류등의 배합사료(이하 “기타 동물·어류용 배합사료”라 한다)의 제조업허가와 향미제를 제외한 보조사료의 제조업 허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 도지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조업 허가 신청 또는 보조사료중 향미제의 제조업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 85. 7. 20 농수산령 942〉</p> <p>③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부장관이 하는 통지는 관계 도지사를 거쳐 행한다.</p> <p>〈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p> <p>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준공예정일내에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 2 호서식의 제조시설완</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료신고서를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통지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시설 변경 또는 기간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신청은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p> <p>⑤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20일이 내에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시설이 허가통지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 3 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p> <p>제 8 조(허가 또는 등록전 시험·조사 등)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 제조업의 허가, 제 9 조</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 單味飼料의 製造業을 營爲하고 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場·直轄市場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定 84.12.31 法 3761)</p>		<p>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 또는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성분등록에 있어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료분야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료의 성분분석·사양시험 기타 필요한 시험·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제 9 조(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의 범위) ① 법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단미사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要件과 製造施設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農水産部長官은 飼料의 需給事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제한하거나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의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4,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5,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6과 같이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가 그 製造施設 중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를 받은 者는 農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登錄을 한 者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⑥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가 그 營業을 讓渡·賃貸·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p>		<p>제 11 조 (제조시설변경의 범위 등) ① 법 제 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시설의 변경에 있어서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장시설의 변경 2. 배합시설의 변경 3. 분쇄시설의 변경 4. 공장이전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② 제 1 항 및 법 제 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의 승인신청 및 신고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③ 삭 제 〈85.7.20 농수산령 942〉</p> <p>제 12 조 (제조업 양도등의 신고) ① 법 제 9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양도·임대의 신고는 별지 제 7 호서식,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한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⑦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競買, 競買法에 의한 競買,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準하는 節次에 따라 製造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가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引受申告를 한 때에는 製造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製造業의 許可 또는 登錄은 그 効力을 잃은 것으로 본다.</p> <p>〈新設 84.12.31 法 3761〉</p>		<p>휴업한 營業의 재개신고는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다.</p> <p>〈개정 85.7.20 農水産령 942〉</p> <p>② 법 제 9조 제 7항의 規定에 의한 인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 7호서식의 신고서에 인수를 證明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農水産부장관 또는 道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 85.7.20 農水産령 942〉</p> <p>제 13조(공장명칭등의 변경신고) 사 료제조업자가 공장의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신고서를 農水産부장관·또는 도지사</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10條(販賣業의 申告) ①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飼料의 販賣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定 84.12.31 法 3761)</p> <p>② 第9條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定 84.12.31 法 3761)</p> <p>第11條(公正規格의 設定등) ① 農水産部長官은 飼料의 品質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飼料의 種類를 指定하여 그 種類別成分의 最小量 또는 最大量과 기타 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規格(이하 “公正規格”이라 한다)을 設定·變更하</p>		<p>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제 14 조(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료는 다음 각호의 사료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수수가공부산물 2. 탈지강 3. 밀기울 4. 수입한 배합사료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거나 이를 廢止할 수 있다.</p> <p>② 農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定規格을 設定·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그 施行日 30日 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第12條(飼料의 成分登錄 및 取消) ①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道知事에게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飼料의 종류·成分 및 成分량에 관한 사항을 登錄(이하 “成分登錄”이라 한다)하되, 公定規格이 設定된 飼料의 경우에는 公定規格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農水産部 令이 정하는 飼料는 成分登錄을 하지 아니 한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제15조(사료성분의 등록)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사료성분 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료 성분분석의뢰서를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에 제출하여 당해기관이 작성한 성분분석표를 교부받아 이를 사료 성분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분석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 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內容을 확인하고, 飼料成分登錄을 당해 申請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p> <p>③ 道知事は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取消한다. 이 경우 製造業者 또</p>		<p>는 자체성분분석을 하는 자체성분 분석표를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② 법 제 12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곡 물 2. 곡물부산물(강피류) 3.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단미사료 4. 삭제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③ 법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는 輸入業者는 그 飼料成分登錄證을 道知事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改定 84.12.31 法 376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成分登錄한 飼料를 정당한 사유 없이 6月이상 製造하지 아니한 때 3. 製造業 또는 輸出入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때 <p>第13條(飼料成分登錄事項의 表示 등) ①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製造 또는 輸入한 飼料를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容器나 包裝에 제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사항과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品質檢査의 결과 기타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定 84.12.31 法 3761></p> <p>②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虛偽로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6조(사료성분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별표 7에 의한다. <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改定 84.12.31 法 3761〉</p> <p>第 14 條(有害飼料의 製造등의 금지) ①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飼料(이하 “有害飼料”라 한다)를 製造·輸入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原料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人體 또는 動物에 害로운 有毒性 物質이 基準이상으로 含有된 것2. 人體 또는 動物의 疾病의 原因이 되는 病原體에 汚染되거나 현저히 腐敗 또는 變質되어 飼料로 사용될 수 없는 것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動物의 健康維持나 成長에 支障을 招來하여 畜産物의 生産을 현저히 沮害하는 것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飼料의 범위와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 12 조(유해사료의 범위) 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개정 85.6.28 대령 11711〉</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15 條(飼料의 檢査等) ①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飼料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人員과 施設을 갖추고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製造 또는 輸入하는 飼料의 品質을 檢査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다른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와 檢査에 필요한 人員과 施設을 共同으로 갖출 수 있다. 〈新設 84.12.31 法 3761〉</p> <p>②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의 檢査를 農水産部長官이 인정하는 者에게 의뢰하여 行할 수 있다.</p>		<p>제 17 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별지 제 16 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8 조(사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 ① 법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과 인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85.7.20 농수산령 942〉</p> <p>② 법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 및</p>

法	施 行 法 令	施 行 規 則
<p>(新設 84.12.31 法 3761)</p> <p>③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飼料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飼料의 需要者로부터 飼料의 檢査의뢰를 받은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飼料를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最小量의 試料를 收去하여 그 所屬機關 또는 農水産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이하 “飼料檢定機關”이라 한다)에 檢定을 의뢰할 수 있다.</p> <p>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飼料檢定機關의 指定要件, 指定의 取消, 飼料의 檢定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農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제 4 호의 新設과 人員을 갖춘 자료한다.</p> <p>(新設 85.7.20 農水産令 942)</p> <p>③ 법 제 15 조 제 3 항의 規定에 의한 飼料檢査는 現物檢査와 서류檢査의 方法에 依한다.</p> <p>(개정 85.7.20 農水産令 942)</p> <p>④ 제 3 항의 規定에 依한 現物檢査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飼料와 飼料의 수요자가 檢査를 의뢰한 飼料에 대하여 다음 各호의 사항을 檢査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登錄된 成分량의 확인 2. 公定규격에 의한 적합여부 3. 영 제 12 조의 規定에 依한 유해물질의 함유여부 4. 중량 5.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사항 <p>(개정 85.7.20 農水産令 942)</p> <p>⑤ 제 3 항의 規定에 依한 서류檢査</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사료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서류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⑥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의 검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7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⑦ 사료검사의 시기·요령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p>제 19조(사료의 검정) ① 법 제 1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을 행할 농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과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료의 일반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검사요원3. 열량과 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4.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5. 유해미생물·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여부를 검사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② 농수산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료의 검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때에는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16條(廢棄 등의 措置)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1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飼料의 檢査결과 당해 飼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飼料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에게 당해 飼料의 廢棄·回收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1.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p>		<p>③ 사료의 檢정방법은 일반적으로 通用되는 化學분석방법에 의하되 물리적 방법과 미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檢정의 지침을 따로 定할 수 있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제20조(관계장부의 비치) 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9에 의한 관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登錄한 飼料成分과 현저히 相異한 때</p> <p>2. 第14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有害飼料일 때</p> <p>第17條(製造業의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등)①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1.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때</p> <p>2. 第9條 第5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施設을 變更한 때</p> <p>3. 第9條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6月이상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正當한 사유없이 2年이내에 再開하지 아니한 때</p> <p>4.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여 有害飼料를 製造 또는 輸入하여 販賣한 때</p> <p>5.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命令에 違反한 때</p> <p>6. 第 21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改善등의 命令에 違反한 때</p> <p>②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製造業者에게 處分을 하고자 하는 사유 및 聽聞의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고 聽聞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製造業者는 출석에 갈음하여 辨明書를 제출할 수 있다.</p> <p>(新設 84.12.31 法 3761)</p>	<p>제 13 조(청문의 절차) ① 법 제 1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내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동일한 飼料의 製造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定 84.12.31 法 3761)</p> <p>第18條(營業의 停止命令 및 課徵金處分) ①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製造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警</p>	<p>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통지에는 正當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5.6.28 大령 11711)</p>	<p>제20조의 2(제조업의 재허가 또는 재등록의 제한)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등록이 제한되는 사료제조업의 구분은 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료가 속하는 배합사료·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로 한다. (신설 85.7.20 농수산령 942)</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告를 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하거나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課徵金의 賦課는 製造業者가 第1號 내지 第8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方法·販賣價格을 위반하거나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2. 第9條 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讓渡·賃貸·休業의 申告 또는 休業한 營業의 再開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3.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飼料成分과 다른 成分의 飼料를 製造하여 販賣한 때4. 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5.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		

法	施 行 法 令	施 行 規 則
<p>여 有害飼料를 製造하거나 다른 飼料의 原料로 사용한 때. 다만, 第17條 第1項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第15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飼料의 品質檢査를 하지 아니하거나 同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7.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p> <p>8. 第19條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p> <p>9.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 때</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徵收하되, 違反行爲別 課徵金의 賦課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p>	<p>제 14 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로 정하며, 그 徵收 및 滯納處分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 第17條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處分 및 課徵金賦課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7條 第2項중 “製造業者”는 “製造業者 또는 販賣業者”로 본다.</p> <p>(全文改定 84.12.31 法 3761)</p>	<p>액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농수산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85.6.28 대령 11711)</p> <p>제 15 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 및 해당과징금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20일이내로 한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p> <p>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부과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국가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도지사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19 條(虛偽廣告의 금지) 製造業 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그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飼料에 대하여 虛偽廣告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第 20 條(販賣의 금지) 製造業者·輸 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飼料를 販賣하여서 는 아니된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 12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飼料의 成分登錄을 하지 아니하거 나 登錄한 飼料成分과 相異한 飼料 2. 第 13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飼料의 容 器나 包裝의 표시事項이 毀損되어 識別이 곤란하게 된 飼料 	<p>또는 도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p> <p>〈본조신설 85.6.28 대령 11711〉</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監 督</p> <p>第 21 條(보고· 檢査등) ① 農水産部 長官 또는 道知事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製造業者· 輸入業者· 販賣業者· 飼料調節團體 또는 飼料檢定機關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製造業者 등의 事務所· 事業場· 工場이나 倉庫에 出入하여 帳簿· 書類· 飼料 및 施設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결과 飼料의 需給調節 및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製造業者· 輸入業者· 販賣業者· 飼料調節團體 또는 飼料檢定機關에 대하여 施設의 改善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改定 84.12.31 法 3761〉</p> <p>第5章 補 則</p> <p>第22條(告示)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1. 第5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飼料調節團體를 指定하거나 取消한 때</p> <p>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飼料의 販賣方法을 정하거나 販賣價格을 指定한 때</p> <p>3.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飼料成分登錄을 받거나, 同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飼料成分登錄을 取消한 때</p> <p>4.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飼料檢定機關을 指定하거나 取消한 때</p> <p>第23條(手數料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農水産部令이 정</p>		<p>제21조(수수료)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1. 第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p> <p>2. 第9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施設變更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p> <p>3.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飼料成分등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p> <p>② 第1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飼料의 檢査를 의뢰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定料를 納付하여야 한다.</p> <p>〈改定 84.12.31 法 3761〉</p> <p>第24條(證票의 提示) 第15條 提3項 또는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p>		<p>〈개정 85.7.20 농수산령 942〉</p> <p>제 22 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 18 호서식에 의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法 3761〉 第 25 條(權限의 委任·委託) 農水產 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 部를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畜產 振興 또는 飼料의 需給調節을 目的 으로 設立된 法人에 委託하여 행하 게 할 수 있다.</p>	<p>제 16 조(권한의 위임) 농수산부장관 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등 의 배합사료제조업과 법 제 2 조 제 4 호의 사료중 향미제를 제외한 보조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호 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허가 2. 법 제 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변경 승인 3. 법 제 9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임대·폐업 및 휴업신고와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의 수리 4. 법 제 9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신고의 수리 5.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업의 허가취소 6. 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영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26條(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の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20日이내에 書面으로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遲滯없이 이를 裁決하고, 그 結果를 異議申請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p> <p>第27條(飼料의 減量比率) 農水産部長官은 飼料의 輸入 또는 製造에 있어서 荷役·輸送·製造 또는 貯藏에 따른 飼料의 減量比率를 정할 수 있다.</p>	<p>7. 법 제 21조 제 1항 및 제 2항의 規定에 의한 보고·검사 및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p> <p>〈본조신설 85.6.28 대령 11711〉</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28 條(適用排除) ① 製造業者가 輸出目的으로 農水産部令이 定하는 飼料를 製造하고 이를 輸出하는 경우에 그 飼料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輸出하지 못한 飼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飼料調節團體가 輸出·輸入하거나 備蓄·供給하는 飼料에 대하여는 糧穀管理法·農産物價格維持法과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 29 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제 17 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 23 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배제) 법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료는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다음의 사료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합사료 2. 보조사료 3. 어분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미사료 (개정 85.7.20 농수산령 942) 4. 사제 (개정 85.7.20 농수산령 942) <p>제 24 조(과징금 처분대장)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별지 제 19 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85.7.20 농수산령 942)</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第 6 章 罰 則</p> <p>第 30 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第 9 條 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業을 營爲한 者2. 第 14 條 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有害飼料를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이를 原料로 사용한 者 <p>第 31 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4.12.31 法 3761)</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第 6 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飼料를 販賣한 者2. 第 7 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飼料를 用途 이외로 販賣한 者3. 第 9 條 第 5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證인을 언지 아니하고 製造施設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을 變更한 者</p> <p>4. 第8條·第9條 第2項·第12條 第1項·第13條·第19條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p> <p>5. 第16條 또는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違反한 者</p> <p>6. 第15條 第3項 또는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者</p> <p>第32條(罰則) 다음 各號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削除(84.12.31 法 3761)</p> <p>2.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販賣業을 營爲한 者</p> <p>3.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33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 30 條 내지 第 32 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第 34 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飼料檢定機關 또는 農水産部長官이 第 25 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法人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 129 條 내지 132 條의 適用에 있어서 公務員으로 본다.</p> <p>第 35 條(罰則適用의 特例) 第 30 條 내지 第 32 條의 罰則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 18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는 行위에 대하여는 農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있다. (本條新設 84.12.31 法 3761)</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公定規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한 飼料成分量 限度는 이 法에 의하여 設定·告示한 公定規格으로 본다.</p> <p>③(補助飼料製造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補助飼料를 製造하여 이를 販賣하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補助飼料 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要件 및 製造施設을 갖추고, 飼料成分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p> <p>④(販賣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販賣業을 하고 있는 者는</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81.9.3 대령 10454></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조의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83.2.16 농수산령 88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道 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⑤(水産業法에 의한 飼料製造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水産業法에 의하여 飼料製造業의 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單味 飼料製造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 이내에 이 法에 의한 要件 및 製造 施設을 갖추고, 飼料成分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p> <p>附 則(84. 12. 31 法 3761)</p> <p>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부 칙(85.6.28 대령 11711)</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 칙(85.7.20 농수산령 942)</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에 관한 제 1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사료검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원에 관한 제 19조 제 1항의 개정규정 및 사료제조업</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제 35 조 제 11 항 제 17 호를 삭제한다.	<p>의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종전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허가 기타의 처분 및 신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p> <p>③ (사료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사료를 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사료의 품질관리시설 및 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고 있는 실험시설 및 인원은 이 규칙에 의한 품질관리시설 및 인원으로 본다. 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만, 이 규칙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제 18조 제 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시설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p> <p>⑤(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은 섬유질사료 및 발효사료 제조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2. 飼料管理法施行令關聯別表

여 백

[별표 1] <개정 '85. 6. 28 대통령 11711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제 12 조 관련)

다음의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이상 함유된 사료를 유해사료로 한다.

유해물질명	사 료 종 류 별	허 용 기준
비 소	배합사료	100 ppm
불 소	젖소 배합사료	100 ppm
	고기소 배합사료	100 ppm
	돼지 배합사료	200 ppm
	닭 배합사료	400 ppm
	광물질 첨가물	1,800 ppm
	인산염 및 칼슘염류(인 함량 18% 기준)	1,800 ppm
크 롬	닭 배합사료	300 ppm
	닭 배합사료외의 배합사료	500 ppm
	어분·어즙흡착사료 및 골분	100 ppm
	우모분·육분·육골분 및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300 ppm
	피혁가공분말	1,000 ppm
납	배합사료	10 ppm
	어분·어즙흡착사료·우모분·육분·육골분·피혁가공분말·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및 광물질첨가물	10 ppm
	골분·골회·석회석·인산염 및 칼슘염류	30 ppm
	옥수수·박류 및 낙화생부산물	25 ppm
수 은	배합사료	0.4 ppm
	어분·어즙흡착사료·우모분·육분·육골분·피혁가공분말·골분·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석회석·인산염 및 칼슘염류·골회·광물질첨가물·옥수수·박류 및 낙화생부산물	0.5 ppm
아프라톡신	배합사료	20 ppb
	사료용곡물 및 동부산물	50 ppb
	면실박·낙화생박 및 낙화생부산물	50 ppb

※ 비고: 인산염 및 칼슘염류의 불소허용기준은 인함량의 100분의 1로 한다.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 14 조제 1 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사료관리법)	과 징 금 의 금 액
1. 판매방법 또는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제 6 조	허가능력톤당 3만원
2. 사료를 용도의로 판매한 때	제 7 조	허가능력톤당 3만원
3. 사료를 매점하거나 사료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기피한 때	제 8 조	허가능력톤당 6만원
4. 영업의 양도·임대·휴업의 신고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 9 조제 6 항	허가능력톤당 5천원
5. 등록된 사료성분과 다른 성분의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한 때	제 12 조제 1 항	허가능력톤당 5천원
6. 등록사항 등의 표시를 허위로 한 때	제 13 조제 2 항	허가능력톤당 1만원
7. 유해사료를 제조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때. 다만, 법 제 17 조제 1 항 제 4 호에 해당하여 제조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14 조제 1 항	허가능력톤당 6만원
8. 사료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제 1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허가능력톤당 1만원
9. 사료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 15 조제 3 항	허가능력톤당 3만원
10. 사료의 검사결과 등록된 사료성분과 현저히 다른 때 행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제 16 조제 1 호	허가능력톤당 3만원
11. 사료의 검사결과 유해사료일 때 행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제 16 조제 2 호	허가능력톤당 6만원
12. 사료에 대한 허위광고를 한 때	제 19 조	허가능력톤당 3만원
13. 판매가 금지된 사료를 판매한 때	제 20 조	허가능력톤당 6만원

비고 : (1) 동일한 날짜에 제조된 동일한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중복발생한 경우에는 최초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능력은 허가된 생산능력을 말하며 단미사료제조업에 있어서는 등록된 생산능력을 말한다.
 (3) 산정된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여 부과한다.

3. 飼料管理法施行規則關聯別表 및 別紙書式

여 백

단미사료의 범위(제 3 조관련)

구 분	세 분	품 명
식물성	곡 물	1. 옥수수, 보리, 수수, 밀, 호밀, 귀리, 조, 피, 트리티케 일, 메밀, 루핀종실 및 두류 2. 위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화전분을 포함한다)
	곡 물 부 산 물 (강 피 류)	곡쇄, 맥쇄, 밀기울, 말분, 보릿겨, 쌀겨, 탈지강, 옥수수피, 옥수수겨, 수수겨, 조겨 및 두류의 피
	박 류	대두박(전지대두박을 포함한다), 들깨묵, 참깨묵, 채종박, 면실박, 낙화생박, 고추씨박, 아마박, 야자박, 해바라기씨박, 피마자박, 옥수수배아박, 옥수수씨박, 옥수수글루텐, 밀글루 텐, 전분박, 주정박, 맥주박, 장유박, 두부박, 커피박, 케이 폭밀 및 팜유박
	근 피 류	고구마, 감자, 돼지감자, 타피오카 및 비트
	식품가공부산물	제빵·제과·제면부산물, 조미료부산물, 제당부산물, 두류가 공음료부산물, 당밀 및 과일류 가공부산물
	해 조 류	해조분
	섬 유 질 류	목초, 산아초, 나뭇잎, 곡류정선부산물, 입산가공부산물, 양 잠부산물, 볏짚·보리짚 기타 농산물고간류, 화학처리 또는 미생물처리를 한 섬유질사료(박류·전분질 및 식품가공부산 물등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섬유질사료"라 한다), 균체 또는 효모등을 이용한 발효사료(박류·전분질 및 식품 가공부산물등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발효사료"라 한다)
	제 약 부 산 물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부산물
동물성	단 백 질 류	어분, 어즙흡착사료, 어류의 가공품 및 동수산물, 우모분, 육분, 육골분, 육즙흡착사료, 혈분, 피혁가공분말, 잠용박, 번데기, 낙농가공부산물, 새우분, 계분, 골뱅이분, 육가공 및 도축부산물(전분질등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동물성 단백질혼합사료
	무 기 물 류	골분(전분질등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골회, 어골분 및 패분

구 분	세 분	품 명
유 지	유 지 류	우지, 돈지, 기타 동물성지방, 레시틴, 어유, 식물성유, 혼합유지사료 (동물성과 식물성유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광물성	식 염 류	식염(천일염·가공염을 포함한다)
	인산염및칼슘염류	탄산칼슘, 석회석, 인산염류(칼슘·암모니아·나트륨·가리)
	광물질첨가물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유황, 가리의 화합염류
	혼합광물질	혼합광물질(2종이상의 광물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제 4 조관련)

구 분	품 명
항 미 제	항 미 제
요 소 제	요소제제, 대용단백
규 산 염 제	조라이트, 벤토나이트, 카오린

[별표 3]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대상사료의 범위(제 9 조제 1 항관련)

1. 수입곡물의 가공부산물
2. 섬유질사료
3. 발효사료
4.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
5. 육분·육골분 및 육즙흡착사료
6. 우모분
7. 골분 및 골회
8. 피혁가공분말
9. 광물질첨가물·혼합광물질·인산염 및 칼슘염류
10.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 10 조관련)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1. 양축용배합사료(대용유를 제외한다)제조업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1) 공장건물내 또는 공장건물로부터 500미터내에 30일분 이상의 주원료와 부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어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되 저장능력은 3일분 이상일 것
	다. 분쇄시설	생산능력(1일 8시간 가동기준)의 70%이상을 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것.
	라. 배합시설	주배합기 및 예비배합기를 각각 설치하되, 생산능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일 것
	마. 계량시설	각원료 및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각각 갖추어 것
	바. 정선시설	제조과정에서 최불이 및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제철 및 정선설비를 갖추어 것
	사. 먼지제거시설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갖추어 것
	아. 제품봉합시설	제품단위대로 봉합할 수 있는 반자동 이상의 봉합설비를 갖추어 것. 다만, 산물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수송장치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추어 것
	차.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30톤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배합사료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생산능력을 따로 정한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폐에는 그 기준에 직할 것
	카. 작업공정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반자동 또는 완전자동일 것
2. 대용유제조업	가. 공장건물· 저장시설· 배합시설· 계량시설· 정선시설· 먼지제거시설· 제품봉합시설	앞의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같음
	나. 분쇄 시설	1일(8시간 가동기준) 제조량의 곡물분쇄설비를 갖추어 것
	다.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3톤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3. 기타동물· 어류용배합사 료제조업	가. 공장건물· 저장시설· 배합시설· 계량시설· 정선시설· 제품봉합시설	앞의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같음
	나. 분쇄 시설	생산능력(1일 8시간 가동기준)의 50%이상을 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것.
	다.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1톤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비고 : (1) 배합사료제조업허가의 통지를 받은 후 시설을 완료하여 허가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에서 기타동물·어류용 배합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타동물·어류용 배합사료의 분쇄시설·배합시설·정선시설 및 제품봉합시설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 10 조관련)

시 설 별	시 설 기 준
1.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2. 저장시설	가. 공장건물내 또는 공장건물로부터 500 미터이내에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는 것 나.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되 저장 능력은 3일분 이상일 것 다. 원료 및 부용재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3. 분쇄 및 혼합시설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추는 것
4. 계량시설	원료 및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추는 것
5. 제품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비 고

- (1) 보조사료 제조업 허가통지를 받은 후 시설을 완료하여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2) 비료제조업체에서 제조하는 요소제의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 10 조관련)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1. 곡물부산물 (강피류)	양곡관리법 및 미강착유장려법 규정의 시설기준에 의함	
2. 박류사료	식품위생법 및 양곡관리법 규정의 시설기준에 의함	
3. 섬유질사료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나. 저장시설	공장건물내 또는 공장건물로부터 500미터이내에 원료 및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혼합시설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한 것
	라. 계량시설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마. 제품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바. 수송장치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사.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1톤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
4. 발효사료	가. 공장건물·혼합시설·계량시설·제품포장시설·수송장치	앞의 섬유질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나. 저장시설	(1) 공장건물내에 또는 공장건물로부터 500미터이내에 3주일분 이상의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와 생산능력에 알맞는 적정 규모의 제품저장 설비를 갖출 것 (2) 탈수할 전분박의 저장설비에는 뚜껑을 할 것
	다. 탈수시설	생산능력에 알맞는 탈수설비를 갖출 것
	라.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10톤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
5.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	가. 공장건물·계량시설·제품포장시설	앞의 섬유질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나. 저장시설	공장건물내 또는 공장건물로부터 500미터 이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내에 7일분 이상의 원료 및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 것
	다. 삶는시설	고열수증기로 원료를 삶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라. 압착시설	삶은 원료를 압착할 수 있는 동력설비를 갖추 것
	마. 고품분리시설	압착과정에서 흘러나온 용액에서 고품물질인 침전물(어육등)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바. 유수분리시설	고형분리를 거친 용액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를 갖추 것
	사. 농축시설	고형분리와 유수분리과정에서 분리된 용액을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다만, 어즙흡착사로 제조시에 한한다.
	아. 건조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설비를 갖추 것
	자. 분쇄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추 것
	차. 먼지제거시설·악취 제거시설 및 정수시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고 오수를 정수하여 배수하는 설비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갖추 것
	카.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3톤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
	※ 어선에 대한 특례 : 어분 및 어즙흡착사로 제조시설이 어선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가목 내지 카목에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6. 육분·육골분및어즙흡착	가. 공장건물·계량시설·삶는시설·압착시설·	앞의 어분 및 어즙흡착사로 제조업의 시설 기준과 같음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사료	고형분리시설·유수분 ·리시설·건조시설·분 쇄시설·먼지제거시설 ·악취제거시설 및 정 수시설	
	나. 저장시설	공장건물내 또는 공장건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30일분이상의 원료 및 제품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1톤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
7. 우모분	가. 공장건물·저장시설 ·압착시설·고형분리 시설·건조시설·분쇄 시설·먼지제거시설· 악취제거시설·정수시 설·계량시설	앞의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제조업의 시설기 준과 같음
	나. 삶는시설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는 설비할 생 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500킬로그램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
8. 골분 및 골 회	앞의 육분·육골분 및 육즙흡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같음. 다 만, 삶는시설·압착시설·고형분리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제외한다.	
9. 피혁가공분 말	가. 공장건물·건조시설 ·분쇄시설·먼지제거 시설·악취제거시설· 정수시설·계량시설	앞의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 제조업의 시설 기준과 같음
	나. 저장시설	공장건물내 또는 공장건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15일분의 원료 및 제품을 저장할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가수분해시설	크롬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화율을 향상시킬수 있는 가수분해 설비를 갖출 것
	라. 제품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마.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3톤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
10. 인산염 및 칼슘염류	가. 공장건물·저장시설·계량시설·제품포장시설	앞의 섬유질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과 같음
	나. 건조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원료를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
	라. 정선시설	분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선설비를 갖출 것
	마. 탈불시설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탈불설비를 갖출 것. 다만, 원료의 탈불인산 공급계약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바. 불소정화시설	탈불과정에서 발생한 불소를 제거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탈불시설을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먼지제거시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갖출 것
	야. 생산능력	1일(8시간 가동기준) 1톤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
11. 팜물질첨가물 및 혼합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제조시설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출 것

구 분	시 설 별	시 설 기 준
광 물 질	(용해·여과·농축·결정·세척·건조·소성 및 분쇄 시설), 계량시설, 제품포장시설	

비 고

- (1)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전에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登記하여야 한다.
- (2) 동일 공장내에서는 제 5호 내지 제 7호 및 제 9호의 사료중 2이상을 생산할 수 없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사료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 5호 내지 제 7호 또는 제 9호의 제조시설외에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제조를 위한 혼합시설과 포장시설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7] <신설 85. 7. 20 농수산령 94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제 16조 관련)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
- (3) 등록성분량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 (5) 예방제 및 치료제등의 첨가내용
- (6) 주의사항

- (7) 사료의 용도
- (8) 실중량 kg(톤)
- (9) 제조연월일
- (10) 상호(공장명칭)·공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11)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 (1) 사료의 명칭은 사료관리법 제 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
- (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의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

가) 종 류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

튀김: 튀겨서 압착한 것

환제: 작게 덩쳐서 환제로 한 것

액상: 용액으로 된 것

기타: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나) 표시예

사료의 형태: 액상사료

- (3) 등록성분량은 사료관리법 제 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성분 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비(%)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위대로 기재한다. 다만, 다음 내용을 부가할 수 있다.

“위 사용원료는 공장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5) 예방제 및 치료제등의 첨가내용은 예방제 및 치료제등을 첨가한 경우에 사용된 첨가물의 명칭(상품명은 괄호안에 기입할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6) 주의사항은 잘 보이도록 표시하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항생제등 휴약기간이 있는 동물약품을 첨가한 때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

- (7)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8) 실중량은 제품의 실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포대에는 “kg”, 비포장 대량수송시에는 “톤”으로 표시한다.
- (9) 제조연월일은 제조 포장된 일자를 기준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
- (3) 등록성분량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 (5) 주의사항
- (6) 실중량 kg(톤)
- (7) 제조연월일
- (8) 상호(공장명칭)·공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나. 표시방법

- (1) 사료의 명칭은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명칭외에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안에 표시할 수 있다.
-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다음 사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그 혼합비율이 큰 순위로 원료의 명칭을 기재한다.

가.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나. 혼합광물질

- (3)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저장, 다른 사료와의 혼합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4)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실중량 및 제조연월일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

[별표 8] <신설 85. 7. 20 농수산령 942>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인원과 시설기준(제 18 조 관련)

1. 배합사료

가. 품질관리시설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조단백질·조섬유·조회분·조지방·칼슘 및 인을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2개이상의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인원

품질관리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석기술을 습득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보조사료

가. 품질관리시설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검사·관리하는데 필요한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주제품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조사료의 제조업자가 2개이상의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인원

품질관리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석기술을 습득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단미사료

가. 품질관리시설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중 사료성분 등록대상이 되는 품목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검사·관리하는데 필요한 실험시설 또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자가 2개이상의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인원

품질관리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석기술을 습득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사료제조업자들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장부(제 20 조관련)

구 분	장 부 명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1. 원료수불대장 2.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3. 품질관리대장(원료 및 제품)
단미사료 제조업자(정부양곡관리 또는 수입양곡가공품 제조업자를 제외한다)	1. 원료수불대장 2.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3. 품질관리대장(제품)
단미사료 제조업자중 정부양곡관리 또는 수입양곡 가공품 제조업자	1. 제품생산일보 2. 제품인수도 상황표
수입업자	1. 제품수불대장 2. 품질관리대장(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사료성분등록대상이 되는 단미사료)
판매업자	1. 제품판매대장

[별표 10]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수 수 료(제 21 조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1. 제조업의 허가	10,000원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2. 제조업의 허가증 재발급	2,000원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3. 제조업의 등록	10,000원	수입증지
4.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	2,000원	수입증지
5. 제조시설변경(기간연장) 승인 및 신고	5,000원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6. 사료성분등록 및 변경	품목당 1,000원	수입증지
7. 점정수수료 ○ 일반조성분(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등) ○ 무기물(비소, 불소, 크롬등) ○ 아미노산 ○ 비타민 ○ 펙신소화물 ○ 세포막구성물 ○ 유해물질 ○ 아프리카톡신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에 의한다.	
8. 사양시험·소화율시험과 기타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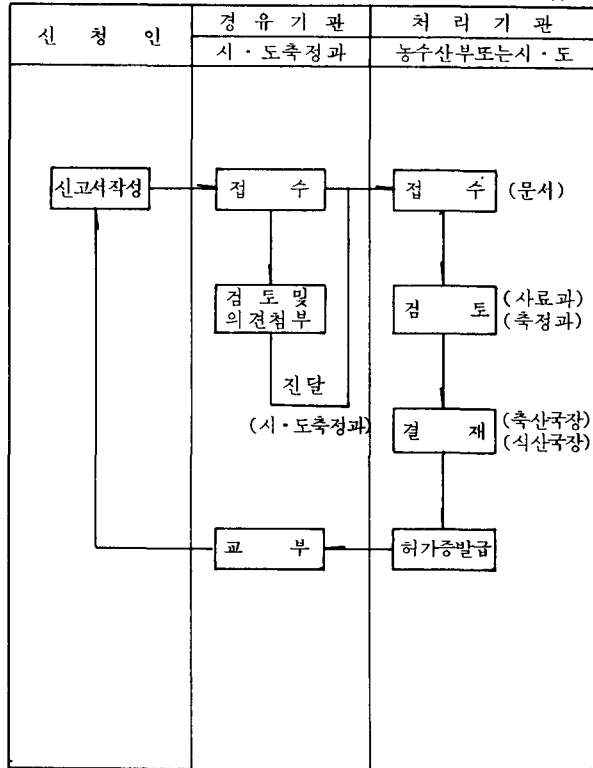
[별지 제 2 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 (앞쪽)

제 조 시 설 완 료 신 고 서			처 리 기 간
			20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제 조 업 체 명			
⑥ 소 재 지			
⑦ 제 조 업 의 종 류		⑧ 생 산 능 력	일 산 톤
⑨ 시 설 완 료 일		⑩ 저 장 능 력	톤
<p>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 7 조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 시설이 완료되었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⑪</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명세서(건축공사는 준공검사필증 포함) 2. 등기부등본(허가신청시 자기명의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708-188민(1)
85 6. 1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허가번호 제 호
() 사료제조업허가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조업체명 :
 소재지 :
 생산사료종류 :
 생산능력(일산) : 톤
 허가조건 : 뒷면참조

사료관리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사료 제조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농 수 산 부 장 관
 서울특별시장
 직 할 시 장
 도 지 사

1. 최초허가년월일: 년 월 일

2. 허 가 조 건

사료관리법 제 9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 341 -

[별지 제 5 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

등록번호 제 호

단미사료제조업등록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조업체명 :

소재지 :

생산사료종류 :

제조능력(일산) :

사료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지할시장
도지사

2708-88 인 (1)
85. 6. 10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특급) 12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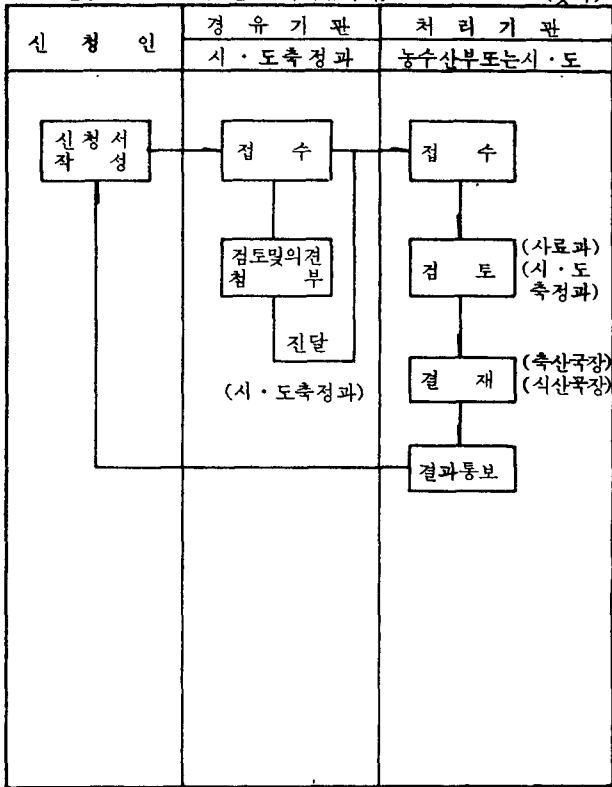
(별지 제 6 호 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앞쪽)

사료제조시설변경(기간연장)승인신청(신고)서		처리기간. 14 일
① 제조업체명		
② 소재지		③ 전화번호
대표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⑦ 승인신청(신고)내용		
<p>사료관리법 제 9 조 제 5 항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 7 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시설의 변경(기간연장)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신고)인 ⑧</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 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서 2. 허가증 또는 등록증(허가증은 이미 교부된 경우에 한함) 3.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공장 이전시에 한함) 		5,000 원

2708-86 민(1)
85. 6 1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8/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 7 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앞쪽)

제조업 (양도·임대·인수, 허가(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6일
① 허가(등록)번호			
② 공장명칭			
③ 소재지			
대표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⑦ 전화번호	
⑧ 양도·임대·인수 또는 변경사유			
양도·임대 인수변경 내용	⑨ 현행		
	⑩ 변경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 12 조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임대 또는 양도시는 계약서사본 (인수시는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 공장명칭 또는 대표자변경시는 등기부사본			없음
3. 허가증 또는 등록증			

2708-190 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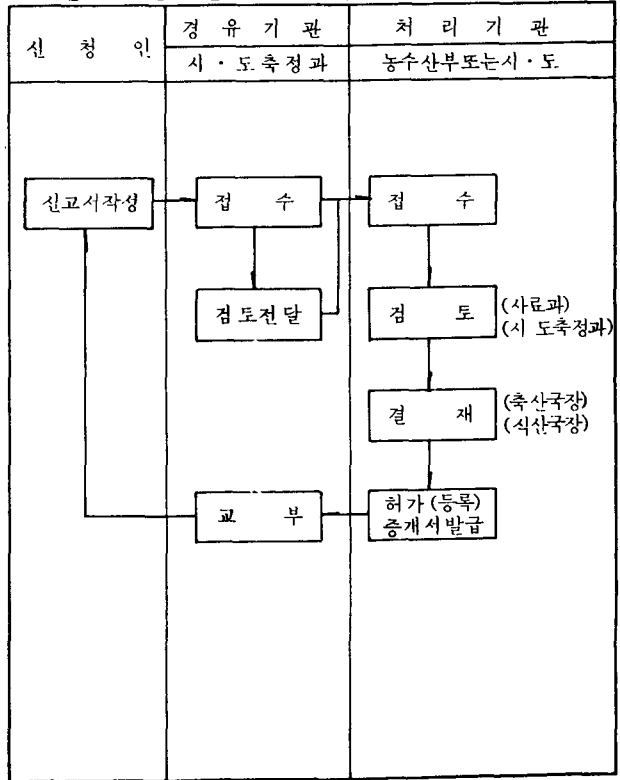
85. 6. 1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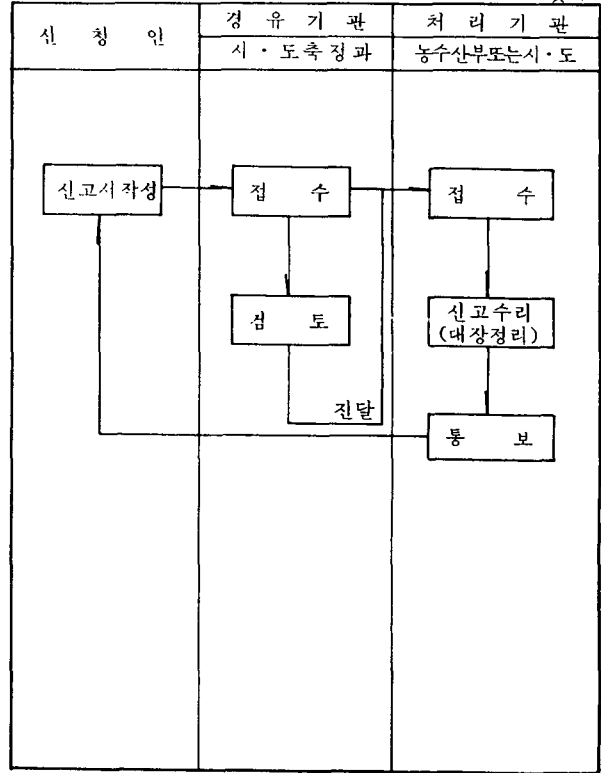
(별지 제 8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앞쪽)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 허가또는등록번호		
② 세 조 업 체 명		
③ 소 재 지		④ 전화번호
대표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주 소	
⑧ 폐업(휴업·영업 재 개)일		
⑨ 사 유		
⑩ 기타참고사항		
<p>사료관리법 제 9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 휴업, 영업재개) 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법인은명칭과대표자성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 음

2708-191 민(1)
85. 6. 1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뒷쪽)



[별지 제 9 호서식] <삭제 85. 7. 20 농수산령 942>

[별지 제 10 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판 매 업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상 호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대 표 자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 판 매 사 료 명			
⑦ 판 매 개 시 연 월 일			
사료관리법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신 고 인		④	
귀 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708-192 민(1)
85. 6. 1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

[별지 제 11 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사 료 성 분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제 조 업 체 명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대표자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⑧ 사 료 의 종 류		⑨ 사 료 의 형 태	
⑩ 사 료 의 명 칭		⑪ 사 료 의 용 도	
⑫ 사 료 의 성 분 명 및 성 분 량			
사료관리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신 청 인		④	
귀 하			
구비서류 : 1. 사료검정기관 또는 자체의 사료성분 분석표사본 1 통			수 수 료 품목당 1,000원

2708-89 민(1)
85. 6. 1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

(별지 제 12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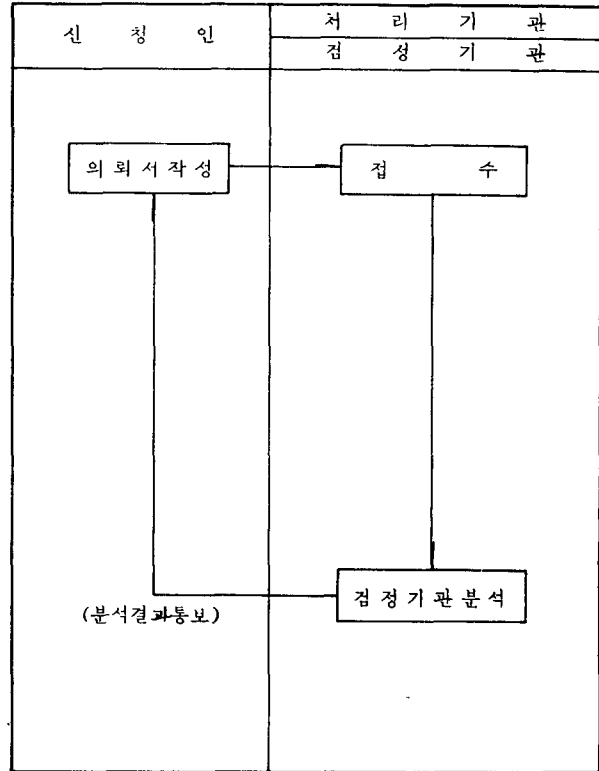
사료 성분분석의뢰서				처리기간 20 일
①허가(등록)번호				
②제조업체명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 자	⑤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성분분석의뢰내용				
사료명				
제조일자				
분 석 항 목				
시료관리법시행규칙 제 15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 성분등록용으로 위사료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오니 분석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성명 ㉠ 귀하				
첨부: 시료 점(점당 g)			수수료	
			농촌진흥청시험분석 위탁규칙에 의함.	

2708-101 민(1)
85. 6. 1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 13 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

등록번호 제 호

사 료 성 분 등 록 증

대표자성명 :

주 소 :

제조업체명 :

소 재 지 :

사료의종류 : (공정규격 : 유·무)

사료의 명칭 또는 용도 :

사료의 성분량 :

성분명						
성분량						

사료관리법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사료 성분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식할시
도지사

2708-90일(1)
85. 6. 10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 14 호서식] <삭제 85. 7. 20 농수산령 942 >

[별지 제 15 호서식] <삭제 85. 7. 20 농수산령 942 >

[별지 제 18 호서식] <개정 85 7 20 농수산령 942 > (앞쪽)

제 호		사료검사공무원증	
소속 :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5 cm 사 3 cm 진	
위의 사람은 사료관리법 제 24 조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수산부장 印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도지사)			

2708-93 일(1)
85. 6. 10 승인

85 mm × 55 mm
(인쇄용지 특급 120 g/m²)

(뒷쪽)

주 의 사 항

1. 이 증명 소지자는 사료관리법 제 15 조 제 3 항 및 제 21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명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
4.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 19 호서식] <신설 85 7. 20 농수산령 942 >

과 징 금 처 분 대 장

①	②	③	④	⑤ 위반내용		⑧	⑨	⑩	⑪
				⑥	⑦				
발행 번호	납 고 년월일	부 지 성명 (대표자)	주 소 (회사명)	일 가	위 반 행 위	과 징 금액	납부 기간	납부 일	비고

2708 - 21141
85. 6 10 승인

268 mm × 190 mm
(인쇄용지(2급) 70 g/m²)

4. 草地法・施行令・施行規則

여 백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草 地 法</p> <p>法律第 2081 號 (69. 1.17) 改正法律第 2576 號 (73. 3. 5) 改正法律第 3238 號 (80. 1. 4) 改正法律第 3539 號 (81.12.31) 改正法律第 3886 號 (86.12.31)</p> <p style="text-align: center;">第 1 章 總 則</p> <p>第 1 條 (目的) 이 법은 草地의 造成 管理·利用 및 保全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振興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 2 條 (定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p> <p>1. “草地”라 함은 多年生 改良 牧草의 栽培에 利用되는 土地와 牧道, 進入道路, 畜舍 및 附帶施設을 爲한 土地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草地法施行令</p> <p>大統領令第 3856 號 (69. 4. 3) 改正大統領令第 6736 號 (73. 6. 5) 改正大統領令第 9841 號 (80. 4. 8) 改正大統領令第 10825 號 (82. 5.20) 改正大統領令第 12204 號 (87. 7. 1)</p> <p>제 1 조 (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草地法施行規則</p> <p>農水産部令 第 540 號 (73. 8.21) 改正農水産部令 第 788 號 (80. 6.10) 改正農水産部令 第 865 號 (82. 6. 5) 改正農林水産部令第 987 號 (87. 9.10)</p>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부대시설) 법 제 2조제 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창고·건축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운동장 및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2. “飼料作物栽培地”라 함은 粗飼料를 生産하기 위하여 短年生作物을 栽培하는 土地를 말한다.</p> <p>3. “未墾地”라 함은 林野, 荒無地, 自然生草地, 沼潭地, 廢鹽地, 廢川敷地, 防潮堤가 構築된 干拓地等 法的地目如何에 不拘하고 草地造成에 適合한 土地(草地造成을 爲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包含한다)로서 草地로 利用되고 있지 아니하는 土地를 말한다.</p> <p>4. “草地의 轉用”이라 함은 草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草地의 利用에 障害가 되는 施設 또는 構造物을 設置하는 등으로 草地를 草地外의 目的에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草地를 飼料作物栽培地로 사용하는 것은 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p> <p>5. “草地造成地區”라 함은 이 法</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에 의하여 草地를 造成·管理하기로 決定告示한 土地를 말한다.</p> <p>6. “草地造成單費”라 함은 草地 1헥타아르 造成에 必要한 費用으로서 農林水産部長官이 每年算出告示하는 費用을 말한다.</p> <p>第3條 (草地造成地域區에서 除外하는 土地)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土地는 草地造成地區에서 除外한다.</p> <p>1.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公用, 公共用, 企業用 또는 保存의 目的에 使用하고 있거나 使用하기로 計劃이 確定된 土地</p> <p>2. 採種林, 試驗林, 天然保護林</p> <p>3. 國立墓地, 公設墓地, 私設墓地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指定한 國立墓地 또는 公設墓地的 豫定地</p> <p>4.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農林水産部長官,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이하 “許可廳”이라 한다)는 山林法에 의한 保全林地 砂防事業法에 의한 砂防地,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 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獎勵地區, 工業配置法에 의한 誘致地域등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地域(第1項 第1號, 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包含한다) 내에 未墾地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과 協議한 후 당해 機關에 設置된 草地造成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草地造成地區로 할 수 있다.</p> <p>第4條 (草地造成審議委員會) ①草地造成 및 그 事後管理에 關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水産</p>	<p>제 2 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p>	<p>제 3 조 (협의절차) ①법 제 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청”이라 한다)가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 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p>②제 1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중앙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部, 서울特別市, 直轄市, 道, 市 또는 郡에 草地造成審議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②委員會의 主要審議事項 및 構成과 運營 其他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部에 두는 委員會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서울特別市·直轄市·道·市 또는 郡에 두는 委員會에 關하여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p>	<p>(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농림수산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농림수산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내무부·재무부·국방부·농림수산부·건설부·보건사회부·산림청 및 환경청소속의 국장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농림수산부의 경우에는 2인)과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인이내의 자가된다.</p> <p>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두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위</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원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 3 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4 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p> <p>제 5 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제 6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 3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2. 법 제 5 조의 2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3. 법 제 2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4. 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5. 법 및 이 영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제 1 호 내지 제 5 호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第 2 章 草地의 造成</p> <p>第 5 條 (草地造成의 許可) ①이 법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草地造成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許可廳에 草地造成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草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土地 (이하 “造成對象地”라 한다)가 2 個以上の 道 (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包含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位置하는 경우에는 農林水産部長官 2. 道가 直接 草地를 造成하는 경우에는 農林水産部長官 3. 造成對象地가 2 個以上の 市·郡에 걸쳐 位置하는 경우에는 道知事 4. 市·郡이 직접 草地를 造成하는 경우에는 道知事 5. 造成對象地가 서울特別市 또는 	<p>제 7 조 (초지조성허가신청)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 5 조제 1 항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8 조 삭 제 (82. 5.20)</p>	<p>제 4 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①영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정계획서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 (신청면적이 20 헥타르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법인 등기부등본 (신청인이 법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直轄市에 位置하는 경우에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直轄市長</p> <p>6. 造成對象地가 市 또는 郡에 位置하는 경우에는 市長 또는 郡守</p> <p>②許可廳이 草地造成許可를 할 때에는 草地의 造成期間 其他 草地造成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p> <p>第 5 條의 2 (草地造成의 適地調査)</p> <p>①第 5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申請을 받은 許可廳은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p>		<p>인인 경우에 한한다)</p> <p>②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 3 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 공공단체 2. 당해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p>제 5 조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법 제 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造成對象地の 立地條件이 草地造成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調査 하여야 한다.</p> <p>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 또는 隣接한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 土石, 기타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할 수 있다.</p> <p>③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者가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고자 할 때에는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미리 그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p> <p>④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p> <p>⑤許可廳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障礙物의 變更·除去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p> <p>⑥許可廳은 國土의 효율적인 이용과</p>	<p>제 9 조 (손실보상) ①법 제 5 조의 2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청구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p>	<p>②허가청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농업진흥공사·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제 6 조 (조사자의 증표) 법 제 5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p> <p>제 7 조 (손실보상청구등) ①영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조정청구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地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草地造成의 適地를 調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의 청구를 받은 허가청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청이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당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손실액 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6 條 (草地造成地區의 告示) 許可廳은 第 5 條의 2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당해 土地가 草地造成에 適合한 것으로 判斷된 때에는 당해 土地를 草地造成地區로 告示하고 그 所有者 및 利害關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第 7 條 (圍地造成地區의 告示등) ①許可廳은 草地를 造成함이 國土의 効率의인 利用과 地域發展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 5 條의 2 第 6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행한 후 당해 기관에 設置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草地造成을 위한 圍地造成地區 (이하 “圍地造成地區”라 한다)로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許可廳이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圍地造成地區를 告示한 경우에는 草地造成計劃을 작성하여 이를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草地造成</p>	<p>제 10 조 (단지초지의 조성요건)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로 고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면적이 40헥타아르 이상일 것. (면적의 산정에 있어 토지간의 최단거리가 1킬로미터 이하인 서로 떨어진 2이상의 토지는 이를 1개의 토지로 합산할 수 있다) 2. 2가구 이상의 축산농가가 입주할 수 있을 것. 3. 축산개발에 시범적 효과를 거둘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計劃을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地區內의 土地所有者는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計劃의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計劃에서 定한 期間內에 第 5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 許可廳은 申請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p> <p>第 8條 (草地造成地區內의 行爲制限)</p> <p>第 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草地造成地區 및 第 7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團地造成地區內에서는 許可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土地의 形質變更 및 工作物의 設置 2. 墳墓의 設置 3. 土石의 採取, 立木의 伐採 및 	<p>수 있을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인근에 축산이 성행하는 지역이 있거나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소유자의 과반수)가 축산을 원할 것. 5. 농림수산부령이 定하는 기준이상의 농경지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p>제 8 조 (단지초지에 포함되는 농경지의 범위) 영 제 10 조제 5 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定하는 기준”이라 함은 단지초지조성면적의 20 퍼센트를 말한다.</p> <p>제 9 조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①초지 조성지구내에서 법 제 8 조 각호의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p>②허가청은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搬出</p> <p>4. 其他 農林水産部令이 定하는 草地造成에 支障을 주는 行爲</p> <p>第 3 章 (削除 '81.12.31)</p> <p>第 9 條 (削除 '81.12.31)</p> <p>第 10 條 (削除 '81.12.31)</p> <p>第 11 條 (權利・義務移轉의 制限) 이 法에 의하여 草地造成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廳의 承認을 얻지 아니 하고는 他人에게 그 許可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를 移轉할 수 없다.</p> <p>第 12 條 (許可의 取消) ① 許可廳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p> <p>1. 許可日로부터 1年이 經 過하여 도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着手後 1年以上 事業을 中止한때</p>		<p>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8 호서식의 초지조성지구내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 9 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2. 詐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때</p> <p>3. 許可條件을 違反한 때</p> <p>4. 不實開發로 因하여 指定된 期間內에 草地造成事業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判斷될 때</p> <p>②許可廳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草地造成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聽聞을 行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경우에 許可廳은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事由・聽聞日字와 場所를 聽聞日의 15日前까지 통지하여야 한다.</p> <p>④草地造成者 또는 그 代理人은 聽聞場所에서 자기를 위하여 事實을 說明하거나 必要한 證據를 提出할 수 있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⑤聽聞日에 草地造成者 또는 그 代理人이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正當한 事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許可取消處分에 異議없는 것으로 본다.</p> <p>⑥許可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한 때에는 第14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造成을 하게 할 수 있다.</p> <p>第13條(資金支援) ①政府는 이 法에 의한 草地 및 飼料作物栽培地의 造成에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p> <p>②農林水産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하는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事</p>		<p>제 10 조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법 제 12 조제 5 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할 때 3. 관혼상제·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p>②법 제 1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11 조 (자금지원) 농림수산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 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業完了前이라도 事業施行者에게 交付할 수 있다.</p> <p>第 14 條 (私有未墾地의 代理造成等) ① 許可廳은 圃地造成地區內의 土地所有者가 第 7 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計劃이 정한 期間內에 草地造成 許可申請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希望하는 者 또는 畜產業이나 農業의 振興을 目的으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中에서 代理造成者를 指定하여 草地를 造成하여 直接 利用하거나 造成한 草地를 他人으로 하여금 利用하게 할 수 있다.</p> <p>② 許可廳이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造成者를 指定한 境遇에는 그 指定을 받은 者는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土地所有者와 代理造成者 또는 代理利用者 (代理造成者가 造成한 草地를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 間에 賃貸借關係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p>	<p>제 11 조 (대리조성자등의 지정) ① 법 제 14 조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조성자와 법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각각 허가청이 초지의 조성 및 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p> <p>② 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소유자와 토지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2. 당해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사유 <p>③ 법 제 14 조제 1 항, 법 제 16 조제 1 항 및 법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p>	<p>제 12 조 (대리조성자·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 ① 영 제 11 조제 3 항의 규정</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期間은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되 代理造成者 指定日로부터 5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年으로 한다.</p> <p>④賃貸借期間은 當事者間의 合意에 따라 5年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繼續延長할 수 있다.</p> <p>⑤土地所有者는 第3項의 賃貸借期間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延長된 賃貸借期間이 경과한 후에 草地를 直接管理하고자 할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르게 約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p>	<p>한 대리조성 또는 대리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제 2항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허가청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제 3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p> <p>⑤허가청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12 조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 14 조제 5항 및 법 제 17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국·공유지관리청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대리</p>	<p>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대리조성자·대리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p>②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한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 13 조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賃貸借期間 滿了日까지 草地造成 및 畜舍等 附帶施設을 爲하여 投資된 費用을 代理造成者에게 支給하여야 하며,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賃貸借期間이 5年間 延長된 것으로 본다.</p> <p>⑥第2項 내지 第5項의 경우에 年間 賃借料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되 造成當時 未墾地 狀態의 土地價格(管理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當時의 隣近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分の 1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分の 1로 한다.</p> <p>⑦第6項의 賃貸料는 草地造成을 完了한 해의 다음해부터 이를 支給한다.</p> <p>⑧第5項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 및 畜舍等 附帶施設을 위하여 投資된 費用의 算出基準과 支給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 15 條 (代理造成草地의 賣渡 등) ①第 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造成된 草地의 土地所有者가 賃貸期間中에 當該</p>	<p>조성자나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제 15 조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草地를 賣渡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廳 및 當該草地의 代理造成者 또는 代理利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代理造成者 또는 代理利用자가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月內에 市價에 의하여 買收를 要請한 때에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限 他에 優先하여 當該代理造成者 또는 代理利用者에게 賣渡하여야 한다.</p> <p>②第 14 條第 3 項 및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期間中에 當該草地의 所有權이 移轉된 경우에는 그 所有權을 承繼한 者와 代理造成者 또는 代理利用者間에 第 14 條第 2 項 내지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關係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p> <p>第 15 條의 2 (私有未墾地의 賃借造成) 第 7 條의 規定에 의한 圍地造成地區에 속하지 아니한 私有未墾地를 賃借하여 草地를 造成하는 경우의 賃貸借關係에 대하여는 第 14 條第 3 項 내지 第 8 項 및 第 15 條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이 경우 “代理造成者指定日”을 “契約日”로, “代理造成者”를 “賃借人”</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으로, “代理造成”을 “賃借造成”으로, “代理造成者 또는 代理利用者”를 “賃借人”으로 본다.</p> <p>第 16 條 (國 · 公有未墾地의 代理造成 등)</p> <p>① 許可廳은 第 7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地區內의 國 · 公有地에 對하여 草地造成許可申請者가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希望하는 者 또는 畜産業이나 農業의 振興을 目的으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中에서 代理造成者를 指定하여 草地를 造成하여 直接利用하거나 造成한 草地를 他人으로 하여금 利用하게 할 수 있다.</p> <p>② 許可廳이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造成者를 指定한 경우에는 그 指定을 받은 者는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代理造成者로 指定된 者는 그 指定된 날로부터 15 日內에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하여 當該財産管理廳에 貸付를 申請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17 條 (國·公有地의 貸付) ①國·公 公有地에 對하여 草地造成의 許可를 받 은 者는 許可日로부터 15 日內에 當해 財 產管理廳에 貸付를 申請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限 다른 法律의 規定에 不拘하고 遲滯없이 貸 付하여야 한다.</p> <p>②第 1 項의 貸付期間은 5 年으로 한다.</p> <p>③財產管理廳은 貸付期間이 滿了될 때 에는 5 年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繼續 延長하여야 한다. 다만, 財產管理廳은 當해 草地造成 및 畜舍等 附帶施設을 爲하여 投資된 費用을 草地造成者에 게 支給하고 貸付契約를 解止할 수 있다.</p>	<p>제 13 조 (투자비용의 지급등) ① 토지 소유자나 국·공유지관리청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국·공유지대부계약을 해 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만 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 6월전에 허가청 및 대리조성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하며,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와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 액은 임대차기간만료일 또는 대부계 약해지일 2월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 비 및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지 급을 받은 자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또는 대부계약해지일로 부터 1월내 에 당해 초지와 시설등을 토지소유 자 또는 국·공유지관리청에 인도하 여야 한다.</p>	
<p>第 18 條 (國·公有地의 貸付料) 第 17 條의 規定에 依하여 貸付한 國公有地 의 貸付料는 國有財產法, 地方財政法 및 山林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貸付當</p>	<p>제 14 조 (국·공유지의 대부료) 범 제 18 조의 規定에 의한 국·공유지의대 부료는 대부당시 미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 (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時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 (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當時의 隣近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 以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 19 條 (土地價格의 評價) ①第 14條 第 6 項 및 第 18 條의 規定에 依한 土地價格은 代理造成者 또는 國公有地를 貸付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許可廳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認된 鑑定機關에 依賴하여 이를 評價한다.</p> <p>②削除 (81.12.31)</p> <p>第 20 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第 5 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의 許可를 받거나 第 14 條 또는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造成者 指定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承認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公有水面管理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使用의 許可 2. 河川法 第 25 條 第 1 項의 規定에 	<p>연장당시의 인근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p> <p>제 15 조 (토지가격의 감정기관) 법 제 19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동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 2. 국토이용관리법 제 29 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의한 河川의 占用등의 許可와 同法 第 45 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地域 안에서 의 行爲의 許可</p> <p>3. 山林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變更의 認可, 同法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 (國有林의 效率의 管理를 위하여 그 立地・林相 및 面積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을 제외한다)의 轉用許可・同意 또는 協議, 同法 第 57 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의 解除, 同法 第 61 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 解除의 告示와 등지, 同法 第 62 條 (第 52 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 90 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p> <p>4. 砂防事業法 第 20 條의 2 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의 指定解除</p> <p>5.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域內의 行爲</p>	<p>제 15 조의 2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 20 조 제 3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의 국유림을 말한다.</p> <p>1. 요존국유림</p> <p>2. 불요존국유림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산림</p> <p>가. 1 단지의 면적이 40 헥타아르 이상인 산림</p> <p>나. 1 단지의 면적이 40 헥타아르 미만인 산림중 경사도가 25 도 이상이고 입목본수도가 75 퍼센트 이상인 산림</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許可 및 同法 第 54 條의 規定에 의 한 用途變更의 承認</p> <p>6.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 4 條의 規定에 의 한 農地轉 用의 許可</p> <p>7.(削除 82.12.31)</p> <p>8. 農業基地開發促進法 第 5 條의 規 定에 의 한 基地開發地域內 土地의 形質變更의 許可</p> <p>第 4 章 草地의 事後管理</p> <p>第 21 條(誠實管理義務) 草地를 管理 하는 者는 당해 草地를 誠實하게 管 理·利用하여야 한다.</p> <p>第 22 條(代理管理者의 指定) ① 許可 廳은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草 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希望하는 者 中에서 代理 管理者를 指定하여 草地를 管理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管理期間</p>		<p>제 14 조(목초생산량의 기준) 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목 초생산량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은 5年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1. 災害 기타 不可抗力의 事由없이 2年이상 繼續하여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牧草生産量 等の 基準에 未達되는 草地</p> <p>2. 管理者가 없거나 있어도 分明하지 아니한 草地</p> <p>②國・公有地의 財産管理廳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 造成된·草地가 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許可廳의 通知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관한 貸付契約을 解止하고 許可廳이 指定한 代理管理者에게 貸付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有地의 代理造成者로 指定된 者는 每年 土地使用料를 土地所有者에게 支給하고 畜舎등에 投資된 費用의 100分의 1이내에서 그 所有者와 合意하여 정하는 施設物使用料를 施設物 所有者에게 支給하여야 하며, 國・公有地</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에 代理管理者로 指定된 者는 貸付料 를 當該財産管理廳에 支給하고 畜舍 등에 投資된 費用을 施設物 所有者에 게 支給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土地 使用料에 關하여는 第 14 條第 6 項, 貸 付料에 關하여는 第 18 條, 畜舍등에 投資된 費用의 計算에 關하여는 第 14 條第 8 項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p> <p>第 23 條 (草地의 轉用등) ①이 法에 의 하여 造成된 草地의 轉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하여 農林水産 部長官이나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 (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農林 水産部長官이나 市·道知事가 위의許 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機 關에 設置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1. 轉用하고자 하는 草지가 2個이 상의 道에 걸쳐 있는 경우와 道가</p>	<p>제 16 조 (초지의 전용허가) ①법 제23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p> <p>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 설 또는 관광시설등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시 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p> <p>2.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p> <p>3. 농작물 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 우, 다만, 과수용지이외의 용지로</p>	<p>제 15 조 (초지의 전용허가신청) ①영 제 16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 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 지제 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 림수산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직 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업계획서</p> <p>2. 초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p> <p>3. 지적도 또는 입야도</p> <p>4.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직접 造成한 草地의 경우에는 農林水産部長官</p> <p>2. 第1號外의 경우에는 市·道知事</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草地를 公用 또는 公共施設의 用地로 使用하기 위하여 轉用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同項 各號의 區分에 따른 許可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草地를 飼料作物栽培地로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廳에 申告하여야 한다.</p>	<p>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p> <p>4. 제 1호내지 제 3호 이외에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p> <p>②법 제 2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초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권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초지조</p>	<p>5.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 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 근경사진 및 원경사진</p> <p>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p> <p>7.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 이 영 제 16조제 1항제 1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8.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초지

法	施 行 令	, 施 行 規 則
	<p>성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관리상태의 소홀등으로 보존할 수 없는 초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초지에 대하여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 2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p>	<p>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p> <p>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 (초지의 일부분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③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전용허가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 14 호 서식의 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초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권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영 제 16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당해 초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2.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3.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나. 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p>제 15 조의 2 (사료작물재배의 신고)</p> <p>①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14 호의 2 서식의 사료작물재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료작물재배에 정지의 위치도2. 사료작물의 재배 및 이용계획서 <p>②허가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료작물의 재배 및 이용계획의 타당성과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24 條 (草地管理實態調査) ①許可廳은 年 1 回以上 草地의 管理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調査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에서 管理하고 있는 草地를 除外한다.</p> <p>②許可廳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管理狀況이 不實하다고 認定되는 草地에 對하여는 遲滯없이 期間을 定하여 그 利用者에게 이를 是正하도록 指示하여야 한다.</p> <p>③草地의 造成·管理와 관련하여 租稅의 減免을 받은 利用者가 第 2 項의 期間內에 必要한 是正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許可廳은 그 事實을 關係稅務行政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p>		<p>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획의 보완 기타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허가청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보완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초지조성자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 16 조 (초지관리실태조사의 절차) 허가청은 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관리실태조사를 별지 제 15 호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 16 호서식의 초지조성자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第 5 章 補 則</p> <p>第 25 條 (手數料) 第 23 條의 規定에 依한 草地의 轉用許可를 申請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p> <p>第 26 條 (專·企業牧畜業者의 登錄) ①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以上の 草地와 施設을 갖추고 牧畜業을 營爲하는 專業 또는 企業牧畜業者는 農林水産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登錄에 關한 節次기타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제 17 조 (수수료) ①법 제 25 조의 規定에 依한 수수료의 액은 농림수산부령으로 定한다. ②제 1 項의 規定에 依한 수수료는 허가청이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수 입인지로,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18 조 (전업·기업목축업자의 등록) ①법 제 26 조제 1 項의 規定에 依한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의 초지 및 시설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②법 제 26 조제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 2 項의 規定에 依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p>	<p>제 17 조 (수수료) 법 제 25 조 및 영 제 17 조의 規定에 依한 초지의 전용허가수수료는 허가신청면적 1헥타아르당 허가신청연도의 초지조성단비의 1천분의 5로 한다.</p> <p>제 18 조 (전업·기업목축업자등록신청서등) ①영 제 18 조제 2 項의 規定에 依한 전업·기업목축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 17 호서식에 依한다. ②영 제 18 조제 3 項의 規定에 依한 전업·기업목축업자등록부는 별지 제 18 호서식에 依하고 그 등록증은 별지 제 19 호서식에 依한다. ③제 1 項의 規定에 依한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27 條 (原狀回復) ①許可廳은 第 12 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取消한 때에는 그 許可取消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p> <p>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의 命을 받은 者가 그 期間內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放置함이 公益上 甚히 有害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廳은 許可取消를 받은 者에 갈음하여 原狀回復을 行하고 이에 所要되는 費用을 當該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p> <p>③第 2 項의 경우에 期日內에 費用을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p> <p>第 27 條의 2 (草地造成土地의 賣却)</p> <p>①第 17 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地를 貸付한 財産管理廳이 當해 土地를 賣却할 때에는 貸付받은 者에게 優先하여 賣却하여야 한다.</p>	<p>을 교부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賣却價格은 地方財政法등의 規定에 불구하고 賣却당시에 公認된 鑑定機關이 評價한 隣近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으로 한다.</p> <p>第 28 條 (權限의 委任) 農林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道知事は 그 委任받은 權限을 農林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郡守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p> <p>第 29 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6 章 罰 則</p> <p>第 30 條 (罰則) 第 23 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草地를 轉用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草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1 年以</p>	<p>제 19 조 (권한의 위임)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 또는 기업목적업자의 등록에 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제 20 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하의 懲役 또는 그 事實이 確認된 年度의 草地造成 單費에 轉用한 部分의 面積(헥타아르)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3 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 31 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 8 條 및 第 11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p> <p>2. 草地造成事業의 施行을 正當한 事由없이 방해한 者</p> <p>第 32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 30 條 및 第 31 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각 本條의 罰金刑을 課한다.</p> <p>附 則 <'80.1.4 法 3238></p> <p>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4월</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第 2 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地의 保 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 이 改正한다.</p> <p>第 2 條 第 1 號중 “農耕地, 多年性植物 栽培地 또는 牧草栽培地”를 “農耕 地 또는 多年性植物栽培地”로 하고 同條중 第 4 號를 削除하며 同條 第 7 號중 “農作物耕作, 多年性植物栽培 또는 牧草栽培”를 “農作物耕作 또 는 多年性植物栽培”로 하고 第 8 條 중 “多年性植物 또는 牧草를”을 “多 年性植物을”로 하며 第 12 條중 “多 年性植物・牧草 또는 觀賞樹”를 “多 年性植物 또는 觀賞樹”로 한다.</p> <p>第 3 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중 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처분은 이 法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p> <p>第 4 條 (同前) 이 法 施行前에 중전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 아 草地를 造成한 者에 대한 貸付는</p>	<p>4 일부터 적용한다.</p> <p>② (경과조치) 법 부칙 제 4 조의 규 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이 영 시행후 대부료를 재책정한 날로부터 이 영에 의한 대부료율을 적용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이 法 施行日에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第 5 條 (同前)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p> <p>第 6 條 (山林法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第 20 條第 3 號의 “山林法 第 8 條・第 62 條 (第 52 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 90 條” 는 1980 年 6 月 30 日까지는 “山林法 第 8 條・第 10 條・第 24 條・第 48 條 및 林産物 團束에 관한 法律第 2 條와 山林開發法 第 10 條”로 한다.</p> <p>②第 6 條第 2 項중 “自然公園法” 은 1980 年 5 月 31 日까지는 “公園法”으로 한다.</p> <p>附 則 <'81.12.31. 法 3539></p> <p>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 月이경 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부 칙</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다른 法律의 改正) 農地擴大開發 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30 條第 1 項第 11 號중 “草地法 第 10 條”를 “草地法 第 5 條”로 한다.</p> <p>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對象地 選定申請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草地造成 許可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p> <p>附 則 <'86.12.31. 法 3886></p> <p>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賃貸借期間 및 賃借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團地造成地區에 속하지 아니한 私有未墾地를 賃借하여 草地를 造成한 경우의 당해 賃貸借의 期間(연장된 賃貸借의 期間을 포함한다) 및 賃借料에 관하여는 第 15 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 14 條第 3 項・第 4 項 및 第 6 項의 規</p>	<p>부 칙</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定에 불구하고 그 貸借期間의 만료시까지 지는 종전의 契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별 표] 전업·기업목축업자의 초지 및 시설규 모(제 18 조관련)				[별표 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 13 조관련)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92 356 703 426">가축별 사업구분</td> <td data-bbox="703 356 807 426">유 우</td> <td data-bbox="807 356 911 426">한 우</td> <td data-bbox="911 356 1002 426">육 우</td> </tr> </table>				가축별 사업구분	유 우	한 우	육 우	목초의 식생밀도	지 급 액
	가축별 사업구분	유 우	한 우	육 우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92 426 703 501">초 지</td> <td data-bbox="703 426 807 501">40 헥타 아르이상</td> <td data-bbox="807 426 911 501">20헥타 아르이상</td> <td data-bbox="911 426 1002 501">20 헥타 아르이상</td> </tr> </table>				초 지	40 헥타 아르이상	20헥타 아르이상	20 헥타 아르이상	90%이상	초지조성단비의 100%
	초 지	40 헥타 아르이상	20헥타 아르이상	20 헥타 아르이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92 501 703 576">축 사</td> <td data-bbox="703 501 807 576">400 평방 미터이상</td> <td data-bbox="807 501 911 576">300 평방 미터이상</td> <td data-bbox="911 501 1002 576">300 평방 미터이상</td> </tr> </table>				축 사	400 평방 미터이상	300 평방 미터이상	300 평방 미터이상	80%이상 9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75%
	축 사	400 평방 미터이상	300 평방 미터이상	300 평방 미터이상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92 576 703 651">사육두수</td> <td data-bbox="703 576 807 651">40 두 이상</td> <td data-bbox="807 576 911 651">40 두 이상</td> <td data-bbox="911 576 1002 651">40 두 이상</td> </tr> </table>				사육두수	40 두 이상	40 두 이상	40 두 이상	70%이상 8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50%
	사육두수	40 두 이상	40 두 이상	40 두 이상						
					60%이상 70%미만	초지조성단비의 25%				
				60%이상	-					
				[별표 2] 목초생 산량등에 관한 기준(제 14 조관련) 1. 헥타아르당 목초생 산량 기준						
				등급구분	생 산 량					
				상급초지	35 톤 이상					
				중급초지	25 톤 이상 35 톤 미만					
				하급초지	25 톤 미만					
				2. 헥타아르당 가축사육두수기준						
				가 축 별	사 육 두 수					
				유 우	2 두 이상					
				한 우	3 두 이상					
				육 우	3 두 이상					
				산양및면양	20 두 이상					

여 백

編 示 告

여 백

1. 飼料標準分析方法

1987. 7. 8 (농림수산부고시 제 87-31 호)

I. 일반성분

1. 수분의 정량법 (가열 감량법)

가. 가루상태의 시료

미리 건조하여 항량(恒量)을 구한 알미늄제 칭량병(稱量瓶)에 시료 2 ~ 5 g 을 정확히 칭량하여 항온 건조기(Drying Oven)로 135 ± 2 ℃에서 정확히 2시간 또는 105 ~ 110 ℃에서 항량이 될때까지 건조시켜 테시케타내에서 40분간 방냉한 후 칭량하여 감량을 수분함량으로 한다. 단, 요소제는 75 ℃에서 4시간 건조한다.

나. 습윤한 시료

미리 항량을 구한 대형 칭량병에 일정량의 시료를 칭량하여 60 ~ 80 ℃의 건조기 내에서 48시간 예비 건조한 후 칭량실내에서 2일간 방치하여 원물의 수분함량을 구한 후 분쇄한 시료에 대한 수분을 정량하고 양자로부터 원물(原物)의 전수분을 다음 방식으로 구한다.

$$W = W_1 + \frac{(100 - W_1) \times W_2}{100}$$

* W : 원물의 수분함량 (%)

W₁ : 예비건조시의 감량 (%)

W₂ : 풍건물 공시품의 수분 함량

2. 조단백질의 정량법 (Kjeldahl 법)

가. 시약의 조제

1) 0.1 N - 염산(HCl) : 농염산(비중 1.18) 8.7 ml를 1,000 ml 에스후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로 표준선까지 채우고 혼합하여 만든다.

* 염산농도가 35.5%, 비중 1.18인 것으로 1N-염산을 만들려면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소요량을 구할 수 있다.

$$1\text{ N-염산} = \frac{36.465 (\text{염산분자량}) \times 100}{35.5 (\text{염산의 함량}) \times 1.18 (\text{염산비중})} = 87.05\text{ ml} / 1,000\text{ ml}$$

* 0.1 N-염산의 표정 : 표준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을 260~270℃에서 약 1시간 가열한 다음 데시케타내에서 30분간 방냉하여 이중에서 1.5g을 정확히 칭량하고 증류수를 가해 250ml 메스후라스크의 표준선에 맞추고 혼합한 후 이중 25ml를 취하여 메칠오렌지 (Methyl Orange) 두방울을 가하고 0.1 N-염산을 서서히 떨어뜨린다.

황색에서 담홍색이 될때 일단 2~3분간 끓이고 냉각후 다시 담홍색이 될때까지 적정 (滴定) 한다.

$$\text{Factor (F)} = 188.67 \times \frac{x}{b}$$

x : 탄산나트륨의 중량 (g)

b : 적정에 사용된 0.1 N-염산용량 (ml)

2) 분해촉진제 : 황산칼륨 (Potassium Sulfate) 8g과 황산동 (Copper Sulfate) 1g의 비율로 유발 (乳鉢)에서 완전히 혼합한다.

3) 가성소다 (Sodium Hydroxide) 농후용액 : 가성소다 500g과 치오황산소다 (Sodium Thiosulfate) 100g을 증류수 1,000ml에 녹인다.

4) 지시약 : 브로모 크레졸 그린 (Bromo Cresol Green) 0.5g과 메칠레드 (Methyl Red) 0.1g을 95%이상의 에타놀 (Ethanol) 300ml에 용해한다.

나. 시료액의 조제 (분해)

시료 0.5~1g을 500ml분해 후라스크에 취하고 분해촉진제 7~8g을 가하여 잘 혼합후 농황산 10ml를 서서히 가해서 잘 혼합한다. 이를 처음에는 거품이 넘치지 않도록 서서히 가열하다가 거품이 나지 않으면 액이 투명하게 될때까지 강하게 가열하여 분해시킨다.

다. 증 류

300ml 삼각 후라스크에 4% 붕산 (Boric acid) 용액 25~75ml (21%~63% 조단백질)를 취하고 지시약 2~3방울을 가하여 냉각기의 관끝이 붕산용액에 잠기도록 받쳐 놓는다. 그후 냉각된 분해액에 증류수 200ml와 아연립 (亞鉛粒) 2~3개를 넣고 가성소다 농후액 45ml를 가하여 즉시 증류장치에 연결한 후 서서히 가열하여

증류하는데 분해액의 양이 약 $\frac{2}{3}$ 로 줄어들때까지 증류한다.

라. 적 정

증류하여 받은액을 0.1 N-염산으로 적정하면 종말점 (End Point) 부근에서 무색으로 변하며 1~2 방울 더 가하면 적갈색으로 변할때의 0.1 N-염산소비 ml 수를 읽는다.

마. 계 산

0.1 N-염산 1 ml는 질소 (N) 0.00140067 g에 상당하므로 조단백질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조단백질 (\%)} = 0.00140067 \times t \times F \times 6.25 \times \frac{100}{W}$$

* t : 0.1 N-염산의 적정치 (ml)

F : 0.1 N-염산의 Factor

W : 시료량 (g)

단, 피혁가공분말은 계수 6.25 대신 5.26을 적용

3. 조섬유의 정량법 (여과법)

가. 시약의 제조

1) 5% (W/V) 황산액 : 농황산 (비중 1.84) 27.2 ml를 증류수에 희석하여 1,000 ml로 한다.

2) 5% (W/V) 가성소다용액 : 가성소다 50 g을 용해하여 1,000 ml로 한다.

나. 정량법

시료 1~2 g [지방함량이 많은 것은 탈지하거나 조지방을 정량한 후 남은 찌꺼기 시료(殘渣)를 사용]을 500 ml 툴비이커 (Tall Beaker)에 취하고 5% 황산액 50 ml와 증류수 150 ml를 가하고 거품 방지제 2~3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끓인다. 끓기 시작할때부터 정확히 30 분간 끓인 후 스테인레스망 (0.044 mm)으로 여과하여 잔사를 산성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뜨거운 증류수로 여러번 세척한다.

산불용해물은 증류수 130~140 ml로 툴비이커에 씻어넣고 5% 가성소다용액 50 ml를 가한 다음 200 ml 표준선까지 증류수로 채우고 다시 30 분간 끓인후 No 5 A 여과지 (135℃에서 2시간 건조하여 함량을 구한 것)로 여과하는데 알칼리성이 없어질때까

지 뜨거운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다시 95% 에탄올로 3회, 에틸로 2회 세척하고, 95~100℃에서 2시간 예비건조한 다음 135 ± 2℃에서 2시간 건조후 테시케타내에서 40분 방냉한 다음 칭량후 크루시블(600℃전기로에서 2시간 태워 항량을 구한것)에 넣어 600℃의 전기로에서 2시간 회화하여 40분간 방냉, 칭량한다.

다. 계 산

$$\text{조섬유 (\%)} = \frac{d - a}{S} \times 100$$

- * d : 분해후 여과한 잔사의 건조중량 (g)
- a : 잔사를 회화한 후 남은 회분량 (g)
- S : 공시료의 중량

4. 조지방의 정량법

가. 에틸추출법 (Ether Extract)

지방 정량병을 95~100℃에서 2시간 정도 건조하고 테시케타내에서 40분간 방냉후 칭량하고 시료 2~3g을 Na₂ 여과지에 싸서 95~100℃에서 약 2시간 건조시킨 다음 썩시렛 지방추출 장치에 넣고 에틸을 부어 80℃로 가열하여 8시간 지방을 추출한 다음 에틸을 회수하고 지방정량병을 95~100℃에서 3시간 건조후 테시케타내에서 40분간 방냉후 칭량하여 지방정량병의 중량을 감(減)한 것을 시료량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고 조지방의 함량으로 한다.

$$\text{조지방 (\%)} = \frac{\text{추출후 지방정량병 중량} - \text{추출전 지방정량병 중량}}{\text{시료 중량}} \times 100$$

나. 유지방의 정량법

1) 시약의 조제

가) 황혈염용액 : 황혈염 (Potassium Ferrocyanide) 15g을 증류수에 녹여 1,000ml로 한다.

나) 초산아연용액 : 초산아연 (Zinc Acetate) 320g을 증류수에 녹여 1,000ml로 한다.

2) 추 출

시료 5g을 200ml 삼각후라스크에 취하고 증류수 50ml를 가한후 열탕(熱湯)에서 용해후 염산(2:1) 1ml를 가하고 15분간 서서히 끓인다.

냉각후 황혈염용액 5 ml, 초산아연용액 5 ml를 넣어 잘 혼합하고 침전물을 15 cm 여과지로 여과후 증류수로 2~3 회 씻어주고 여과지의 침전물에 해사(Sea sand) 5 g 을 가하여 잘 혼합시켜 98~100 ℃에서 건조시키고 유발에 옮겨 균등히 갈아서 분말로 하여 내용물을 원통여과지에 옮기고 유발에 부착된 분말은 에틸로 축여서 탈지면으로 닦아 원통여과지에 넣고 쪽시렛장치에 연결하여 에틸추출법과 동일 방법으로 추출한다.

5. 조회분의 정량법

600 ℃의 전기로에서 1~2 시간 태운 크루시블을 데시케타 내에서 40 분간 방냉 칭량한 다음 시료 2~3 g을 취하여 전기로 또는 가스버너로 열을 가하여 예비 회화시킨후 600 ℃의 전기로에 넣어 2 시간 태운 다음 데시케타 내에서 40 분간 방냉후 칭량하여 이 중량으로부터 크루시블의 중량을 감(減)한 것을 조회분 함량으로 한다.

$$\text{조회분 (\%)} = \frac{\text{회화후 중량} - \text{크루시블의 중량}}{\text{시료 중량 (g)}} \times 100$$

II. 무기물

1. 칼슘(Ca)의 정량법

가.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법)

1) 시약의 조제

가) 5% 란타늄용액 : 란타늄옥사이드(Lanthanum Oxide) 58.65 g에 소량의 증류수를 가한 후 농염산 250 ml를 서서히 가하면서 용해시키고 냉각한 후 증류수로 1,000 ml 표준선까지 채운다.

나) 칼슘 표준용액 : 특급 탄산칼슘 0.25 g을 염산(1:1) 5 ml에 녹이고 증류수로 100 ml되게 표준선을 채운다. (1,000 ppm) 또는 시판 칼슘표준용액(1,000 ppm)을 희석 사용한다.

2) 시료액의 조제

조회분 정량후 크루시블에 염산(1:1) 10 ml를 가하고 하룻밤 방치 용해시킨후 Na 6 여과지를 이용 뜨거운 물로 여과하여 여과액을 일정량으로 만들어 시료액으로 한다.

다만 무기물류 및 광물성 사료의 경우에는 시료 0.5~1.0 g을 취하여 100 ml 삼각 후라스크에 넣고 염산(1:1) 10 ml를 가하여 시계접시로 덮은 후 가열하여 분해액이 반으로 줄어들었을때, 상기 여과방법으로 여과하여 시료액으로 한다.

3) 측 정

시료액 일정량을 50 ml메스 후라스크에 취하고 5% 란타늄용액 10 ml를 넣고 (용액중 란타늄 함량이 1% 되도록 한다.) 다시 염산(1:1) 1 ml를 가하고 증류수로 표준선을 맞춘다.

미리 30분간 예열한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422.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칼슘 표준용액을 0, 2, 4, 6, 8, 10 ppm이 되도록 50 ml 메스후라스크에 취한 다음 여기에 란타늄 용액 10 ml를 각각 넣은후 증류수로 표준선까지 채운 다음 흡광도를 측정 표준곡선(검량곡선)을 작성한다.

4) 계 산

$$\text{칼슘 } (\%) = \frac{\text{시료액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 료 중 량 } (g) \times 10^6} \times 100$$

나. E. D. T. A정량법 (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 Disodium Salt 법)

1) 시약의 조제

가) 8 N - 가성소다용액 : 특급가성소다 (NaOH) 320 g을 증류수에 녹여 1,000 ml로 한다.

나) 10% 시안화 칼륨용액 : 시안화 칼륨 (KCN) 10 g을 증류수에 녹여 100 ml로 한다.

다) 트리에타놀아민 (Triethanolamine) (1:1)

라) N, N지시약 : 순수 N, N 지시약 [2-Hydroxy - 1 - (2-Hydroxy - 4 - Sulfa - 1 - Naphthylazo) - 3 - Naphthoic Acid] 5 g을 황산칼륨 50 g과 잘 혼합

마) 0.01 M - E. D. T. A 용액 : E. D. T. A - 2 Na (Na₂H₂C₁₀H₁₂ · 2H₂O) 3.7226 g 또는 이의 무수물 3.3622 g을 증류수에 용해하여 1,000 ml로 한다. 다음 폴리에치렌병에 보관 사용한다.

* 표정 : 0.01M-탄산칼슘 용액을 300 ml 삼각후라스크에 25 ml를 정확히 취한 후 트리에타놀아민(1:1) 1 ml를 가하고 증류수 약 50 ml로 후라스크 내벽을 잘 씻 으면서 채우고 N, N지시약 0.1 g을 가하고 8N-가성소다용액 5 ml와 10% 시안화 칼륨용액 1 ml를 각각 가한후 0.01 M-E. D. T 용액으로 적정하여 몰 농도계수를 계산한다. 적정의 종점은 미색에서 청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text{Factor (F)} = \frac{25}{V}$$

V : 0.01 M - E. D. T. A 용액 소요 ml 수

바) 0.01 M - 탄산칼슘 용액 : 탄산칼슘을 110 ℃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후 1.0008 g 을 칭량하여 염산 (1 : 1) 으로 탄산가스를 제거하고 가온하여 완전히 용해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0 ml 로 한다.

2) 시료액의 조제 : 원자흡광 분광 광도계법의 시료액 조제와 동일

3) 측 정

상기 시료액 5 ml 를 300 ml 삼각후라스크에 정확히 취하고 증류수 약 10 ml 를 가한 후 8 N - 가성소다 용액 5 ml , 10 % 시안화 칼륨용액 , 트리에타놀아민 (1 : 1) 1 ml 를 각각 가한 후 잘흔든 다음 0.1 g 의 N, N 지시약을 넣고 0.01 M - E. D. T. A 용액 으로 푸른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4) 계 산

$$\text{칼슘 (\%)} = \frac{0.01 \text{ M} - \text{E. D. T. A 용액 소비량 ml} \times 0.04008 \times \text{회석배수} \times f}{\text{시 료 중 량 (g)}}$$

f : 0.01 M - E. D. T. A 용액의 factor

2. 인 (P) 의 정량법

가. 시약의 조제

1) 몰리브도 바나테이트 (Molybdo vanadate) 발색제

가) 암모니움 몰리브데이트 (Ammonium molybdate) 25 g 을 400 ml 증류수 에 용해한다.

나) 암모니움 메타 바나테이트 1.25 g 을 증류수 300 ml 에 용해하고 질산 250 ml 를 가한 후 냉각하고 상기 “가” 와 “나” 두용액을 합하여 1,000 ml 까지 증류수로 채워 발색제로 한다.

2) 인(P)의 표준용액 : 105 ℃에서 1 시간 건조한 제 1 인산칼륨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2.195 g 을 1,000 ml 의 증류수에 용해하여 500 ppm 의 표준 용액을 만든다.

이 표준용액을 10 배 희석하여 50 ppm 의 표준액을 만든 후 측정시 0, 2, 4, 6, 8, 10 ppm 으로 만들어 측정한다.

나. 시료액의 조제 : 칼슘정 량시와 동일

다. 측 . 정

50 ml 메스후라스크에 시료액 5 ml를 취하고 발색제 5 ml를 가한다음 증류수로 표준선을 맞춘후 혼합하고 15분간 방치후 분광 광도계 (Spectrophotometer)로 파장 470 nm에서 표준액과 같이 측정한다.

라. 계 산

$$\text{인 (\%)} = \frac{\text{시료액 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 료 중 량 (g)} \times 10^6} \times 100$$

3. 유황(S)의 정량법 (중량법)

가. 시약의 조제

① 염산 (1:1) : 염산과 증류수를 동량혼합

② 10% 염화바륨 (Barium chloride) 용액 : 염화바륨 10 g을 증류수에 용해하여 100 ml로 한다.

나. 시료액의 조제

시료 0.5 g을 정확히 칭량하여 삼각후라스크에 넣고 염산 (1:1) 20 ml를 가하여 가열분해 (액량이 1/2 될때까지) 한 후 뜨거운 증류수로 용해하여 Na 6 여과지로 여과한 후 전량을 250 ml로 하여 시료액으로 한다.

다. 정 량

500 ml 비이커에 시료액 100 ml를 취하여 끓을 때까지 가열하면서 10% 염화바륨 용액 10 ml를 피펫으로 한방울씩 가한다.

침전이 생긴 용액이 맑아질때까지 끓인후 약 3시간 동안 수조에서 가열하고 방치한 뒤 Na 6 여과지로 여과하고 뜨거운 증류수로 8~10 회 세척한 뒤 침전물을 여과지와 같이 크루시블에 넣고 건조시킨 다음 800 ℃ 전기로에서 30분간 회화하여 데시케타에서 냉각후 칭량한다.

라. 계 산

$$\text{유황 (\%)} = \frac{W \times 0.1374}{S} \times \frac{250}{100} \times 100$$

* W = 침전물의 중량 (g) S = 시료의 중량 (g)

100 (분모) = 시료액중 취한량 (ml)

0.1374 = 침전중 유황의 함량 250 = 시료액의 량 (ml)

4. 마그네슘(Mg)의 정량법

가. E. D. T. A 정량법

1) 시약의 조제

가) 8 N-가성소다용액 : 특급가성소다 320 g을 증류수에 녹여 1,000ml로 만든다.

나) 10% 시안화칼륨용액 : 시안화칼륨 10 g을 증류수에 녹여 100 ml로 만든다.

다) 암모니아·염화암모늄 완충액 : 산화알루미늄 정량시와 동일

라) 에리오크롬블랙 T·염화나트륨 지시약 (Eriochrome black T·Sodium chloride) : 에리오크롬블랙 T 0.5 g과 염화나트륨 100 g을 고르게 분말형태로 혼합한다.

마) 트리에타놀아민 (Triethanolamine) (1:1)

바) N, N지시약 : 칼슘정량시와 동일

2) 시료액의 조제 : 칼슘정량시와 동일

3) 측 정

가) 시료액 25 ml를 정확히 취하여 증류수 50 ml, 암모니아, 염화암모늄 완충액 (pH 10.7) 5 ml를 넣고 에리오크롬블랙 T·염화나트륨 지시약 0.04 g을 넣은 후 0.05 M-E. D. T. A 용액으로 적정한다. 이때 종말점은 용액의 적자색이 청색으로 변할 때로 한다.

나) 다시 시료액을 정확히 25 ml를 다른 삼각후라스크에 취하여 트리에타놀아민 (1:1) 1 ml를 넣고 칼슘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N, N지시약 0.1 g을 넣은 다음 0.01 M-E. D. T. A 용액으로 적정한다.

4) 계 산

$$\text{마그네슘 (\%)} = \frac{(A-B) \times 0.0012153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료의 중량 (g)}} \times 100$$

* A : 에리오크롬 블랙 T·지시약 사용시, 0.05 M-E. D. T. A 용액 소비량(ml)

B : N, N지시약 사용시, 0.01 M-E. D. T. A 용액 소비량(ml)의 $\frac{1}{5}$ 값

나.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법

1) 시약 및 시료액의 조제 : 칼슘 정량시와 동일

2) 측 정

시료액중 란타넘 함량이 1%되게 희석하여 미리 예열된 원자흡광 분광 광도계

285 nm에서 표준액을 측정 검량선을 작성후 시료액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3) 계 산

$$\text{마그네슘 (\%)} = \frac{\text{시료액의 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료의 중량 (g)} \times 10^6} \times 100$$

5. 칼륨 (K)의 정량법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법)

가. 시약의 조제

칼륨표준용액 : 시판 1,000 ppm (원자흡광용)

나. 시료액의 조제 : 칼슘정량시와 동일

다. 측 정

표준용액과 시료액에 란타넘 농도가 10,000 ppm이 되도록 첨가한 후 원자 흡광분광 광도계 766.5 nm에서 표준용액으로 검량선을 구하고 시료액을 측정하여 흡광도를 구한다.

라. 계 산

$$\text{칼륨 (\%)} = \frac{\text{시료액의 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료액의 중량 (g)} \times 10^6} \times 100$$

6. 철 (Fe)의 정량법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법)

가. 시료액의 조제 : 칼슘 정량시와 동일

나. 측 정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248.3 nm에서 시료액의 흡광도를 구하고 철 표준용액으로 검량곡선을 구한다.

다. 계 산

$$\text{철 (\%)} = \frac{\text{시료액의 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료의 중량 (g)} \times 10^6} \times 100$$

7. 나트륨(Na)의 정량법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법)

가. 시료액의 조제 :칼슘 정량시와 동일

나. 측 정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589 nm에서 시료액의 흡광도를 구하고 표준용액의 흡광도를 구하여 검량곡선을 구한다.

다. 계 산

$$\text{나트륨 } (\%) = \frac{\text{시료액의 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료의 중량 } (g) \times 10^6} \times 100$$

8. 염소(Chloride)의 정량법

가. 시약, 시료액의 조제 및 측정법 :염분정량시와 동일

나. 계 산

$$\text{염소 } (\%) = \frac{W}{\text{시료중량 } (g)} \times \frac{1}{1,000} \times 100$$

$$* W = 3.545 \times (V_1 \times F_{Ag} - V_2 \times F_{SCN})$$

W : mg Cl

V_1 : ml, 0.1 N-질산은 용액

V_2 : ml, 0.1 N-치오시안산 암모니움 또는 0.1 N-치오시안산 칼륨 용액

F_{Ag} : 0.1 N-질산은 용액의 역가

F_{SCN} : 0.1 N-치오시안산 칼륨 용액의 역가

9. 염분(NaCl)의 정량법

가. 정량법

1) 시 약의 조제

가)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나) 에 테 린 (Diethyl ether)

다) 질 산 (Nitric acid)

라) 황산철 암모니움 (Ammonium ferric sulphate) 포화용액

마) Carrez 용액 I : 증류수에 2수염의 초산아연 (Zinc acetate dihydrate) 21.9 g을 녹이고 여기에 초산 (Glacial acetic acid) 3 ml를 가하고 증류수로 100 ml까지 희석한다.

바) Carrez 용액 II : 황혈염 (Potassium ferrocyanide) 10.6 g을 증류수 100 ml에 녹인다.

사) 0.1 N-치오시안산 암모니움용액 (Ammonium thiocyanate) 또는 0.1 N-치오시안산 칼륨용액 (Potassium thiocyanate) (0.1 N-용액은 순수한 KSCN 약 9.7 g을 증류수에 녹여 1,000 ml로 한다)

* 표정 : 이미 표정한 0.1 N-질산은 용액 20 ml를 삼각후라스크에 취하고 진한 질산 0.5 ml와 황산철 암모니움 포화용액 (Ferric alum) 을 1 ml가한후 뷰렛으로부터 치오시안산칼륨 (KSCN) 표준용액을 적하한다.

액이 백색에서 미홍색으로 되는 점에서 적정을 끝낸다. 적정에 소요된 치오시안산 칼륨용액의 ml수가 V ml라면 0.1 N-치오시안산 칼륨용액의 $F_{SCN} = 20.0 \times F_{Ag} / V$ 이다.

아) 0.1N-질산은 용액 : 특급질산은 17.0 g을 증류수에 녹여 1,000 ml로한다.

* 표정 : 특급염화칼륨을 100~120 ℃에서 2 시간 건조하여 데시케타에서 냉각해서 3.7 g을 정확히 취하여 증류수에 녹여 500 ml로 한다. 염화칼륨의 양을 a g이라고 하면 0.1 N-염화칼륨 용액의 역가는 $F_{Cl} = \frac{a}{3.728}$ 이다.

삼각후라스크에 0.1N-염화칼륨 기준용액을 정확히 20 ml 취하여 1% 옥산살칼륨용액 5 방울을 가하고 뷰렛에서 질산은 표준용액을 적하하여 염화은의 침전을 함유한 황백색액이 오렌지색으로 되는 점을 종말점으로 한다.

적정에 소요된 표준용액을 a ml, 사용한 염화칼륨 기준액을 b ml 그 역가를 F_{Cl} 로 하면 0.1 N-질산은 표준액의 역가는 $F_{Ag} = F_{Cl} \times b/a$ (여기에서 b=20이다)

2) 시료액의 조제

가) 유기물이 전혀 없는 시료

10 g미만 (Cl 함량이 3 g미만)의 시료를 500 ml 메스후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약 20 ℃) 400 ml을 가하고 믹서 (Mixer)에서 30 분간 혼합한 후 증류수로 눈금까지 채우고 혼합한 후 여과한다.

나) 유기물이 포함된 시료

① 시료 5 g을 250 ml 메스후라스크에 넣고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1 g을 넣는다.

- ② 약 20℃의 증류수 200 ml를 가한 후 잘 혼합하고 30 분간 방치한다.
 ③ Carrez 용액 I 5 ml을 넣어 잘 혼합하고 다시 Carrez 용액 II 5 ml를 넣는다.

- ④ 30 분간 믹서에서 혼합한 후 250 ml까지 증류수로 채우고 여과한다.
 3) 측 정

가) 앞에서 얻은 용액 25 - 100 ml (Cl 함량이 150 mg이하)에 질산 (Nitric acid) 5 ml와 포화황산철 암모니움 (Ammonium ferric sulphate) 용액 5 ml을 넣는다.

나) 여기에 과잉의 질산은을 넣는다.

다) 에텔 5 ml를 넣고 침전물이 응고되도록 강하게 흔들어 준다.

라) 남아있는 질산은 용액 (10 ml)을 0.1 N-치오시안산 (Thiocyanate) 용액으로 적갈색이 약 1 분간 지속될 때까지 적정한다.

4) 계 산

$$\text{염분}(\%) = \frac{W}{\text{시료중량} (g)} \times \frac{1}{1,000} \times 100$$

$$* W = 5.844 \times (V_1 \times F_{Ag} - V_2 \times F_{SCN})$$

W : mg 염화나트륨

V₁ : ml, 0.1 N-질산은 용액

V₂ : ml, 0.1 N-치오시안산 암모니움 용액
 또는 0.1 N-치오시안산 칼륨용액

F_{Ag} : 0.1 N-질산은 용액의 역가

F_{SCN} : 0.1 N-치오시안산 칼륨용액의 역가

나. 퀀타법 (Quantab Chloride Titrator)

1) 시료액의 제조

시료 5 g을 300 ml 용량 삼각후라스크에 취하고 뜨거운 증류수 45 ml를 가하여 잘 흔들면서 (攪拌) 염분을 용해시킨 후 비이커에 Na 5 A 여과지로 여과하여 여과액을 시료액으로 한다.

2) 측 정

시료액의 퀀타법 (Na 1176)을 담구어 가운데의 색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위로 올라가 가로줄이 완전히 변하면 반응이 끝난것으로 보고 퀀타법을 꺼내어 황색으로 변한점의 눈금을 읽어 계산한다. 이때 염분의 농도가 높으면 시료액을 희석하여 측정한다.

3) 계 산

눈금을 읽은 수치를 표에서 찾아 그때의 함량에 회석배수를 곱한다.

10. 염산불용물질 (토사)의 정량법

조회분 정량후 남은 찌꺼기 (殘渣)를 100 ml 비이커에 옮기고 5%의 염산 20 ml를 가하고 시계접시를 덮어 15분간 끓인후 No.6 여과지를 사용 여과할 때 뜨거운 증류수로 5~6회 세척하여 여과지와 잔사를 100 ml 비이커에 넣고 5% 탄산칼륨 또는 탄산나트륨용액 20 ml를 가하고 다시 15분 끓인후 여과한 다음 550 ℃에서 여과지와 잔사를 크루시블 (550 ℃에서 4시간 건조하여 함량을 구한 것)에 넣고 4시간 태운다음 나머지 잔여량을 토사로 한다.

$$\text{토사 (\%)} = \frac{\text{태운후 중량} - \text{크루시블 함량}}{\text{시 료 중 량 (g)}} \times 100$$

11. 산화알루미늄 (Al₂O₃)의 정량법

가. 적정법

1) 시약의 조제

가) 초산 (酢酸) 암모니움 완충용액 (pH 4.8) : 초산암모니움 77 g을 증류수 200 ml에 녹이고 빙초산 57 ml를 넣은 다음 증류수로 1,000 ml되게 한다.

나) 에리오크롬블랙 T, 염화나트륨 지시약 : 에리오크롬블랙 T 0.5 g와 염화나트륨 100 g을 고르게 분말형태로 혼합한다.

다) 0.05 M - 초산아연 (Zinc Acetate) 용액 : 초산아연 10.975 g을 증류수 1,000 ml에 녹인다.

* 조제 : 초산아연 11.1 g에 증류수 40 ml와 묽은 초산 4 ml를 넣어 1,000 ml로 한다.

* 표정 : 0.05 M - E. D. T. A액 20 ml를 정확히 취하여 증류수 50 ml를 가하고 pH 10.7 암모니아·염화암모늄 완충액 3 ml 및 에리오크롬블랙 T·염화나트륨지시약 약 40 mg을 넣고 0.05 M - 초산아연 용액으로 적정하여 MoI 농도 계수를 계산한다.

라) 0.05 M - E. D. T. A 용액 : E. D. T. A 18.612 g을 증류수 1,000 ml에 녹인다.

마) 암모니아·염화암모늄 완충액 (pH 10.7) :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67.5 g을 증류수로 용해시킨 후 강암모니아수 570 ml를 가한다음 증류수로 1,000 ml를 만든다.

2) 정량방법

가) 시료 2 g을 정확히 취하여 300 ml코니칼 비이커에 넣고 염산 15 ml를 가하여 30 분간 수조에서 흔들면서 가열한다. 실온에서 방냉한후 Na 5 A 여과지를 이용 500 ml 메스후라스크에 여과하여 표준선까지 증류수로 채워 시료액으로 한다.

나) 시료액 20 ml를 정확히 취하고 0.05 M-E.D.T.A 용액 30 ml를 정확히 넣고 초산암모늄 완충액 (pH 4.8) 20 ml를 넣은 다음 5분간 끓인후 실온에서 방냉한다.

다) 이액에 에타놀 55 ml를 넣고 암모니아·염화암모늄 완충액 (pH 10.7) 5 ml를 가한 후 에리오크롬블랙 T·염화나트륨 지시약 40 mg정도 넣고 0.05 M-초산아연용액으로 적정한다.

적정시 종말점은 옅은 어두운 녹색에서 옅은 적색으로 변할때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3) 계 산

$$\text{산화알미늄 (\%)} = \frac{0.00509815 \times f \times \text{회색배수} \times (A - B)}{\text{시료 중량 (g)}} \times 100$$

* f : M농도계수

A : 0.05 M-E.D.T.A 용액의 취한 ml수

B : 0.05 M-초산아연 용액의 소비 ml수

* 1 M-E.D.T.A 1 ml = 0.101963 g 산화알미늄

나. 중 량 법

1) 시약의 조제

가) 0.5% (V/V) 염산 : 농염산 5 ml를 취하여 증류수로 1,000 ml되게 한다.

나) 암모니아수 용액 (1:3) : 암모니아수와 증류수를 1:3 비율로 희석

다) 2% 암모늄 용액 :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20 g을 증류수로 용해하여 1,000 ml로 한다.

2) 시료액의 조제

시료 2 g을 자체 크루시블에 취하고 탄산나트륨 4 g을 넣어 완전히 혼합하고 다시 탄산나트륨 1 g으로 표면을 덮고 뚜껑을 덮은 후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800 ℃에

서 2 시간 태우고 방냉후 증류수 30 ml로 내용물을 씻어 비이커 (300 ml용) 에 넣은후 다시 농염한 30 ml와 과염소산 10 ml로 크루시블을 잘 씻어 비이커에 넣고 수조에서 백색가루가 될때까지 증발건고한 후 뜨거운 증류수로 녹여 Na 6 여과지로 여과하여 전량을 500 ml로 하여 시료액으로 한다.

이때 여과지에 남아있는 잔사는 0.5% 염산으로 10~12회 씻어주고 다시 증류수로 씻어준 후 함량을 구하여 규산으로 한다.

3) 측 정

시료액중에서 200 ml를 취해서 300 ml 비이커에 넣고 메칠레드 (Methy Red) 지시약 2~3 방울을 떨어뜨린후 서서히 교반하면서 암모니아수 (1 : 3) 를 가하여 연노란색을 띤 은백색의 침전이 생기면 멈추고 가열하여 탄산가스와 암모니아를 날려 보낸후 Na 6 여과지로 여과하여 침전을 뜨거운 증류수로 충분히 씻어준 후 2% 암모늄 용액으로 3회 씻어주고 뜨거운 증류수로 충분히 씻어준 후 건조하여 크루시블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 800 ℃에서 2 시간 태우고 40 분간 방냉후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시료액에 대하여 산화철과 5 산화인의 함량을 별도로 구한다.

4) 계 산

$$\text{산화알미늄 } (\%) = \frac{\text{잔사중량} - (\text{산화철} + 5 \text{산화인})}{\text{시 료 중 량 } (g)} \times 100$$

12. 규산 (SiO₂) 의 정량법

시료 2 g 을 정확히 칭량하여 500 ml 켈달후라스크 또는 200 ml 톨비이커에 넣고 농염산 5 ml를 가하여 시료에 잘 젖게한 후 전기곤로에서 서서히 가열하다가 온도를 올려 건고하여 냉각시킨다.

냉각후 염산 (1 : 1) 20 ml를 가하고 가열하여 분해액이 백색 또는 갈색으로 되면 분해를 중지하고 냉각한다. 냉각후 Na 5 A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 세척하고 불용물을 여과지와 함께 미리 함량을 구한 크루시블에 넣어 105 ± 2 ℃의 건조기에서 1~2 시간 건조시킨다.

$$\text{규산 } (\%) = \frac{(\text{여과지중량} + \text{잔사중량}) - \text{여과지중량}}{\text{시 료 중 량 } (g)} \times 100$$

13. 크롬 (Cr) 의 정량법

가.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1) 시약의 조제

가) 제 3 인산칼륨 (Potassium phosphate)

용액 : 제 3 인산칼륨 50 g 과 수산화칼륨 25 g 을 증류수에 용해하여 100 ml 로 한다.

나) 크롬 표준용액 : 금속크롬 (Chromium 99.9% 이상)

100 mg 을 왕수 (王水) 5 ml 에 녹이고 전량을 100 ml 로 하거나 또는 특급중크롬산 칼륨을 유발을 이용하여 분말로 하고 100 ~ 110 °C 에서 3 ~ 4 시간 건조한 후 냉각하고 0.283 g 을 증류수에 녹여 1,000 ml 로 한다.

이때 크롬의 농도는 1,000 ppm 이므로 측정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시료액의 조제

시료 약 2 g 을 자체 크루시블에 취하고 제 3 인산칼륨 용액 1 ml 를 가하고 유리봉으로 완전히 혼합한 후 유리봉을 탈지면으로 씻어 넣고 예비회화 시킨 후 800 °C 전기로에서 40 분간 태우고 냉각후 증류수로 크루시블에 남아 있는 내용물을 용출하여 250 ml 메스후라스크에 넣어 표선까지 맞추고 하룻밤 방치한 후 여과하여 시료액으로 한다.

3) 측정

원자흡광 분광 광도계 357.9 nm 에서 표준액으로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료액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4) 계산

$$\text{크롬 (ppm)} = \frac{\text{시료액의 흡광도} \div \text{1ppm 당기준 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료중량 (g)}}$$

나. 비색법 (Diphenyl carbazide 법)

1) 시약의 조제

가) 크롬표준용액 : 원자흡광 분광 광도계법과 동일

나) 디페닐카바자이드 (Diphenyl Carbazide)

용액 : 디페닐카바자이드 0.5 g 을 아세트 100 ml 에 용해한다.

2) 시료액 조제 : 원자흡광 분광광도계법과 동일

3) 측정

시료액 20 ~ 30 ml (크롬으로 50 μg 이하) 를 50 ml 메스후라스크에 취하고 황산(1:6) 2 ml, 디페닐카바자이드용액 1 ml 를 가하고 표준선까지 증류수로 채우고 혼합하여 30 분간 방치한 후 공시험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파장 540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한다. 따로 표준용액을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 계산한다.

4) 계 산

$$\text{크롬 (ppm)} = \frac{\text{시료액의 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 료 중 량 (g)}}$$

14 . 불소(F)의 정 량법

가. 용량법

1) 시약의 조제

가) 0.04 N-질산토리움 (Thorium Nitrate) 용액 : 12 수염의 질산토리움 6.9637 g 또는 4 수염의 질산토리움 5.5225 g을 증류수에 녹여 1,000 ml로 한다.

나) 0.05 % 아리자린레드, 에스 (Alizarin Red, S) 지시약 : 아리자린레드, 에스 0.1 g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200 ml로 한다.

다) 염산용액 : 농염산 1 ml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250 ml로 한다.

라) 1 % 가성소다 용액 : 가성소다 10 g을 증류수로 녹여 1,000 ml로 한다.

2) 증 류

시료 약 2 g (불소로써 20 ~ 60 mg정도)을 삼구후라스크에 넣고 규산 0.5 g과 과염소산 20 ml를 가하고 직경 3 mm 정도의 초자구 (硝子球) 5개를 넣은 다음 리비히 (Liebig) 냉각기 (90 cm)를 연결하고 135 ~ 140 °C에서 증류하여 250 ml를 받는다. 단, 유기물이 많은 시료는 포화수산화 칼슘용액으로 충분히 적시고 500 °C이하에서 4 ~ 6 시간 회화한 후 삼구후라스크에 옮긴다.

3) 적 정

증류액중에서 50 ml를 삼각 후라스크에 취하여 아리자린레드 에스 지시약 5 방울을 넣으면 황색이 되는데 이때 1 % 가성소다 용액을 가하여 적색이 되게 하고 다시 염산용액을 가하여 황색으로 변하게 한 후 2 ml를 더 가하고 0.04 N-질산토리움 용액으로 적정하여 적색으로 변할때를 종말점으로 한다. 이때 공시험 (Blank Test)도 실시한다.

4) 계 산

$$\text{불소 (ppm)} = (a - b) \times \frac{250}{50} \times 0.00076 \times \frac{1}{\text{시료중량(g)}} \times 10^6$$

* a : 0.04 N-질산토리움용액 적정치(ml)

b : 공시험시 0.04 N-질산토리움용액 적정치(ml)

0.00076 = 0.04 N-질산토리움용액 1 ml에 해당하는 불소의 량(g)

$$(18.9984 \times 0.04 \times 0.001)$$

나. 이온메타 (Ion-meter) 법

1) 시약의 조제

가) 3 M - 초산소다 (Sodium Acetate) 용액 : 3 수염의 초산소다 408 g 을 정확히 취하여 증류수로 1,000 ml 되게 한다.

단, 용액의 pH가 7 이 되도록 초산으로 맞춘다.

나) 1.32 M - 구연 산소다용액 (Sodium Citrate) : 2 수염의 구연 산소다 222 g 을 정확히 취하여 250 ml 증류수에 녹인후 과염소산 28 ml를 첨가한후 1,000 ml로 만든다.

2) 시료액의 조제

가) 200 ml 비이커에 불소농도가 400 μ g 정도가 되도록 시료를 정확히 취한다.

나) 여기에 1 N - 염산 20 ml를 넣고 60 °C 정도로 가온하면서 자력 (磁力) 교반기로 20 분간 교반시킨다.

다) 200 ml 메스후라스크에 50 ml 초산소다 용액과 구연 산소다 용액 50 ml를 가한후 증류수로 표준선까지 취한 용액을 시료액으로 한다.

3) 측 정

가) 이온메타에 불소전극과 Reference 전극을 장치하고 저농도의 불소(F)용액 (100 ppm)에 담근후 실온에서 안정시킨다.

나) 시료액의 불소농도와 비슷한 농도의 표준용액을 100 ml 비이커에 일정량을 취하여 1 N - 염산 10 ml, 초산소다 용액 25 ml와 구연 산소다 용액 25 ml를 첨가하고 증류수로 일정량을 만든후 교반기에서 최저 속도로 서서히 저어주면서 전위차를 읽는다.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용액의 전위값으로 표준방정식을 구한다.

라) 시료액 일정량을 100 ml 비이커에 취하여 교반기로 서서히 저어주면서 시료액의 전위값을 구한다.

4) 계 산

$$\text{불소 (ppm)} = \frac{\text{기울기값 (ppm)} \times \text{시료액의 전위값}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료의 중량 (g)}}$$

15. 비소 (As)의 정량법 (Silver Diethyl dithiocarbamate 법)

가. 시약의 조제

1) 실버 디에틸디티오카바 메이트 피리딘 (Silver Diethyl dithiocarbamate pyridine) 용액 : 실버 디에틸 디티오 카바메이트 1 g 을 피리딘 (pyridine)

200 ml에 용해후 차광하여 냉압소에 보관한다.

2) 아연 : 20 ~ 30 메쉬 (Mesh)의 아연을 1% 황산동 용액에서 검게 될때까지 침적하였다가 세척 건조한다.

3) 염화 제 1석 (Tin Chloride) 용액 : 염화 제 1석 (鹽化 第一錫) 4 g을 농염산 (특급) 250 ml에 녹이고 증류수 250 ml를 가하여 공정병에 보관한다. 제조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4) 초산납 (醋酸鉛) - Glass wool : 초산납 (특급) 9.5 g을 증류수 100 ml 및 초산 한방울을 넣은 용액에 녹인 다음 glass wool을 약 2 ~ 5 mm로 잘라서 이 용액에 적시고 이것을 꺼내어 증류수로 세척하고 과량의 액을 제거한 후 건조한다.

5) 요오드칼륨용액 (Potassium Iodide) : 요오드칼륨 16.5 g을 증류수에 녹여 100 ml로 한후 차광하여 보관한다.

6) 비소표준용액 : 3 산화비소 (Arsenic Trioxide)를 유발내에서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테시케타에서 건조하고 그중 0.132 g을 비이커에 취하여 20% 가성수다 용액 5 ml에 녹이고 증류수 약 400 ml를 가한후 10% 황산으로 중화한다 (리트머스 종이로 확인). 다시 여기에 10% 황산 10 ml와 증류수를 가하여 1,000 ml로 하여 보존용액으로 한다. 보존용액 10 ml를 메스후라스크에 넣고 10% 황산 10 ml를 넣은 뒤에 증류수로 1,000 ml되게 한다.

이용액 1 ml는 1 μg의 비소를 함유한다.

7) 질산 (Nitric acid) : 원액 사용

8) 카프릴알콜 (Caprilalcohol) : 원액 사용

9) 과염소산 (Perchloric acid) : 원액 사용

나. 시료액의 조제

1) 건조시료 10 g을 500 ml분해 후라스크에 취한 후 건조시료에 대하여 수분함량이 80% 정도 되도록 증류수를 가한 다음 질산 20 ml를 가하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다. 처음에는 서서히 약하게 가열하다가 심한 반응이 중단되면 냉각후 황산 10 ml를 가하여 다시 서서히 약하게 가열한다. 이 조작에서 처음에 기포가 심한 경우에는 카프릴 알콜 2 ~ 3 방울을 시료에 가한다.

2) 내용물이 암색 (검은색)이 되기 시작하면 질산 30 ml씩을 추가하고 과염소산 1 ml를 넣어 가열을 계속한다. 아황산가스의 환연기가 발생될때까지 가열하여 내용물이 미황색에서 무색으로 될때 분해를 완료 냉각한다.

* 주의 : 조작도중 질산의 추가가 늦어져서 내용물이 회화되면 비소가 날아가고

분해시간이 길어진다.

3) 그후 증류수 40 ml와 포화수산 암모늄용액 20 ml를 가하여 아황산가스의 현연기가 발생할때까지 가열한 후 냉각하여 증류수로 일정량을 만들어 시료액으로 한다.

다. 정량 (그림참조)

1) 시료액 25 ml이하 (As_2O_3 로서 2 ~ 10 μg)를 후라스크 A에 취하고 증류수로 25 ml가 되게 한다.

2) 여기에 염산(1:1) 5 ml, 요오드칼륨 용액 2 ml 및 염화 제 1석 용액 5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다. 단, Fe^{+3} 을 다량 함유한 경우에는 염산 하이드록실아민 0.5 g을 가하여 녹이고 수조상에서 10분간 가열시킨 다음 염산(1:1) 5 ml를 가하여 냉각시킨 후 요오드칼륨 용액 5 ml 및 염화 제 1석용액 5 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했다가 수기(受器) D에 실버 디에칠디티오 카바메이트 피리딘용액 3 ml를 넣는다.

3) 후라스크A에 아연 3 g을 넣고 즉시 흡수관B 및 유도관C를 연결한다. 관의 끝을 수기(受器) D의 바닥에 닿게 장치하고 작은 기포가 연속적으로 나오도록 조절한다.

4) 이어서 20 ~ 25 °C에서 1시간 방치한 다음 장치를 분리한다. 유도관의 내벽에 부착된 용액은 수기내의 용액과 잘 혼합시킨다.

5) 이용액을 액층 1 cm로 하여 파장 525 mm 부근에서 30 분이내에 흡광도를 측정한다. 대조액은 실버 디에칠 디티오 카바메이트 피리딘용액을 사용한다. 따로 작성한 검량선으로 부터 비소의 함량을 계산한다.

6) 검량선의 작성 : 0,2,4,6,8,10 μg 에 상당하는 비소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시료액과 동일하게 조작하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이 검량선은 매 시험시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험을 별도로 실시한다.

라. 계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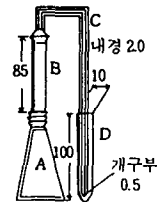
$$\text{비소 (ppm)} = \frac{As(\mu g) \times \text{회석배수}}{\text{시료중량(g)}}$$

A : 발생 Flask(100 ~ 125 ml)

D : 흡수수기

단위 : mm

비소시험장치



16. 납 (Pb) 의 정량법

가. 디티존 (Dithizone) 법

1) 시약의 조제

가) 구연산암모니움 (Ammonium citrate) 용액 : 구연산암모니움 45 g 에 증류수 100 ml 를 가하여 용해시킨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2 ~ 3 방울을 가하여 적색이 될 때까지 암모니아수를 가한다. 납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용액에 추출용 디티존 클로로포름 (Dithizone chloroform) 용액 20 ml 를 넣고 흔들어 디티존 용액이 고유의 녹색을 유지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추출한 후 물층에 클로로포름 50 ml 를 넣고 2 회 흔들어 섞은후 물층을 분액하여 취한다.

나) 아황산나트륨용액 : 아황산나트륨 (최순폼무수) 15 g 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 로 한다 (사용시에 제조한다)

이용액에 디티존 클로로포름 용액 20 ml 를 넣고 흔들어 디티존용액이 고유의 녹색을 유지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추출한후 물층에 클로로포름 50 ml 를 넣고 2 회 흔들어 섞은후 물층을 분액하여 취한다.

다) 10 % 시안화칼륨용액 : 시안화칼륨 50 g 에 증류수를 가해서 100 ml 로 한다. 이 용액을 추출용 디티존 클로로포름 용액 20 ml 를 넣고 흔들어 디티존용액이 고유의 녹색을 유지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추출한후 물층에 클로로포름 50 ml 를 넣고 2 회 흔들어 섞은후 물층을 분액하여 취한다. 단 용액중에 잔존하는 디티존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물층을 클로로포름으로 10 ~ 20 회 반복하여 씻는다. 수용액에 증류수를 가하여 5 배 희석하여 사용한다.

라) 묽은 시안화칼륨 용액 : 10 % - 시안화칼륨 용액 10 ml 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 로 한다 (사용시 제조한다).

마) 납 (Pb) 표준용액 : 질산납 (Lead Nitrate) 0.1598 g 을 질산 (2.5:97.5) 에 녹여 100 ml 로 하여 보존용액으로 한다.

사용시 이것을 질산 (1:99) 으로 100 배 또는 1,000 배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으로 한다.

납 표준용액 1 ml = 10 μ g 또는 1 μ g · Pb

바) 추출용 디티존 클로로포름 용액 (시약정제용) : 디티존 (분말) 0.03 g 을 취하여 클로로포름 100 ml 에 녹여 여기에 암모니아수 (1:99) 100 ml 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후 물층을 분취 (分取) 한다.

다시 클로로포름 층을 암모니아수 (1:99) 100 ml 씩으로 2 회 동일하게 조작하여 물층을 합하고 클로로포름 20 ml 씩으로 3 회 씻는다.

물층에 염산(1:1)을 가하여 약간 산성으로 한다음 클로로포름 200 ml씩으로 2회 추출한다. 클로로포름 추출액을 합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전량을 1,000 ml로 만들어 차광하여 냉암소에 보존한다.

사) 디티존 벤젠용액(정량용) : 디티존 분말 0.05 g을 벤젠 100 ml에 녹이고 여기에 암모니아수(1:99) 100 ml를 가하여 잘 흔들어서 섞고 물층을 분취한다. 다시 벤젠층을 암모니아수(1:99) 100 ml씩으로 2회 동일하게 조작하여 물층을 합하고 벤젠 20 ml씩으로 물층을 3회 씻는다. 또 물층에 염산(1:1)을 가하여 약간 산성으로 한뒤 벤젠 200 ml씩으로 2회 추출한다.

벤젠 추출액을 합하고 벤젠을 가하여 전량을 1,000 ml로 하여 원액으로 한다. 원액을 벤젠으로 10배 희석한 용액에 대해서 벤젠을 대조액으로 하여 층장(層長) 10 mm에서 파장(波長) 620 nm 부근의 흡수 극대 파장에서 흡광도 A를 측정한다. 이때 원액 1,000 ml는 $70.6 \times A$ mg의 디티존을 함유하게 된다.

사용시 원액 $[20,000 / (70.6 \times A)]$ ml를 취하고 벤젠을 가하여 1,000 ml로 하여 사용된다. 이 디티존 벤젠용액 1,000 ml는 디티존 20 mg을 함유하게 되며 사용시에 제조한다.

2) 분석방법

가) 시료액제조 : 건식(회화)법

① 건조시료 2 ~ 10 g을 30 ml 크루시블에 취하여 건조기에서 건조한후 전기콘로상에서 예비 회화한다.

② 약 250 °C로 가열된 전기로에 넣고 온도를 높여 완전히 회화할 때까지 500 °C이하로 가열한다.

③ 24시간후 아직 회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산(1:1) 2 ~ 5 ml를 가하여 증발건고(乾固)시킨다음 회화를 계속하여(경우에 따라 반복) 완전히 회화시킨다.

④ 방냉후 크루시블 내의 회분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증류수로 적신후 농염산 2 ~ 4 ml를 가하여 수조상 또는 건조기에서 건조시킨다.

⑤ 건조시킨후 농염산 2 ml를 가하고 가운하여 녹인 후에 불용물이 잔존할 때에는 유리여과기로 여과한다.

⑥ 유리여과기내의 잔유물에 소량의 염산을 넣은 다음 농염산과 50% 구연산 암모니아용액을 1:1로 섞은 용액 적당량을 넣고 가열한 후 다시 40% 초산 암모니아용액 0.5 ~ 1 ml씩으로 반복하여 씻어 세척액에 합하여 일정량으로 만들어 50 ~ 100 ml를 시료액으로 한다.

나) 시험조작

① 시료액 50 ml를 취하여 구연산암모늄 용액 2 ml 및 메틸레드지시약 2방울을 가하고 용액이 황색 (PH8.5 ~ 10)을 나타낼 때까지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려 넣고 (適加) 증류수로 진량을 100 ml정도로 한다.

② 여기에 10% 시안칼륨 용액 10 ml와 아황산나트륨 용액 10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수조상에서 10분간 가열한다.

③ 방냉후 암모니아수 1.5 ml를 가한 다음 분액여두에 옮기고 정량용 디티존 벤젠용액 10 ml를 가한다.

④ 분액 여두를 1분간 강하게 진탕한 다음 분리된 물층을 제거한후 벤젠층을 다른 분액여두로 옮긴다.

⑤ 다시 1% 시안화칼륨 용액 40 ml를 가하여 30초간 강하게 흔들어서 섞은 다음 물층을 버리고 벤젠층을 받는다.(필요하면 건조 여과지로 여과)

⑥ 여과액 즉 벤젠층에 대하여 층장 10 mm에서 파장 525 nm 부근의 흡수극대 파장으로 흡광도 및 공시험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⑦ 동시에 납 표준용액 10 ml (Pb 10 μg), 증류수 10 ml에 대하여 동일하게 조작하여 각각 흡광도를 측정한다. (대조액은 벤젠을 사용한다)

3) 계 산

$$\text{납 (ppm)} = 10 \times \frac{A - Ab}{As - Ac} \times \text{회석배수} \times \frac{1}{W(g)}$$

- * 10 : Pb 10 μg
- A : 시료액의 흡광도
- As : 표준용액의 흡광도
- Ab : 공시험의 흡광도
- Ac : 증류수의 흡광도
- W : 시료중량

나. 원자흡광 분광광도계법

1) 시약의 조제

가) 납 (Pb) 표준액 : 원자 흡광 광도계용 납표준품 (1,000 ppm) 을 희석하여 2, 4, 6, 8 ppm으로 만든다.

나) 요오드칼륨 용액 : 요오드칼륨 68.3 g을 증류수로 녹여 100 ml로 한다.

다) 1N-염산 : 농염산 87 ml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1,000 ml로 한다.

2) 시료액의 조제

시료 10 ~ 20 g을 50 ml 자제크루시불에 정확히 취하고 콘로위에서 탄화시킨 후 500 °C 전기로에서 하룻밤 태우고 방냉후 소량의 증류수로 회분을 씻어 100 ml 톨비이커에 넣고 다시 질산 5 ml와 과염소산 5 ml로 크루시불을 씻어 톨비이커에 넣은 후 시계접시를 덮고 가열판에서 분해액이 무색이 될때까지 가열분해후 시계접시를 열고 증발 건조시킨 후 방냉하고 1 N-염산 10 ml를 가하여 가열용해후 뜨거운 증류수로 씻어 100 ml 메스후라스크에 넣고 방냉후 표신을 증류수로 맞추어 시료액으로 한다. 무기질 시료의 경우 시료 0.5 ~ 1 g을 취하여 100 ml 삼각후라스크에 넣고 염산(1:1) 20 ml를 가하고 분해액이 날로 줄어들때까지 가열 용해후 뜨거운 증류수로 여과한 다음 일정량으로 하여 시료액으로 한다.

3) 측정

시료액 일정량(5 ~ 30 ml)를 분액여두에 취하고 85 %인산 14 ml와 요오드칼륨 용액 5 ml를 가하고 다시 증류수 50 ml를 넣고 진탕 혼합후 5분간 방치하고 MIBK (Methyl Isobutyl Ketone) 10 ml를 정확히 가하고 3 ~ 5분간 진탕, 정치후 MIBK 층(상층)을 원자흡광 광도계 파장 283.3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공시험을 행하여 보정한다.

4) 계산

$$\text{납 (ppm)} = \frac{\text{시료액의 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회석배수}}{\text{시료 중량 (g)}}$$

17. 수은(Hg)의 정량법

가. 원자흡광 분광광도계법

1) 시약의 조제

20 %염산 하이드록실 아민용액 : 염산 하이드록실 아민 20 g을 물에 녹여 100 ml로 하고 이것을 분액 깔대기에 옮기고 소량의 디티존 사염화 탄소용액(0.005 W/V%)을 넣고 흔들어 섞고 정치하여 사염화탄소층을 분리하고 다시 수층에 소량의 디티존 사염화 탄소용액을 넣어 흔들어 섞고 정치하여 사염화탄소층을 분리한다. 사염화탄소층이 변색하지 않을 때까지 이 조작을 반복하여 수층을 건조한 여과지로 보관한다.

2) 시료액의 조제

시료 적당량을 수은분해 후라스크에 넣어 황산(1:1) 20 ml 및 6 % 과망간산

칼륨용액 15~20 ml를 넣어 흔들어 섞고 250 °C 이하에서 갑자기 끓는 것을 피하면서 조용히 가열하여 2시간 동안 끓인다. 만일 과망간산칼륨의 색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액온(液溫)을 60 °C로 내려 한번에 6% 과망간산칼륨 용액 2 ml를 넣어 다시 끓이고 과망간산칼륨의 색이 약 10분간 남아있을 때까지 6% 과망간산칼륨 용액의 추가조작을 반복한다.

액온을 약 40 °C로 냉각하고 용액을 흔들어 섞으면서 염산하이드록실아민 용액을 한방울씩 떨어뜨려 과잉의 과망간산칼륨을 분해한 다음 실온으로 방냉하여 증류수를 넣어 정확히 250 ml로 한다.

3) 측 정

가)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의 수은 속빈음극관(Hollow Cathode Lamp)을 점등하여 안정시킨다.

나) 시료액 적당량을 취하여 시료병에 옮기고 황산(1:1) 5 ml를 넣고 증류수로 100 ml를 만든 다음 염화제일 주석용액[2수염 10 g을 황산(1:20) 60 ml를 넣어 용해 냉각하여 100 ml로 만든것] 10 ml를 넣어 바로 연결하고 송기 펌프를 작동하여 시료에 순환시켜 기록계의 지시가 급속히 상승하여 일정치를 나타낼 때까지 펌프의 작동을 계속하여 2,537 Å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구한다.

다) 표준용액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계산하고 공시험도 실시한다.

4) 계 산

$$\text{수은(ppm)} = \frac{\text{시료액의 흡광도} \div 1 \text{ ppm 기준흡광도} \times \text{희석배수}}{\text{시료 중량(g)}}$$

나. Polarography 법

1) 시약의 조제

가) Back ground 용액 : 특금염화나트륨 0.315 g과 E.D.T.A 0.37 g을 2차 증류수 50 ml에 용해하고 여기에 과염소산 22 ml를 첨가한후 1,000 ml로 만든다.

나) 황산: 초정제로 순도 95% 이상

다) 질산: 초정제로 순도 95% 이상

2) 시료액의 조제 :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법과 동일

3) 측 정

㉠ 시료액 10 ml를 취하여 Back ground 용액 10 ml 2차 증류수 10 ml를 측정용기에 넣고 전극을 넣은 후 질소로 산화시킨다.

㉡ 실험전에 Gold electrode를 15분 이상 2.0 V에서 최대로 극화시켜 안

정이 되면 스위치를 끄고 2차 증류수로 전극을 세척한후 시액을 측정하되 수은 표준용액으로 표준 방정식을 구한다.

Ⅲ . 기 타

1 . 염기성치환용량 (Cation Exchange Capacity) 의 정량법

가. 시 약

- ① 1 N - 초산 암모니움 용액 : 암모니아수 68 ml와 초산 (Acetic acid) 57 ml를 혼합하고 증류수로 1,000 ml가 되게 한다. (PH 7로 조정)
- ② 80 % 에탄올 (Ethanol)
- ③ 4 % 붕산용액 (Boric acid) : 조단백질 정량과 동일
- ④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 ⑤ 0.1 N - 염산

나. 정 량

먼저 칼럼 (Column) 하부를 탈지면으로 막고 No.5A 여과지 (작게 자른 것) 를 1cm정도 깔고 1 N - 초산암모니움 용액을 가하여 기포를 제거한후 시료 2g을 넣은 다음 1 N - 초산암모니움 용액 150 ml가 6 ~ 12시간에 유출되도록 마개를 조정한다. 이 액의 유출이 끝나면 80%에탄올 150 ml를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출시키면서 초산 암모니움을 제거하고 시료와 여과지를 증류 후라이크에 씻어 넣은 후 산화마그네슘 5g 과 증류수 300 ml를 가하고 수기 (受器) 에 4% 붕산용액 50 ml를 넣고 조단백질 매와 같은 방법으로 증류한후 0.1 N - 염산으로 적정한다. 동시에 공시험도 행한다.

다. 계 산

$$\text{염기성 치환 용량 (meq/100 g)} = \frac{T - B}{S} \times N \times F \times 100$$

- * T : 시료 0.1 N - 염산 적정치 (ml)
- B : 공시험에 대한 0.1 N - 염산 적정치 (ml)
- N : 염산의 규정 농도
- F : 0.1 N - 염산의 factor
- S : 시료중량 (g)

2. 요소의 정량법

가. 증류법

1) 시약의 조제 : 조단백질과 동일

2) 시료액의 조제

시료 (배합사료) 20 g을 250 ml 메스후라스크에 취하고 0.1 N-염산 200 ml를 가하여 30분간 진탕한후 0.1 N-염산으로 표준선을 맞추고 건조 여과지로 여과한다

3) 정 량

시료액 25 ml를 증류후라스크에 취하여 증류수 50 ml를 가하고 메칠레드 지시약 2~3방울을 가한후 0.5% 가성소다 용액으로 중화 (PH 5.6~5.8) 시키고 우레아제 (Urease) 0.1 g을 가하여 마개를 막은 후 40~45°C 항온수조에서 1시간 작용시키고 냉각후 산화마그네슘 3 g과 액체 파라핀 2 ml를 가하고 수기에 4% 붕산용액 25 ml를 넣은후 조단백질 정량법과 같이 증류 및 적정한다.

별도로 공시험을 행한다.

4) 계 산

조단백질 분석법에 준하여 질소(N) 함량을 구하고 계수로써 2.14를 곱하여 요소의 양을 산출한다.

$$\text{요소(\%)} = \frac{(0.1 \text{ N} \cdot \text{염산적정량} - \text{공시험적정량}) \times f \times 0.140067 \times 2.14}{\text{시 료 중 량 (g)}}$$

f : 0.1 N-염산의 factor

나. 비색법

1) 시약의 조제

가) 디메칠 아미노벤즈 알데하이드 (P-Dimethyl aminobenz aldehyde) 용액 : DMAB 16.0 g을 에타놀 1,000 ml에 용해한 다음 염산 100 ml를 가한다. 약1개월동안 안정하며 새로운 용액을 이용할 때는 새로운 표준곡선을 작성한다.

나) 초산아연 용액 : 초산아연 22.0 g을 증류수에 녹인 다음 초산 3 ml를 가하고 100 ml로 희석한다.

다) 황혈염 (Potassium ferrocyanide) 용액 : 황혈염 10.6 g을 증류수에 용해하고 100 ml로 희석한다.

라) 식물성 활성탄 (Vegetable charcoal)

마) 인산 완충액 (Phosphate buffer) : 무수 제 1인산칼륨 3.403 g 과 무수

제 2인산칼륨 4.355 g을 증류수 100 ml에 각각 용해한 다음 각 용액을 서로 혼합하고 1,000 ml로 희석한다.(PH 7.0)

바) 요소표준액

① 저장액 - 5 mg / ml : 요소 5.000 ± 0.001 g을 증류수에 녹이고 1,000 ml로 희석한다.

② 검정액 - 0.2, 0.4, 0.6, 0.8, 1.0, 1.2, 1.4, 1.6, 1.8 및 2.0 mg의 요소가 5 ml에 함유되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2, 4, 6, 8, 10, 12, 14, 16, 18 및 20 ml의 저장액을 250 ml의 메스후라스크에 넣고 인산완충액으로 표선까지 희석한다.

③ 표준액 - 1.0 mg 요소 / 5 ml를 함유하는 용액을 표준으로 사용 24 °C이하에서 저장해야 하며 1주일간 안정한다.

2) 표준곡선 작성

가) 검정액 5 ml를 25 ml의 시험관에 넣고 각각 DMAB액 5 ml를 넣는다.

나) 여기에 완충액 5 ml와 DMAB액 5 ml를 넣은 공시험액을 만든다.

다) 25 °C에서 10 시간 방치후 파장 420nm에서 요소농도에 따른 흡광도를 측정한다. 요소농도에 따라서 흡광도는 직선이 얻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DMAB액을 이용하며 되풀이 한다.

3) 측정

가) 500 ml메스후라스크에 분쇄한 시료 0.1 g과 활성탄 1 g, 증류수 250 ml, 초산아연용액 5 ml 및 황혈염용액 5 ml를 넣는다.

나) 30분간 혼든 다음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우고 침전이 생길때까지 정지한다.

다) Whatman No. 40 여과지로 여과하고 여액 5 ml에 DMAB 5 ml를 넣어 잘 혼든다.

라) 25 °C에서 10분간 방치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읽는다.

4) 계산

$$\text{요소 (\%)} = \frac{1.0 \times \text{시료의 흡광도} \times 100}{\text{표준액의 흡광도} \times \text{시료의 중량 (mg)}} \times 100$$

* 1.0 = 표준액중 요소 mg 수

100 (분자) = 희석배수

3. 휘발성 염기태 질소의 정량법

가. 시약의 조제 : 조단백질과 동일

나. 시료액의 조제

시료 5 ~ 10 g을 250 ml 메스후라스크에 정확히 취하고 증류수 200 ml를 가하여 30 분간 진탕한 후 표준선까지 증류수로 채우고 No. 5 여과지로 여과한다. 여과가 잘 안되면 3,000 rpm으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시료액으로 한다.

다. 정 량

시료액 50 ml를 분해 후라스크에 정확히 취하여 산화마그네슘 2 g, 액체 파라핀 0.5 g 및 증류수 50 ml를 가하고 조단백질 정량법에 준하여 증류 및 적정을 행하여 질소량을 산출한다.

라. 계 산

$$\text{휘발성염기태질소(\%)} = \frac{0.140067 \times A \times 5 \times f}{\text{시료중량(g)}}$$

* A : 0.1 N-염산의 소모량

f : 0.1 N-염산의 factor

5 : 회석배수

4. 아플라톡신 (Aflatoxin) 의 정량법

가. H·P·L·C 방법

1) 시약의 조제

가) 메타놀 (Methanol) : 특급품 또는 HPLC 등급품 원액을 사용

나) n-헥산 (n-Hexane) : 특급품 또는 HPLC 등급품 원액을 사용

다) 셀라이트 (Celite) 545 또는 이와 동등품

라) 클로로포름 (Chloroform) : 특급품 또는 HPLC 등급품 원액을 사용

마) 무수황산소다 (Sodium Sulfate Anhyd : Na_2SO_4) : 1 시간 건조후 사용

바) 실리카겔 (Silica Gel) : Kiesel Gel 60 (Merck 사제 Art, 7734) 또는 이와 동등품을 105 °C에서 1 시간 건조시킨후 증류수 1 %를 첨가하고 1일 이상 경과후 사용

사) 클로로포름-메타놀 (Chloroform-Methanol)액 : 클로로포름과 메타놀을

97:3의 비율로 혼합

아) 아플라톡신 표준품 : 아플라톡신 표준품 B_1, B_2, G_1, G_2 를 벤젠-아세토나이트릴 (98:2)로 용해 희석하여 사용한다.

자) 3불화초산 (Trifluoro acetic acid): 특급품 또는 HPLC 등급품 원액을 사용

차) 증류수 (Distilled water): HPLC 등급품 원액을 사용

카) 아세토 나이트릴 (Acetonitrile): HPLC 등급품 원액을 사용

2) 시료액의 조제

가) 시료 50 g을 삼각후라스크에 취하고 메타놀 150 ml과 증류수 100 ml 및 n-헥산 100 ml를 가하고 30분간 진탕추출한다.

나) Na₂O 여과지에 세라이트 545를 넣은후 흡인하면서 추출액을 여과하고 메타놀과 증류수가 합쳐진 층(하층) 50 ml를 취하여 250 ml분액여두(分液漏斗)에 넣고 n-헥산 100 ml를 가하여 5분간 진탕후, 액층을 분리시켜 하층을 다른 분액여두에 옮기고 클로로포름 50 ml를 가하고 5분간 진탕후 액을 분리시켜 클로로포름층(하층)을 취한다.

다) 메타놀과 증류수가 합쳐진 층에 상기의 조작을 2회 더 반복한후 클로로포름을 합하여 무수황산 소다에 통과시키면서 여과하여 탈수후 회전식 증발기로 50 °C에서 클로로포름을 증발 건조한다.

라) 칼럼(22 × 300 mm)의 하부에 그라스울(glass wool)로 막고 클로로포름을 넣어 기포를 제거한후 무수황산소다 5 g, 실리카겔(Art, 7734) 10 g을 넣은 후 다시 기포를 제거하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무수황산소다 15 g을 넣은 후 클로로포름을 칼럼 상층까지 적하한다.

마) 증발건고된 증발후라스크에 클로로포름 10 ml정도 넣어 용해하여 칼럼에 붓는다. 이와같은 방법을 3회 반복한다. 이때 클로로포름 양이 실리카겔층 높이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다.

바) 추출액을 적하하고 n-헥산 150 ml 및 에틸 150 ml로 탈지한후 칼럼 하부에 증발후라스크를 받치고 칼럼에 흡착된 아플라톡신을 클로로포름+메타놀(97+3) 200 ml로 용출하고 회전식 증발기로 50 °C에서 증발 건조한다.

사) 증발건고된 아플라톡신을 클로로포름에 소량씩 3~4회 용해하여 바이알(Vial)에 넣고 50 °C 항온수조에서 N₂ gas를 주입시키면서 증발 건조시킨후 3불화초산 100 μl를 가하고 마개를 막은후 1분후에 증발 건조시킨다.

이) 바이알에 메타놀을 희석량의 1/2 정도 넣고 완전히 용해한후 증류수를 메타놀과 동량 가하고 혼합시킨후 0.45 μm 여과지로 여과하여 시료액으로 한다.

3) 측 정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프 (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 로 다음 조건에 의하여 측정한다.

Column : Reverse phase C_{18} Column (4.6 mm \times 25 cm)

Solvent : H_2O + Methanol + CH_3CN (66 + 19 + 25)

Detector : Fluorescence Detector

Excitation Filter 338nm

Emission Filter 425nm

Flow rate : 0.96 ml / min 또는 2 ml / min

나. T·L·C법 (Thin Layer Chromatography)

HPLC 방법 2) 항, 바) 번 과정에서와 같이 증발 건조시킨후 벤젠 + 아세토나이트릴 (CH_3CN) (98 + 2) 용액 200 μl 로 용해하여 시료액으로 하고 TLC판 (Merck Art 5553-7) 점적하여 (이때 표준품도 점적한다) TLC 챔버 (Chamber) 에 전개용매 (展開溶媒) [클로로포름 (90) : 아세톤 (10)] 를 100 ml 가하고 TLC 판을 넣어 전개거리가 10 cm 정도 되면 TLC 판을 꺼내 암소 (暗所) 에서 5 분간 말린후 UV 램프 (UV Lamp) 장파장 (365 nm) 에서 측정한다.

2. 飼料의 公定規格

1985. 7. 24(농수산부 고시제 85-42 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사료별 성분 및 성분량과 기타 지켜야 할 사료의 품질규격에 관한 사항(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정규격설정사료) ① 공정규격이 설정되는 사료별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중 배합사료는 사료관리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국내제조사료) ①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사료에 대하여 사료별 최소치와 최대치를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명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성분명이 표시되지 아니한 사료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정할 수 있다.

③ 실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는 성분량에 한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명칭은 주문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예 : 주문어린병아리사료)

제 4 조(수입사료)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사료의 표시성분명은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입사료를 성분등록 하기위한 성분분석표는 수입사료의 제조업자가 보증하고 용기나 포장에 표시한 성분 및 성분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5 조(배합사료의 종류와 명칭 및 범위) 배합사료 제조업자는 별표 배합사료의 명칭에 따른 사료를 급여단계 및 가축의 능력에 적합하게 한가지 이상 성분등록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가축영양상 근거나 사료로서의 특성이 분명치 아니하고 성분함량 수준을 단순세분 나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의 혼입등) 사료에는 요소와 같은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이 혼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6 개월령 이상의 축우용 배합사료에 한하여 요소물량기준 2%이내의 범위안에서 혼입하고 용기에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염산불용물질의 혼입한계) ① 사료에 염산불용물질(토사)의 혼입량을 1.5%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분은 2%이하, 어즙흡착사료·육즙흡착사료·우모분·골분 및 육골분은 3%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계용·양돈용 배합사료 또는 6개월령 이상의 축우용 배합사료에 요소제를 혼합한 경우에 한하여 혼입량을 용기에 정확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염산불용물질의 혼입량을 1.5%이상 초과 할 수 있다.

제 8 조(유사단사료의 혼입금지등) 단미사료에는 당해 단미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혼입한 사료 또는 물질의 명칭과 혼입비율을 정확하게 표시한 경우와 어즙흡착사료 및 육즙흡착사료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휘발성 염기태질소의 함량기준) 다음 각호의 단미사료에는 휘발성염기태질소가 0.3%이상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1.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
2. 육분·육골분 및 육즙흡착사료

부 칙

① 이 고시는 1985년 8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② 농수산부 고시 제 82-71 호(1982. 12. 20)와 농수산부 고시 제 84-52 호(1984. 12. 22)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등록된 사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성분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배합사료

가. 양축용 배합사료

축종별	용도별	사료의명칭	범 위	표시성분명
고깃소	고깃소용	송아지사료	3개월이내	최소치(%)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육성우사료	4개월 ~ 6개월	
		번식우사료	7개월이후의 번식우	
	비육우용	육성비육사료	이유시~생체중 300kg	최대치(%) : 조섬유, 조회분.
		큰소비육사료 (I)	생체중 300kg~400kg	
		큰소비육사료 (II)	생체중 400kg 이상	
	종모우용	종모우사료		
특수용	특수사료			
젖 소	송아지용	어린송아지사료	3개월이내	최소치(%)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중송아지사료	4개월 ~ 6개월	
		큰송아지사료	7개월 ~ 10개월	
	육성우용	육성우사료	11개월 ~ 임신전	최대치(%) : 조섬유, 조회분.
	임신우용	임신우사료	임신후 ~ 분만전	
	착유우용	착유사료 (I)	비유량 15kg이하	
		착유사료 (II)	비유량 16~17kg	
		착유사료 (III)	비유량 18~19kg	
		착유사료 (IV)	비유량 20kg이상	
	농축사료			
특수용	특수사료			

축종별	용도별	사료의 명칭	범 위	표시성분명
돼 지	어린돼지용	갓난돼지사료	4주이하	최소치(%)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최대치(%) : 조섬유, 조회분.
		첫먹이돼지사료	4~6주	
		젖뻘돼지사료	6~8주	
	육성돈용	육성돈사료	2~4개월	
		비육돈용	비육돈전기	
	비육돈후기		후기용	
	어미돼지용	임신돈사료	임신기간중	
		포유돈사료	포유기간중	
	종돈용	후보종돈사료	체중 80 kg~종부시	
		종돈사료		
특수용	특수사료			
닭	병아리용	어린병아리사료	산란계용 : 6주이하	최소치(%) : 조단 백질, 조지방, 칼슘, 인. 최대치(%) : 조섬 유, 조회분.
			육계용 : 4주이하	
		중병아리사료	산란계용 : 7~12주 육계용 : 5~10주	
	큰병아리사료	산란계용 : 13주-산 란개시전 육계용 : 11주-산 란개시전		
	산란계용	산란초기사료	백색계 및 유색계 : 산란개시~40주	
		산란중기사료	백색계 및 유색계 : 41주~60주	
		산란말기사료	백색계 및 유색계 : 61주 이상	

축종별	용도별	사료의 명칭	범 위	표시성분명
	육계용	육계전기사료	0주~3주	
		육계중기사료	4주~6주	
		육계후기사료 (I)	7주~9주	
		육계후기사료 (II)	출하 7일전~출하시	
	종계용	종계사료	산란계 또는 육계용	
	특수용	특수사료		
기 타 가 축	말사육용	말 사료		배합사료 명칭 및 표시성분은 제조업자가 정함.
	면·산양 사육용	면·산양사료		
	개사육용	개 사료		
	사슴사육용	사슴 사료		
	오리사육용	오 리 사료		
	칠면조사육용	칠 면 조 사료		
	토끼사육용	토끼 사료		
	메추리사육 용	메 추 리 사료		

나. 대용유

사료의 명칭	표시성분명	비 고
축우용 대용유	최소치(%)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비타민 A (I.U) 최대치(%) : 조섬유, 조회분	(1)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을 40 %이상 배합하여야 한다. (2) 비타민 A와 D ₃ 복합제 및 예방제를 반드시 첨가하여 야 하며 예방제의 명칭과 함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양돈용 대용유	최소치(%)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비타민 A (I. U) 최대치(%) : 조섬유, 조회분	(1)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을 30 %이상 배합하여야 한다. (2) 비타민 A·D ₃ 와 B 군등 복합제와 예방제를 반드시 첨가하여야 하며 예방제의 명칭과 함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대용탈지분유 대용유장분말 유청대용품	최소치(%) : 조단백질, 조지방 최대치(%) : 조섬유, 조회분	

다. 기타동물. 어류용 배합사료

사료의명칭	표시성분명	비 고
양어용사료	대상어류명과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은 제조업자가 정함.	
애원용 동물 및 기타실험용 동물사료	대상 동물명과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은 제조업자가 정함.	

2. 단미사료

사료의명칭	표시성분명		비 고
	최소치 (%)	최대치 (%)	
어 분	조단백	수분(12%), 조회분, 염분	
어즙흡착사료	조단백	수분(13%), 조회분	
육즙흡착사료	조단백	수분(13%), 조회분	
우 모 분	조단백	조회분	
육 분	조단백	수분(14%), 조회분	
육 골 분	조단백, 칼슘 인	조회분	
피 력 가공분말	조단백	수분(10%), 조회분	
대 두 박	조단백 (조지방)	수분(13%), 조섬유, 조회분	전지대두박의 경우에는 조지방을 추가함
골 분	칼슘, 인	조회분	
동물성혼합단백질	조단백	수분(10%), 조회분	혼합한 사료명과 혼합비율 을 명시하여야 함
석 회 석	칼슘(34%)		
인산염 및 칼슘염류	인, 칼슘		공급제의 명칭·분자식·순도 공급제의 함유율을 표시하여 야 함

사료의 명칭	표시성분명		비 고
	최소치 (%)	최대치 (%)	
골 회	칼슘, 인	조회분	
광물질첨가물	해당광물질의 주성분		광물질 첨가물의 성분표시는 명칭· 분자식· 순도· 성분량 을 표시하여야 함
혼합광물질사료	해당광물질의 주성분		혼합광물질의 성분표시는 혼 합광물질별로 명칭· 분자식· 순도· 함유성분량을 표시하고 그 광물질의 배합비율을 표 시하여야 함
섭 유 질 사료	조단백.	조섬유, 조회분	
발 효 사료	조단백.	수분, 조섬유, 조회분	

3 보조사료

사료의종류	성분명	성분 함량	비 고
규 산 염	수 분 규 산 산화알미늄	12 % 이하 60 % 이상 11 % 이상	염기성치환용량(CEC) : 80 meq / 100 g 이상
요 소 제	수 분 요 소	12 % 이하 32 % 이상	사용된 부형제의 명칭 및 함량 을 표시하여야 함
향 미 제	향미성분, 부형제		향미제의 원료명과 부형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3. 飼料檢定機關指定

1985. 7 24 (농수산부고시 제 85-41호)

구 분	제 1 차검정기관	제 2 차검정기관
지정기관	축협중앙회 사료검사소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지정업무	1. 검사기관에서 의뢰하는 공시료의 분석 또는 검정	1. 1차 검정기관에서 위배판정 받은 공시료의 재분석 또는 검정 2. 일반사료공장에서 성분등록을 위하여 의뢰하는 등록용 시 료의 분석

부 칙

- ① 이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농수산부 고시 제 82-6 ('82. 2. 1)은 이를 폐지한다.

4. 飼料調節團體 指定

1983. 2. 23 (농수산부고시 83-14호)

1.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 끝.

부칙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료 1162. 62-2325 (78. 11. 20) 및 사료 1164-484 (81. 3. 26)
는 이를 폐지한다.

5. 政府管理糧穀副産物飼料取扱要領

1988.5.6 (농림수산부개정고시 제 88-15 호)

제 1 조 (목적) 본 요령은 사료관리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관리양곡부산물 사료에 대한 취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관리양곡부산물 사료”라 함은 정부관리양곡의 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및 이를 원료로 한 탈지강을 제외한 일체의 부산물(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취급조합”이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부산물의 취급 위탁을 받은 시·군 축협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 3 조 (부산물의 용도) 부산물 사료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판매 사용한다.

1. 국립종축원, 국립동물검역소, 국·공립축산시험연구기관, 종축장 및 이에 준한 기관
2. 다음의 부업 양축가 중 희망하는 농가
 - 소 : 한(육)우 10두 이하 농가
 - 돼지 : 50두 이하 사육농가

다만, 위의 소 또는 돼지의 사육규모에 대한 규정은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정 운영할 수 있다.

3. 자활사업으로 경영하는 집단 축산단지
4. 배합사료 원료
5. 식량 소비절약에 기여하는 공업용 원료
6. 기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구청장(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4 조 (부산물 생산계획 통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저량량과 도정율을 시·도 축산관계 부서장(축정과장, 산업과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시·군 분임 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부산물의 배정지시) ①도지사는 제 4 조의 통보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될 부산물을 제 3 조 각호의 용도별로 배정하여야 하며 시·군간의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배정할 때의 배정비율은 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일반양축가용 및 시험연구기관용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③도지사는 부산물의 체화방지를 위하여 시·군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생산 지역 군수가 일반양축가용 또는 배합사료용으로 즉시 판매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부산물 배정통보) ①군수는 도지사의 부산물 배정지시에 따라 부산물 인수희망자를 선정하고 취급조합장에게 대상자별 배정기준과 수량 및 제조조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물을 배정 통보할 때에는 읍·면 (리·동) 별 순위를 정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별 배정통보에 따라 취급 조합장은 부산물을 인수할 대상자별로 배정량,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 부산물 배정 및 대금납입통지서 ” 를 통보하여야 하며 대금을 징수한 후 현물을 인도한다.

④군수가 부산물을 희망하는 일반양축가별로 배정량을 책정할 때에는 배정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1.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2. 국내 부존자원 활용사업
3. 한우번식 사업단지
4. 자활사업으로 경영하는 집단 축산단지
5. 종축 개량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축산사업 농가

제 7 조 (부산물 취급) ①도지사는 부산물의 일괄 인수 및 판매관리업무를 각 군수단위로 취급조합을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취급조합장은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된 배정계획에 따른 부산물대금을 양특세입징수관에게 납입한 후 부산물을 정부관리양곡 가공공장 (이하 “ 가공공장 ”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일괄 인수하여야 한다.

③취급조합장은 부산물 배정 및 대금납입통지서 발급시 부산물 가격의 3% 범위내에서 취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 (부산물의 임의처분) ①취급조합장은 제 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 배정 및 대금납입통지서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어도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료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취급조합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행정감독) ①군수는 취급조합 및 가공공장에 대하여 부산물 생산, 판매 및 인수도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거나 원료 또는 부산물 배정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공공장이 소정의 부산물 생산량을 인도치 않을 경우
2. 부산물을 배정목적 이외에 사용 또는 처분하였을 경우
3.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조서를 고의로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제 10 조 (업무지도 감사) ①축협중앙회장은 부산물 공급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 1 회이상 취급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축협중앙회장은 취급조합이 단위농업협동조합일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에게 제 1 항의 지도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11 조 (벌칙) 본 판매요령을 위반하여 부산물을 판매한 자는 사료관리법 제 31 조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1988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요령의 개정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부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령을 적용한다.

6. 輸入飼料 事後管理要領

- 制定：1982. 8. 2 (農水産部告示 第 82-44 號)
 改正：1982. 10. 26 (農水産部告示 第 82-64 號)
 改正：1983. 6. 23 (農水産部告示 第 83-29 號)
 改正：1984. 9. 14 (農水産部告示 第 84-35 號)
 改正：1988. 1. 6 (農林水産部告示 第 88-2 號)

第 1 條 (目的) 이 要領은 飼料管理法 第 7 條 및 第 21 條의 規定에 依據 輸入飼料의 用途外 使用을 防止 함으로써 飼料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用語의 定義) 이 要領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輸入飼料”라 함은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 單味飼料, 配合飼料 및 補助飼料를 말한다.
2. “飼料輸入業者”라 함은 前項의 輸入飼料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者 또는 직접輸入하여 使用하는 者를 말한다.
3. “飼料製造業者”(이하 “製造業者”라 한다)라 함은 輸入飼料를 原料로 하여 配合飼料, 單味飼料, 補助飼料를 製造하는 者를 말한다.

第 3 條 (事後管理機關) 輸入飼料의 事後管理(이하 “事後管理”라 한다)는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및 道知事(이하 “事後管理機關”이라 한다)가 行한다.

第 4 條 (事後管理對象) 事後管理를 받아야 할 對象者(이하 “事後管理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飼料 輸入業者
2. 製造業者

第 5 條 (對象品目) 事後管理 對象品目은 飼料用으로 輸入한 다음 飼料로 한다.

H·S	品 目	H·S	品 目
0402	탈 지 분 유	1004	귀 리
0404	유 장 분 말	1005	옥 수 수
0714	타 피 오 카	1007	수 수 수
1001	밀 과 메 슬 린	1201	대 두
1002	호 밀	2309	대 용 유
1003	보 리		

第 6 條 (帳簿의 備置) 事後管理機關과 事後管理對象者는 各各 事後管理臺帳 (別紙 第 1 號 및 第 2 號 書式)을 備置하고 事後管理에 關한 事項을 記錄 整理하여야 한다.

第 7 條 (輸入內譯의 通報) ①飼料原料의 輸入推薦機關은 事後管理對象 品目を 輸入推薦한 때에는 이를 事後管理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

②飼料輸入業者는 飼料原料의 輸入 및 業體別 供給內譯을 國內到着日로부터 7 日以內에 事後管理機關 및 輸入推薦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 8 條 (輸入飼料의 使用) 製造業者는 製品別로 輸入原料의 配合比를 表示한 輸入飼料 使用內譯을 (別紙 第 3 號 書式) 每月 記載 整理하여야 한다.

第 9 條 (生産實績 報告) ①製造業者는 生産實績報告書를 (別紙 第 4 號 書式) 翌月 5 일까지 事後管理機關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生産實績 報告時에는 當月の 輸入飼料 使用實績 (別紙 第 3 號 및 第 5 號 書式) 및 輸入免狀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 10 條 (用途變更 承認) 輸入飼料의 用途變更 承認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農水産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1. 用途變更 申請事由

2. 變更申請하고자 하는 物量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

第 11 條 (事後管理의 終結) 事後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의 事後管理臺帳을 정리함으로써 事後管理를 終結한다.

1. 事後管理 對象者가 提出한 生産實績 報告書의 內容을 檢討하여 飼料용으로 使用된 것이 確認되었을 때

2. 用途外 使用許可를 받았을 때

第 12 條 (確認) 事後管理機關의 飼料檢査 公務員은 飼料管理法 第 15 條 規定에 의한 飼料檢査時 輸入飼料 使用內譯을 함께 確認할 수 있다.

第 13 條 (違反事項의 處理) ①事後管理機關은 事後管理 對象品目の 用途外 使用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依法措置하고 그 結果를 農水産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14 條 (關稅減免品目の 事後管理 證明 發給) 事後管理機關은 製造業者로부터 關稅減免品目の 事後管理에 必要한 證明發給 要請이 있을 경우 報告받은 生産實績 報告書를 基礎로 하여 生産實績證明 등 必要한 證明을 發給할 수 있다.

7. 配合飼料 製造感量 比率基準

1985.9.28 (농림수산부고시 제 85-50 호)

1. 배합사료 제조감량 비율

<u>1일제조능력</u>	<u>100톤 이하</u>	<u>100 ~ 199톤</u>	<u>200 ~ 299톤</u>	<u>300톤 이상</u>
감량비율	0.51%	0.44%	0.41%	0.28%

2. 본 제조감량 비율은 수입원료인 경우 세관통관이후 부터 배합사료 제품생산까지의 각 단계별 감량비율을 합산한 비율로서 상한비율임.

3. 시행일

본 배합사료 제조감량 비율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폐지

농수산부고시 제 83-45 호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수입사료사후관리대장 (제조업자)

원료명

단위 : %

① 일련 번호	② 모 선 명	③ B/L수량	④ 입항일자	⑤ 수입자	⑥ 배정량	수 입 면 허					인 수 량		사 용 량			용도변경		⑳ 하역 감량	㉑ 인재 (14- (17)+ (19))	㉒ 총계고 ⑥-(17) + (19) (20)	
						⑦ 일자	⑧ 수량	⑨ 반입신 고일자	⑩ 통관 사	⑪ 하역 회사	⑫ 일자	⑬ 일계	⑭ 누계	⑮ 일자	⑯ 일계	⑰ 누계	⑱ 일자				⑲ 수량

(별지 제 3 호서식)

() 월분 제품별 수입사료 사용내역

단위 : %

① 제품별	② 구분		수 입 원 료 명											국내 산		⑬ 원료 사용 합계 (⑪ +⑬)	⑭ 제조 감량	⑰ 실증 량 (⑮ -⑰)	
	목 수 수		수 수						소 계		기 타								
	③ 사용량	④ 사용비	⑤ 사용량	⑥ 사용비	⑦ 사용량	⑧ 사용비	⑨ 사용량	⑩ 사용비	⑪ 사용량	⑫ 사용비	⑬ 사용량	⑭ 사용비							

2608-2049
1982. 8. 25 승인

268 mm × 380 mm
인쇄용지 (특급) 70 g/m²

(별지 제 4 호서식)

() 월분 배합사료생산실적보고

19
 발신 : ⑩

단위 : %

사료별		구 분	전 월 누 계	당 월	누 계
닭	병 아 리 용	어린병아리사료			
		중병아리사료			
	큰병아리사료				
	계				
	산 란 계 용	산란조기사료			
	산란중기사료				
	산란말기사료				
	계				
육 계 용	육 계 용	육계전기사료			
		육계중기사료(I)			
		육계후기사료(II)			
		육계후기사료(III)			
	계				
종 계 수 용	종 계 수 용				
소	소				
돼	어 린 돼 지 용	갓난돼지사료			
		젓먹이돼지사료			
		젓돼지사료			
		계			
	육 성 된 돼 용	육성된돼사료			
육성된돼후기					
	계				
어 미 돼 지 용	어미돼지용	임신돈사료			
		포유돈사료			
		계			
중 된 돼 용	중된돼용	후보중돈사료			
		중돈사료			
	계				
특 수 용	특수용	특수사료			
소	소				
젓	송 아 지 용	어린송아지사료			
		중송아지사료			
		큰송아지사료			
		계			
	육 성 된 송 아 용	육성된송아용	육성된송아사료(I)		
육성된송아사료(II)					
육성된송아사료(III)					
육성된송아사료(IV)					
	계				
특 수 용	특수용	특수사료			
소	소				
고	고	송아지사료			
		성우사료			
		번식우사료			
	계				
젓	비 육 우 용	육성비육사료			
		큰소비육사료(I)			
		큰소비육사료(II)			
	계				
종 모 우 용	종모우용	종모우사료			
특 수 용	특수용	특수사료			
소	소				
기 타	기 타	말 사 료			
		면, 산양사료			
		개 사 료			
		습 사 료			
		오 리 사 료			
		철면조사료			
		로 끼 사 료			
메 주 리 사 료					
소	소				
합	합	계			

(별지 제 5 호서식)

() 월분 수입사료 사용실적

단위 : %

① 원료명	② 모선명	③ 배정량	수입면허량		인 수 량		사 용 량		용도변경		하역감량		⑭ 인 수 재 고 ⑦ - (⑨ + ⑪)	⑮ 총 재 고 ③ - (⑨ + ⑪ + ⑬)
			④ 당 월	⑤ 누 계	⑥ 당 월	⑦ 누 계	⑧ 당 월	⑨ 누 계	⑩ 당 월	⑪ 누 계	⑫ 당 월	⑬ 누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2608-204 A
1982.8.25 승인

380 mm × 269 mm 신문용지 54 g/m²

여 백

訓 令 編

여 백

1. 飼料檢査 業務指針

1985. 7. 30. (농수산부훈령 제 614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 조 제 4 항, 제 21 조와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18 조,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 및 검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료검사”라 함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의뢰받은 때에 사료검사공무원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거나(이하 “현물검사”라 한다)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자체품질관리상황, 장부·서류·사료 및 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이하 “서류검사”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료검정”이라 함은 현물검사를 위하여 사료검사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채취한 시료를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사료의 성분, 유해한 물질의 함유여부를 분석하거나 사료로서 부적당한 물질의 함유여부를 감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검사기관”이라 함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지침 제 3 조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료검정기관”이라 함은 사료검사기관에서 검정을 의뢰한 시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규칙 제 19 조의 규정에 적합한 분석시설을 갖춘 소속기관 또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사료검사기관

제 3 조(검사기관) 사료검사기관은 농수산부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된다.

제 4 조(사료검사공무원)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사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사료검사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검사공무원이 사료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를 휴대 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검 사 방 법

제 5 조(현물검사) ① 검사기관별 현물검사의 시기, 시료채취 장소 및 대상 검사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검사시료의 채취유효기간은 배합사료에 있어서는 제조일자가 6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의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15 일 이내, 제조일이 9월 1 일부터 다음해 5월 31 일까지인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0 일 이내의 제품이 어야 한다. 다만, 보조사료와 단미사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료검사공무원이 사료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및 그 대리인(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없거나 입회를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양축가를 입회시킬 수 있다.

제 6 조(시료채취) ① 검사공무원은 시료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 및 검사용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 서류 : 별지 제 1 호 내지 제 5 호 서식의 검사용 서류

2. 검사용구 : 소형삽 또는 샷대, 자술, 시료대, 혼합용지, 봉인지, 윤고무줄, 풀, 색연필, 대봉투, 포장용끈, 실끈

② 검사공무원은 수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1. 검사대상 사료는 소분 포장한 경우에는 완전포장되고 보관에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대량 비포장의 경우에는 다른사료와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료는 동일품목별(수입품은 모선별)로 다음 기준에 맞는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포대를 개봉 또는 샷대를 이용하여 각 포대에서 2kg정도의 시료를 채취한다.

사료 현물검사 시료채취 기준

검 사 대 상 제 품 수	추 출 포 대 수
10 포대이상 ~ 100 포대미만	2 포대이상
100 포대이상 ~ 1,000 포대미만	5 포대이상
1,000 포대이상	10 포대이상

비고 : (1) 양측가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완전포장되고 보관에 흠이 없는 것으로 3포대이상일 경우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2) 비포장사료의 경우 “검사대상제품수” 난의 “포대”는 “톤”으로 볼 수 있음.

3. 사료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대량보관하거나 수송하는 경우에는 해당사료를 10 내지 20 개소의 부위에서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서 채취한 시료는 혼합용지위에서 4 분법으로 잘 혼합하여 500g 정도의 시료 2 점을 만든다.

5. 시료채취시에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1) 사료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요소를 사용한 사료와 석회석·황산칼슘 및 기타 광물질 사료의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액상사료(우지, 당밀등)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를 충분히 섞은 다음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수분이 많은 사료는 시료를 채취하는 즉시 검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그 시료대에는 “수분이 많은 사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시료의 검정의의) ① 검사공무원은 채취된 시료대안에 검사하고자 하는 성분명과 유해물질명만을 기재 동봉한 다음 수검자와 공동계인하고 시료대 외부에 검사공무원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이 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검사공무원은 시료채취를 완료하고 별지 제 1 호서식의 수검증에 검사자와 수검자가 공동날인하고 수검증 1 부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 6 호 서식에 의하여 채취한 동일시료 2 점중 1 점은 1 차

검정기관에 잔여 1 점은 재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8 조(양측가 검사요청 사료에 대한 검사특례) ① 양측가가 검사요청한 사료를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현지에 출장하여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양측가가 검사요청한 사료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업무처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양측가가 검사요청한 사료가 규칙 제 18 조 제 6 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요청 성분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받아 검사신청서에 첨부 처리한다.

제 9 조(1 차 검정결과에 대한 재분석) ① 검사기관은 1 차 검정결과가 접수되면 5 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위배사료에 대하여는 위배성분에 대한 재분석을 재검정기관에 의뢰하고 1 차 검정기관에 대하여는 위배한 사료의 검사시료를 보관토록 통보한다.

② 1 차 검정결과 조회분이 등록성분량보다 20 % 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석 요청시에 염산불용물질(토사)의 감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10 조(재분석결과에 따른 업무처리) ① 재검정기관으로부터 분석결과가 통보되면 검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위배된 사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타 시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분석결과 접수 5 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에게 위배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 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위배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여야 하며 청문을 마친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제 19 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위배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각시도, 사료검정기관, 사료제조업자단체 및 양측가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등록성분 오차적용등) ① 사료검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이 적용하는 등록성분에 대한 오차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② 사료의 수분함량이 기준치 범위이내에서 감량되었을 경우 조희분, 조섬유 등 최대치를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의 성분함량과 염산불용물질 또는 유사단 미사료의 혼입한계는 기준수분함량의 함유량으로 환산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 12 조(중량검사) 검사공무원은 사료종별로 10개 이상을 골고루 임의추출(상하, 좌, 우등)하여 제품을 제량하고 가중평균치가 정미중량의 1%이상 부족 시에는 중량미달로 판정한다. 다만, 제품재고가 50대 미만일 경우에는 중량 검사를 생략한다.

제 13 조(사료검사 서류작성) 검사공무원은 검사현장에서 별지 제 1호 내지 제 4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고 배합사료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배합비율표를 추가로 징구한다.

제 14 조(서류검사) ① 서류검사는 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여부 및 내용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제 1항 이외에도 사료관리법 제 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배합사료 제조업(배합사료 수입업 포함)에 대한 서류검사는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기타 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서류검사는 필요시에 실시한다.

제 15 조(시설검사) ① 법 제 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자에 대한 시설검사는 사료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의 제조시설중 검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저장시설
2. 배합시설
3. 분쇄시설
4. 품질관리시설(규칙 제 18조 제 1항 별표 8에 적합여부)
5. 기타 필요한 시설

③ 단미사료 제조업자의 제조시설중 검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시설
2. 건조시설(어분·어즙흡착사료 및 육즙흡착사료의 경우)
3. 품질관리시설(규칙 제 18조 제 1항 별표 8에 적합여부)
4. 기타 각 품목별로 필요한 시설(품질관리시설 포함)

④ 시설검사결과 시설의 미비·노후등이 사료 수급조절과 품질저하를 초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 2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두어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사료검정기관

제 16 조(사료검정기관) ① 사료검정기관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 1 차 검정기관과 재검정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1 차 검정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용으로 의뢰하는 공시료(이하 “공시료”라 한다)의 분석검정을 담당하며 재검정기관은 제조업자가 사료성분 등록용으로 의뢰한 시료(이하 “등록용 시료”라 한다)와 검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재검정용 공시료의 분석검정을 담당한다.

제 17 조(시료의 분석 및 검정방법) ① 사료검정기관은 시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료분석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료는 20 배위로 분쇄하여 완전히 혼합한 후 이를 잘 혼합 축소 분할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③ 시료의 분석 및 검정방법은 사료검정기관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정한 표준 분석법에 의한다.

④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정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보여 줄 수 있도록 표준분석법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18 조(시료의 보관 및 검정결과 통보) ① 1 차 검정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정의뢰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 일 이내에 재검정기관은 사료성분분석 및 검정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결과를 별지 제 7 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정기관은 접수한 시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 1 차 검정기관은 공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한 후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관요청을 받은 공시료에 한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50 일간 보관하고 잔여시료는 폐기한다.

④ 재검정기관에서는 공시료의 재검정 결과를 통보한 후 해당시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40 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용 시료는 검정결과 통보후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제 19 조(사료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사료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 20 조(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사) ① 현물검사결과 일단 위배되어 행정처분한 사료에 대하여는 처분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회이상 재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사료의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서류검사결과 일단 위배되어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1회이상 확인 또는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 21 조(사료검사보고) 시·도지사는 사료검사 완료후 분기별로 별표 4의 예시와 같은 행정처분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한 사료검사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기타)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료관리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배합사료, 보조사료 제조업체가 사료관리법에 위반하여 허가취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85. 8. 1.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훈령) 사료검사 업무지침(농수산부 훈령 제 510 호, 1982. 2. 9) 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납·수은에 대한 검사는 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분석법이 정하여진 후에 실시한다.

(별표 1)

검사기관별현물검사방법(제 5 조관련)

검사기관	검사시기	시료채취장소및대상	검 사 사 항
시·도	분기별 2 회이상	가. 장 소 1) 사료제조공장 2) 판매업소 3) 양축농가 4) 수입업자의 보관장소 나. 대 상 1) 제조업자의 보관 원료 및 제품 2) 판매업자의 재고품 3) 양축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사료 4) 양축농가의 검사요청사료 5) 수입업자의 수입 사료	가. 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 - 등록된 사료성분 내용 및 공정규격 적격여부의 확인 특히 사료의 공정규격 제 6 조 내지 제 9 조의 해당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다만, 유통사료의 수분 검사는 제외함. - 중량 또는 용기외부 표시사항 - 유해물질의 허용범위 초과 여부 나. 양축가의 검사요청사료 - 양축가가 검사를 요청하는 성분 다. 수입사료 - “가”와 동일
농수산부	필요시수시 실시	상 동	상 동

(별표 2)

등록성분오차적용(제 11 조관련)

1 일반성분의 오차범위

성분별	배합사료 %	보조사료 %	단미사료		비고
			식물성및 동물성	광물성	
수분	-	0.66	0.66	-	
조단백질	0.45	-	0.90	-	
비단백태질소(요소)	5	5	-	-	분석치 기준
조지방	0.51	-	0.39	-	
조섬유	0.36	-	0.48	-	
조회분	0.36	-	0.36	-	
칼슘	0.03	-	0.56	0.56	배합사료중 양제사료는 0.3%
인	0.03	-	0.22	0.22	
염분	0.24	-	0.24	5	단미사료중 광물성은 분석치 기준
염산불용물질(토사)	5	5	5	5	분석치 기준
규산	-	5	-	-	"
산화알루미늄	-	5	-	-	"
염기성치환용량(CEC)	-	5	-	-	"
광물질을 혼합한 주성분	-	-	-	5	"

2 유해물질의 오차범위

유해물질명	2ppm 미만	2~50ppm	50ppm 초과
비소	- %	- %	5 %
불소	-	-	5
크롬	-	-	5
납	0.1	8	5
수은	20	-	-
아프라톡신	20	-	-

비고: 오차범위는 분석치 기준임.

3. 오차적용의 범위

시료의 검정결과가 등록된 성분량에 위배되었을 경우 분석수치가 등록수치를 초과한 성분량에 대하여는 오차범위를 감(-)하고 부족되는 성분량에 대하여는 가(+)하여주되, 오차범위의 가감이 끝나면 소수점 2자리에서 4사5입 방식의 수치뺀 음법을 적용하여 위배여부를 판단한다.

예 1) 조단백질 등록성분량(배합사료) 15.0 % 이상

분석수치 14.46 %
 오차가감 14.91 % (14.46 % + 0.45 %)
 수치뺀음적용 14.9 %
 위배여부판단 0.1 % 부족 (15.0 % - 14.9 %)

예 2) 조섬유등록 성분량(배합사료) 7.0 % 이하

분석수치 7.54 %
 오차가감 7.18 % (7.54 % - 0.36 %)
 수치뺀음적용 7.2 %
 위배여부판단 0.2 % 초과 (7.2 % - 7.0 %)

예 3) 유해물질크롬 허용기준

1,000 ppm 미만
 분석수치 1,050 ppm
 오차가감 997.5 ppm (1,050 ppm - 52.5 ppm)
 수치뺀음적용 997.5 ppm
 위배여부판단 허용기준이하 (997.5 ppm < 1,000 ppm)

(별표 3)

사료검사결과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 (제 19 조관련)

가. 과징금부과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별 과징금의금액 (영 제 14 조 제 1 항 관련)			위반회수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사료관리법)	과징금의기준		
1. 판매방법 또는 판매가 격을 위반한때	제 6 조	허가능력톤당 3만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3 ~ 5 개월 영업 정지
2. 사료를 용도의로 판매 한때	제 7 조	허가능력톤당 3만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3 ~ 5 개월 영업 정지
3. 사료를 매점하거나 사 료의 제조 또는 판매 를 기피한때	제 8 조	허가능력톤당 6만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4 ~ 6 개월 영업 정지
4. 영업의 양도·임대·휴 업의 신고 또는 휴업 한 영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제 9 조 제 6 항	허가능력톤당 5천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1 ~ 2 개월 영업 정지
5. 등록된 사료성분과 다 른성분의 사료를 제조 하여 판매한때	제 12 조 제 1 항	허가능력톤당 5천원	1 ~ 3 회 4 회이상	과징금부과 1 ~ 2 개월영업정지
6. 등록사항등의 표시를 허위로 한때	제 13 조 제 2 항	허가능력톤당 1만원	1 ~ 3 회 4 회이상	과징금부과 2 ~ 3 개월영업정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영 제 14 조제 1 항관련)			위반회수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사료관리법)	과징금의기준		
7. 유해 사료를 제조하거나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때, 다만, 법제 17 조 제 1 항제 4 호에 해당하여 제조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14 조 제 1 항	허가능력톤당 6 만원	1 회 2 회이상	과징금부과 4 ~ 6 개월간 영업정지
8. 사료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때	제 15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허가능력톤당 1 만원	1 ~ 3 회 4 회이상	과징금부과 2 ~ 3 개월 영업정지
9. 사료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때	제 15 조 제 3 항	허가능력톤당 3 만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3 ~ 5 개월영업정지
10. 사료의 검사결과 등 록한 사료성분과 현저히 다른때 행하는 명령에 위반 할때	제 16 조 제 1 호	허가능력톤당 3 만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3 ~ 5 개월 영업정지
11. 사료의 검사결과 유해 사료일때 행하는 명령에 위반할때	제 16 조 제 2 호	허가능력톤당 6 만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4 ~ 6 개월 영업정지
12. 사료에 대한 허위광고를 할때	제 19 조	허가능력톤당 3 만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3 ~ 5 개월 영업정지
13. 판매가 금지된 사료를 판매 할때	제 20 조	허가능력톤당 6 만원	1 ~ 2 회 3 회이상	과징금부과 4 ~ 6 개월 영업정지

나. 법 제 18 조 제 1 항 제 9 호를 위반한때의 행정처분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사료관리법)	위 반 회 수 및 행 정 처 분 기 준		
		1 회	2 회	3 회 이 상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였을 경우 이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때,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때	제 21 조 제 1 항	15 일 영업정지	1 개 월 영업정지	3 ~ 6 개 월 영업정지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적용사항

1. 동일한 날짜에 제조된 동일한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중복발생한 경우에는 최초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능력은 허가된 생산능력을 말하며 단미 사료 제조업에 있어서는 등록된 생산능력을 말한다.
3. 산정된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여 부과한다.
4. 행정처분 단위기간은 1년으로 한다.
5. 과징금부과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반행위중 제 5호 “등록한 사료 성분과 다른 성분의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한때”의 위반회수 산정은 사료의 명칭 별로 한다. (예시 : 어린병아리사료, 중병아리사료... 등) .
6. 동시위반사항이 2개항목 이상일 경우의 처분은 그중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되 항목별 위반사항을 각각 1회 위반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할 경우에는 전회의 위반회수를 가산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사료검사결과 행정처분장 (제 21 조관련)

“예시”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처 분 장</p>								
<p>제 호</p>								
<p>1 회 사 명 :</p>								
<p>2 소 재 지 :</p>								
<p>3 대 표 자 :</p>								
<p>4. 귀사의 사료검사 결과 위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p>								
사료성분 등록번호	사료명	제조일자	검사일자	성분명	등 록 보증량	분 석 (검 사) 결 과	과부족	검사기관
<p>5. 처벌근거 :</p>								
<p>6. 처벌내용 :</p>								
<p>년 월 일</p>								
<p>특별시장</p>								
<p>직할시장 직 인</p>								
<p>도 지 사</p>								

[별지 제 3 호 서식]

제 품 의 중 량 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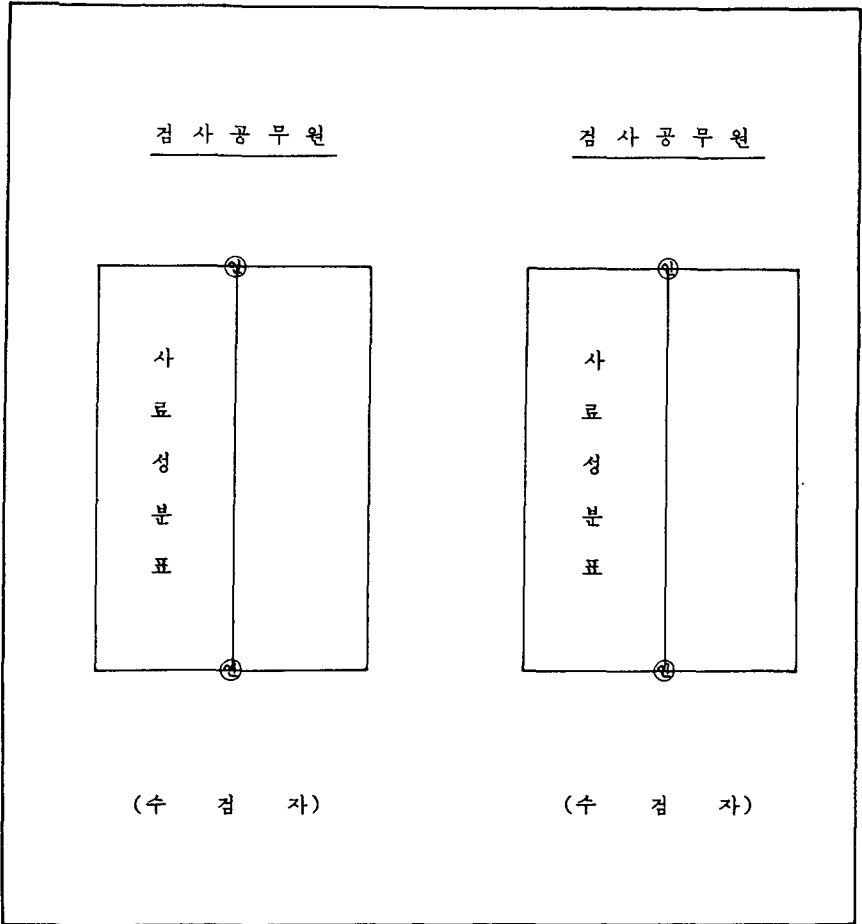
1. 사 용 한 저 울		제 식				
2. 성분등록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3. 제 조 년 월 일						
4. 표 시 정 미 중 량						
5. 포 대 중 량						
6. 포 대 명						
제 품 중 량 (포 대 포 함)	검 량 제 품 순 서	1				
		2				
		3				
		4				
		5				
		6				
		7				
		8				
		9				
		10				
	평 균					
	최 고					
	최 저					
비 고						

2608 - 98 A
1981. 4. 2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별지 제 4 호시식]

검수시료에 첨부되었던 사료성분표



※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인을 상단과 하단에 날인한다.

2608 - 98A
1981. 4. 2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별지 제 6 호서식]

공시료검정의뢰서 (검사기관용)

수 신

일 자 :

제 목 공시료 검정의뢰

발 신 :

사료관리법 제 1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료의 성분량을 분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시 료 번 호	조 사 성 분 명	비 고

첨 부 : 시 료 점

[별지 제 7 호 서식]

축산시험장 (축협중앙회 사료검사소)

분류기호

시행년월일

수 신

발 신

년 월 일자로 (귀하)가 의뢰한 사료의 성분분석 및 검정결과 다음과 같음을 회신합니다.

1. 사료번호또는사료명								
2. 접수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3. 검사 분석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4. 성분 분석 결과	가. 최 소 량							
	나. 최 대 량							
	다. 기 타							
5. 비 고								

2608 - 98A
1981. 4. 2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

사 료 검 사 결 과 보 고 서

작성자 (검사원)

인

검사기관	검 사 년월일	업체명	성 분 등록번호	사료명칭	제 조 년월일	분석 회수	위배내역	행 정 처 분				비 고
								기관	근거	종별	기간	
소계												

- (주) 1. 분석회수는 1, 2 차 분석상황을 기재한다. “예” 1 차분석만한 경우는 “ 1 ” 2 차 분석까지 한 경우는 “ 2 ”로 표시한다.
2. 위배내역란은 위배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무” 위배사항이 있을 경우는 위배 성분과 내역 (예 : 조 단백질 2%부족, 조회분 3% 초과등) 및 기타 위배사항을 기재한다.
3. 행정처분중 기관란은 행정처분한 기관을 표시(예 : 서울, 경기등) 하고 처벌근거는 사료관리법 규정조항을 기입한다.
 종별란은 행정처분 종별을 기재한다. (예 : 경고, 제조정지, 원료감배, 영업정지등) 기간은 행정처분기간을 기재한다.
4. 사료검사 실적은 위배사항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실적 전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취합 보고한다.
5. 배합사료공장, 축종, 위배사료 내역별로 각각 별지 작성할 것.
 ※ 축종(양계, 양돈, 낙농, 비육우, 기타)
6. 보고기한 : 분기익월 15일까지

2608 - 98 A
 1981. 4. 2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 / m²

2. 配合飼料製造用動物藥品添加使用指針

제정 (1978. 7. 1)
농수산부 행정지시.

개정 (1986. 6. 27)
농수산부고시 제 86-18 호

제 1 조 (목 적) 배합사료에 첨가 사용하는 동물용 항생물질 및 항콕 시뒸제, 설파제등 항균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용기준) ① 동물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 사용하는 항생물질 및 항콕시뒸제, 설파제등 항균물질의 사용방법 및 사용허용량은 “별표 I”에 한한다.

② “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물약품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타 사료첨가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별표 2”의 표중 같은란에 수록된 동물약품은 동일 배합사료내에 2종 이상을 같이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항곰팡이제는 배합사료 1%당 3,000 g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산화제는 배합사료 1%당 150 g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 (대상배합사료등) 대상배합사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대상배합사료 이외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사가축에 준용한다. 다만, 착유중인 젖소나 유산양용 배합사료에는 항균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휴약기간) 도살전 7일전에 사용하는 배합사료에는 항균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되며 동기간중 사용될 우려가 있는 배합사료에는 도살전 7일간의 휴약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6. 7. 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의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첨가 사용지침”에 의한 품목은 1986. 12. 31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대상배합사료 품명	닭						
	병아리용 (육계제외)	육 계 용				종계용	산란계용
		전 기	중 기	후기 I	후기 II		
나 이 스타 틴	55	55	55	55	-	-	-
메스토마이신 A	5-10	5-10	5-10	5-10	-	5-10	-
린 코 마 이 신	-	2.2-4.4	2.2-4.4	2.2-4.4	-	-	-
바시트라신메칠렌 디살리실레이트	4.4-55	-	-	-	-	11-27.5	11-27.5
밤 버 마 이 신	0.5-5	0.5-5	0.5-5	0.5-5	-	2-5	2-5
버지니아마이신	5-15	5-15	5-15	5-15	-	10-20	10-20
스펙티노마이신	-	-	-	-	-	-	-
스 피 라 마 이 신	5-20	5-20	5-20	5-20	-	-	-
아 보 파 신	7.5-15	7.5-15	7.5-15	7.5-15	-	-	-
아연바시트라신	4-50	4-50	4-50	4-50	-	4-50	10-50
에이스로마이신	5-20	5-20	5-20	5-20	-	20	-
엘 라 마 이 신	1-10	1-10	1-10	1-10	-	1-10	-
염산옥시테트라 싸이클린	50-100	50-100	50-100	50-100	-	5-20	-
염산클로르페트라 싸이클린	10-55	10-55	10-55	5-20	-	10-50	-
옥시테트라싸이 클린 4 급암모늄	5-55	5-55	5-55	-	-	5-55	-

돼		지		소				비 고
어 린 돼지용	육성돈용	비 육 전 기	돈 용 후 기	어 린 송아지용	중 송아지용	큰 송아지용	비육우용	
-	-	-	-	-	-	-	-	◦ 첨가량 은배합 사료 1 %당 첨가하 는유효 성분 8 을말한 다. ◦ 표본중 “-” 는첨가 하지않 는것을 뜻한다.
5-10	5-10	-	-	-	-	-	-	
44	44	44	-	-	-	-	-	
11-33	11-33	11-33	-	-	-	-	-	
5-20	1-10	1-10	-	5-15	2-10	2-10	2-10	
5-25	10-20	10-20	-	5-80	-	-	-	
5.5-22	5.5-22	5.5-22	-	-	-	-	-	
5-100	5-50	5-20	-	5-80	5-20	-	-	
10-10	5-20	5-20	-	15-40	15-40	15-40	15-30	
10-100	4-40	4-40	-	10-100	4-40	-	-	
10-70	10	10	-	13.2-24.7	13.2-24.7	13.2-24.7	-	
2.5-20	2.5-20	-	-	-	-	-	-	
5-100	10-50	10-50	-	50-100	50-100	50-82	-	
10-100	10-50	10-50	-	10-50	10-50	5-20	-	
5-100	10-50	10-50	-	5-50	5-50	-	-	

대상배합사료 품 명	닭						
	병아리용 (육계제외)	육 계 용				종계용	산란계용
		전 기	중 기	후기 I	후기 II		
치 오 펍 틴	2-10	2-10	2-10	2-10	-	2-10	-
카타사마이신	5.6-11	5.6-11	-	-	-	-	-
타 이 로 신	4.4-55	4.4-55	4.4-55	4.4-55	-	22-55	-
티 아 무 린	-	-	-	-	-	-	-
페 니 실 린	2.6-55	2.6-55	2.6-55	-	-	-	-
하이그로마이신B	6-12	6-12	6-12	6-12	-	-	-
황산네오마이신	10-35	10-35	-	-	-	-	-
황산콜리스틴	2-20	2-20	2-20	2-20	-	2-20	-
나 라 신	60-80	60-80	60-80	60-80	-	-	-
나 이 카 바 진	100-200	100-125	100-125	100-125	-	-	-
데 록 퀴 베 이 트	20-40	20-40	20-40	20-40	-	-	-
쵸 렌	40-125	40-125	40-125	40-125	-	-	-
라살로시드나트륨	75-125	75-125	75-125	75-125	-	-	-
모네신나트륨	100-121	100-121	100-121	100-121	-	-	-
살리노마이신	44-66	44-66	44-66	44-66	-	-	-
아프리노시드	60	60	60	60	-	-	-
암 프로 리 움	40-250	40-250	40-250	40-250	-	-	-
에도파베이트	2.56-16	2.56-16	2.56-16	2.56-16	-	-	-

돼		지		소				비 고
어 린 돼지 용	육성돈용	비 육 돈 용		어 린 송아지용	중 송아지용	큰 송아지용	비육우용	
		전 기	후 기					
2-10	2-10	-	-	-	-	-	-	모베신살 리노마이신 과혼합 금지
56-100	-	-	-	-	-	-	-	
22-110	22-44	22-44	-	-	-	-	-	
10-40	10-40	10-40	-	-	-	-	-	
10-50	10-50	-	-	-	-	-	-	
6-12	6-12	6-12	-	-	-	-	-	
10-100	-	-	-	10-100	10-70	-	-	
2-40	2-40	-	-	5-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3	11-33	
-	-	-	-	-	-	5.5-33	5.5-33	
-	-	-	-	-	-	20	20	
-	-	-	-	-	-	-	-	
-	-	-	-	-	-	-	-	
-	-	-	-	-	-	-	-	

모베신살
리노마이신
과혼합
금지

디오터의
명칭변경

품명	대상배합사료						
	병아리용 (육계제외)	육 계 용				총계용	산란계용
		전 기	중 기	후기 I	후기 II		
암프로리움	100	100	100	100	-	-	-
에도파베이트	5	5	5	5	-	-	-
설파퀴녹사린	60	60	60	60	-	-	-
염산로베니딘	33	33	33	33	-	-	-
크로피돌	125-250	125-250	125-250	125-250	-	-	-
크로피돌	100	100	100	100	-	-	-
메칠벤조퀴이트	10	10	10	10	-	-	-
할로푸기논	3	3	3	3	-	-	-
니트로빈	10-15	10-15	-	-	-	-	-
로니다졸	-	-	-	-	-	-	-
모란텔시트레이트	-	-	-	-	-	-	-
설파메타진	-	-	-	-	-	-	-
설파치아졸	-	-	-	-	-	-	-
오라퀸독스	-	-	-	-	-	-	-
카바독스	-	-	-	-	-	-	-
푸라졸리돈	8.3-11	8.3-11	8.3-11	8.3-11	-	-	-

돼		지		소				비 고
어 린 돼 지 용	육성돈용	비 육 돈 용		어 린 송아지용	중 송아지용	큰 송아지용	비육우용	
		전 기	후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5	5-15	5-15	-	-	-	-	-	
60	60	-	-	-	-	-	-	
30	30	-	-	-	-	-	-	
100	-	-	-	-	-	-	-	
100	-	-	-	-	-	-	-	
15-50	15-50	-	-	-	-	-	-	
20-50	20-50	-	-	-	-	-	-	
165	165	165	-	-	-	-	-	

(별표 2)

제 1 란	<p>암프로리움, 에도파베이드, 암프로리움, 에도파베이드, 설파퀴 녹사린, 염산로베니딘, 크로피돌, 조렌, 테콕퀴베이트, 나이카 바진, 할로푸기논, 모넨신나트륨, 라사로시트나트륨, 살리노 마이신</p>																
제 2 란	<p>테스도마이신A, 하이그로마이신B, 모란텔시트레이트</p>																
제 3 란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아연바시트라신</td> <td style="width: 50%;">황산네오마이신</td> </tr> <tr> <td>엔라마이신</td> <td>린코마이신</td> </tr> <tr> <td>치오팜틴</td> <td>스피라마이신</td> </tr> <tr> <td>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td> <td>밤버마이신</td> </tr> <tr> <td>염산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td> <td>버지니아마이신</td> </tr> <tr> <td>타이로신</td> <td>옥시테트라사이클린 4급암모늄</td> </tr> <tr> <td>에리스로 마이신</td> <td>키타사마이신</td> </tr> <tr> <td>아보파신</td> <td></td> </tr> </table>	아연바시트라신	황산네오마이신	엔라마이신	린코마이신	치오팜틴	스피라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염산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버지니아마이신	타이로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4급암모늄	에리스로 마이신	키타사마이신	아보파신	
아연바시트라신	황산네오마이신																
엔라마이신	린코마이신																
치오팜틴	스피라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염산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버지니아마이신																
타이로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4급암모늄																
에리스로 마이신	키타사마이신																
아보파신																	
제 4 란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오라퀸독스</td> <td style="width: 50%;">카바독신</td> </tr> <tr> <td>황산콜리스틴</td> <td>옥시테트라사이클린 4급 암모늄</td> </tr> <tr> <td>염산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td> <td></td> </tr> </table>	오라퀸독스	카바독신	황산콜리스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4급 암모늄	염산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오라퀸독스	카바독신																
황산콜리스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4급 암모늄																
염산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별표 3)

대상배합사료

축종	구분	범위
닭	○ 병아리 (육계제외) - 어린병아리 - 중병아리 - 큰병아리 ○ 육계전기 ○ 육계중기 ○ 육계후기(I) ○ 육계후기(II)	6주이하 7주~12주 13주~초산전 3주이하 4주~6주 7주~9주 출하전 1주일~출하시
돼지	○ 어린돼지 ○ 육성돈 ○ 비육돈전기 ○ 비육돈후기	8주이하 약 2개월~4개월 비육초기 비육후기
소	○ 어린송아지 ○ 중송아지 ○ 큰송아지	3개월이내 4개월~6개월 7개월~10개월

3. 動物藥品 等 取扱規則

1987.12.26 (농림수산부령 제 991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 1694 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위생용품 (이하 “동물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위생용품”이라 함은 각각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품 및 위생품을 말하되,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양봉용 동물약품”, “양잠용 동물약품” 및 “수산용 동물약품”이라 함은 각각 꿀벌·누에 및 어패류등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약품을 말한다.
3. 사료첨가제”라 함은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으로서 비타민제·푸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을 말한다.
4. “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라 함은 배합사료제조공장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비타민, 미량광물질, 아미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사료첨가제를 말한다.
5. “동물약품”이라 함은 동물약품 등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 2 장 동물약품취급등의 인·허가등

제 3 조 (동물약품 개설등록) ①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국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 4조제 2호·제 3호·제 5호 및 제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면허증 사본

3.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와 시설의 개요서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국개설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제조업 및 품목의 허가) ①법 제 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 4조제 2호·제 3호·제 5호 및 제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 29조제 1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 (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제 1호의 서류와 약사면허증 또는 제조관리자증인서 사본

3.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

②법 제 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품목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와 그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기재한 서류. 다만, 대한약전이나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동물약품공정서에 기재된 품목의 경우에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원료동물약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제형이 동일한 품목이라도 그 제조시설, 시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제조시설로서 제조하고자 하는 동물약품등에 관하여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④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신청은 동물약품·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위생용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 1항제 3호, 제 2항제 1호 및 제 3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정성의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농림수산부장관은 동물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품목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 5호서식 또는 별지 제 6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조건부 허가) ①법 제 2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4조제 1항의 서류

2.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대지의 등기부등본(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3. 기존 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다른사람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 4조제 3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조건부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조건의 이행) ①법 제 2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이행기간은 조건부허가일로부터 1년내로 한다.

②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조건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조건부허가당시에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농림수산부장관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그 조건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 4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 ①법 제 3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허가증 사본
2. 수출입업무를 관리하는 자에 관한 법제 4 조 제 2 호, 제 3 호, 제 5 호 또는 제 8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약사면허증사본 또는 법 제 34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 29 조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술자의 승인서 사본
3.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4.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제 5 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동물약품등의 수출입품목허가)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자가 법 제 3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동물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9 호서식 또는 별지 제 10 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동물약품등의 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신약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임상성적서와 관계문헌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건본용 동물약품등의 무환수입) ①자가치료·임상시험·제조시험·연구시험·건본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매품의 동물약품등과 판매품중 보상용의 동물약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1 호서식의 신청서 2 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1 통
2.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3. 신청사유서 및 설명서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동물약품등의 성분·효능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2 항각호의 서류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이 되는 동물약품등의 품목과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 (동물약품도매상의 허가) ①법 제 3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 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법 제 4 조제 2 호·제 3 호·제 5 호 또는 제 8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 3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 및 그 관리약사에 관한 제 1 호의 서류
3.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4.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②시·도지사는 동물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동물용 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 판매업의 등록) ①법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 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4 호서식의 신청서에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물용 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의 판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 15 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허가사항등의 변경)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와 동물약국의 개설, 동물약품도매상, 동물용 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약품등의 취급자”라 한다)는 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6 호서식·제 17 호서식 또는 별지 제 18 호서식의 신청서를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물약품등의 제조시설의 이전·증설 또는 축소의 경우

가. 변경되는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나.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대지의 등기부등본(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및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다른 사람의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소 또는 취급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가.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

3. 동물약품등의 품목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에 관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허가증

4. 기타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에 관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

③ 동물약품등의 제조시설의 이전·증설 또는 축소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이전·증설 또는 축소를 완료한 때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대장 또는 등록대장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허가증등의 재교부등) ①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품등의 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9 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71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품등의 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및 갱신기간을 정하여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품등의 취급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품등의 취급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내에 별지 제 19 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동물약품등의 취급·관리

제 14 조 (제조관리자등) ① 법 제 29 조제 1 항·제 3 항 및 법 제 34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를, 수출입업자는 수출입관리자를 각각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수출입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수출입관리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조관리자 또는 수출입관리자가 각각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업무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법 제 29조제 1항 단서 또는 동조 제 3항 및 법 제 34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업무 또는 수출입업무나 동물용 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의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의사 또는 기술자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 4조제 2호·제 3호·제 5호 또는 제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신청전 3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2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 21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 13조제 1항의 규정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의 재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 15 조 (제조관리자등의 변경신고)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수출입관리자 또는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 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된 자에 관한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제 14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사본
3. 법 제 4조제 2호·제 3호·제 5호 또는 제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 16 조 (제조관리자 및 수출입관리자의 준수사항) ①동물약품등의 제조관리자는 동물약품등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와 기타 제조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소의 시설 및 원료와 제품에 관하여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
2.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제조소를 청결하게 할 것
4. 원료 및 제품에 대하여 제조작업상황 및 시험검사성적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당해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6월간 (유효기간이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②동물약품등의 수출입관리자는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출입업소의 시설 및 수출입제품에 대하여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
2.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창고등을 청결히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수입품에 대하여 검사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당해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6월간(유효기간이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보관할 것

③동물약품등의 제조관리자 또는 수출입관리자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23 호서식의 신고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배합사료제조용동물약품의 첨가사용 기준) 농림수산부장관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 4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제조시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동물약품에 대하여 그 종류와 첨가량한도등의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18 조 (동물약품등의 판매질서) ①동물약품등의 취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허가를 받아 제조하거나 수입한 동물약품등이 아닌 동물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약품이나 변질 또는 오손된 동물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동물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의 증식 및 공중위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약품(이하 “주의 동물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품목 및 취급요령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동물약품판매업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동물약품에 대하여는 수의사의 처방없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및 자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 또는 수의사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보호대상동물약품의 지정) ①법 제 72 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동물약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
2. 공급량이 국내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것
3. 국제 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동물약품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원료동물약품 : 5 년 이내
2. 완제 동물약품 : 3 년 이내

제 20 조 (동물약품의 표시등) ①동물약품에는 포장마다 “동물약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에는 “주문용 사료첨가제”로, 양봉용 동물약품·양잠용 동물약품 및 수산용 동물약품에는 각각 “양봉용 동물약품”, “양잠용 동물약품”, “수산용 동물약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 53 조 및 법 제 60 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거나 한자를 혼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의 동물약품에 대하여는 다른 문자로 기재할 수 있다.

제 21 조 (동물약품의 부작용등 표시) 휴약기간·부작용·금기사항 및 주의사항이 있는 동물약품은 그 동물약품의 첨부문서·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휴약기간·부작용·금기사항 및 주의사항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 (동물약품용기등의 기재사항) 동물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면적이 협소한 경우 또는 알아보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매진열용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약칭의 사용을 포함한다) 및 주소
2.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번호 및 수입연월일)
3. 중량 또는 용량
4. 유효기간 (국가검정 동물약품에 한한다)
5. 품목허가 또는 수입허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약기간·부작용·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6. 가격

제 23 조 (과대광고의 금지) 법 제 6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될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용법등에 관하여 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받은 사항외의 광고

2. 효능이나 성능등에 관하여 공인된 사항외의 광고
3. 인체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4. 효능이나 성능에 있어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내용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동물약품등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5. 동물약품등에 관하여 수의사·동물관계학자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 다만, 축산진흥에 기여한다고 공공단체가 인정하여 이를 지정·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특별히 광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동물약품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광고 또는 다른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
7. 국산품임에도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국어로 표기를 하거나 외국상표를 사용한 광고 또는 외국제조업자와 기술제휴를 한 것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거나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24 조 (동물약품 공정서)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 4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의 규격 기타 필요한 기준(이하 “동물약품 공정서”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칩

제 25 조 (허가증의 게시)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및 동물약품등의 취급자는 그 제조소나 영업소안의 보기쉬운 곳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내걸어 붙여야 한다.

제 26 조 (생산실적등의 보고 및 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 3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동물약품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매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 20조·법 제 32조 또는 법 제 34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품등의 취급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 24호서식의 신고서를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7 조 (허가증의 반납) ①법 제 6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뒷면에 처분의 요지를 기재하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 28 조 (동물약사감시원) ①법 제 70 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감시원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중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동물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부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은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수출입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약품등의 판매업소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은 관할지역의 동물약품등의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수출입업소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 64 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25 호서식과 같다.

제 29 조 (수거증) 동물약사감시원은 법 제 64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을 수거할 때에는 별지 제 26 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30 조 (시험성적서 및 견본제품등의 제출) 농림수산부장관은 동물약품등의 제조업·품목 또는 수출입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하거나 동물약사감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제조 또는 수출입의 품목이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의 성분분석성적서·임상시험성적서·견본제품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1 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 69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 32 조 (청문) ①농림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 69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함에 있어서는 그 청문실시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와 대표자가 확인하여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33 조 (수수료) 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 34 조 (건의)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처분의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35 조 (허가·등록사항의 보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동물약품등의 취급자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동물약품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동물약품 및 그 부작용의 표시는 제 20조 및 제 21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 3 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동물용 의료용구

- 청진기 (聽診器) Stethoscopes
 타진기구 (打診器具) Percussion apparatus
 외과용 가위류 (外科用 가위類) Surgical scissors
 외과용 겸자류 (外科用 鉗子類) Surgical forceps
 외과용 칼류 (外科用 칼類) Surgical knives
 봉합침류 (縫合針類) Suture needles
 예시류 (銳是類) Bone curets
 소식자류 (消息子類) Probe and sounds
 외과용 톱류 (外科用 톱類) Surgical saws
 골천공기구 (骨穿孔器具) Bone drills
 골망치 및 끌 (骨망치 및 끌) Bone mallet and chisels
 수술등 (手術燈) Surgical lamp
 발치검자류 (拔齒鉗子類) Teeth extraction forceps
 외과용 구류 (外科用 鉤類) Surgical retractors
 유두수술기구 (乳頭手術器具) Teat surgery apparatus
 주사통 및 주사침류 (注射筒 및 注射針類) Injection syringe and needles
 강제투약기구류 (強制投藥器具類) Medication apparatus
 기도관류 (氣道管類) Trachea tubes
 소각기구 (燒烙器具) Cautery
 수술용 장갑류 (手術用 장갑類) Surgical gloves
 투관침류 (套管針類) Trocars
 관장기구 (灌腸器具) Enema apparatus
 개구기류 (開口器類) Mouth speculum
 보정기구류 (保定器具類) Restrain apparatus
 마취기구 (麻醉器具) Anesthesia apparatus
 세척기구류 (洗滌器具類) Flushing apparatus
 자궁세척기구 (子宮洗滌器具) Uterine douching apparatus
 흡인기구류 (吸引器具類) Suction units
 정액채취기구 (精液採取器具) Semen collection instrument
 유방송풍기 (乳房送風器) Udder insufflation instrument
 질경류 (腔鏡類) Vaginal speculums
 질점액채취기구 (腔粘液採取器具) Vaginal scoops
 전기자극사정기구 (電氣刺戟射精器具) Electric ejaculation apparatus
 정액주입기구 (精液注入器具) Semen insemination apparatus
 수술대 (手術台) Surgical table
 치료대 (治療台) Treating table
 표식기구류 (標識器具類) Identifying marker
 찜질기구류 (찜질器具類) Packing apparatus
 전기진단기구류 (電氣診斷器具類) Electric diagnostic apparatus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31조 관련)

번호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1년 이내 위반회수별 행정처분기준			비 고
			1 회	2 회	3 회	
1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약품등을 제조한 때	법 제 26조제 1항, 규칙제 4조제 2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 폐기
2	조건이행기관 만료 30일이 지난후에 조건이행의 연장승인을 신청한 때	법 제 27조, 규칙제 6조제 2항	경 고			
3	수출입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약품등을 수출입한 때	법 제 34조제 3항, 규칙제 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허가취소	해당제품 수거 폐기
4	동물약품등 무환수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물약품등을 무환수입한 때	법 제 34조제 3항, 규칙제 9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5	무환수입한 동물약품을 용도외에 사용한 때	법 제 34조제 3항, 규칙제 9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6	수출입업자 또는 동물약품등의 취급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업소 또는 취급업소를 이전한 때	법 제 34조, 규칙제 12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7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이전·증설 또는 축소한 때	법 제 26조제 1항, 규칙제 12조제 1항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8	동물약품도매상·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소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변경한 때	법 제 35조제 3항, 규칙제 12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9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약품등 품목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제조한 때	법 제 55조, 규칙제 12조제 1항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해당제품은 품목 허가취소 및 전량 수거 폐기
10	동물약품등 제조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제조관리자 또는 수출입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법 제 29조, 규칙제 14조제 1항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번호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1년 이내 위반회수별 행정처분기준			비 고
			1 회	2 회	3 회	
11	제조관리자·수출입관리자 또는 관리약사를 변경후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 29 조, 법 제 37 조제 3 항, 규칙 제 15 조	경 고			
12	제조관리자가 당해제조소의 제조관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법 제 30 조제 2 항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13	제조업자가 제조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가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사항을 제조업자가 거부한 때	법 제 30 조제 3 항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14	제조관리자 및 수출입관리자가 제조관리자 및 수출입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 30 조, 규칙 제 16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15	제조일지 및 시험대장이 없거나 비치기간 동안 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 31 조, 규칙 제 16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16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약품, 변질 또는 오손된 동물약품 및 수거폐기가 지시된 동물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때	법 제 38 조, 규칙 제 18 조제 1 항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17	개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동물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때	법 제 41 조, 규칙 제 18 조제 1 항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18	국가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가검정 동물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한 때	법 제 45 조; 규칙 제 18 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해당제품 진량 수거폐기
1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동물약품등을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한 때	법 제 55 조, 규칙 제 18 조제 1 항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해당제품 수거폐기
20	주의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한 때. 다만, 규칙제 18 조제 3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 44 조제 2 항, 규칙제 18 조제 3 항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1	포장에 “동물약품”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 50 조, 규칙 제 20 조제 1 항	경 고			
22	수입허가시 허가된 국문표시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설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소매용 수입 동물약품을 출고·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저장 또는 보관한 때	법 제 52 조, 규칙 제 20 조제 2 항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번호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1년 이내 위반회수별 행정처분기준			비 고
			1 회	2 회	3 회	
23	휴약기간·부작용·금기사항 및 주의사항이 있는 동물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포장등에 그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 50 조, 규칙 제 21 조	경 고			
24	소매진열용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주소·제조번호·제조연월일·중량 또는 용량·유효기간(국가검정동물약품의 경우에 한한다)·가격·(수입품은 수입자의 상호·주소·수입허가번호를 추가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법 제 58 조, 규칙 제 22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25	명칭·제조방법·용법등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외의 광고를 한 때	법 제 63 조, 규칙 제 23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26	효능이나 성능등에 관하여 공인된 사항외의 광고를 한 때	법 제 63 조, 규칙 제 23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27	기타 동물약품등의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한 때	법 제 63 조, 규칙 제 23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28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조업소나 영업소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조품목허가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 70 조제 3 항, 규칙 제 25 조	경 고			
29	휴업 또는 재개업에 대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한 때	법 제 20 조, 법 제 22 조, 법 제 34 조 제 5 항, 규칙제 26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30	폐업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취급소등을 이전하여 행방이 불명한 때	법 제 20 조, 법 제 32 조, 규칙제 26 조	허가취소			
31	동물약사감시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때	법 제 70 조, 규칙 제 28 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32	동물약품등의 생산과 판매실적 및 법에 의한 보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	법 제 31 조, 규칙 제 35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33	국가검정에서 불합격한 때	법 제 45 조	경고(해당제품에 한한다)	업무정지 30일(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해당품목에 한한다)	
34	국가검정증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국가검정동물약품을 출고·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때	법 제 45 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해당제품 전량 수거 폐기

번호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1년 이내 위반회수별 행정처분기준			비 고
			1 회	2 회	3 회	
35	용접·비중·산도 또는 알코올수등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때	법 제 56 조	경 고	업무정지 30일 (해당 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36	합습도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 56 조	경 고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37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법 제 56 조	경 고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38	성분함량이 기준치 (허용범위포함)에 비하여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9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39	확인시험에서 유효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독 성분 또는 허가성분의 유효성분이 검출되었을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9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40	납·비소 또는 중금속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9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41	병원성미생물 (대장균·녹농균·병원성 포도상구균·사상균·살모넬라균등)이 검출된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9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42	성분함량이 기준치 (허용범위를 포함한다)에 비하여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법 제 56 조	경 고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43	밀봉용기의 내용약품의 증량편차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 56 조	경 고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44	용기외의 표시사항이 허가사항과 상이한 때	법 제 56 조	경 고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45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또는 20%미만 부족한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46	성분함량이 기준치 (허용범위 포함)에 비하여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또는 50퍼센트 미만 과량인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번호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1 년 이 내 위 반 회 수 별 행 정 처 분 기 준			비 고
			1 회	2 회	3 회	
47	주사제용 유리용기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48	이물시험·진공도시험·평균도시험·파이로센시험·확인시험 또는 순도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49	허가성분외의 성분(유효성분 제외)이 검출된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3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50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이상 부족한 때	법 제 56 조	업무정지 9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업무정지 180일 (해당품목에 한한다)	품목허가취소 또는 수입금지	
51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을 때	법 제 26 조제 2항 동물약품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이라 한다)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7 조	업무정지 (시설구비시까지)	허가취소		
52	실험실이 없거나 실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을 때	법 제 26 조제 2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업무정지· (시설구비시까지)	허가취소		
53	작업장이 상시 거주하는 장소와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때	법 제 26 조제 2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54	작업장의 바닥이 판목·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한 자재로 되어있지 아니한 때	법 제 26 조제 2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55	유독가스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없을 때(제조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제제의 제조시설에 한한다)	법 제 26 조제 2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7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56	상수도 또는 우물과 경수연화시설등의 급수시설이 없을 때	법 제 26 조제 2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7 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번호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1 년 이 내 위 반 회 수 별 행 정 처 분 기 준			비 고
			1 회	2 회	3 회	
57	원료 및 제품참고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7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58	주요한 실험시설 및 기구가 없어 실험이 곤란한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7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59	작업대(60 센티미터 이상 높이)가 없을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60	출입구 및 창이 완전히 밀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7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61	습도조절시설이 없을 때 (흡수성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7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62	집진시설이 없을 때 (먼지를 발생 하는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7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63	주사제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4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64	항생물질제제의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5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65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6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66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소의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면적기준에 미달한 때를 제외한다)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8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30 일	
67	생물학적제제 수출입을 행하는 수출입업소로써 저장시설이 없을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8 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15 일	업무정지 30 일	
68	동물약품 등 제조업소·수출입업소·도매상 및 동물약품국의 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된 때	법 제 26 조제 2 항, 시설기준령 제 3 조, 시설기준령 제 8 조	(구비시까지) 허가 또는 등록취소			
69	동물약품 도매상·동물약품·동물용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소가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시설기준령 제 10 조, 시설기준령 제 9 조, 시설기준령 제 10 조, 시설기준령 제 11 조	경 고	업무정지 7 일	업무정지 15 일	

번호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1 년 이 내 위 반 회 수 별 행 정 처 분 기 준			비 고
			1 회	2 회	3 회	
70	기타 약사법 및 약사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71 품목에 대한 경고는 1점, 업무정지는 2점, 품목허가 취소는 3점으로 계산하여 1년 이내에 12점이상이 된 때	법 제 69 조 제 1 항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71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 비 고**

1.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업무정지기간중에 제조·판매·수출입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
4. 품목에 대한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해당제조번호의 제품을 수거폐기하며, 품목허가취소의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전량 수거폐기한다.
5. 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에는 미비된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개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시설개수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
6. 동물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중요한 시설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에 대하여는 위표의 기준에 불구하고 시설개수완료시까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이 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표의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행정처분한다.
8. 품목의 성분 분석결과 함량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광물질 제제 : 80 퍼센트 ~ 140 퍼센트
 - 나. 기타 사료첨가제 : 90 퍼센트 ~ 130 퍼센트
 - 다. 생균제제 : 90 퍼센트 이상
 - 라. 국가검정동물약품 : 국가검정기준
 - 마. 기타 동물약품 : 90 퍼센트 ~ 120 퍼센트

[별표 3]

수 수 료 액 (제 33 조 관련)

1. 동물약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조건부허가	3만원
2.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소재지 변경허가	2만원
3. 동물약품등 품목별허가 또는 조건부 품목별허가	1만원
4. 동물약품등 수출입업허가	1만원
5. 동물약국개설등록	1만원
6. 동물약품등의 제조품목별 변경허가	5천원
7. 동물용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판매업등록	1만원
8. 동물약품등 도매상허가	2만원
9. 허가 및 등록사항변경	5천원
10. 제조관리자 승인	1천원
11. 허가증·등록증등 재교부신청	1천원

◇ 개정이유

약사법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소관으로 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여 시행중인 바, 동물약품등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동물약품등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약품공정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의 첨가사용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등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동물약품중 수산용·양잠용 및 양봉용 동물약품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영 제 2 조제 2 호 및 제 20 조).
- 나. 동물약품등에 관한 기술검토기관을 종전에는 가축위생연구소로 제한하던 것을 동물약품등의 종류가 다양하여짐에 따라 기술검토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영 제 4 조제 5 항).
- 다. 동물약품의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합사료제조시에 첨가하는 동물약품의 종류와 첨가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합사료제조용동물약품의 첨가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영 제 17 조).
- 라. 동물약품중 호르몬제등과 같이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물약품을 “주의동물약품”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영 제 18 조제 2 항).
- 마. 동물약품의 품질향상과 동물약품의 품목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약품공정서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영 제 24 조).
- 바. 종래 훈령으로 운영하여 오던 동물약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새로이 정함 (영 제 31 조).

< 농림수산부 제공 >

4. 草地造成을 위한 山地轉用協議指針

(山林廳 경영 1157. 1 - 5733. '82. 11. 22)

1. 目的

草地造成을 爲한 山地의 他用途 專用 協議指針을 制定하여 國土를 效率的으로 開發 利用함으로써 山林資源增殖과 國土保全 等 山林의 基本機能을 確保하면서 畜產振興 施策을 積極 뒷받침코자 함.

2. 基本方向

- 全國의 山林을 用途別 適地에 따라 效率的으로 開發 利用함으로써 山地의 資源化와 國土保全을 圖謀
- 準 保全林地는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草地 등 他用途 轉用을 制限없이 許容
- 保全林地라 할지라도 年次的으로 調査하여 草地造成 適地에 對하여는 從來의 制限規定을 緩和하여 開發 利用토록 措置하되 이러한 年次別 調査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草地造成 申請이 있을 때는 本 基法에 의해서 開發을 協議함.
- 山地의 草地造成에 따른 山林保護對策 및 事後管理 體制를 確立하여 山林被害 및 荒廢防止

3. 山地의 草地造成 許容基準 및 補完措置

가. 草地造成 許容基準

(1) 準 保全林地에 該當하는 全 山林

(2) 保全林地中 다음 該當山林

- 要存國有林：다음 地域中 國有林 經營管理目的에 支障이 없으며 未立木地 및 形質이 不良한 소나무와 瀾雜林地로서 草地造成 適地
 - 境界地域：傾斜 21° 未滿과 21° 以上 36° 未滿으로 立木 本數度 51% 未滿
 - 既 造成草地連接地域：傾斜 36° 未滿
 - 其他地域：傾斜 21° 未滿의 1 個所 50 ha 以上 集團地
- ※ 上記 各項中 人工造林地는 原則的으로 除外

○ 用材目的 保全林地

傾斜 21° 以上 36° 未滿의 立木本數度 51% 以上 林地中 形質이 不良한 소나무와 潤雜林地로서 草地造成 適地

○ 保安林

傾斜 21° 未滿, 立木本數度 51% 未滿인 第2種 水源涵養保安林, 土砂防備保安林 및 風致保安林中 草地造成後 保安林 指定目的에 支障이 없는 地域

○ 其他 保安林地

公園, 文化財 保護區域, 寺刹林 및 觀光地는 關係法規에 依據 該當機關과 協議 (山地轉用協議指針範圍內에 限함)

(3) 砂防地

傾斜 36° 未滿의 草地造成適地

(4) 現行制限規定의 緩和

(가) 道路邊 2 km 以內 可視地域에 對한 草地造成 制限을 解除

(나) 燃料林中 適地에 草地造成을 할 경우 代替造林實行 條件을 免除

(5) 草地造成·除外對象 山林

(가) 採種林 試驗林 및 天然保護林

(나) 前(1), (2), (3)項 許容基準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山林

※ 留意事項

(가) 一團의 草地造成區域內에 傾斜 36° 以上の 林地가 部分的으로 不可避하게 包含될 수는 있으나 이 境遇는 伐採로 因한 山地의 土砂流出과 荒廢를 招來할 憂慮가 있으므로 伐採(草地造成) 禁止區域으로 設定하여 急傾斜地에 連繫된 草地를 保護토록 措置

(나) 燃料林의 草地轉用時 燃料林의 代替造林과 山林契總會議決에 依한 同意制 廢止는 別途 改正 示達되는 管理要領에 依據措置

나. 補完措置

(1) 草地造成 許容時 附帶措置事項

(가) 造林經費等の 返還

○ 補助 造林地의 造林費 返還(5年以內 造林地)

○ 燃料林 造成地에 對한 既投資額의 辨償

○ 砂防地의 施設費 및 管理費 辨償

(ㄱ) 要存國有林은 不要存으로 轉換後 貸付措置

(ㄷ) 草地造成에 따른 伐採產物은 產物所有者가 任意處分(國有林은 立木處分 또는 官直營生産)

(2) 草地造成地域內 山林保護 및 荒廢防止 對策

(가) 伐採 및 草地造成 禁止區域과 造林施行地域設定

(許可時 圖面에 區劃表示)

- 草地造成地 周邊에 對한 造林實施
- 伐採 및 草地造成 禁止區域 設定
 - 稜線部, 急傾斜地, 石礫地, 土砂流出 憂慮地
 - 防風林效果와 景觀造成에 支障이 있는 地域
 - 庇蔭樹殘存이 必要한 地域

(ㄱ) 草地造成地區 및 周邊山林에 對한 山林保護 및 土砂流出防止義務를 草地造成 受許可者(또는 受貸付者)에게 賦課

(ㄷ) 다음 境遇에는 草地造成許可를 取消하고 原因者로 하여금 原狀回復 但, 不履行時는 許可廳에서 責任代行(草地法 § 27)

- 不實開發로 因하여 草地造成의 目的達成이 어려운 境遇
- 許可日로부터 1年內 開發事業을 着手하지 않은 境遇
- 許可條件을 違反하거나 許可區域外의 山林을 開發한 境遇

(3) 草地의 事後管理對策

(가) 草地管理 實態調查

- 許可廳은 草地法 第 24 條 規定에 依한 草地實態調查를 山林關係 公務員과 合同으로 年 1 回 以上 實施
- 實態調查時 調查事項
 - 草地管理 利用狀態(土砂流出, 荒廢地의 放置與否 等 包含)
 - 許可附帶條件의 履行與否 伐採禁止區域의 存置 및 草地周邊의 造林實行 與否 草地와 그 周邊의 山林被害 有無
- 管理狀況 또는 附帶條件 및 業務履行狀況이 不實한 境遇에는 一定期間을 定하여 是正措置

(ㄱ) 不實草地의 山林還元

草地의 管理利用 및 土砂流出防止 등 事後管理狀態가 不實한 草地는 許可廳 責任下에 造林 등 跡地復舊事業을 實施하여 山林으로 還元措置

4. 適地調査 및 協議機關

가. 草地造成 適地調査

- 許可廳은 山林關係 公務員과 合同調査 實施
- 草地 適地 調査事項
 - 立地條件 — 傾斜度, 土深, 土性, 石礫含量 等
 - 林 相 — 樹種, 樹齡, 胸高直徑, 林木本數度 等
 - 其他事項 草地造成 除外對象山林, 保全林地 및 砂防地의 編入與否 伐採禁止 區域 및 造林實行地域

나. 山地의 他用途轉用 協議 對象機關

- 農水產部長官 許可時는 山林廳長
 - ┌ 2 個以上 道에 걸쳐 草地를 造成할 境遇
 - └ 道知事가 直接 草地를 造成할 境遇
- 道知事 許可時는 市·道 山林關係 局長
 - ┌ 2 個以上 市·郡에 걸쳐 草地를 造成할 境遇
 - └ 市長·郡守가 直接 草地를 造成할 境遇
- 市長·郡守 許可時는 市·郡 山林關係 課長
 - 單一市·郡內에 草地를 造成할 境遇
- 營林署 管轄 要存 國有林內 草地造成時는 山林廳長
- 其他 保全林地 및 砂防地에 草地造成時는 道知事